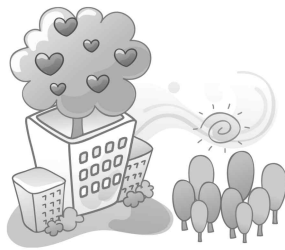


12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표]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	에너지/자원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효율적 사용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기술 자립도를 제고하여 기후변화협약·고유가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및 창조경제 기반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응용연구, 개발연구	12~60	1,807	1,204	3월	996
산업통상 자원부	자원개발기술개발	자원탐사/개발/ 활용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중장기) 36~72 (단기) 12~36	299.6	1,589	3월 8월	1004
산업통상 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 발사업(에너지· 자원순환)	환경, 에너지/자원	중소·중견기 업, 연구소, 대학, 기타 등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12~60	208	772	4월	1008
산업통상 자원부	신재생에너지융합 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자원, 기계, 화공, 재료, 전기/전자, 환경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학·협회 등)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실증)	매년 단위의 연차평가에 의한 2~5년 지원과제: 24~60	2,161	1,715	6~8월	1014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국제 공동연구 및 전력기술국제협력 사업	에너지/자원, 원자력	산·학·연	연구개발, 국제협력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등	12~36	209	5	-	1020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	원자로 노심기술, 원자로개통/핵 심기기기술, 원자력계측/제 어기술, 원자력 안전기술, 핵연료/원자력 소개, 원전건설/운영 기술 등	기업,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조합 등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실증/상용 화연구	중장기 (60개월 내외), 단기 (36개월 이내)	963	중장기 : 1,000~ 3,000 단기 : 100~700	3월 5월 6월	1026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에너지/자원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기타	기타	1년단위 지원	38.53 (21.53 (예특), 16.97 (기금))	125	5월 8월	1034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자원순환 기반조성(R&D)	에너지/자원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기타	기타	과제 성격에 따라 2~3년	130.16 (예특)	217	5월	1039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산업통상 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신재생/ 전력/원자력)	에너지/자원, 원자력	중소·중견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12~36	48	480	4월	1044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 (에특, 기금)	에너지/자원	대학, 연구소, 기타	인력양성	기타	12~120 · 기초트랙 12~48 · 고급트랙 12~60 · GET-Future연구실 12~120	에특 151 기금 251	에특 379 기금 370	3월	1050
산업통상 자원부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구축	에너지/자원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기반구축	기타	48	40	38.8	-	1056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	에너지/자원,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재료, 환경	기업, 연구소, 대학, 기타(학· 협회 등)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실증)	연차평가, 2~3년 단위의 단계평가에 의한 2~4단계 지원 : 24~120	907	708	3월 5월 6월	1061
산업통상 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중저중위방사 성폐기물 관리기술	대학, 기업, 정부출연 연구소, 국공립연구 기관, 연구조합 등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실증/상용 화연구	증장기: 60 단기: 36	126	증장기: 6000 단기: 300	3월 5월 6월	1067
산업통상 자원부	탄소밸류구축	화학소재(탄소 섬유)	대학, 연구소, 기업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12~60	272.7	1,363	5월	1073
산업통상 자원부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기계, 재료	대학, 연구소, 기업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12~60	140	1,750	5월	1079
산업통상 자원부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전기/전자	대학, 연구소, 기업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12~60	193	1,206	-	1086
산업통상 자원부	첨단메디컬신소재 (섬유)개발	화학소재(섬유)	대학, 연구소, 기업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12~60	106.5	887.5	5월	1092
산업통상 자원부	차세대건설기계· 부품특화단지조성 사업	건설기계	대학, 연구소, 기업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기타	36~60	104.63	750(기술 개발)	5월	1098
산업통상 자원부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RIS)	전체	대학, 기업,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역혁신	개발연구	72	522	634.6	-	1104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기간(개월)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백만원)	'13년 신규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산업기술개발사업	전체	대학, 기업,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12~36	563.9	153.6	4~5월	1109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RIC)	전체	대학(산학협력단)	기반구축, 지역혁신	개발연구	120	183	561.4	-	1116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RRI)	생명과학, 보건의료, 에너지/자원	기타	기반구축	응용연구, 개발연구	36	34	301.5	-	1120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구축	의료기기	대학, 연구소, 기업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12~36	95.6	1,195	5월	1125
산업통상자원부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전기전자, 정보통신, 인지감성공학	기업체 및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기업지원	원천 및 상용화 기술개발 연구	기술개발: 36 기반구축: 60	120	2,400	7월	1132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기타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구축, 인력양성, 기타	기타	60	304.45	4,349	5월	1138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	기타	대학(4년제 이상)	인력양성	개발연구, 기타	12~60	71	전문대학원: 1,500 일반대학원: 400	'13 신규공고없음	1144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기계, 재료,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기타	산업기술 연구회	인력양성	기타	12	139.5	46	3~5월	1149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기타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인력양성	기타	24~60	8	100~150	-	1154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술인력양성	전체(14대 전략기술분야)	대학	인력양성	기타	12~68	5	100	-	115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	전체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인력양성	기타	12~60	7.88	788	-	116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전체	대학(4년제 대학과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인력양성	기타	12~60(2년후 수행실적 평가)	10	300	2월	1168
산업통상자원부	고급연구인력활용 지원사업	이공계 전 분야	기타	기타(인력공급)	기타	12~120	120	11.659	3월	1173
산업통상자원부	테크포스넷(Tech-Force Net) 구축사업	정보/통신	기타	기반구축	기타	12~50	3	300	-	1179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산업통상 자원부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지원사업	기타	대학(4년제 이상 이공계대학)	인력양성	기타	12~60	10.44	2,500	3월	1183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총괄기획평가관리	산업기술 전 분야	대학, 연구기관, 단체 및 기업 등	기타	기타	12~계속 (연차별 종합시행 계획 수립)	17.41	1,741 (사업 총괄기획 평가관리)	1~3월	1189
산업통상 자원부	봉제전문인력양성 사업	기타	국내 소재 봉제관련 비영리기관	인력양성	기타	12~60	5	475	-	1193
산업통상 자원부	청정제조기기반구축사업	환경	연구소, 기업	기반구축	개발연구	12~36	35.5	3,125	6월	1199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전 기술분야	대학,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기반구축,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36~60	1,330	1,805	2~4월	1205
산업통상 자원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 전 분야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기업	산업기술개발, 국제협력	응용연구, 개발연구	12~60	460	500	4월	1212
산업통상 자원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등	중소·중견 기업 등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12~24	290	1,022	7~8월	1222
산업통상 자원부	뿌리산업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재료	연구기관	기반구축,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36~60	146.58	14,380	-	1226
산업통상 자원부	소재종합솔루션센터 구축사업	재료	연구소, 대학	기반구축	개발연구	0~12	108	2,707	-	1232
산업통상 자원부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부품(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및 소재(화학, 금속, 섬유)	연구기관	기반구축	개발연구	0~12	107.18	1,786	3~5월	1236
산업통상 자원부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제조업 전 분야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기타	기타	11개월~24년	209	200	5월	1241
산업통상 자원부	조선기자재경쟁력 강화사업	기계(조선)	기타	국제협력, 인력양성	기타	0~12	8	8	-	1246
산업통상 자원부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기술개발	기계	대학, 연구소, 기업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기타	12~60	88.14	2,203	5월	1252
산업통상 자원부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로봇	대학, 연구소, 기업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기타	24~60	140.24	400 (기술개발)	5월	1258
산업통상 자원부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	기계, 전기전자	대학, 연구소, 기업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12~60	165.5	18,400	5월	1264
산업통상 자원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생명과학, 보건 의료,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대학, 연구소, 기업	지역혁신	개발연구	12~24	2,825	542	3월	1270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산업통상 자원부	감성터치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디스플레이	대학, 연구소, 기업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기타	24~60	122.84	760(기술개발)	5월	1278
산업통상 자원부	이공학교육활성화 사업	기타	대학	인력양성	기타	36~120	223	200	-	1284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거점기관 지원사업 (첨단 하이브리드 가공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	금속재료, 주조/용접/접합, 열/표면처리	연구기관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36~60	29.68	2,894	'13 신규과제추진 일정 없음	1289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거점기관 지원사업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기반구축)	해양자원, 조선/해양 시스템, 자원탐사/개발/활용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기반구축,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36~60	70	6,825	'13 신규과제추진 일정 없음	1295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 (신산업/주력산업)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환경, IT융합, USN, 기타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지원 : 36~60	5,332	1,113	1월~4월	1301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 (정보통신)	정보/통신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지원 : 36~60	4,030	1,484	1월~3월	1307
산업통상 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화학,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등 소재부품분야	기업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3~10년 지원 : 36~120	3,208	핵심소재 : 1,200~1,909 융복합 : 634~1,770	1월~7월	1313
산업통상 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우수기술연구센터)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기타	기업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지원 : ~60	588	477	3월	1322
산업통상 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섬유생활스트립간 협력기술)	재료, 화공	기업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3년 이내 지원 : 12~36	362	716	2월	1327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산업통상 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해양레저장비)	기계	기업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3년 이내 지원 : 12~36	27	200	2월	1332
산업통상 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개인용이동수단)	기계	기업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3년 이내 지원 : 12~36	45	367	2월	1337
산업통상 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청정생산기반 전문기술)	환경	기업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3년 내외 지원 : 12~36	228	456	2월	1342
산업통상 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디자인전문 기술개발)	기타	기업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년 이내 지원 : ~12	111	269	4월	1348
산업통상 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첨단연구장비 경쟁력향상)	기계	기업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지원 : ~60	51	657	7월	1353
산업통상 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신산업기술개발)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계	기업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년 이내 지원 : 24~36	40	-	3월	1358
산업통상 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정보통신)	정보통신	기업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 지원 : ~24	260	500~600	1~4월	1363
산업통상 자원부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기계,반도체,디 스플레이,LED, 그린수송,바이 오,의료,방송	대학, 연구소, 기업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지원 : 12~60	284	1,500	7월	1368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기간(개월)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규모(백만원)	'13년 신규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초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지원 : 12~60	163	646	7~8월	1373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사업*	기계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산업기술개발, 연구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지원 : ~60	207	478	4월	1378
산업통상자원부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사업*	화공	기업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2~5년 이내 지원 : 24~60	170	640	3월	1384
산업통상자원부	그래핀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	재료, 화공, 전기/전자	기업, 대학, 연구소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6년 : 72	40	-	3월	1390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기업역량 강화사업*	기타	기업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년 이내 지원 : ~12	74	273	4월	1395
산업통상자원부	국민편의증진기술 개발사업*	보건의료, 기계, 전기/전자, 화공, 정보/통신, 건설/교통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2~4년 이내 지원 : 12~48	100	241	9월	1400
산업통상자원부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 기술개발*	보건의료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2~5년 이내 지원 : 24~60	70	957	4월	140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사업*	전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산업기술개발, 기타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지원 : 12~60	55	267	4~5월	14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전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기타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과제별 특성에 따라 1~13년 이내 지원 : 12~156	426	149~1,000	3월	1415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산업통상 자원부	녹색산업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전기/전자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7년 이내 지원 : 12~84	90	1,000	3~5월	1421
산업통상 자원부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촉진 및 활용사업*	재료, 화공, 전기/전자	기업, 대학, 연구소	산업기술개발	응용연구	5년 : 60	44	900	1월	1426
산업통상 자원부	나노융합기업T2B축진사업*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기타	3년 : 36	8	750	1월	1431
산업통상 자원부	나노제품안전성 기반구축사업*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 건설/교통	기업, 대학, 연구소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기타	2년 : 24	12	100	6월	1436
산업통상 자원부	시스템반도체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전기/전자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지원 : 36~60	201	2,238	3월~7월	1441
산업통상 자원부	차세대이차전지핵심기술개발및기술지원사업*	전기/전자	연구소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지역혁신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지원 : 12~60	25	1,215	5월	1447
산업통상 자원부	그린에너지소재 기술개발센터 구축사업*	전기/전자	대학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지역혁신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지원 : 12~60	15	730	5월	1452
산업통상 자원부	LED시스템 조명 기술개발사업*	전기/전자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산업기술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3년 이내 지원 : 12~36	55	1,337	4월~5월	1457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산업통상 자원부	우정기술연구 개발사업*	기타 (우정기술)	연구소	기반구축,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지원 : 12~60	50	2,650	12월~ 1월	1462
소계	84개 사업									

\* 과제별 평균지원 규모는 12년 기준임.

##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송춘곤 사무관

(전화 : 02-2110-5694, E-mail : songcg@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효율적 사용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기술 자립도를 제고하여 기후변화협약·고유가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및 창조경제 기반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4) 연구개발단계	응용 및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807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04

### 1. 사업개요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 (추진배경)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인 “BAU 대비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확대 필요

–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업종 등의 효율향상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기술개발 역량 및 에너지절감성과 12% 향상

○ (사업의 필요성) 에너지효율향상은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에너지수급관리 및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수단(McKinsey, 2010)

- 에너지수요관리대책('09.6.4)에 따라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업종에 대한 효율향상 기술개발에 '10~'14년까지 1조 6천억원을 투입키로 중기재정계획 확정

□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 (추진배경)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0년 BAU대비 30% 감축)에 따라 주요 감축수단으로 'CCS도입 강화'를 명시하고, 범부처 공동의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 발표 ('10.7월, 제8차 녹색위)

- 선진국들은 CCS 상용화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개발중

\* '17~'20년경 초기시장 형성을 거쳐, '20년 500억불 규모의 세계시장 형성 전망 (참고) CCS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 특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13.2월 발표)에서 화력 발전의 증설을 발표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현안문제로 대두

□ 가스안전기술개발

○ (추진배경)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는 140개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독성가스 산업안전, 노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이 요구됨

○ (사업의 필요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확대, 신기술 개발에 따른 관련 안전기술개발 수요 증가 등 가스안전 관리의 선진화, 효율화를 위해 관련 분야 안전기술개발 지원 필요

-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등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기술개발은 全無

- 특히,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는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재난/재해 관련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과 통합사회 구축을 위한 필수정책임

## 2. 지원대상분야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 (대상기술)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분야,<sup>1)</sup> 에너지수요관리대책<sup>2)</sup>에 따른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업종 관련 에너지 핵심 기술

1) (로드맵) 그린카, 히트펌프,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건물효율, 고효율신광원 등  
2) (① 에너지다소비기기) 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 (② 에너지다소비업종) 시멘트, 제지, 제철 등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 (대상기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O<sub>2</sub> 포집·저장 및 전환 등 기술개발

가스안전기술개발

- (대상기술) 가스 분야(LNG, LPG 포함)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가스안전고도화 기술

## 3.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일 마감일 기준으로 법인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중 장 기	중 대 형	전략 응용	3년~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등</li> <li>· 주관기관 : 산·학·연</li> <li>·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li> <li>·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li> </ul>
		대형 상용화	3년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li> <li>· 주관기관 : 산업계</li> <li>·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li> <li>·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li> </ul>
	신시장 창출형		3년~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li> <li>· 주관기관 : 산·학·연</li> <li>·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li> <li>· 기술범위 : 에너지시스템간 상호 연계 기술 및 융복합 기술</li> </ul>
단 기	단기핵심		3년 이내	<Supply-chain 육성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에너지산업의 Supply-chain 강화</li> <li>·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li> <li>· 지원규모 : 매년 7억원 내외</li> <li>· 기술범위 : 에너지산업의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li> </ul>
				<마중물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확보한 기술역량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여건 간의 간극 해소를 통한 사업화 창출</li> <li>· 주관기관 : 성과활용조사분석을 통해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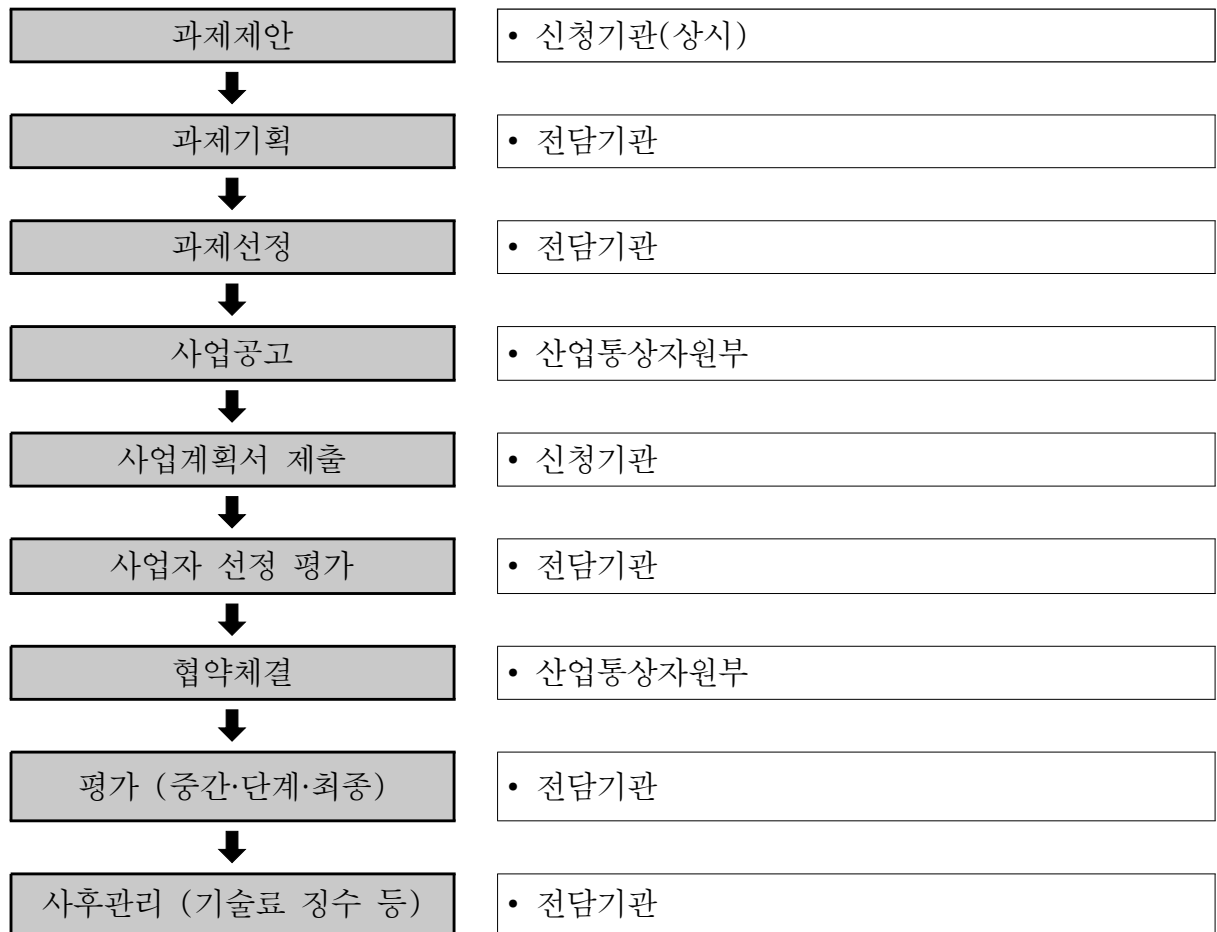
구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 매년 2억원 이내</li> <li>· 기술범위 :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단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가능 기술</li> </ul>
			<p>&lt;시장수요대응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li> <li>· 주관기관 : 산·학·연</li> <li>·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이내</li> <li>· 기술범위 : 에너지산업의 시급한 시장애로기술로써 국내외 비즈니스 창출 또는 시장진입이 가능한 에너지기술</li> </ul>
	복지형	2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상용기술 확보</li> <li>·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li> <li>· 지원규모 : 매년 1~3억원 내외</li> <li>· 기술범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안전을 위한 저가 고효율 에너지기기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li> </ul>

□ 지원조건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5. 추진체계 및 절차



## 6. 추진일정

중장기 공고과제 추진일정

구 분	2013년도 중장기 과제 기획프로세스
'12년 10월	▪ 정부 에너지 정책수요 검토
'12년 10월	▪ 기술수요조사 검토('12년 10월)
'12년 10~11월	▪ 기획대상과제 후보구성
'12년 11월	▪ 기획대상과제 확정
'13년 1월	▪ 과제기획 및 RFP 도출
'13년 2월	▪ 과제우선순위
'13년 3월	▪ 산업부 확정(심의위원회)
'13년 3월	▪ 신규과제 공고

## 7. 제출서류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 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http://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8. 관련자료**

## □ 관련규정 및 정책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1997~2006)
  - '02.12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4년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
  - '06년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10개년)계획
  - '08.8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8.12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
  - '11.11월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송춘곤 사무관  
(Tel : 02-2110-5694 , E-mail : songcg@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기획팀 김상호 책임연구원  
(Tel : 02-3469-8359, E-mail : shkim@ketep.re.kr)

## 자원개발기술개발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김종현 사무관

(전화 : 02-2110-5528, E-mail : spademan@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자원탐사/개발/활용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중장기) 36개월 ~ 72개월 (단 기)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99.6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89백만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와 자원개발 분야의 투자 대비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력 향상 추진

추진방향

-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탐사 및 평가, 생산된 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 비전통에너지자원 및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극한지, 심해저 등 한계지역에서의 자원확보 기술개발 강화

## 2. 지원대상분야

- 석유·가스, 광물자원 개발 및 활용 기술

##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3.6.18)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중장기) 연 30억 내외(과제성격에 따라 가변적임)
- (단 기) 연 5억 이내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사업비의 50~100% 정부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구 분	월	실행내용	구 분	월	실행내용
상반기	3월	▪ 신규과제 공고(1차)	하반기	8월	▪ 신규과제 공고(2차)
	5월	▪ 신규 사업자 선정·평가		10월	▪ 신규 사업자 선정·평가
	6월	▪ 협약체결		11월	▪ 협약체결

## 7. 제출서류

○ 신청기관은 사업 공고시 안내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http://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8. 관련자료

### □ 관련근거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광업법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 광업법시행령 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 신청양식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http://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김종현 사무관  
(Tel : 02-2110-5528, E-mail : spademan@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기획팀 김경국 선임연구원  
(Tel : 02-3469-8352, E-mail : enpower@ketep.re.kr)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너지·자원순환)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산업환경과	유재영 사무관
	에너지기술과	송춘곤 사무관

(전화 : 02-2110-5135, 5694, E-mail : gloria09@motie.go.kr, songcg@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환경,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대학,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8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72백만원

### 1. 사업개요

□ 개요

- 산업 생산과정에서의 에너지자원 사용량을 원천감축하고 사용후 제품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에너지·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순환형 산업경제 구조 구축
- 비관세 무역 장벽화되고 있는 국제 자원순환 효율규제에 중소·중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그린에너지분야 Supply Chain 육성과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부품·소재·장비 분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

## □ 사업목표

-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원천감축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 (Circular Economy Structure)를 구축하며, 국제적인 자원순환을 규제에 우리나라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관세 수출장벽 극복을 목적으로 추진
- 그린에너지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 R&D역량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지원을 통해 세계 Top Brand제품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20년까지 세계시장 10% 이상 점유하는 에너지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50개 육성

## □ 추진방향

-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및 에너지자원·순환 효율규제대응 기술개발분야의 강소 중소·중견 기업 전력적 육성추진
- 그린에너지분야 Supply Chain 육성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강소 중소·중견기업 전력적 육성 추진

## 2. 지원대상분야

### □ 연구개발

-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 희유금속 등 주요 금속자원의 회수, 사용량 저감 및 대체를 위한 도시광산 관련 기술개발지원
-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 에너지·자원 원천 감축과 물가안정 달성 등을 위한 재제조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자원순환 효율규제 대응 기술개발 :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에너지·자원순환 효율규제 대응 기술개발 지원
- 녹색기술개발 : 에너지분야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핵심 부품·소재·장비개발에 집중 지원

###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에너지 산업 분야의 기업 중에서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 기준)

구 분	조 건
혁신성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2% 이상인 기업
성장성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CAGR) 증가율이 20%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주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
-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참여기관으로 사업참여 가능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과제당 연 5~30억원 이내
- 지원방식 : 중장기 및 단기핵심으로 지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50~100% 정부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방향 설정, 예산확보 및 지원, 평가기본계획 수립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담기관) : 기획, 평가, 성과관리 등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 '13.~12 : 상시 기술수요조사
  - '14. 2 : 기술분야 기획
  - '14. 4 : 신규사업 공고
  - '14. 5 : 신규선정, 계속사업 평가실시
  - '14. 6 : 신규사업 협약체결
  - '14. 7 :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부속서류 일체), 협약서 등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 세부 제출서류는 해당사업 공고 시 명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에너지법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제 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의2, 제20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 대통령 공약사항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관련법령 및 규정집(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유재영 사무관  
(Tel : 02-2110-5135, E-mail : [gloria09@motie.go.kr](mailto:gloria09@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송춘곤 사무관  
(Tel : 02-2110-5694, E-mail : [songcg@motie.go.kr](mailto:songcg@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효율자원팀 박성호 팀장  
(Tel : 02-3469-8440, E-mail : [shpark@ketep.re.kr](mailto:shpark@ketep.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효율자원팀 손문의 선임  
(Tel : 02-3469-8443, E-mail : [urgood@ketep.re.kr](mailto:urgood@ketep.re.kr))

##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김창완 사무관

(전화 : 02-2110-5498, E-mail : kimcw83@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에너지/자원, 기계, 화공, 재료, 전기/전자, 환경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학·협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실증)
(5) 연구개발기간	매년 단위의 연차평가에 의한 2~5년 지원과제 : 24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161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15백만원(예상치)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촉진

추진방향

- 신재생에너지분야를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키 위해 산업적 파급효과 및 시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R&D를 추진하고, 기타 분야는 시장 보급 확대 및 중장기 미래시장을 고려한 투자로 R&D 지원 내실화

- 국내산업 및 세계 시장 선점 등 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PD제도 운영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를 고려한 조기상용기술개발과 세계시장 선점을 고려한 미래선도기술 중점 지원
  - \* PD분야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폐기물
- 수력, 석탄이용분야는 보급 확대를 위한 상용기술 개발 위주로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해양분야는 중장기 미래시장을 고려한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 주력
- 태양열, 지열분야는 보급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및 시스템 요소기술 개발 위주로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 산업기술개발

#### ○ 신재생에너지지원\* 산업화 달성을 위한 상용 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에너지 11개원

##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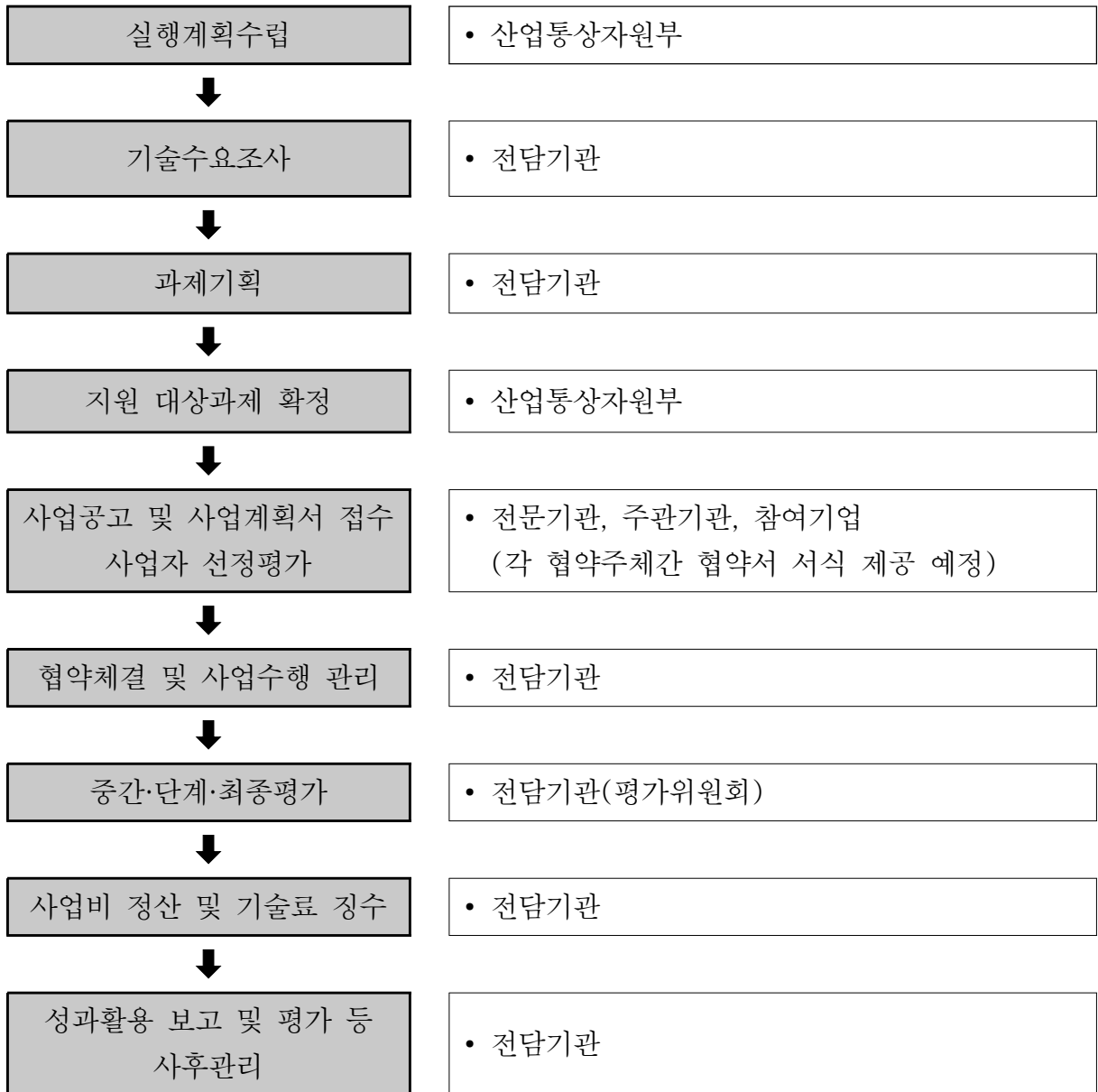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중장기과제 연 30억 내외, 단기과제 연 5억 이내 등 (과제성격에 따라 가변적임)
- 선정방식 : 경쟁공모, 지정공모, 자유공모 등의 방식으로 각 분야별 선정
- 사업내용 : 에너지분야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등 기술 산업화를 위한 R&D 지원
- 주요사업분류 : 중대형 과제, 에너지미래기술 등 기술 사업화를 위한 세부목적별 사업을 매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
  - \* 중대형 : 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제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 매년 최대 10~30억원 내외, 3~5년 이내 지원
  - \* 에너지미래기술 : 향후 10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목표, 매년 최대 10억원 내외, 최대 3단계(10년) 동안 지원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6.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비고
1~2	▪ R&D 실행계획 수립	
1~12	▪ 기술수요조사(상시)	
2~6	▪ 과제기획 실시 및 지원 대상과제 확정	
6~8	▪ 신규과제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8~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관리	
-	▪ 중간/단계/최종평가(연차별 중간평가, 과제종료시 최종평가)	
-	▪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과제종료 이후)	
-	▪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과제종료 이후)	

\* 위 일정은 매년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7. 제출서류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부속서류 일체), 협약서 등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연구비 집행결과내역 포함), 연차보고서 등

\* 세부 제출 서류는 해당사업 공고 및 연차/종료 평가시 명시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타서류

- 관련서식(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김창완 사무관  
(Tel : 02-2110-5498, E-mail : [kimcw83@motie.go.kr](mailto:kimcw83@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기획팀 방기성  
(Tel : 02-3469-8350, E-mail : [gspang@ketep.re.kr](mailto:gspang@ketep.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기획팀 신재생에너지팀 기성섭  
(Tel : 02-3469-8350, E-mail : [sskee@ketep.re.kr](mailto:sskee@ketep.re.kr))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및 전력기술국제협력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정대환

(전화 : 02-2110-5692, E-mail : hanbitj@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에너지/자원, 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산·학·연
(3) 지원목적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4)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 등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9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억원

##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선진 에너지기술의 조기 확보와 기후변화·고유가 등 에너지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제공동 R&D지원
  - Global Open Innovation을 통한 선진기술 조기 확보
  - 자원부국과의 자원외교를 위한 촉매제 역할
  - 에너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협력

##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에너지/자원

- 효율향상, 에너지절약형 건물, 그린카, 에너지저장, 자원기술, 청정연료, CCS 등
-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전력, 스마트그리드 등

#### 원자력

- 원자로 노심기술, 원자로계통/핵심기기술, 원자력계측/제어기술, 원자력안전기술, 원자력소재 등

### 국제협력

#### 국제협력기구 및 국가 간 에너지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의 참여필수

-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일부과제는 해외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신규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만 가능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내외
- 지원방식 : 자유공모, 지정공모
- 지원기간 : 2년~3년

□ 지원조건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 수 및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5% 민간부담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절차

지 정 공 모 인  경 우	사전 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수요 조사	전담기관
	연구기획 수행 (해외 국가별 기술 및 특허분석 등)	과제기획위원회, 수행기관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평가위원회
	신규공고대상과제 및 지원규모 확정	평가위원회(→사업별심의위원회)
과 제  평 가  및  관 리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심의위원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과제 수행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연차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6. 추진일정

평가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규평가	√								√				

\* 1월 신규평가는 국제협력사업 평가

평가개요

구 분	평가형태
방법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
평가 내용	- 국제공동연구 적정성 검토 - 전체 사업 계획 검토 - 해당과제의 기술료 징수·비징수 타당성 여부 검토 - 사업비 비목단위 과다 여부검토, 연구장비 구입에 대한 필요성·활용성을 확인하여 적정성 판단 등

## 7. 제출서류

2012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협약 체결 서류목록

○ 제출서류목록

- 협약관련서류 : 협약서 2+n부, 사업계획서(수정사항 반영 최종본) 2부, 위임장, 직무발명보상계획서,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학사이상)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등
- 사업비지급관련서류 : 사업비청구서,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약속서,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약속서,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포함)

- 연구비카드관련서류 : 연구비카드 입회신청서, 연구비카드 특별약정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카드결제계좌),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중소기업에 한함)
- 기타 : 사업비 세부내역(전산출력물), 평가의견 반영내역

## 8. 관련자료

### □ 관련규정

#### ○ 근거

- 에너지법 제 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13-35호)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ketep.re.kr>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정대환 사무관  
(Tel : 02-2110-5692, E-mail : hanbitj@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팀 백상주  
(Tel : 02-3469-8372, E-mail : sky31778@ketep.re.kr)

##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권병훈 사무관

(전화 : 02-2110-5483, E-mail : knpp@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원자로 노심기술, 원자로계통/핵심기기기술, 원자력계측/제어기술, 원자력안전기술, 핵연료/원자력소재, 원전건설/운영기술 등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조합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실증/상용화연구
(5) 연구개발기간	중장기(60개월 내외), 단기(36개월 이내)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963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중장기(연간 1,000~3,000백만원 내외), 단기(연간 100~700백만원 내외)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원전선진화, 원전설비성능향상, 원자력환경, 원전기술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안전우선의 원전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구축 및 국민신뢰성 회복

- 원전현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 및 원자력 기초기본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기술개발** 추진

\* 원자력발전(원전)

□ 사업목표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구현
- 세계최고의 **안전기술**을 확보한 원전 강국
- **안정적 전력공급** 및 원전강국을 바탕으로 **국민행복** 기반제공

□ 추진방향

- (안전성향상) 국민이 안심하는 원전 안전성 확보
- (안전주도핵심기술) 최상의 안전성과 경쟁력 동시 확보
- (경쟁력강화) 원전산업 대/중/소 상생 인프라 구축

##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개발(상용화를 목표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

- (원전선진화기술개발)

- 원전핵심기술 및 토종신형원전의 사업화 촉진,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기술, 혁신적 안전성 향상 기술 등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및 안전성 강화 기술개발 중점 추진

\* 안전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안전주도 핵심기술 위주로 선택 집중하여 추진

○ (원전설비성능향상기술개발)

- 원전 설비의 신뢰성 향상 및 원전 기자재 산업 육성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과제, 원전설비 운영 최적화 및 정비 고도화 기술 등 추진

○ (원전기술혁신기술개발)

※ 13년부터 미래부(舊 교과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전기술혁신분야가 산업부(舊 지경부) 사업으로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으로 통합 반영

- 사업명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전기술혁신분야
- 배 경 :
  - 2005. 1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미래부(당시 교과부)에서 산업부(당시 지경부)로의 사업이관
  - \* (이관내용) 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원자력 기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 사업 지원
  - \* (이관내용) 향후 원전운영 및 수출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전혁신기술 위주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 2005.1 ~ 2012년까지 : 산업부(당시 지경부) 주관으로 사업운영
  - 2013년부터 산업부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추진

- 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원자력 기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사업 지원, 원전운영 취약분야 기술혁신 및 원전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혁신적 선행기술 발굴

○ (원자력환경기술개발)

- 원전 발전소 내 방사선량 및 방사성폐기물 저감 등을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추진

###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3.6.18)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전략응용(경쟁공모 방식)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등
  -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
  - 매년 10~30억원 내외
  -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2013.04.18)
- 단기과제 : Supply-chain 육성형(기술분야지정 자유공모 방식)
  - 원자력산업의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
  - 매년 7억원 내외
  -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2013.06.18)
- 단기과제 : 시장수요대응형(기술분야지정 자유공모, 자유공모 방식)
  - 원자력산업의 시급한 시장애로기술로써 국내외 비즈니스 창출 또는 시장진입이 가능한 원자력산업기술

- 매년 5억원 이내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2013.06.18)

○ 단기과제 : 에너지미래기술(기술분야지정 자유공모 방식 예정)

- 대학을 중심으로 원자력 기초기본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사업으로  
핵심기술개발(Track 2)

- 매년 1~2억원 이내

\* 공고 8월 예정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기술개발비의 50~100% 이내 정부기금 지원)

\* 해당사업 공고 시 공고문에 명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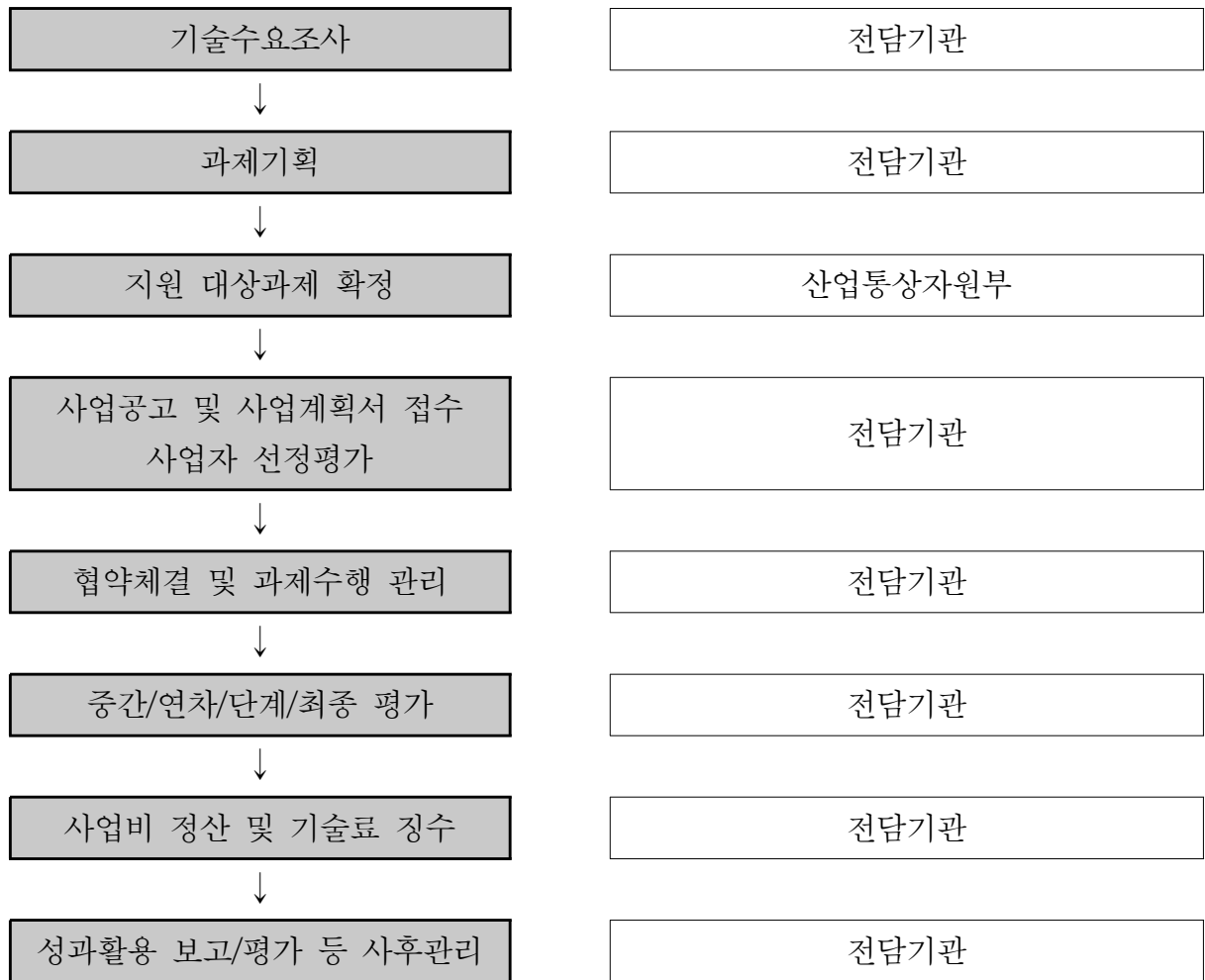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방향 설정, 예산확보 및 지원, 평가기본계획 수립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담기관) : 기획, 평가, 사업성과관리(사업비 집행관리,  
DB 구축/관리, 사후관리 등)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월별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비고
1~12	▪ 기술수요조사(상시)	
~2	▪ R&D 실행계획 수립 ▪ 중장기 상세과제계획 실시 및 지원대상과제 확정	
3~6	▪ 중장기 신규과제 사업공고 ▪ 중장기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 중장기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5~7	▪ 단기 신규과제 사업공고 ▪ 단기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 단기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6~9	▪ 에너지미래기술 신규과제 기획 및 공고 ▪ 에너지미래기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 에너지미래기술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5~12	▪ 로드맵 보완 / '14년 중장기 신규과제계획(사전기획 포함)	

## 7. 제출서류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부속서류 일체), 협약서 등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 세부 제출서류는 해당사업 공고 시 명시

\* 제출서류관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 8. 관련자료

### □ 관련규정 및 기술개발계획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5호,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 제2차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2011)
-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2~'16)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지경부 고시 제2012-170호)

\* 관련법령 및 규정집(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권병훈 사무관  
(Tel : 02-2110-5483, E-mail : knpp@motie.go.kr)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팀 정성일 선임연구원  
(Tel : 02-3469-8483, E-mail : csi@ketep.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팀 권지현 연구원  
(Tel : 02-3469-8484, E-mail : jhkwon@ketep.re.kr)

#### <과제공고 및 중장기 공모과제 중복성 관련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기획팀 김광중 연구원  
(Tel : 02-3469-8459, E-mail : kjkim32@ketep.re.kr)

##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강은구 사무관
	신재생에너지과	김은하 사무관

(전화 : 02-2110-5645, 5404, E-mail : pole97@motie.go.kr, ehkim911@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년 단위지원
(6) '1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8.53(21.53(예특), 16.97(기금))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5

### 1. 사업개요

개요

- 에너지자원기술 및 신재생에너지기술 동향분석, 중장기 R&D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보화 사업
- 신재생에너지기술 정보화 및 정책지원 기반구축으로 기술개발-실증-사업화-수출산업화에 이르는 선순환 연결구조 구축

## 2. 지원대상분야

### 정책기획·연구 (에특)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통한 에너지R&D 투자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신재생에너지기술정책지원 : 신재생에너지 통계·산업분류체계 정립,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자원조사, 타당성조사 등

### 신재생에너지 정보화 및 정책지원 기반구축 (전력기금)

- 정보화 및 정책지원 기반구축으로 기술개발-실증-사업화-수출산업화 선순환 연결구조 구축

##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1~2억원 내외
- 선정방식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과제 지원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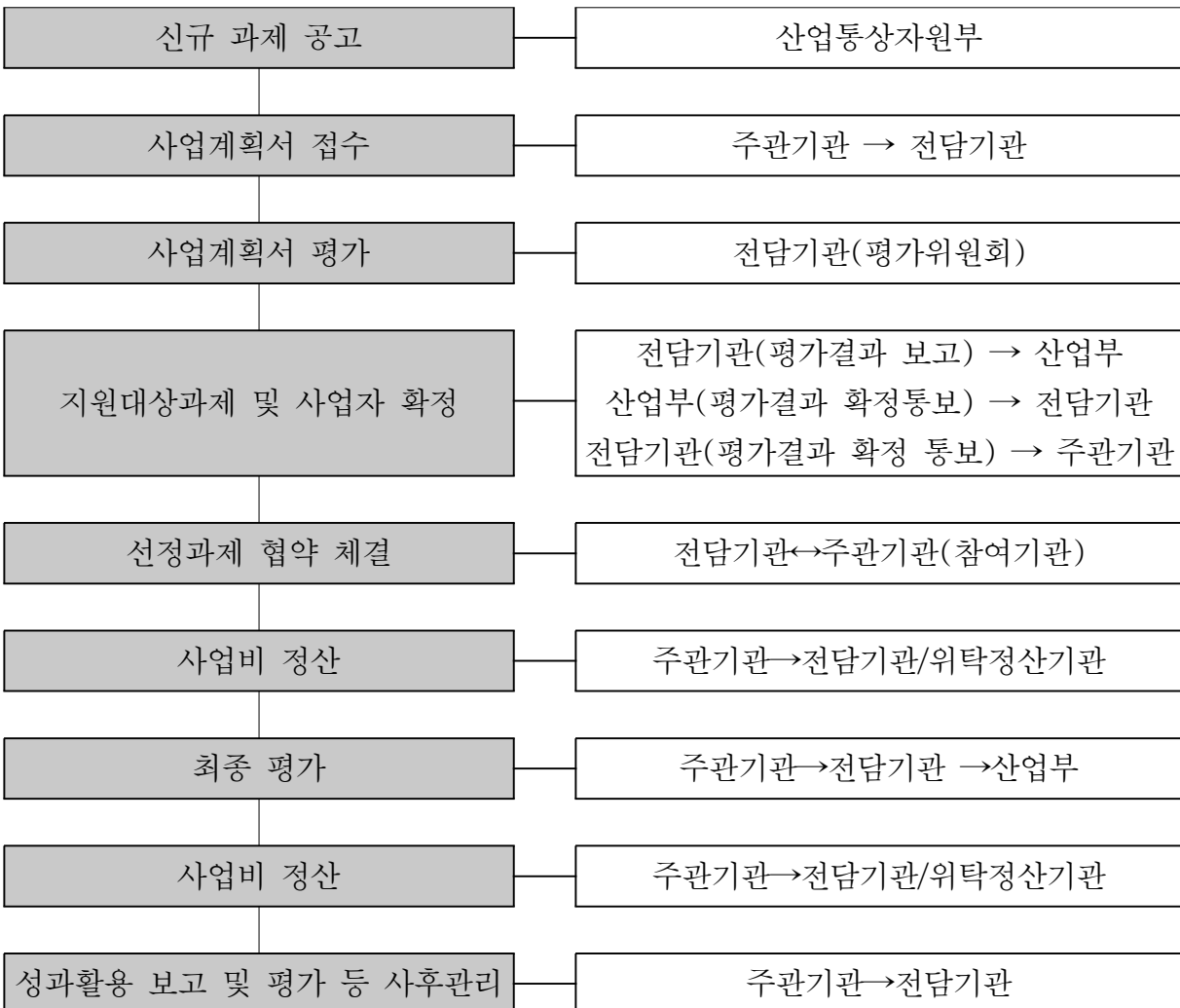
- 총사업비의 50~100% 지원, 기술료 비징수,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방향 설정, 예산 확보/지원, 평가기본계획 수립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담기관) : 사업 평가관리 수행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실행계획 수립	사업공고	접수 및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12. 2월	'12. 5월, 8월	'12. 5~6월, 9~10월	'12. 6월~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사업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전산접수 등 포함), 협약체결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연구비 집행결과내역 포함), 연차보고서

## 8. 관련자료

### 관련 법령 및 규정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기타서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강은구 사무관  
(Tel : 02-2110-5645)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총괄팀 김정용  
(Tel : 02-3469-8424)

## 에너지 · 자원순환기반조성(R&D)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산업환경과	유재영 사무관

(전화 : 02-2110-5135, E-mail : gloria09@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과제 성격에 따라 2~3년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30.16(에특)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7

### 1. 사업개요

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자원의 선순환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 부산물 및 폐기단계 제품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도시광산, 재제조 등 자원순환산업 성장 기반 조성

## 2. 지원대상분야

### □ 산업단지 내 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

○ 산업단지 내 기업간 부산물·폐기물 및 에너지 교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확대

- 에너지·자원순환 과제 발굴·지원·사업화 촉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순환네트워크 포럼 구성·운영, 코디네이터를 통한 현장 진단지도 등

### □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공급망(Supply Chain)을 활용하여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에너지 사용 및 자원 관리 노하우, 녹색제품설계기법, 국제환경규제대응 등을 종합 지원

- 전기·전자, 발전, 유통, 의료 등 주요 업종의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을 이용한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제품 공동 개발 등 지원

### □ 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

○ 도시광산, 재제조 관련 기술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원순환의 산업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기반 구축 및 보급

- (재제조산업\* 기반 구축) 에너지·자원 사용 절감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재제조 기술력 및 품질경쟁력 향상 기술기반 구축 및 보급 지원

\* 사용 후 제품 및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제조립 등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자원순환 산업

- (도시광산산업 기반 구축) 자원 회수, 사용량 저감, 고순도화, 대체물질 활용 및 기업간 연계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원이용 효율화 기술기반 구축 지원

###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2~3억원 내외
  - 선정방식 :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과제 지원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50~100% 정부출연금 지원, 기술료 비징수,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방향 설정, 예산 확보/지원, 평가기본계획 수립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담기관) : 사업 평가관리 수행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실행계획 수립	사업공고	접수 및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13. 3월	'13. 5월	'13. 5~6월	'13. 7월~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사업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전산접수 등 포함), 협약체결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연구비 집행결과내역 포함), 연차보고서

## 8. 관련자료

### 관련 법령 및 규정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사업지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기타서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유재영 사무관  
(Tel : 02-2110-5135)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총괄팀 김정용  
(Tel : 02-3469-8424)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재생/전력/원자력)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송춘곤 사무관

(전화 : 2110-5694 , E-mail : songcg@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에너지/자원, 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대학,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8억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80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20년까지 세계시장 10% 이상 점유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50개를 육성하기 위해 R&D역량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고 핵심 부품·소재 개발 등 맞춤형 R&D과제를 지원

사업목표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분야 등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 R&D역량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지원을 통해 세계 Top Brand제품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20년까지 세계시장 10% 이상 점유하는 에너지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50개 육성

## □ 추진방향

- 에너지분야(신재생/전력/원자력) 강소 중소·중견기업 전력적 육성
  - (신재생기술)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산업과급효과와 시장 잠재력이 큰 핵심부품, 소재, 요소기기 개발
  - (전력기술)노후화된 국내 대형발전설비의 수명연장을 위한 유지보수 기술 및 차세대전력망 기반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부품, 장비개발
  - (원자력) 대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운용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품·소재·장비개발 등

## 2. 지원대상분야

### □ 연구개발

- 에너지산업(신재생, 전력, 원자력)분야 장비·부품·소재 기술개발

#### ◇ 신재생기술, 전력기술, 원자력 분야 핵심부품·소재·장비기술

- ▶ (신재생)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제조장비, 부품소재
- ▶ (전력기술) 친환경 청정화력발전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주변기기 등
- ▶ (원자력) 운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소재·장비개발 등

## 3.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에너지 산업 분야의 기업 중에서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 기준)

구 분	조 건
혁신성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2% 이상인 기업
성장성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CAGR) 증가율이 20%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주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
- 대학, 연구소, 기타 등 참여기관으로 사업참여 가능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과제당 연 700백만원 이내
- 지원방식 : 기술분야 지정공모에 의한 주관기관 선정
- 지원기간 : 3년 이내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방향 설정, 예산확보 및 지원, 평가기본계획 수립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담기관) : 기획, 평가, 성과관리 등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 '13.~12 : 상시 기술수요조사
  - '14. 2 : 기술분야 기획
  - '14. 4 : 신규사업 공고
  - '14. 5 : 신규선정, 계속사업 평가실시
  - '14. 6 : 신규사업 협약체결
  - '14. 7 :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부속서류 일체), 협약서 등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 세부 제출서류는 해당사업 공고 시 명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관련법령 및 규정집(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송춘곤 사무관  
(Tel : 02-2110-5694, E-mail : [songcg@motie.go.kr](mailto:songcg@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팀장 이재설  
(Tel : 02-3469-8460, E-mail : [seol@ketep.re.kr](mailto:seol@ketep.re.kr))  
신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팀장 기성섭  
(Tel : 02-3469-8480, E-mail : [sskee@ketep.re.kr](mailto:sskee@ketep.re.kr))

## 에너지인력양성 (에특, 기금)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박은정 사무관

(전화 : 02-2110-5693)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타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120개월(프로그램별 상이) * 기초트랙(12개월~48개월), 고급트랙(12개월~60개월), GET-Future연구실(12개월~120개월) 등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에특) 151억원, (기금) 251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에특) 379백만원, (기금) 370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 육성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자원개발 활성화(이상 '에특'), 전력·원자력 산업의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이상 '기금')를 위해 우수 인력의 에너지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R&D 전문인력 및 산업현장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기술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중장기 수급 예측을 정례화하여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전략적·효율적으로 양성
  - 에너지기술 인력의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 추진
  - 기업이 참여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기업참여형, 양성된 인력의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용

## 2. 지원대상분야

### 인력양성

#### ○ 에너지기술분야

- (에특)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자원개발
- (기금)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대학(또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과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기초/고급트랙), 대학·출연연·협회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수요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산업센터) 등

### 신청자격 (내역사업별 상이)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으로서, 프로그램별 해당 기관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대학(또는 전문대학), 출연연, 협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수요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외국인의 국내 학위취득의 지원, 관리 및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내역사업의 프로그램별 상이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기초트랙(연 3억원 이내, 최장 4년) 등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GET- Future연구실(연 10억원 이내(1단계 2억원 이내), 최장 10년), 고급트랙(연 5억원 이내, 최장 5년) 등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산업센터(연 10억원 내외, 최장 5년) 등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수출연계형인력교류(연 9억원 이내, 최장 5년) 등
- 지원방식 : 자유/지정공모
  - GET-Future연구실 등 일부 과제를 제외한 전 과제는 자유공모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보조, 민간 Matching,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75%이내)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방향 설정, 예산 확보/지원, 평가기본계획 수립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담기관) : 사업 기획, 평가 및 성과관리 수행(사업비 집행관리, 인력양성 DB 구축 등)

□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기관	세부 내용	
전년 하반기	인력수급 조사, 인력양성로드맵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대학) 대상 수요조사</li> <li>에너지기술 분야별 인력양성로드맵</li> </ul>	
1~2월	기 획	산업통상 자원부, 전담기관	일반과제	Get-Future 연구실
			인력수급 조사·분석	Get-Future 기획·심의위원회
-	전략자문단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내용 검토 및 자문</li> </ul>	
-	심의위원회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대상과제 확정</li> </ul>	
3월	사업 공고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론매체 공고 /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li> </ul>	
5월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산양식 인터넷 등록 및 사업계획서 접수</li> <li>산·연 중심의 전문가 평가위원회 개최</li> </ul>	
6월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과제 최종확정</li> </ul>	
6월	협약체결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담기관과 주관기관(참여기관) 간 체결</li> </ul>	
익년 6월~ (매년)	중간 보고 및 평가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 1년 단위 중간보고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사, 연차평가위원회</li> <li>연차 목표 달성도 평가</li> </ul> </li> <li>해당연차 사업비 정산</li> </ul>	
최종년 7월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평가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달성도 및 실적 평가</li> </ul> </li> <li>사업비 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종료 후 5년간 활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출인력, 논문 등 실적 조사</li> <li>추적조사 실시</li> </ul> </li> </ul>	
-	사후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종료 후 5년간 활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출인력, 논문 등 실적 조사</li> <li>추적조사 실시</li> </ul> </li> </ul>	

## 6. 추진일정

월별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월별 End-Product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ET-Future연구실 기획</li> </ul>	
3/7/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대학원(3월), 기초/고급트랙 및 GET-Future연구실(7월,9월), 수출연계형인력교류(10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개 과제 연차보고서</li> </ul>
6/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평가 및 단계과제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고급트랙(6월,8월), GET-Future연구실(6월), 산업센터(10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7개 과제 단계보고서</li> </ul>
1/3/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기술연구센터, 전력계통전문인력양성센터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과제 최종보고서</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지원 공고</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평가위원회 및 선정</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과제 협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10개 과제</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인력양성 성과확산 워크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사업단 대상</li> </ul>

## 7. 제출서류

과제별

- 과제 신청 및 선정(협약) : 사업계획서, 협약서 및 협약제반서류
- 선정 이후 과제관리 :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에너지인력양성 성과지표 증빙자료(e-MBO카드 기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 e-MBO카드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고유 KPI(성과지표)로 구성된 상시 관리체계

- 기관별 : 과제별 제출에 대한 기관 확인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에너지법(제16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0조), 해외자원개발법(제10조)
- 전기사업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제34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30조)

- 기타서류

- 신청요강 및 서식(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박은정 사무관  
(Tel : 02-2110-5693)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팀 정승영 팀장  
(Tel : 02-3469-8410, E-mail : [sychung@ketep.re.kr](mailto:sychung@ketep.re.kr))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이은호

(전화 : 2110-4675, E-mail : anobb@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48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8.8억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시험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스마트그리드 기기 및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사전검증을 통한 보급·확산 기반 조성

\* 스마트그리드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기기 및 시스템 간 특정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사업목표

- 상호운용성 시험 절차서를 개발하고 스마트그리드 기기 및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장비 개발

-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기술 및 해외 우수 기술을 도입하여 이상적인 스마트 그리드 성능기준시험장(Reference Site)을 구축

추진방향

- 스마트그리드는 전력과 정보통신이 결합한 대표적인 에너지 융합인프라로서 이종기기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필수적이므로,
  -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및 관련 제품 상용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사전검증 추진

## 2. 지원대상분야

기반구축

- 스마트그리드 관련 상호운용성 시험설비 구축 관련 비용 등

##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은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38.8억원
- 선정방식 : 정책지정(참여기관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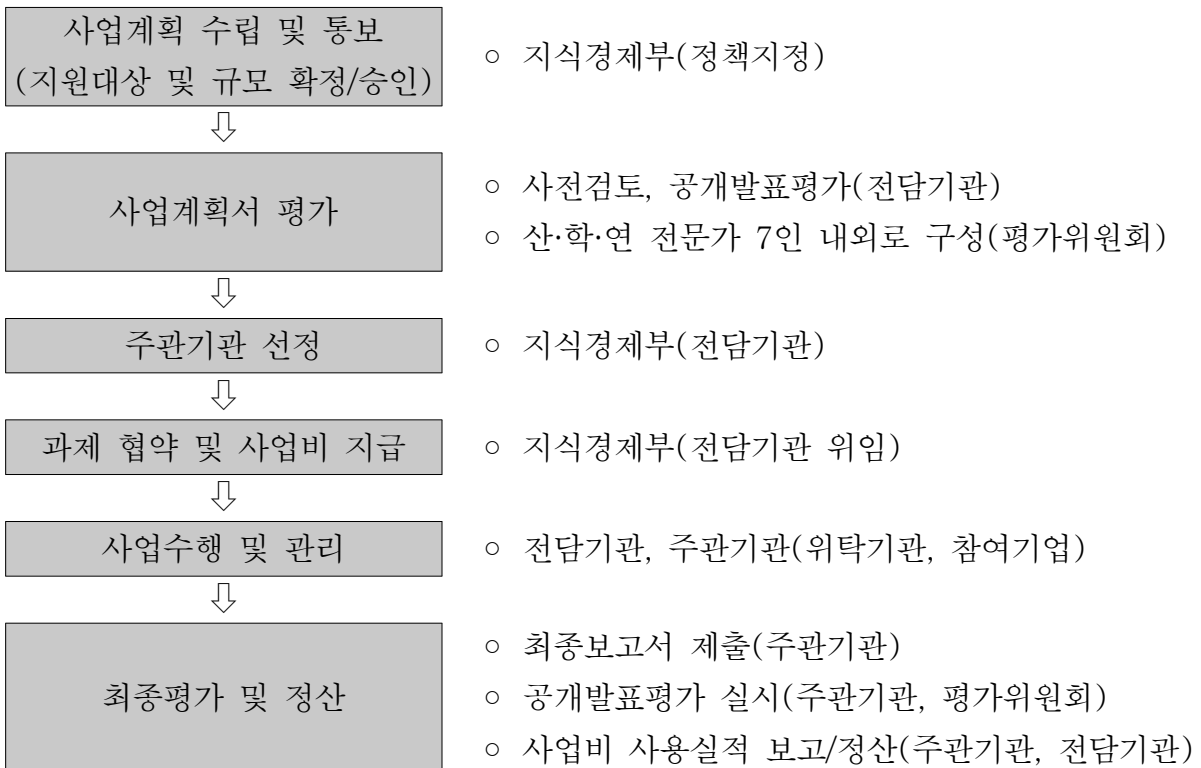
- 지원기간 : 48개월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총괄주관기관 :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정책지정)
- 참여기관 : 기업, 대학교(원), 연구소 등
- 지원형태 : 출연 및 민간매칭

###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월별 추진일정('13년)

월	실행내용
1~4	▪ 사업 기획
5월초	▪ `13년 추진계획 확정
5월말	▪ 공동연구기관 선정 추진
6	▪ 총괄과제 평가 및 협약
7	▪ 사업 Kick-off 회의
12	▪ '14년 추진계획 수립

## 7. 제출서류

과제별

- 사업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부속서류 일체), 협약서 등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및 2항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관련법령 및 규정집(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이은호 사무관  
(Tel : 02-2110-4675, E-mail : songcg@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실증사업팀 김규동  
(Tel : 02-3469-8455, 02-6009-4921, E-mail : kdkim@smartgrid.or.kr)

##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이은호 사무관

(전화 : 02-2110-4675, E-mail : anobb@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에너지/자원,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재료, 환경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기타(학·협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실증)
(5) 연구개발기간	연차평가, 2~3년 단위의 단계평가에 의한 2~4단계 지원 : 24~12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907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08백만원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전력분야 R&D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관련 인프라 정비·구축
  - (수화력)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 고효율·친환경화
  - (대형 가스터빈) 국제경쟁력을 갖춘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의 성공적인 개발과 더불어 국내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자립
  - (스마트그리드) 다양한 기술 융·복합을 통해 기존 전력망을 고도화하여 지능형·친환경 전력인프라 구축

## 2. 지원대상분야

산업기술개발

- 수화력기술개발 : 발전효율향상, 부품·소재 성능향상, 환경기술 등
- 발전용 고효율 대형가스터빈 개발
-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 : 전력망고도화, 설비성능향상, 전기안전 등

##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은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전략응용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대형상용화 :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지원규모는 사업내용에 따라 가변
  - 신시장창출형 :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수요대응형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이내 지원
- 마중물프로젝트 : 확보한 기술역량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여건 간의 간극 해소를 통한 사업화 창출을 목표로 하며, 성과활용조사분석을 통해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등에 매년 2억원 내외 지원

○ 에너지미래기술

- Track1 : 미래에너지시스템 지원을 위한 블랙스완(Black Swans)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최대 3단계(10년) 동안 매년 8~10억원 내외 지원
- Track2 : 장기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대학을 중심으로 매년 1.5억원 내외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형태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의 50~75%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의 10~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 공고 시 기술료 징수대상으로 지원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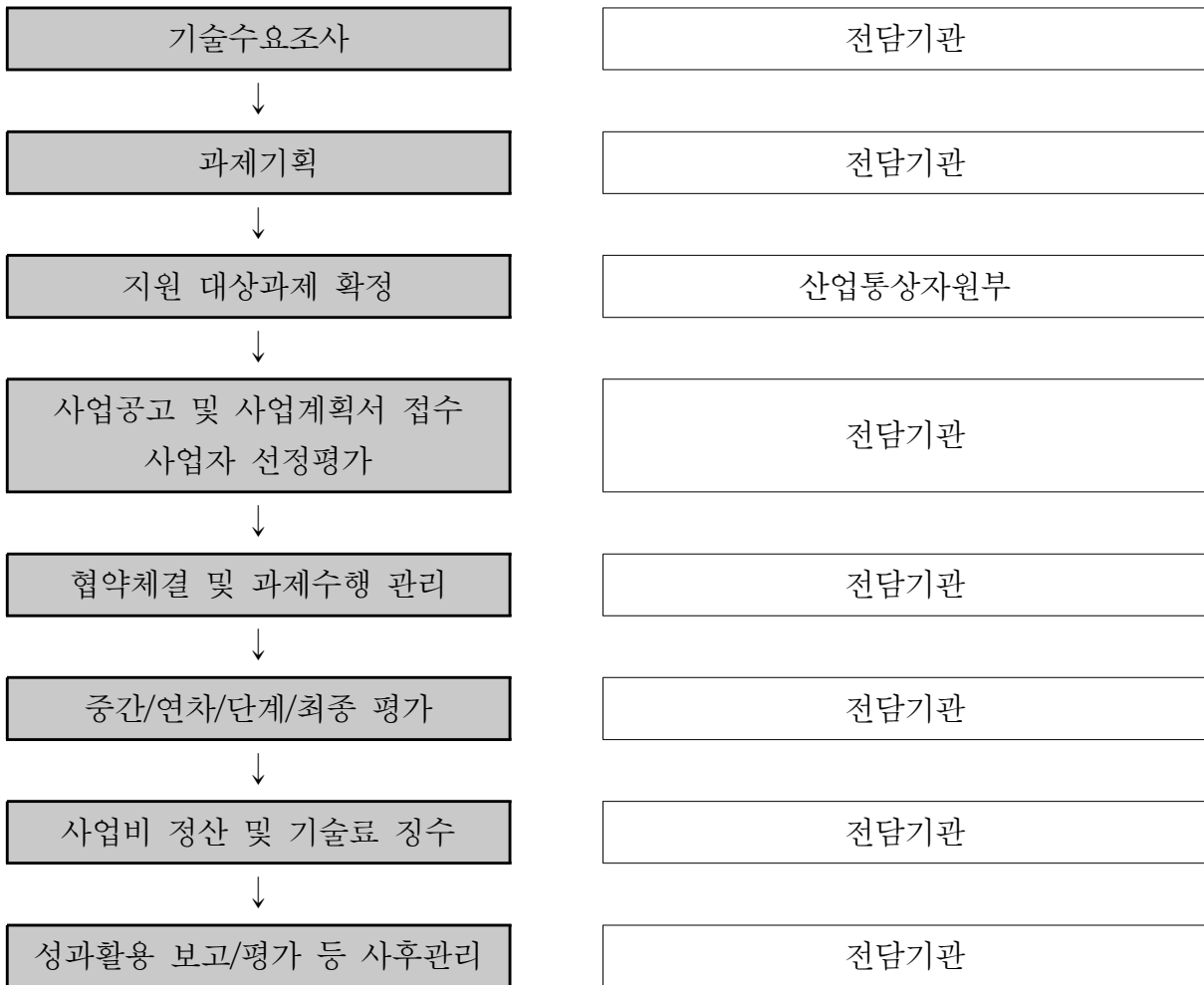
○ 진도점검, 연차점검, 단계평가 결과, 미흡한 과제는 조기 종료 가능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방향 설정, 예산확보 및 지원, 평가기본계획 수립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담기관) : 기획, 평가, 성과관리 등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월별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비 고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수요조사(상시)</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실행계획 수립</li> <li>▪ 중장기 상세과제기획 실시 및 지원대상과제 확정</li> </ul>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신규과제 사업공고</li> <li>▪ 중장기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li> <li>▪ 중장기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li> </ul>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신규과제 사업공고</li> <li>▪ 단기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li> <li>▪ 단기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li> </ul>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미래기술 신규과제 기획 및 공고</li> <li>▪ 에너지미래기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li> <li>▪ 에너지미래기술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li> </ul>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드맵 보완 / '14년 과제기획(사전기획 포함)</li> </ul>	

## 7. 제출서류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부속서류 일체), 협약서 등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 세부 제출서류는 해당사업 공고 시 명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에너지기본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관련법령 및 규정집(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이은호 사무관  
(Tel : 02-2110-4675, E-mail : [anobb@motie.go.kr](mailto:anobb@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기획팀 방기성  
(Tel : 02-3469-8350, E-mail : [gspang@ketep.re.kr](mailto:gspang@ketep.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팀 이재설  
(Tel : 02-3469-8480, E-mail : [seol@ketep.re.kr](mailto:seol@ketep.re.kr))

##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방만희 주무관

(전화 : 02-2110-5534, E-mail : maipang@mk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조합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실증/상용화연구
(5) 연구개발기간	중장기(60개월 내외), 단기(36개월 이내)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26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중장기(6,000백만원), 단기(300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확보
-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저장, 처분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

##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개발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 처분시설의 건설, 운영, 관리 및 폐쇄에 필요한 기술과 방폐물 처분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

####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저장, 처분 기술등 중간저장 및 최종처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국내기반 구축 및 자립화

##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전략응용(경쟁공모 방식)

#### 단기과제 : Supply-chain 육성형(기술분야지정 자유공모 방식)

#### 단기과제 : 시장수요대응형(기술분야지정 자유공모, 자유공모 방식)

- 단기과제 : 에너지미래기술(기술분야지정 자유공모 방식 예정)
  - 대학을 중심으로 원자력 기초기본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사업으로 핵심기술개발(Track 2)
  - 매년 1~2억원 이내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기술개발비의 50~100% 이내 정부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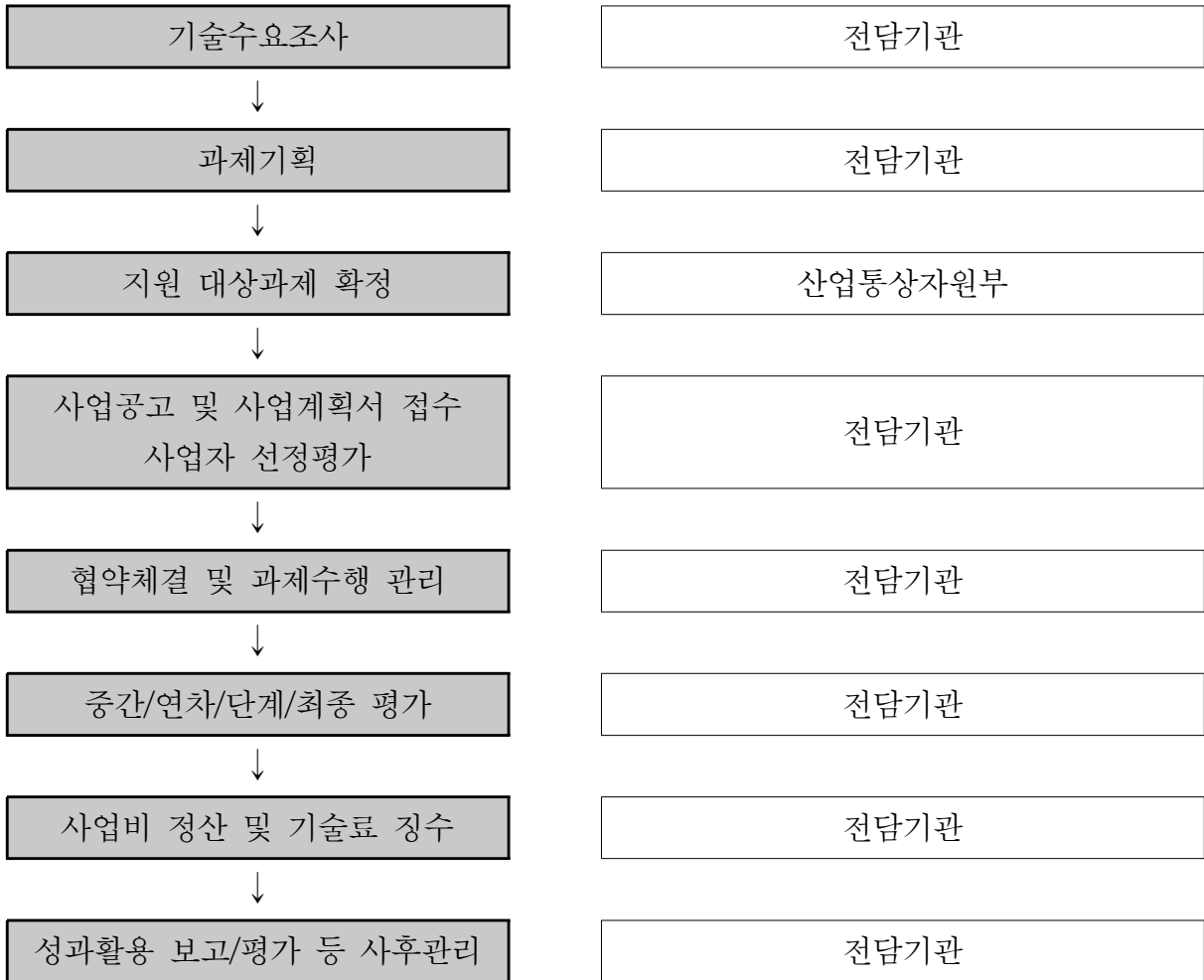
\* 해당사업 공고 시 공고문에 명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방향 설정, 예산확보 및 지원, 평가기본계획 수립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담기관) : 기획, 평가, 사업성과관리(사업비 집행관리, DB 구축/관리, 사후관리 등)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월별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비 고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수요조사(상시)</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실행계획 수립</li> <li>▪ 중장기 상세과제계획 실시 및 지원대상과제 확정</li> </ul>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신규과제 사업공고</li> <li>▪ 중장기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li> <li>▪ 중장기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li> </ul>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신규과제 사업공고</li> <li>▪ 단기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li> <li>▪ 단기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li> </ul>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미래기술 신규과제 기획 및 공고</li> <li>▪ 에너지미래기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li> <li>▪ 에너지미래기술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li> </ul>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드맵 보완 / '14년 중장기 신규과제계획(사전기획 포함)</li> </ul>	

## 7. 제출서류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부속서류 일체), 협약서 등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 세부 제출서류는 해당사업 공고 시 명시

\* 제출서류관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및 기술개발계획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방사성폐기물사업) 제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 로드맵(2009.03)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지경부 고시 제2012-170호)

\* 관련법령 및 규정집(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http://www.ketep.re.kr))

### 〈문의처〉

○ 정 부 : 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방만희 주무관  
(Tel : 02-2110-5534, E-mail : [knpp@motie.go.kr](mailto:knpp@motie.go.kr))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팀 윤수지 연구원  
(Tel : 02-3469-8447, E-mail : [sujui@ketep.re.kr](mailto:sujui@ketep.re.kr))

#### <과제공고 및 중장기 공모과제 중복성 관련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기획팀 강도규 책임연구원  
(Tel : 02-3469-8372, E-mail : [kosmic33@ketep.re.kr](mailto:kosmic33@ketep.re.kr))

## 탄소밸리구축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주현동

(전화 : 02-2110-4907, E-mail : koreaju@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화학소재(탄소섬유)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72.7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63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 등으로 탄소소재 신산업화 추진

사업목표

- 탄소소재의 조기 국산화를 통한 자동차, 기계 부품 분야의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파급효과 극대화 유도

지원방향

-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탄소소재 및 부품 기술개발

- 라지투우 탄소섬유, 핏치계 탄소소재, 인조흑연 제조 등 7개 과제

### 기반구축

#### 탄소소재부품 개발지원을 위한 센터구축

- 탄소 복합부품 성형기술 지원 기반조성, 탄소소재 일류화 지원 기반조성 등 2개 과제

##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기술개발

- 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대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참여 가능)

#### 기반구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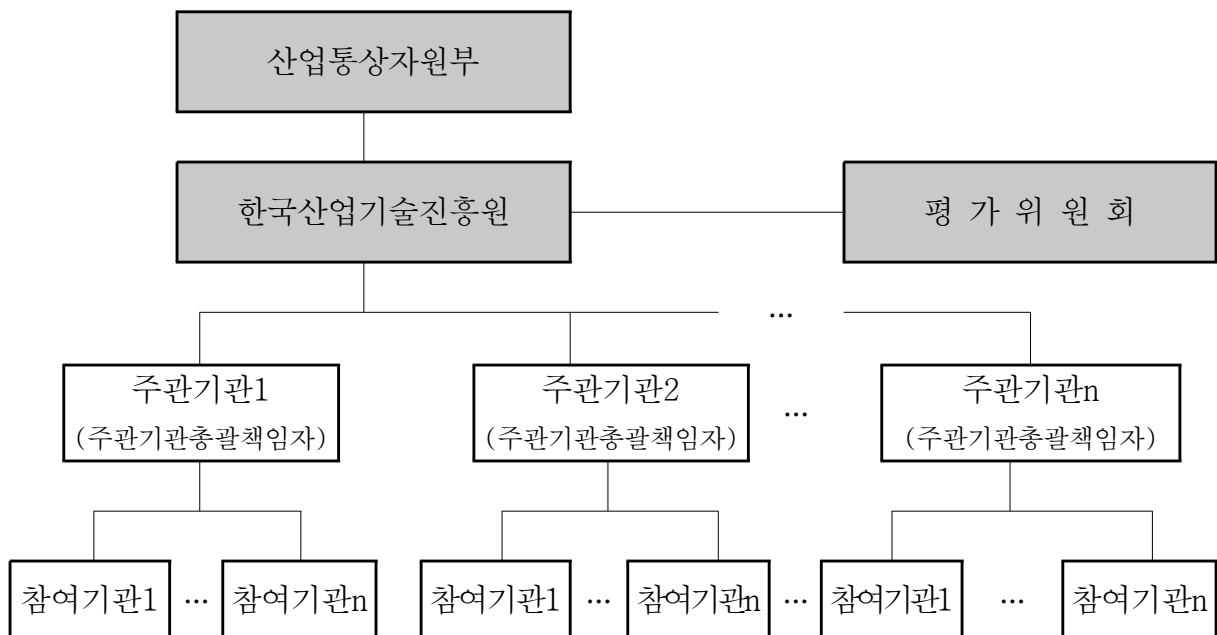
- 지원규모 : 272.7억원 ('13년도 국비)
- 지원기간 : '11. 09 ~ '16. 08(총 60개월)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구축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지원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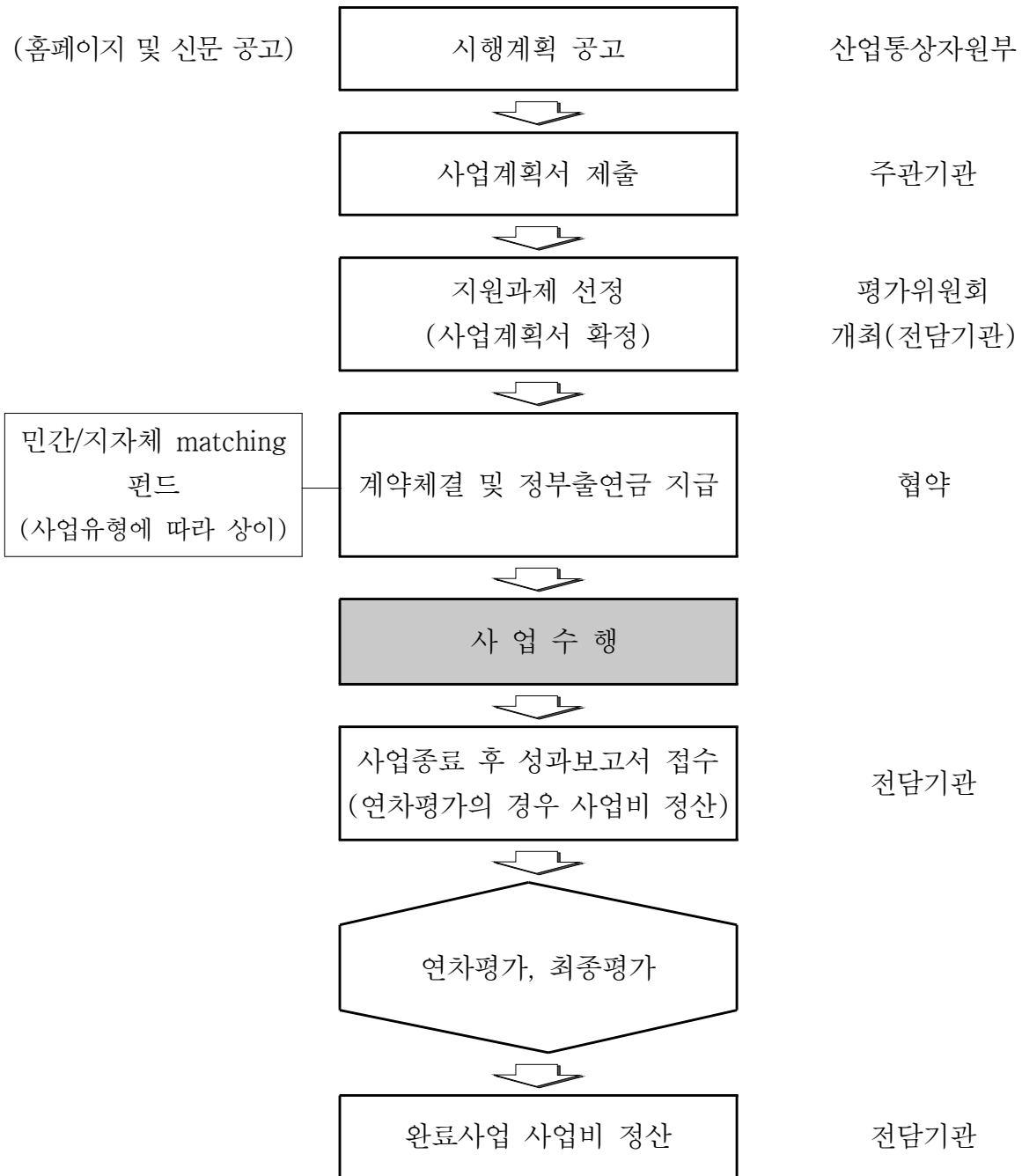
- 기술개발 : Matching fund 방식으로 총사업비의 50 ~ 75% 이내에서 지원
- 기반구축 : 지방비 Matching 조건

####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 '13. 3월 : 과제기획
  - '13. 5월 : 사업공고
  - '13. 6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 '13. 7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요약서,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재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http://www.ritis.or.kr))에 전산 등록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타서류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http://www.kiat.or.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주현동 사무관  
(Tel : 02-2110-4907, E-mail : [koreaju@motie.go.kr](mailto:koreaju@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탁영지 선임연구원  
(Tel : 02-6009-3786, E-mail : [yjtak@kiat.or.kr](mailto:yjtak@kiat.or.kr))

##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태권

(전화 : 02-2110-5633, E-mail : tonewman@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계, 재료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40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50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클린디젤자동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친환경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세계 4위 달성 및 미래시장을 선점

사업목표

-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 기반 구축
  - EURO-6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품 개발
  - 수입 부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 개발
  -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방향

-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클린디젤자동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과 이를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반 구축
- 지역신산업에 대한 연구·상용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선도 산업에 대한 응용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글로벌 선도거점을 육성

## 2.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

-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 동력발생부품분야 등 6개 분야 21개 기술개발 과제

기반구축

-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기반구축
  - 디젤기술전문센터 및 핵심부품소재센터 구축
  - 엔진동력계 등 개발지원 장비 44종 구축

##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클린디젤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기관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기술개발 :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
- 기반구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확약을 받은 기관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 발사업의 실기기관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클린디젤자동차 관련 핵심부품의 중단기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의 지원하여 선진국 동등·이상의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환경규제의 효율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자금 지원
- 지원규모 : 사업비, 사업기간은 과제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지원조건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및 연차별 사업비 지급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지원

○ 기술개발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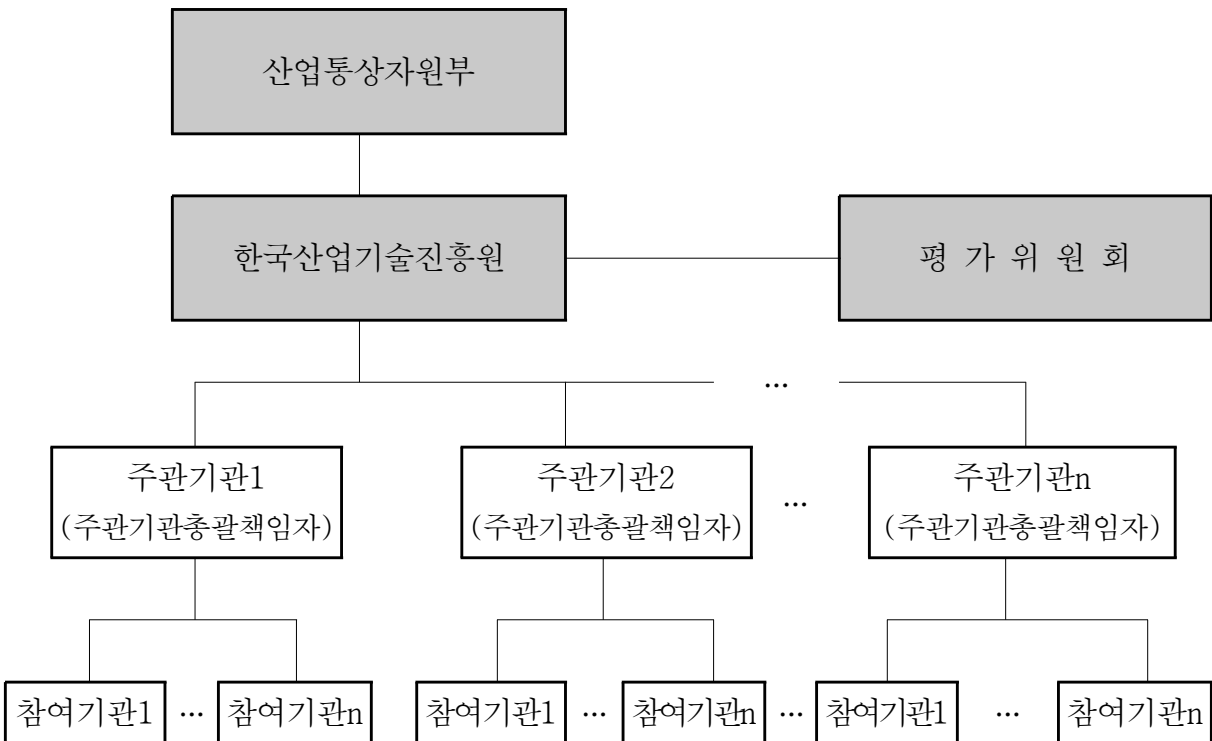
- 민간부담금 연차별 총 사업비의 대비 25% 이상(대기업일 경우 50%)을 참여기업이 부담, 연차별 민간부담금 총액 대비 10% 이상(대기업일 경우 20%)을 현금 부담
- 기술료 징수 :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후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납부 조건

○ 기반구축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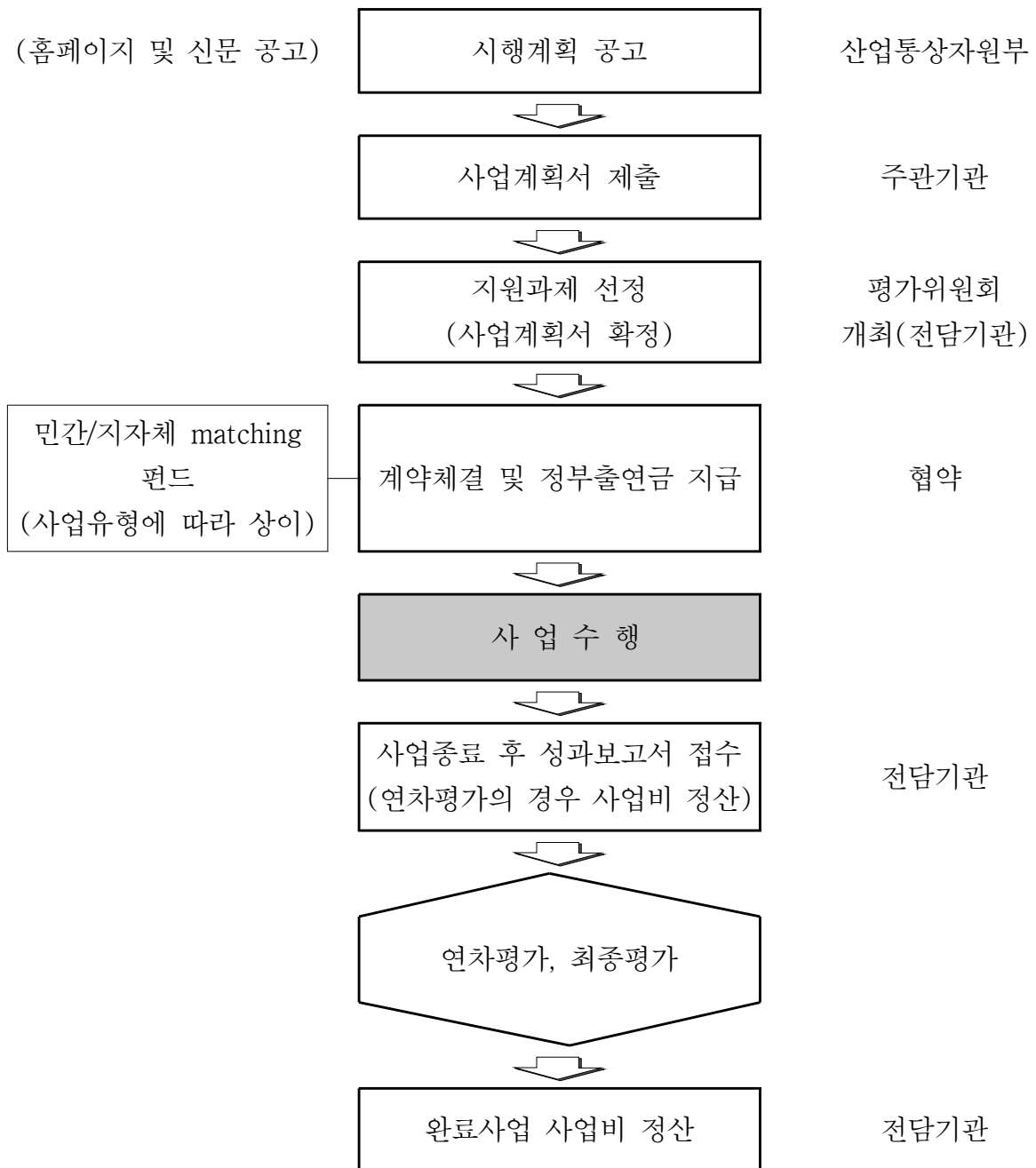
-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 매칭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 6. 추진일정

- '13. 3월 : 과제기획
- '13. 5월 : 사업공고
- '13. 6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 '13. 7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요약서,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재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http://www.ritis.or.kr))에 전산 등록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타서류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http://www.kiat.or.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태권 사무관  
(Tel : 02-2110-5633, E-mail : [tonewman@motie.go.kr](mailto:tonewman@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장 욱 연구원  
(Tel : 02-6009-3788, E-mail : [janguk2000@kiat.or.kr](mailto:janguk2000@kiat.or.kr))

##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김철영

(전화 : 02-2110-5672, E-mail : fezero@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93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06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및 영상기기(TV 등)에 한정된 3D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의료, 자동차, 로봇 등)에 응용한 3D 신산업 육성

사업목표

- 3D 기술 활용의 보편화 및 3D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IT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방향

- 3D 융합 기반, 제품화 기술 개발

##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3D 융합 기반, 제품화 기술 개발
- 기반구축
  - 3D 융합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3개(대구, 구미, 광주) 지역 센터구축과 연계클러스터 추진단 지원

##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기술개발
    -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대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참여 가능)
  - 기반구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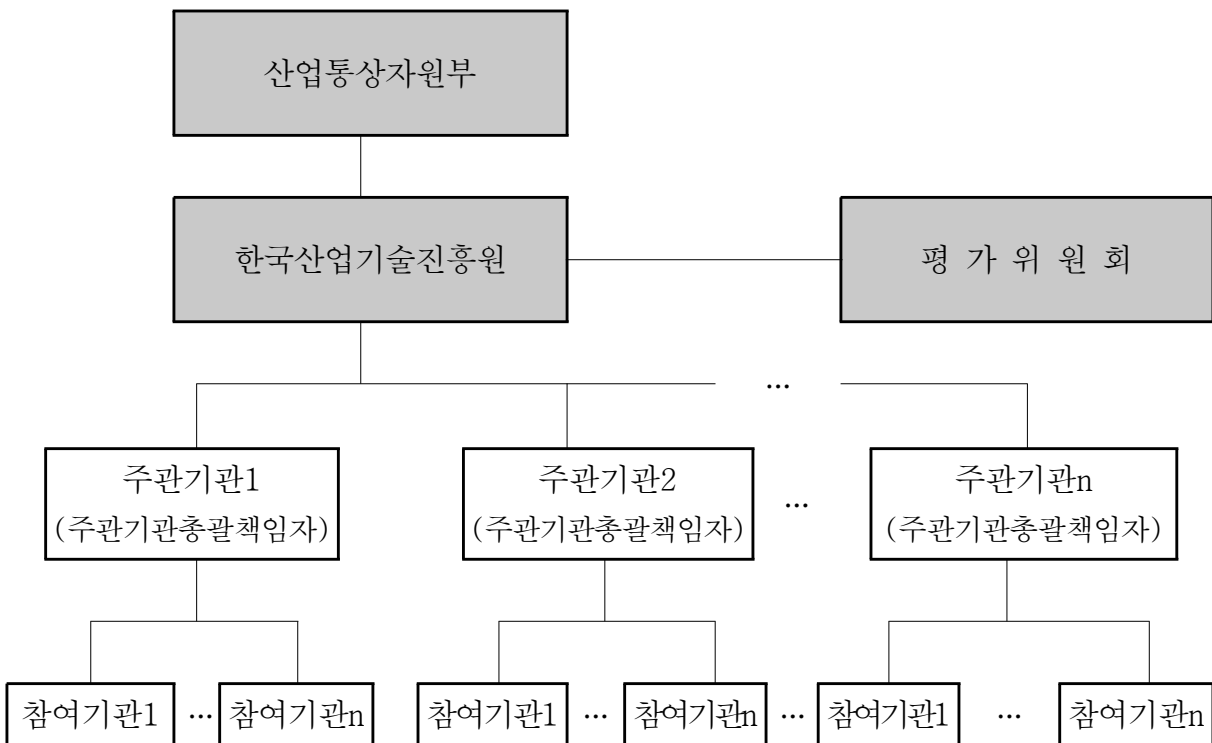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93억원 ('13년도 국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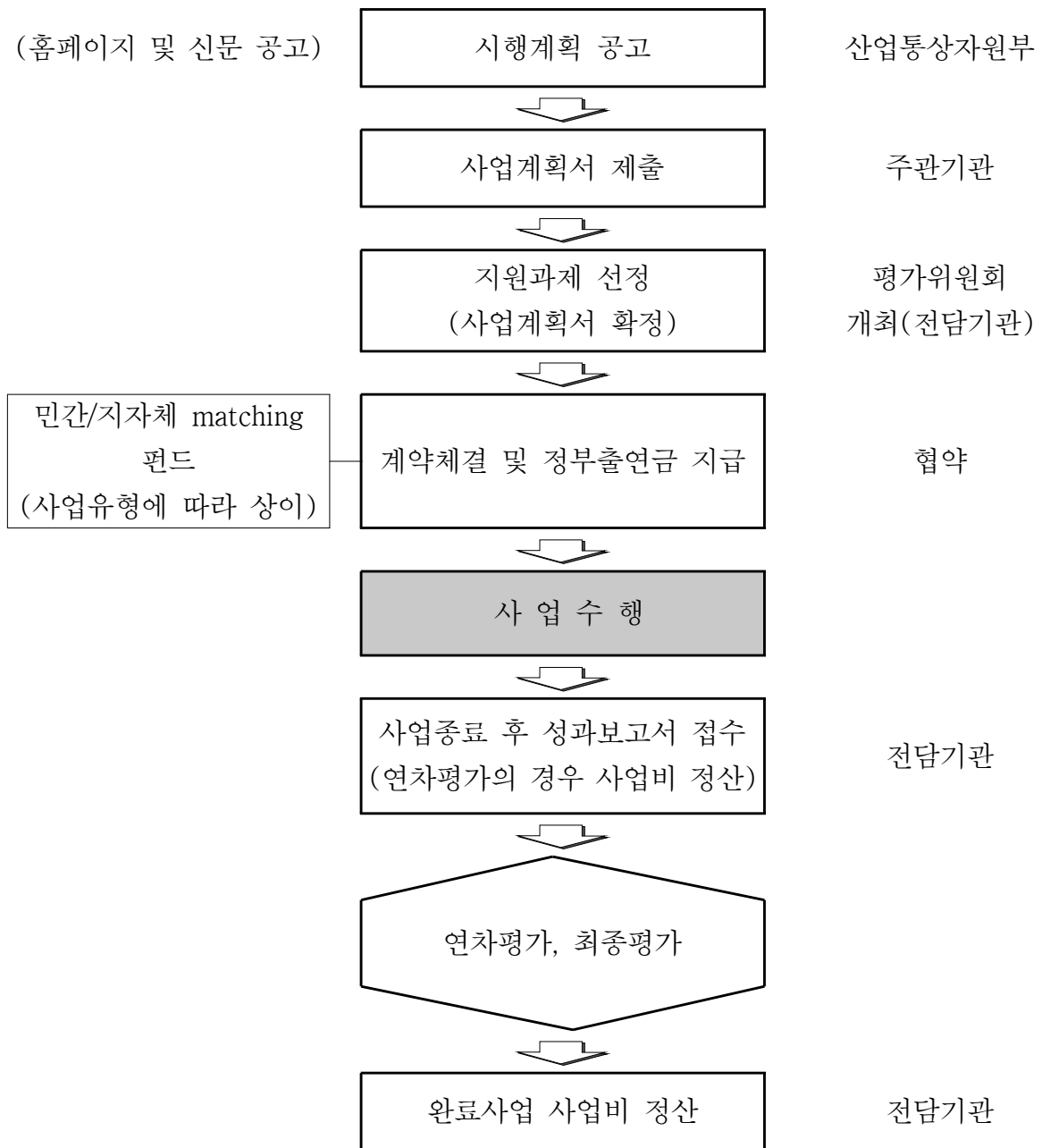
- 지원기간 : '12. 07 ~ '16. 06(총 60개월)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구축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지원
- 지원조건
  - 기술개발 : Matching fund 방식으로 총사업비의 50 ~ 75% 이내에서 지원
  - 기반구축 : 지방비 Matching 조건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공동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 '13. 6월 : 연차평가위원회
  - '13. 7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요약서,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http://www.ritis.or.kr))에 전산 등록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타서류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김철영 사무관  
(Tel : 02-2110-5672, E-mail : fezero@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유경아 선임연구원  
(Tel : 02-6009-3784, E-mail : yourk81@kiat.or.kr)

##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주현동

(전화 : 02-2110-4907, E-mail : koreaju@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화학소재(섬유)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6.5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87.5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섬유업체의 사업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섬유)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메디컬 소재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사업목표

- 테스트베드 기반구축을 통한 신뢰성 확보, 섬유소재 개발을 통한 시장창출 및 수입대체

지원방향

- 치료/수술용 섬유소재, 헬스케어, 위생용 소재 개발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치료/수술용, 헬스케어/위생용 섬유 소재 기술개발

- 창상치료, 임플란트형 수술용 섬유, 카테터 등 10개 과제

### 기반구축

#### 첨단메디컬 섬유소재 개발 지원을 위한 센터구축

- 메디컬 섬유소재 테스트소재 구축 등 1개 과제

##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기술개발

- 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대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참여 가능)

#### 기반구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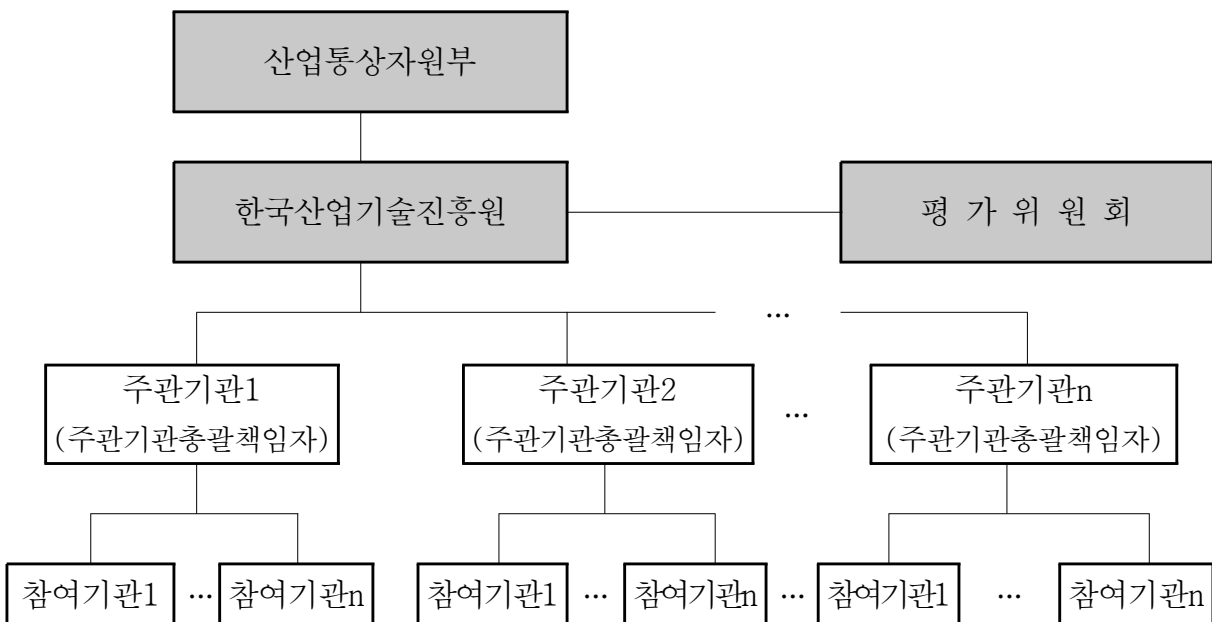
- 지원규모 : 106.5억원 ('13년도 국비)
- 지원기간 : '11. 09 ~ '16. 08(총 60개월)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구축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지원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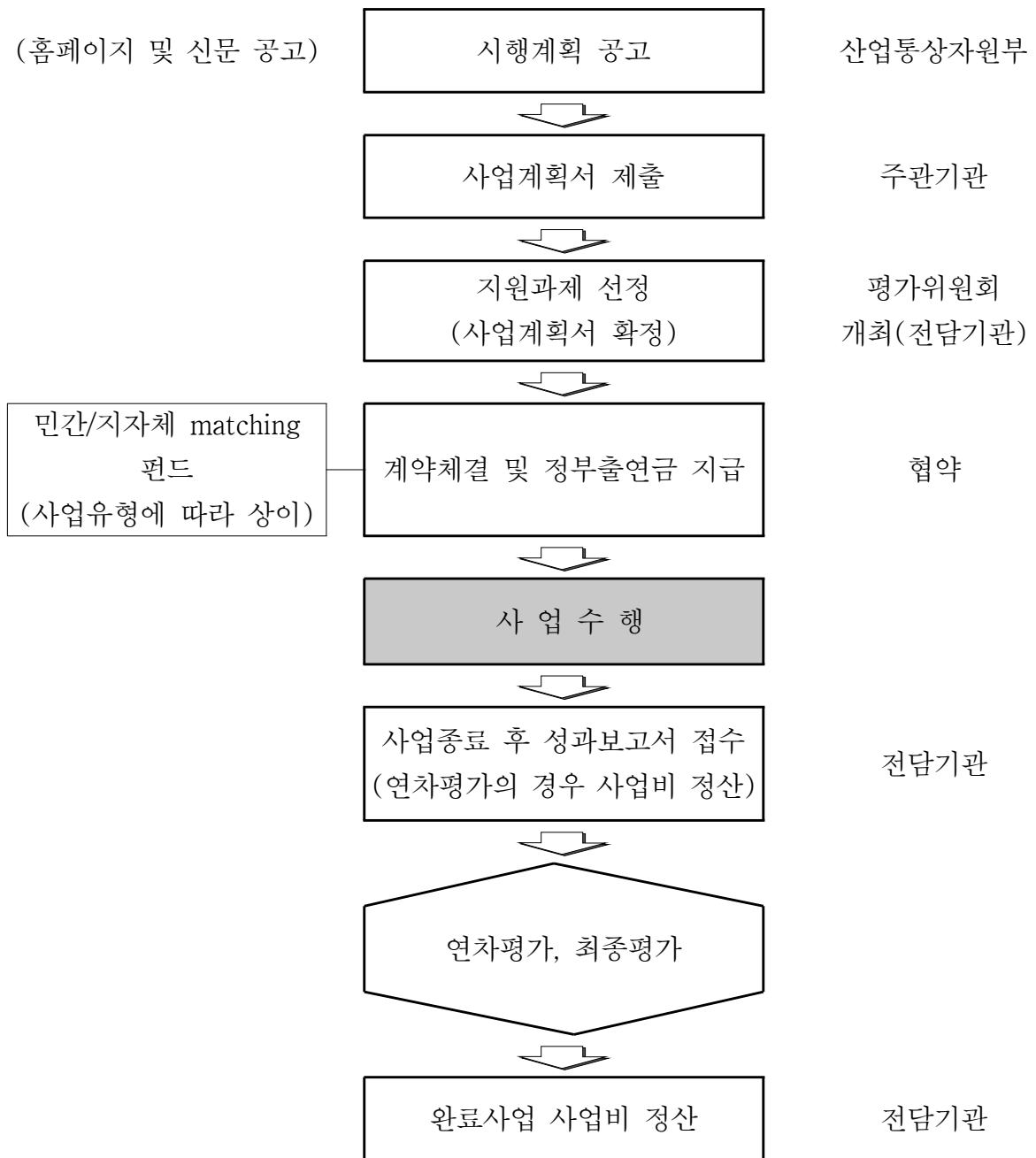
- 기술개발 : Matching fund 방식으로 총사업비의 50 ~ 75% 이내에서 지원
- 기반구축 : 지방비 Matching 조건

####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 '13. 3월 : 과제기획
  - '13. 5월 : 사업공고
  - '13. 6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 '13. 7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요약서,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재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http://www.ritis.or.kr))에 전산 등록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타서류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http://www.kiat.or.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주현동 사무관  
(Tel : 02-2110-4907, E-mail : koreaju@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탁영지 선임연구원  
(Tel : 02-6009-3786, E-mail : yjtak@kiat.or.kr)

## 차세대건설기계 · 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임광훈

(전화 : 02-2110-5650, E-mail : khl24@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건설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4.63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50 (기술개발)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경쟁력 강화

사업목표

-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아시아·태평양 중심 허브 육성

지원방향

-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 차세대 건설기계 융복합센터 조성 및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 2. 지원대상분야

기술개발

- 차세대 건설기계 관련 기술개발 사업
  - 대용량 유압기술, 저탄소발생동력원 기술, 지능형제어기술 등 차세대 건설기계 관련 기술개발 지원

기반구축

- 차세대건설기계부품기술지원 기반조성
  - 건설기계·부품산업 통합지원을 위한 차세대 건설기계 융복합센터 조성

##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기술개발
  - 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기반구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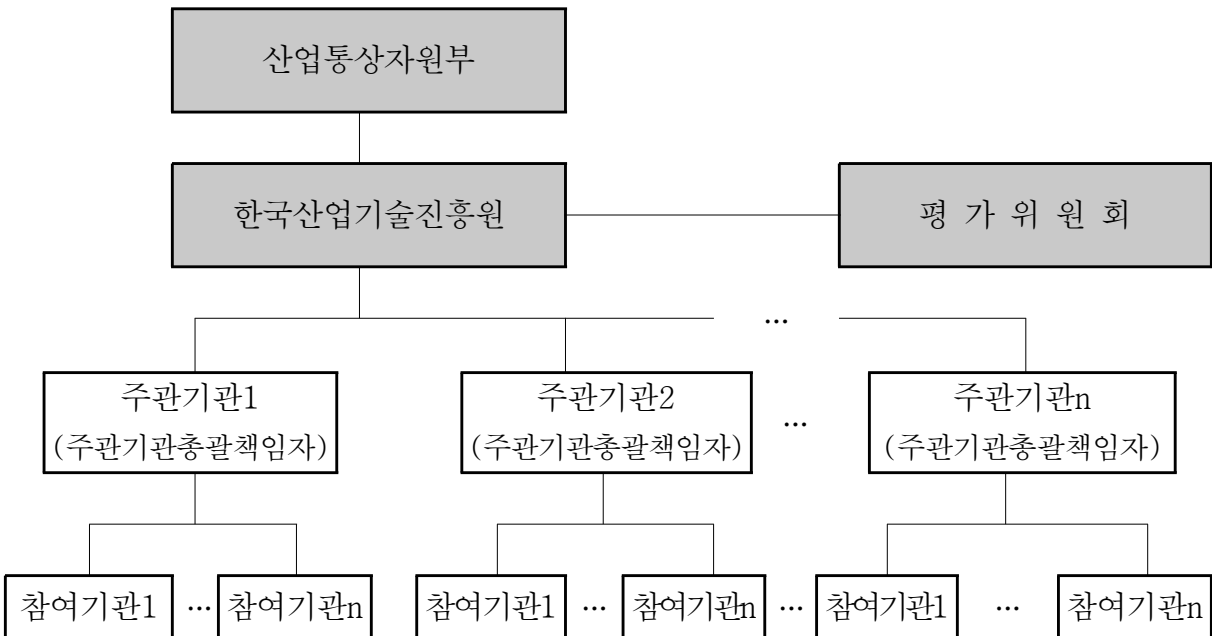
- 지원규모 : 104.63억원 (2013년도)
- 지원기간 : '12. 07 ~ '19. 06(총 72개월)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구축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지원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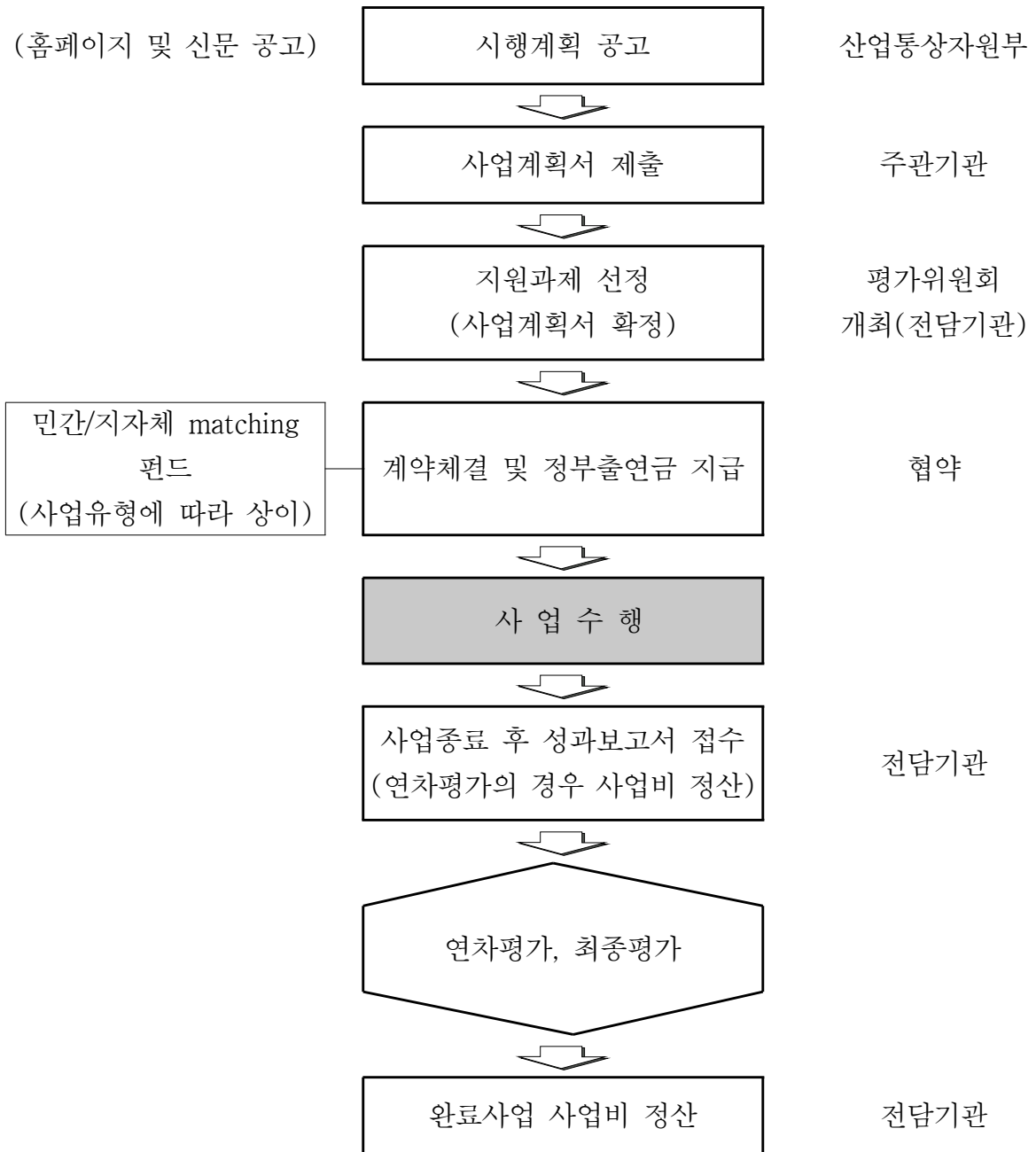
- 기술개발 : Matching fund 방식으로 총사업비의 50 ~ 75% 이내에서 지원
- 기반구축 : 지방비 Matching 조건

####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 6. 추진일정

- '13. 3월 : 과제기획
- '13. 5월 : 사업공고
- '13. 6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 '13. 7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요약서,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재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http://www.ritis.or.kr))에 전산 등록

## 8. 관련자료

### □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임광훈 사무관  
(Tel : 02-2110-5650, E-mail : khl24@korea.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장현규 연구원  
(Tel : 02-6009-3783, E-mail : jhk1029@kiat.or.kr)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문대진 주무관

(전화 : 02-2110-5594, E-mail : moondaejin@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3) 지원목적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7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22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34.6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 내 연고(특화)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 지원대상분야

- 지역전략산업 이외의 새로운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산업분야(단, 농업, 수산업, 임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은 제외)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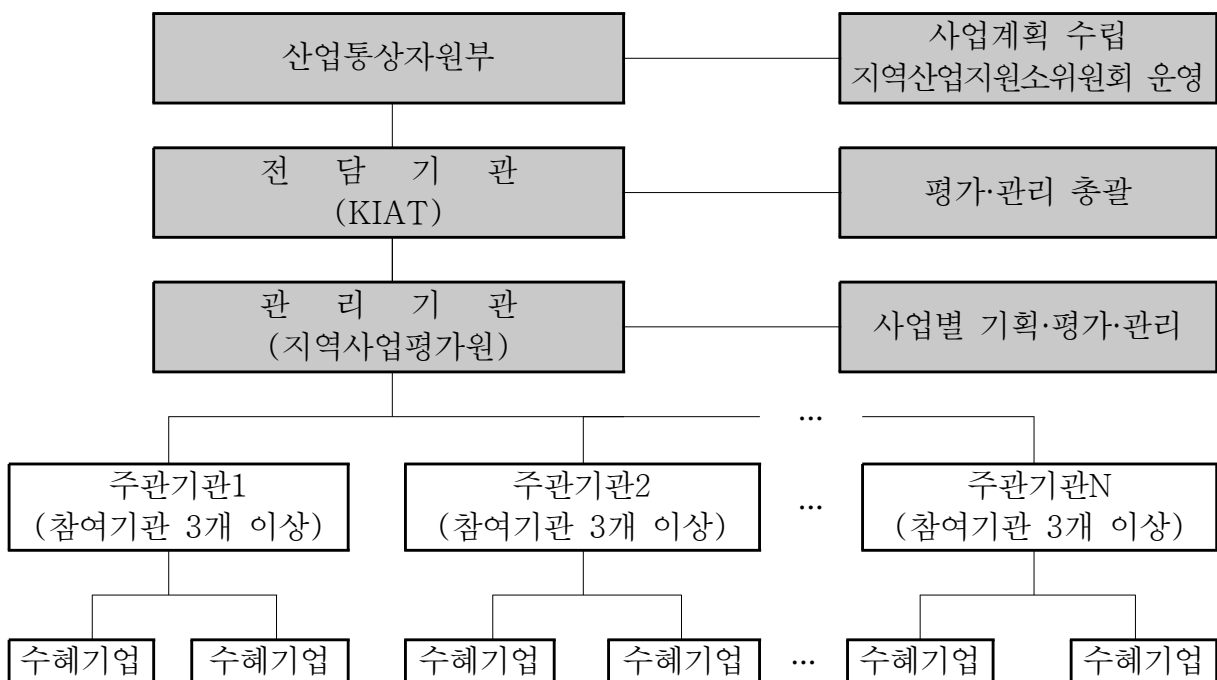
- 지역 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지원기관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50,770백만원, 총 6년(3년 단위 단계평가)
  -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 지원형태 : 출연금
  - 사업단구성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전담기관(KIAT), 관리기관(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지역산업평가단))

## 6. 추진일정

구 분	'13년 사업공고	사업신청서 제출	과제별 연차평가	협약체결
비수도권	-	-	'13. 3월	'13. 5월
수 도 권	-	-	'13. 3월	'13. 5월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및 붙임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 기관별 : 과제별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등

### 기타서류

- 신청요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문대진 주무관  
(Tel : 02-2110-5594, E-mail : moondaejin@korea.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박선영 선임연구원  
(Tel : 02-6009-3785, E-mail : sunyp@kiat.or.kr)

## 지역특화산업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권순목 사무관

(전화 : 02-2110-5600, E-mail : soonmok@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63.9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3.6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내 신규인력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 과제(고용창출형 R&D)를 신규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시·도별(수도권 제외) 특화산업분야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역	특화산업
강원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경남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성형가공, 생활섬유
광주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지식데이터, 디자인
대구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대전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부산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울산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전남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전북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제주	생명융합지식, 해양바이오, 건강뷰티소재, 문화관광콘텐츠
충남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금속소재·부품가공, 지식·영상서비스
충북	전력에너지부품, 금속가공, 기능성화장품, 바이오·한방식품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지역 특화산업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지역 소재하고,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56,388백만원, 총 3년 이내
- 지원방식 : 자유공모형 과제
-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기술료 징수 :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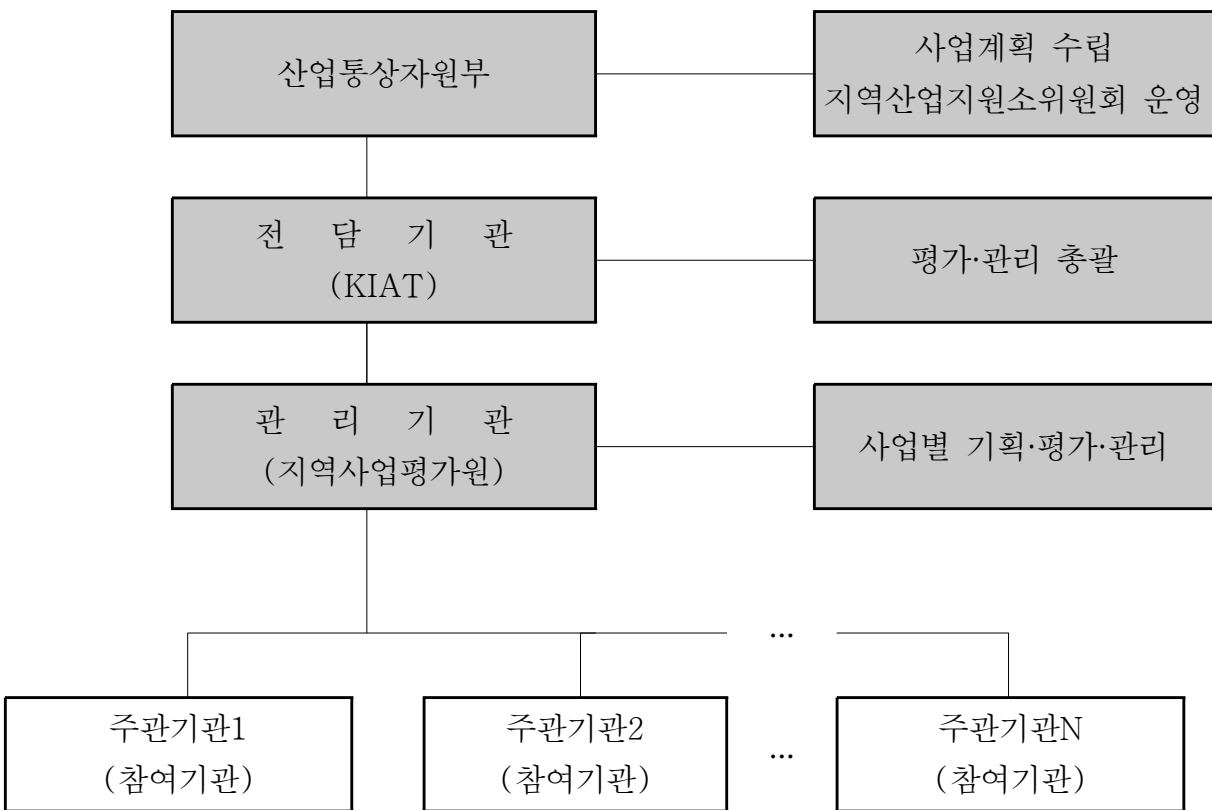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지원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화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전담기관(KIAT), 관리기관(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지역산업평가단))

## 6. 추진일정

- '13년 4월 ~ 5월 : 신규과제 지원 공고
- '13년 5월말 : 사업계획서 접수
- '13년 6월초 : 지역별 평가위원회 개최
- '13년 6월말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13년 6월말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및 붙임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 기관별 : 과제별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등

### 기타서류

- 신청요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권순목 사무관  
(Tel : 02-2110-5600, E-mail : soonmok@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한승석 선임연구원  
(Tel : 02-6009-3722, E-mail : reyhan@kiat.or.kr)

##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RIC)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박봉주 주무관

(전화 : 02-2110-5607, E-mail : bongu100@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대학(산학협력단)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83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61.4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전략분야 및 대학 강점분야의 장비구축 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지역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 이를 위해 대학과 인근기업과의 유기적 연계,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잠재력이 있는 기술 분야의 장비활용을 통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

### 2. 지원대상분야

- 해당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산업화가 가능한 해당대학의 강점 분야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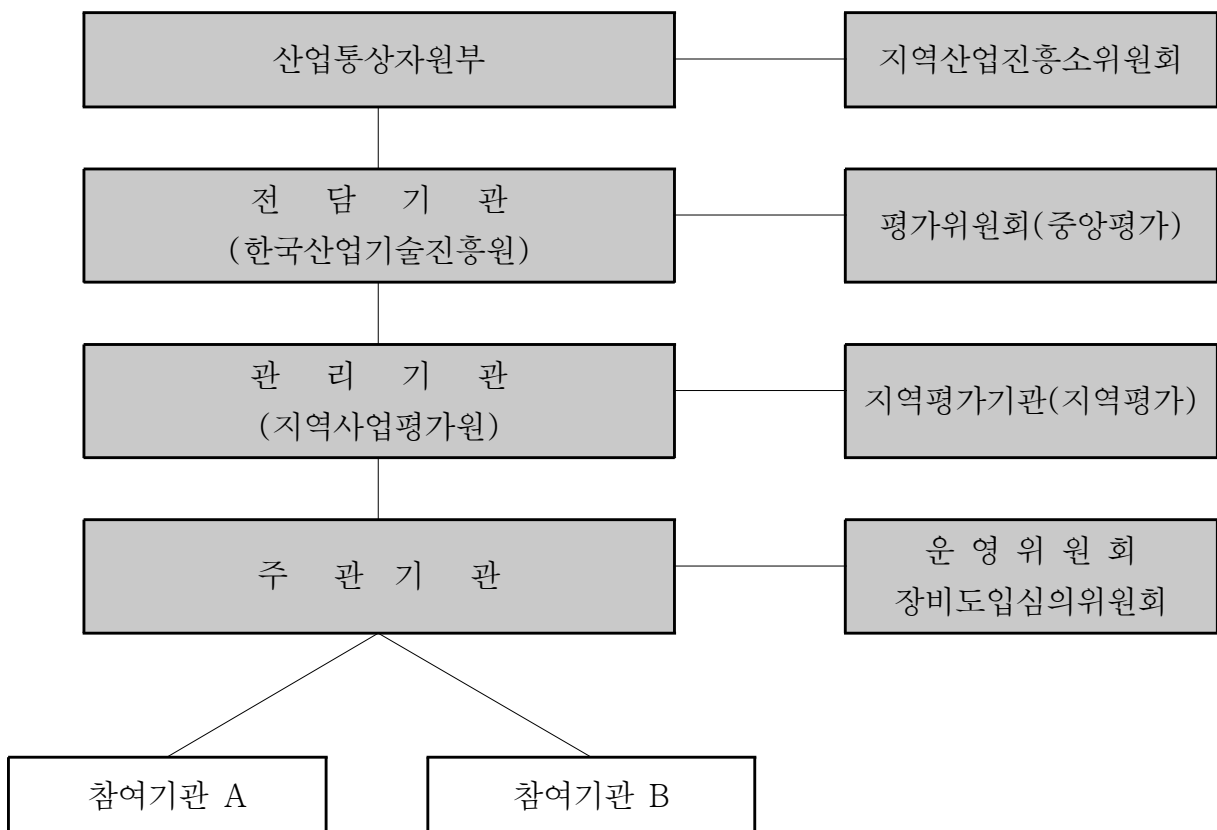
- 대학, 산학협력단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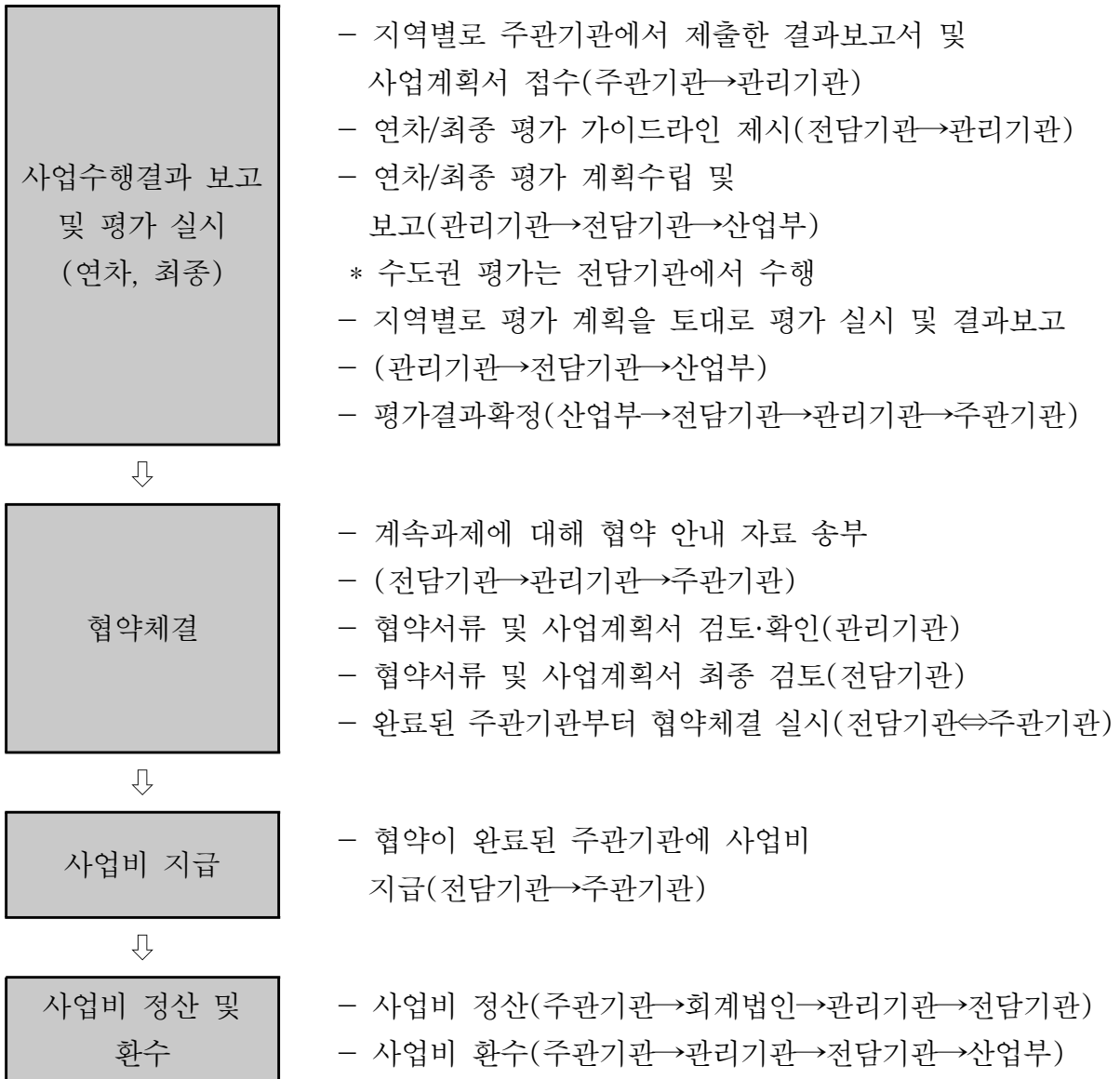
- 센터당 매년 평균 5억원 내·외를 최대 10년간 지원
-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 국비는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전담기관(KIAT), 관리기관(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지역산업평가단))

6. 추진일정

구 분	'13년 사업공고	사업신청서 제출	과제별 연차평가	협약체결
비수도권	-	-	'13년 2월	'13년 3월
수도권	-	-	'13년 2월	'13년 3월

## 7. 제출서류

- 연차평가
  - 연차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등
- 기타서류
  - 신청요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박봉주 주무관  
(Tel : 02-2110-5607, E-mail : bonju100@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김용섭 책임연구원  
(Tel : 02-6009-3721, E-mail : ysk9003@kiat.or.kr)

##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RRI)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문대진 주무관

(전화 : 02-2110-5594, E-mail : moondaejin@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생명과학, 보건의료,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4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01.5백만원

### 1. 사업개요

□ 개요

-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초 지자체(시·군)가 중심이 되어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산업화 지원 연구소설립을 지원(인프라 중심)

– '13년 6월 종료

-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성장잠재력 있는 지자체연구소간의 특화기술과 지역 R&D유관기관과의 공동R&D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제품 및 산업 고부가가치화

## 2. 지원대상분야

-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13년 6월 종료)
  - 연구소 건축 및 장비 등 H/W성격의 인프라구축
-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 지자체연구소 중심으로 지역 연고자원 및 기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분야 지원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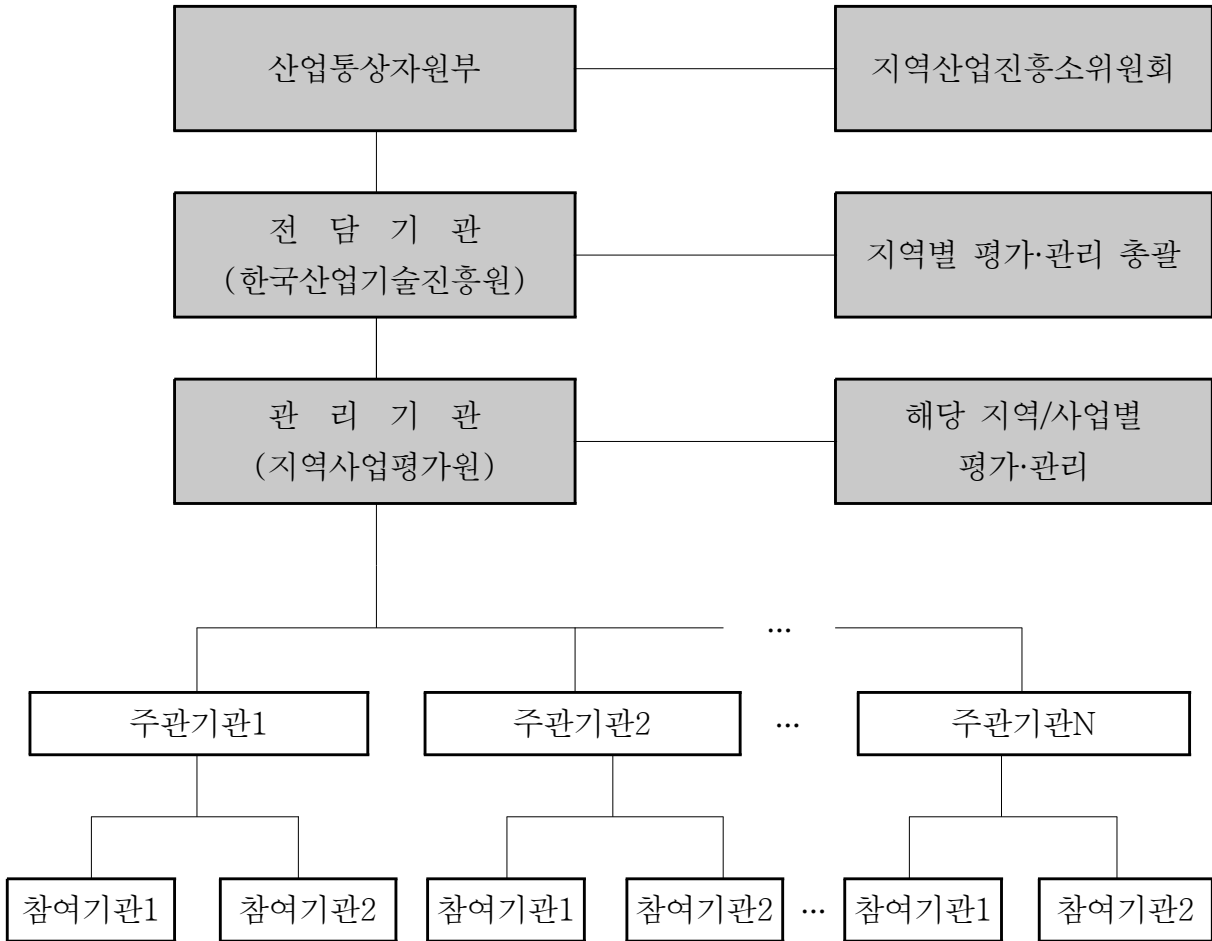
-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에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 및 자제치의 추천을 받은 기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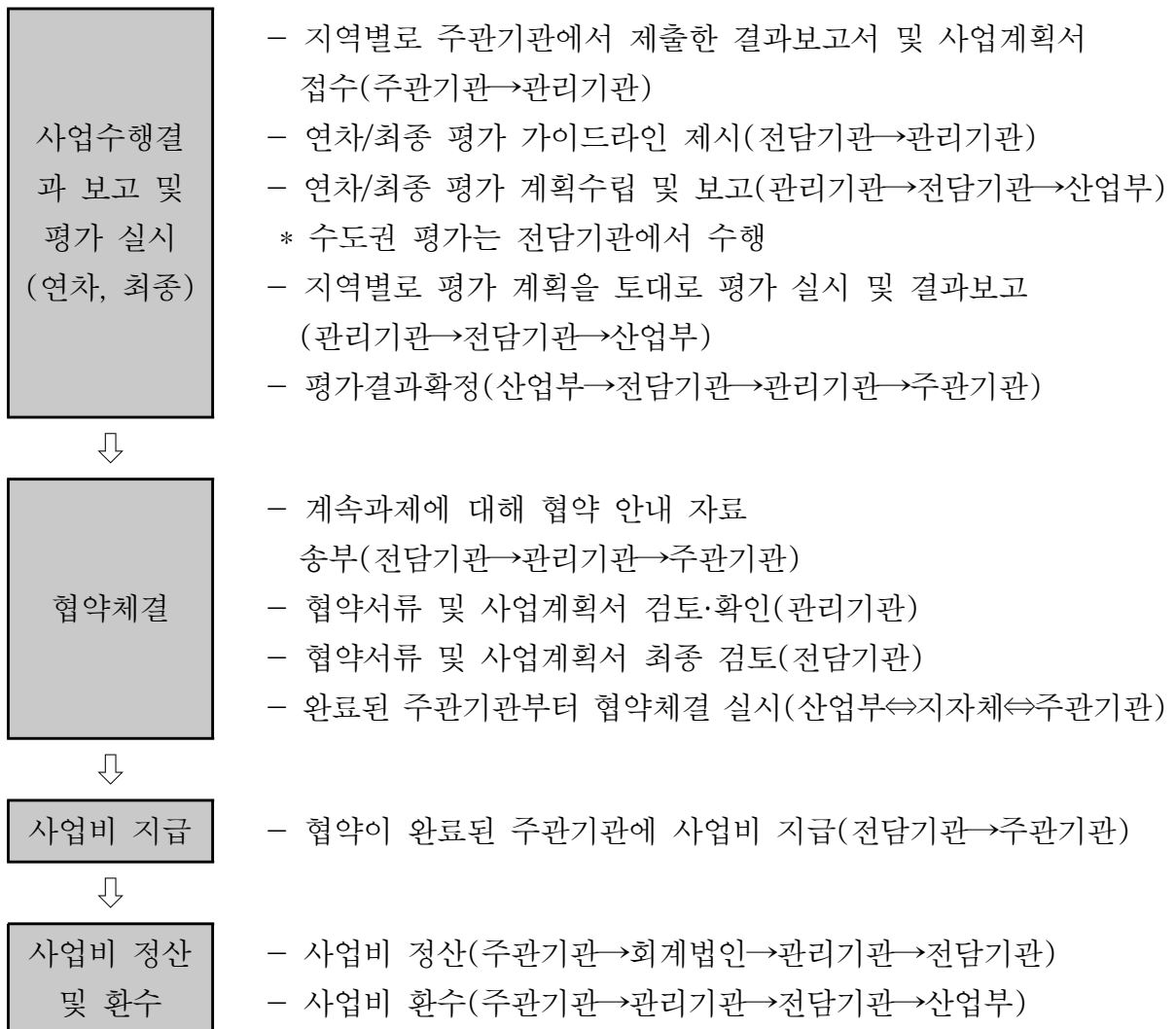
- 지원규모
  -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매년 6~30억원, '13년 6월 종료
  -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매년 2~3억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
- 대응자금 :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전담기관(KIAT), 관리기관(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지역산업평가단))

※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은 ‘전담기관’이 ‘관리기관’의 역할을 겸함

6. 추진일정

구 분	'13년 사업공고	사업신청서 제출	과제별 연차평가	협약체결
비수도권	-	-	'13년 6월	'13년 7월
수도권	-	-	'13년 6월	'13년 7월

## 7. 제출서류

- 연차평가
- 연차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등
- 기타서류
  - 신청요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문대진 주무관  
(Tel : 02-2110-5594, E-mail : moondaejin@korea.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김용섭 책임연구원  
(Tel : 02-6009-3721, E-mail : ysk9003@kiat.or.kr)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구축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김성환

(전화 : 02-2110-5673, E-mail : kimsh1013@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의료기기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95.6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95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IT 분야 경쟁력을 보유한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료, 자동차, 로봇 등)에 응용한 3D 신산업 육성

사업목표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개발·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및 장비도입,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방향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

## 2.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R&BD)

- 5개분야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의료영상기기, 인공장기, 생체신호기기, 재활 및 복지의료기기, 원격 및 재택의료기기 등)

기반구축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설립
  - Open Innovation 형태의 산학연 공동 연구실
  - 공동 장비활용 및 의공학 전문인력 재교육 시설
  - 비즈니스 및 컨설팅 지원시설 구축

##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기술개발

- 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대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참여 가능)

- 기반구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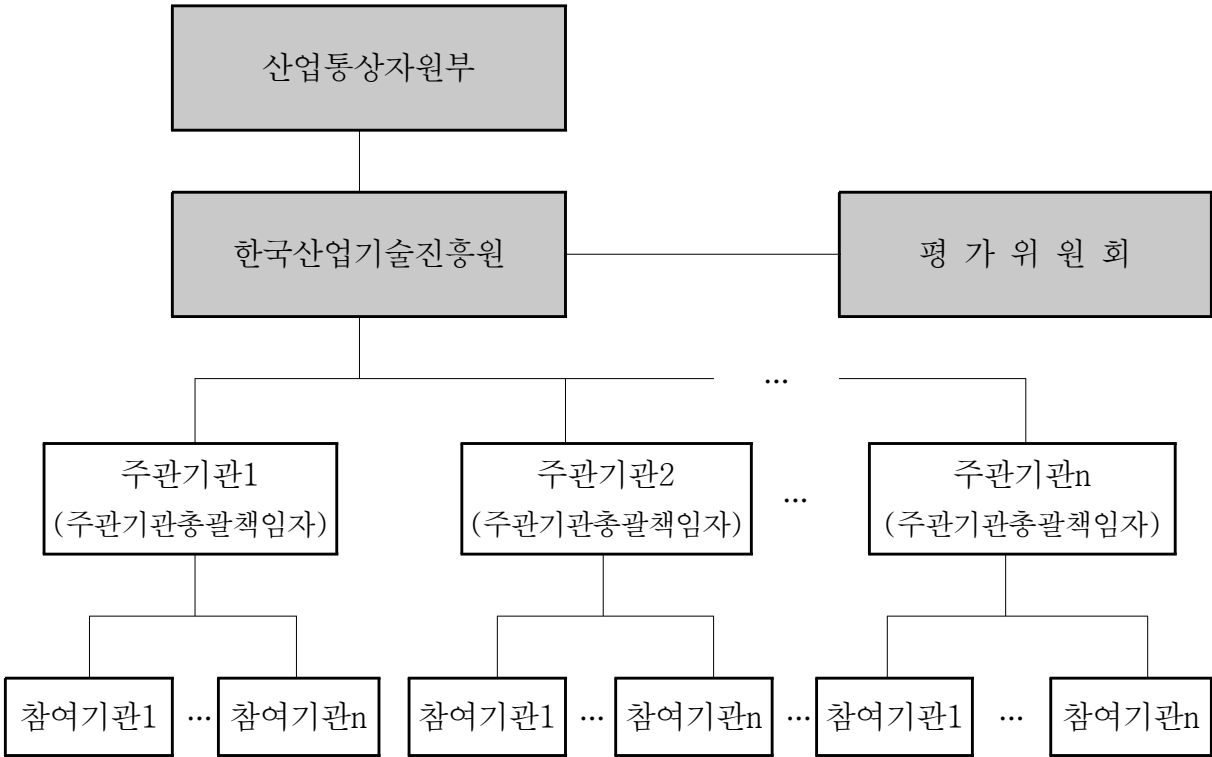
- 지원규모 : 95.6억원 ('13년도 국비)
- 지원기간 : '11. 09 ~ '16. 08(총 60개월)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구축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지원

#####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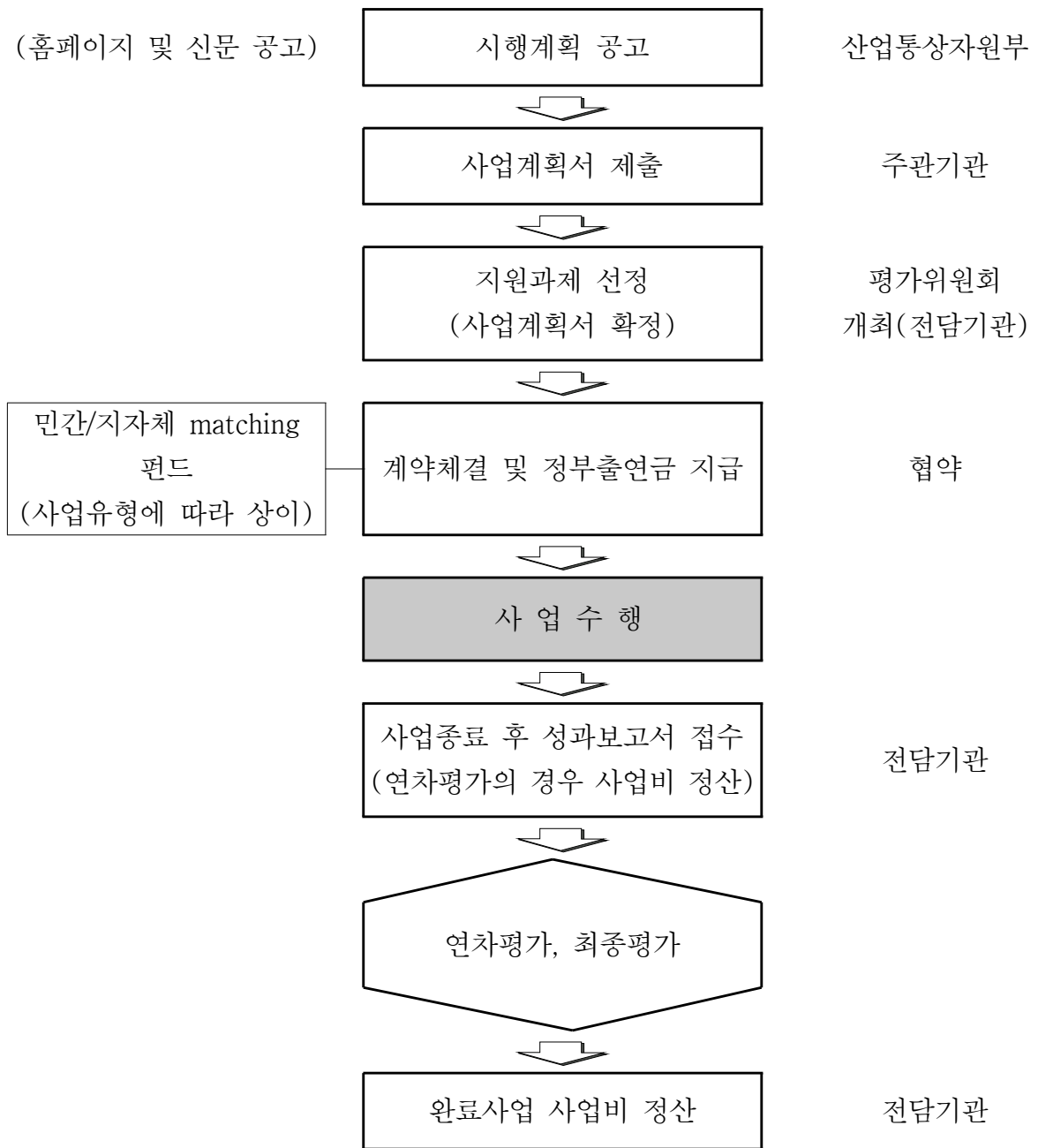
- 기술개발 : Matching fund 방식으로 총사업비의 50 ~ 75% 이내에서 지원
- 기반구축 : 지방비 Matching 조건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 '13. 3월 : 과제기획
  - '13. 5월 : 사업공고
  - '13. 6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 '13. 7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요약서,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재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http://www.ritis.or.kr))에 전산 등록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타서류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http://www.kiat.or.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김성환 사무관  
(Tel : 02-2110-5673, E-mail : kimsh1013@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유경아 선임연구원  
(Tel : 02-6009-3784, E-mail : yourk81@kiat.or.kr)

#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성과확산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과	노영식 사무관

(전화 : 2110-1823, E-mail : nys@msip.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기전자, 정보통신, 인지 감성공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체 및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연구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기업지원
(4) 연구개발단계	원천 및 상용화기술개발 연구
(5) 연구개발기간	기술개발(36개월), 기반구축(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20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400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실감미디어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을 통한 국내시장 조기 형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목표

- ICT 융복합 기반기술 강화로 실감미디어 상용화 선도
- 세계 최고 수준의 실감미디어 상용화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중소 중견기업 육성

지원방향

- 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실감미디어 산업체 및 관련기관의 생태계 구축
- 지역친화적 여건 조성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로 선도기업 집중 육성
- 성과 중심의 과제 선정 및 공정성 강화
- 기술개발 후 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 적극 유도

## 2.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

- 실감미디어 관련 핵심기술 개발
  - 차세대 실감미디어 방송통신혁신 제품 및 기술개발
  - 실감인터넷기반 방송플랫폼 기술개발
  - 실감미디어 실용화 기술, 융합 제품 개발
  - 실감미디어 표준화 및 품질기반 기술개발

기반구축

- 실감미디어 관련 시험인증 장비구축,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관련내용 지원

##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기술개발
  - 주관기관 : 기업, 연구기관 등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등

○ 기반구축

-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0억원(2013년도)

○ 지원기간 : (기술개발) 평균 3년, (기반구축) 5년

○ 선정방식 : (기술개발) 전국단위 공모(지정공모)  
(기반구축) 정책지정

- 사업계획서 작성(주관기관+참여기관)→평가(서면검토, 현장실사, 선정평가)

□ 지원조건

○ 기술개발 : Matching fund 방식으로 총사업비의 50 ~ 75% 이내에서 지원

○ 기반구축 : 지방비 Matching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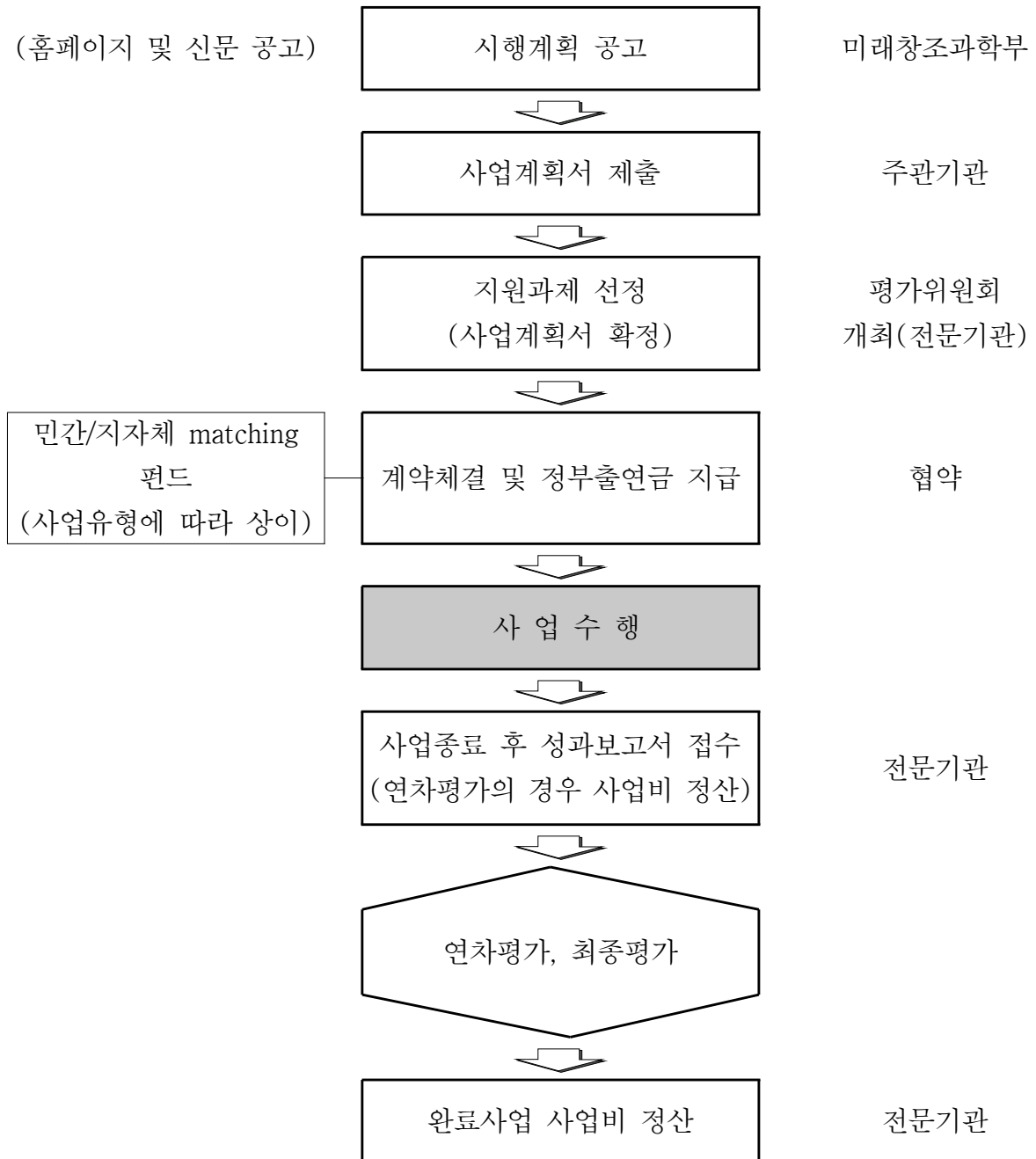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미래창조과학부 : 기본방향 설정, 예산 확보 및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선정, 정산, 사업 성과관리 수행(사업비 집행관리)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 '13. 5월 : 기본방향 수립
- '13. 6~7월 : 과제기획
- '13. 7월 : 사업공고
- '13. 8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 '13. 9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요약서,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http://www.ritis.or.kr))에 전산 등록

## 8. 관련자료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문 의 처> —

- 정 부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노영식 사무관  
(Tel : 02-2110-1823, E-mail : nys@msip.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이 경 책임연구원  
(Tel : 02-6009-3782, E-mail : grace@kiat.or.kr)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강연주 사무관

(전화 : 02-2110-5069, E-mail : sophia@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
(2) 연구수행주체	산학연 컨소시엄(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인력양성,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04.45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349백만원

### 1. 사업개요

- 개요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 2. 지원대상분야

-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QWL)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제공)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설치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협력 및 대학 연계형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 전면 개편 및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모델 반영

### 3.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 신청조건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先취업→後진학」경로, 학생의 현장 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광역경제권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3. 7. 1 ~ 2018. 6. 30 (60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3. 7. 1 ~ 2014. 6. 30 (12개월)

○ 지원금액

- 예산규모 : '13년도 60억원 이내
- 산학융합지구당 지원규모 : 60억원/년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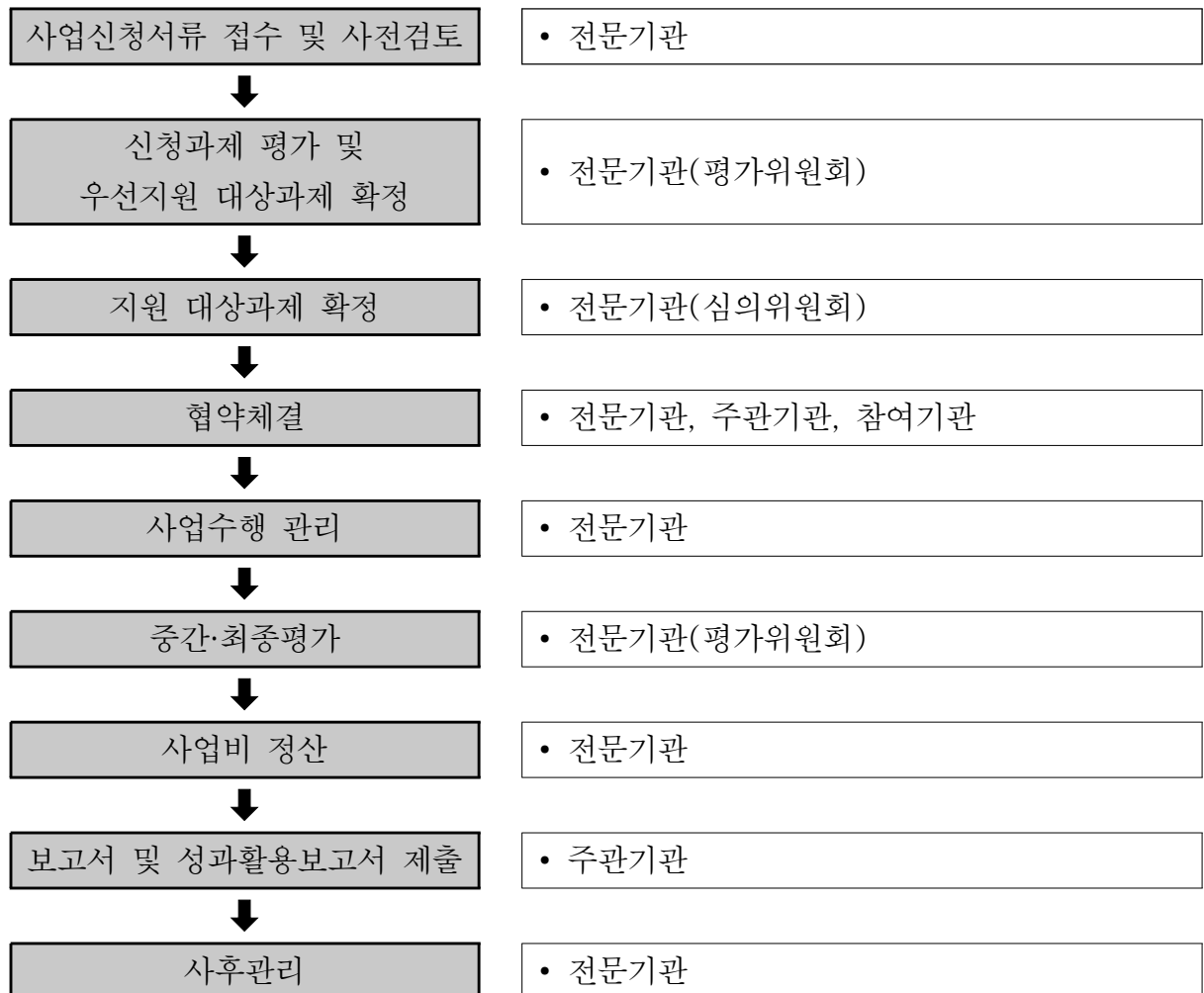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 비율

구 분	사업비(평균)			매칭비율
	계	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5개년도)	370억원	230억원	140억원	23:14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1차년도)	120억원	60억원	60억원	5:5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2차년도)	120억원	60억원	6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3차년도)	60억원	50억원	10억원	11:2
산학융합촉진사업(4차년도)	45억원	40억원	5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5차년도)	25억원	20억원	5억원	

-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비율은 상기 출연금 지원비율을 상한으로 하여 사업 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함

### 5. 추진체계 및 절차



## 6. 추진일정

- 산학융합지구 신규 사업자 선정
  - 사업 공고 : 5월
  - 사업 평가 : 6~7월
  - 사업자 선정 : 7월

## 7. 제출서류

- 전산접수증 1부(www.pms.re.kr)
- 사업신청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8. 관련자료

- 관련 규정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관련 자료

○ 산학융합지구 조성 방안([www.kiat.or.kr](http://www.kiat.or.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출발과 강연주 사무관  
(Tel : 02-2110-5069, E-mail : [sophia@motie.go.kr](mailto:sophia@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이기환 선임  
(Tel : 02-6009-3263, E-mail : [chocopie@kiat.or.kr](mailto:chocopie@kiat.or.kr))

## 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한영열

(전화 : 02-2110-5396 , E-mail : han7170@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
(2) 연구수행주체	대학(4년제 대학 이상)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1(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전문대학원) 1,500(백만원) (일반대학원) 400(백만원)

### 1. 사업개요

□ 개요

- 기술지식(Technology)과 경영능력(Business management)을 겸비한 산업기술 시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급 기술경영 인력 및 글로벌 청년 창업가 양성**
  - **창의·융합형 기술경영 인력양성**을 위한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기술경영 기반 조성
  - 기술경영·산학협력 등 잠재력이 우수 대학을 통해 **창조경제형 벤처 기술 창업기반 구축**을 위한 **글로벌 기업가센터 구축·운영**

##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경영 학위과정과 기업가 센터를 개설·운영이 가능한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

## 3. 신청자격

- 기술경영 학위과정
  - (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 설립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학 또는 대학원 대학
  - (일반대학원) 공대, 경영대, 단과대간 공동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할수 있는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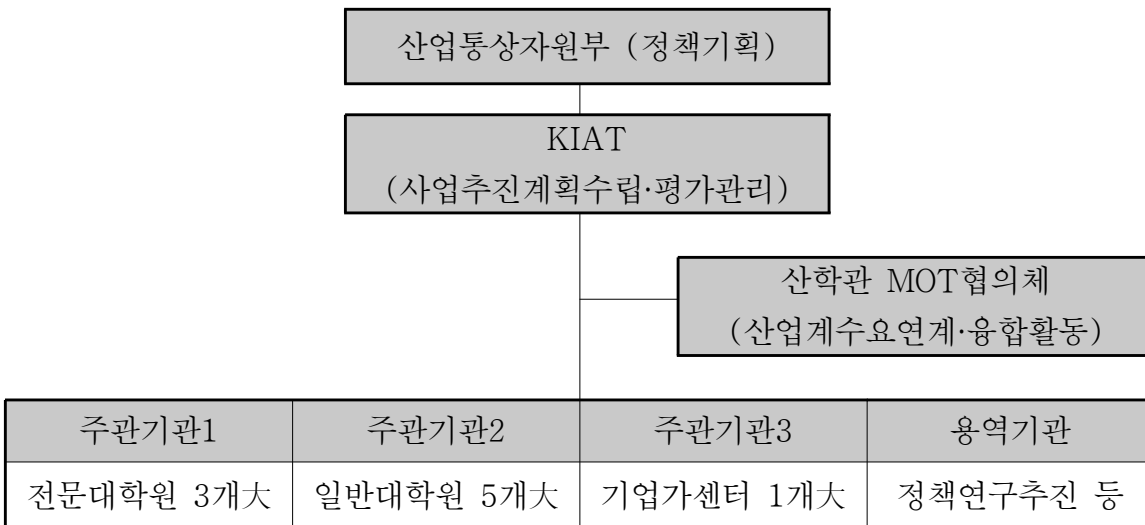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전문대학원 : 과제당 1,500백만원 내외
    - 장학금, 우수교수진(해외석학 등) 확보, 커리큘럼 개발, 글로벌 협력, 산업계 맞춤형 산학 교육과정, 기술사업화 연구소 등 운영 지원
  - 일반대학원 : 과제당 400백만원 내외
    - 장학금, 우수교수진 확보, 인턴십, 커리큘럼 개발 등 운영 지원
  - 기업가센터 : 과제당 300백만원 내외
    - 기술사업화 경진 대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커리큘럼개발 등 운영 지원
- 지원조건
  - (전문대학원) 공학(기술)기반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형태로 개설하고, 수업 연한은 전문대학원 설립기준에 의거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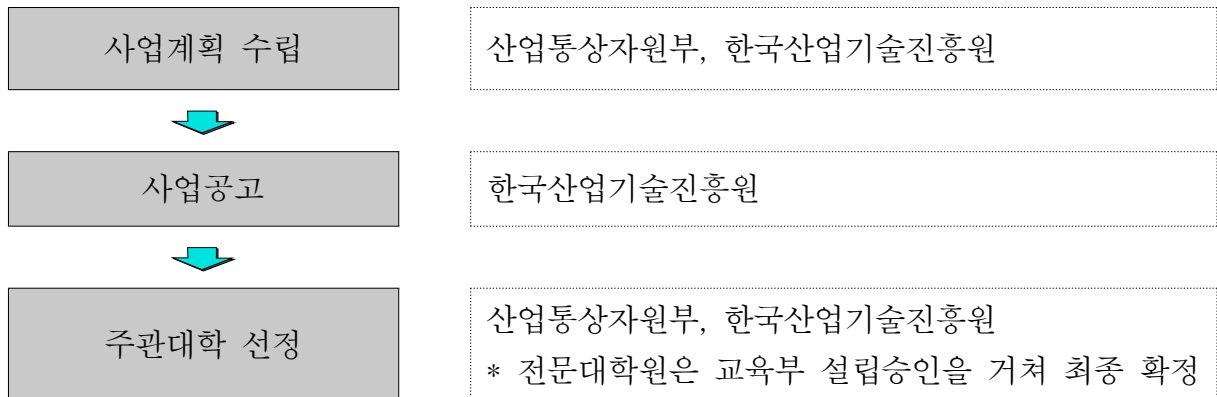
- (학생선발) 직업경험자(재직자 포함)를 우선 선발하되 학부졸업생 선발가능 (이공계 졸업자 우대, 편제정원 100명 내외 운영)
  - (교수진)전문대학원 설립기준에 의거 전담교수 및 외부전문가, 해외 석학의무 확보,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전임교수로 영입, 30%이상 산업계 겸임교수로 구성
  - (커리큘럼) 석사과정 중심의 현장중심형 실무교과목 편성, 실무 Case study 체계로 운영, 기업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
- (일반대학원)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2년 이내, 대학별 특성에 적합한 과정 설계
- (학생선발)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부졸업생 선발가능(이공계 졸업자 우대, 모집 100명 내외 운영)
  - (교수진) 전담교수를 확보하고, 기업 등 외부기술경영 전문가 30%이상 활용
  - (커리큘럼) 대학 기업간 산학 컨소시엄 운영 및 현장학습 등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및 사업비 차등지급 결정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 '13.4월 : 주관대학 평가위원회 개최('13년 신규공고 없음)
- '13.5월 : 사업협약 체결
- '13.5월~'14.4월 : 사업수행

##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신청공문 및 원본 1부 등) 및 신청서류 일체  
※ 신청서류 일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한영열 사무관  
(Tel : 02-2110-5396, E-mail : han7170@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 이희정 연구원  
(Tel : 02-6009-4362, E-mail : heejung25@kiat.or.kr)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견기업 인력지원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김효선 사무관

(전화 : 02-2110-5511, E-mail : hskim215@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계, 재료,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기타
(2) 연구수행주체	산업기술연구회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39.5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6백만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정에서 겪는 핵심 애로사항인 고급인력 부족문제 해소

사업목표

- 우수 R&D인력 공급을 통한 기업의 핵심 R&D역량 확보 지원

지원방향

- 산업기술 분야 출연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장기파견하여 핵심 R&D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인력양성
  - 부품소재, 신성장 동력, 녹색기술 분야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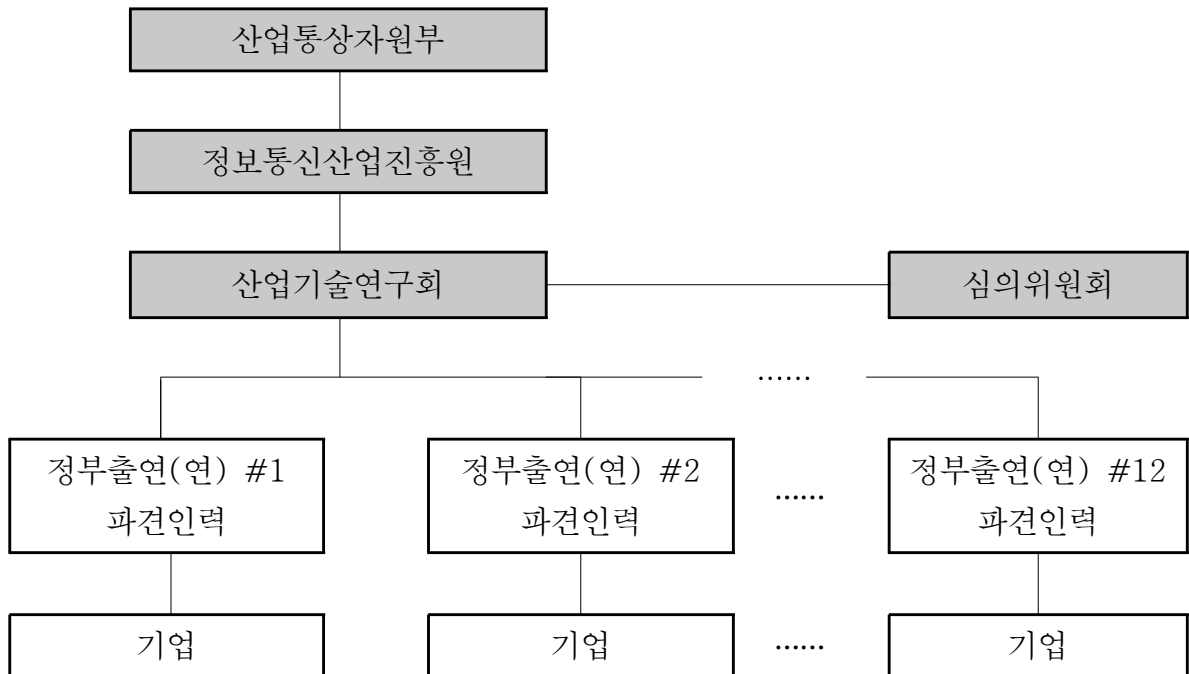
- 기업
  -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이노비즈 인증기업, 벤처 인증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구인력
  - 이공계 석·박사학위를 보유한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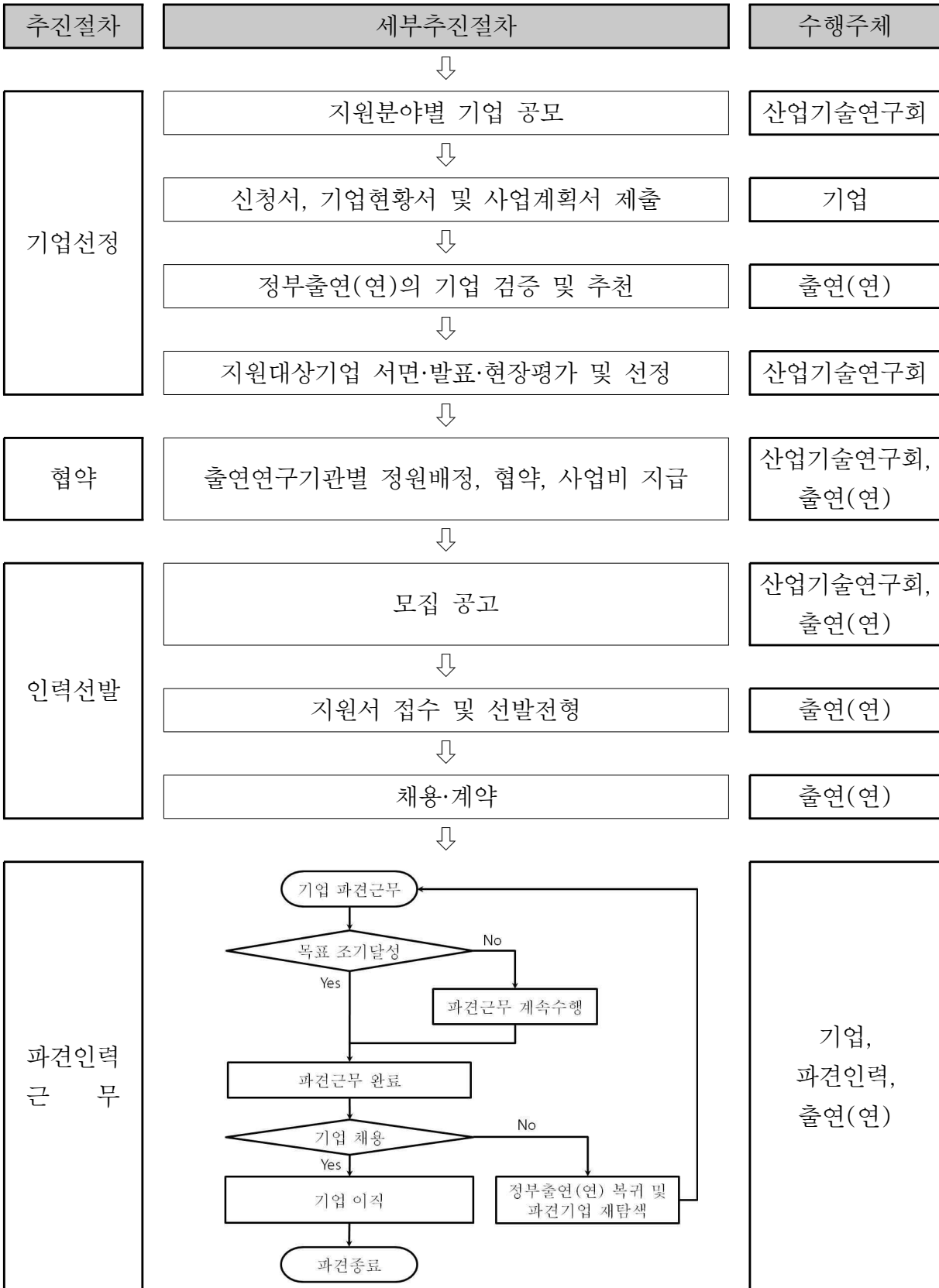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출연연구기관 소속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3년 이내로 기업당 1인 파견하고 파견인력의 급여 일부를 정부가 지원
- 지원조건
  - 파견인력 급여의 50%는 정부, 50%는 기업에서 부담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13. 1월~2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13. 3월~5월	사업공고 및 기업지원서 접수
'13. 6월	참여기업 선정
'13. 7월	지원인력 선발 및 기업 매칭
'13. 8월	기업지원 근무 시작

## 7. 제출서류

- 온라인지원(<http://partner.istk.re.kr>)
  -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인증서(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벤처기업, 표준재무제표, 녹색인증, World Class 300 등) 업로드

## 8. 관련자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김효선 사무관  
(Tel : 02-2110-5511, E-mail : shkim215@motie.go.kr)
- 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인력팀 이춘성 책임  
(Tel : 042-710-1398, E-mail : cslee@nipa.kr)

##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류시욱주무관

(전화 : 02-2110-4767, E-mail : rsw0215@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
(2) 연구수행주체	대학·연구소·테크노파크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24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150(백만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나노인프라의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특성화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나노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고교생 취업중심 교육을 위한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주관기관별로 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나노공정·장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특성화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나노기술인력 양성
- 참여기관은 전체 주관기관의 효율적인 교육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사업홍보, 취업관리 등의 공통업무 수행

주관 · 참여기관	지원대상분야
나노센터(6개)	○ 기업맞춤형 나노장비전문인력(테크니션)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대상 나노융합 기술인력 양성과정 운영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 나노분야 기본교육 프로그램 · 교재개발 ○ 학생취업을 위한 기업홍보 ○ 사업지원을 위한 학생 · 취업관리(사후관리포함)

## 2. 지원대상분야

- 주관기관 :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 나노기술집적센터,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대구나노융합실용화센터
- 참여기관 :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 3. 신청자격 : 정책지정과제로 생략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장비유지보수비 · 재료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 연차별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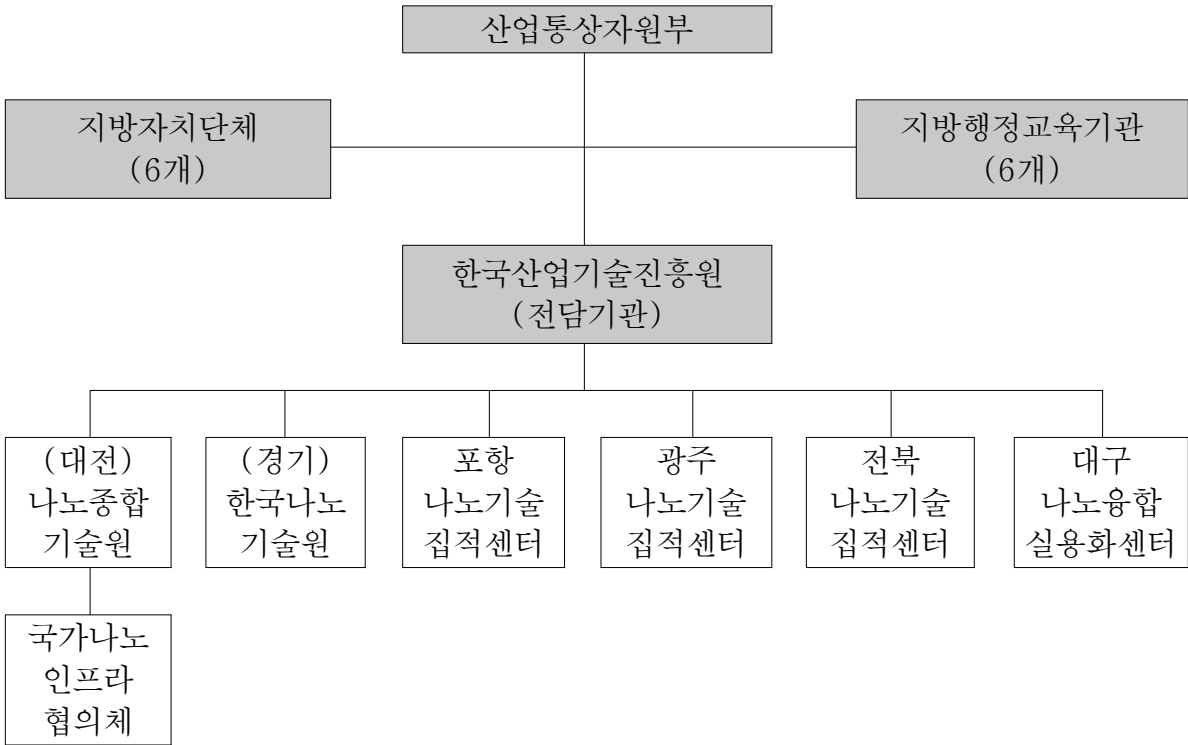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금액	8	20	24	24	2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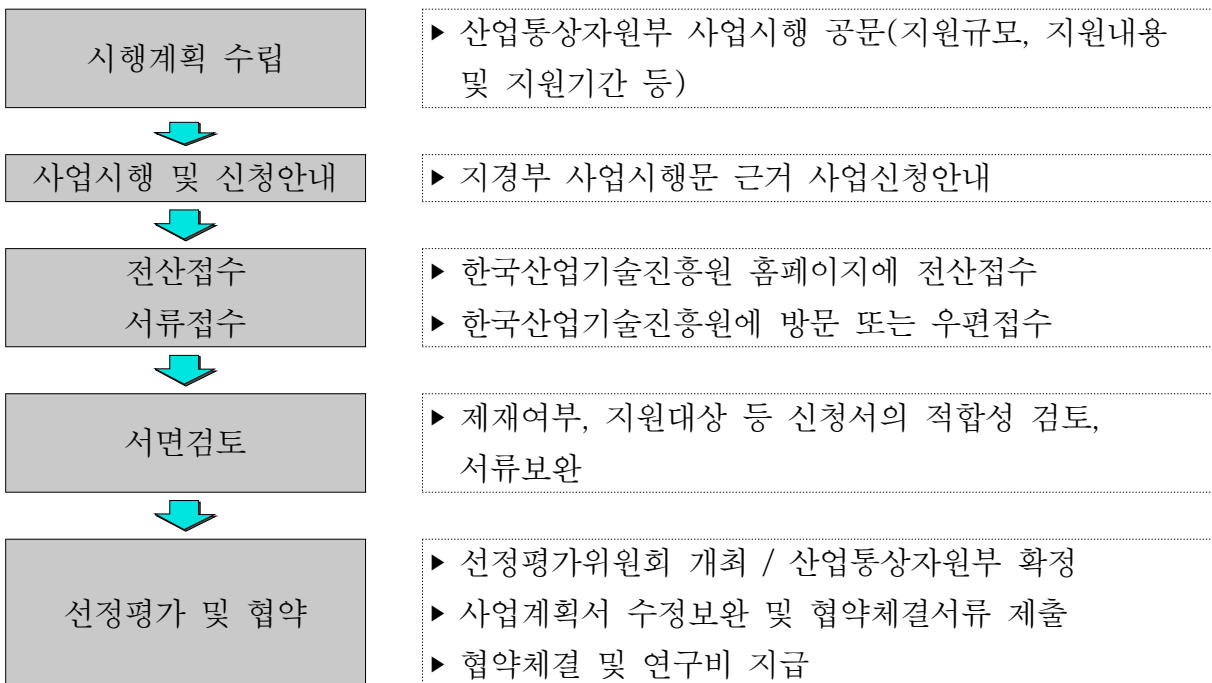
- 지원조건
  - 지방비의 매칭비율은 총사업비의 40% 이상으로 하며, 참여기관의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방 매칭은 면제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사업 추진 내용	세부내용	추진일정('13.1~'14.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기획 및 성과 확산	'13년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관리계획승인요청														
	'14년 사업계획수립 준비														
	수행기관 정례회의 실시														
	사업관리(운영지침제정 등)														
	사업기획														
	성과관리체계화(성과홍보 등)														
사업 평가 관리	신규/연차평가 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실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현장점검														
	'13년 사업비 정산														

## 7. 제출서류

주관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현물출자확약서 등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10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0조의2)」
-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평가 관리지침
-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류시욱 주무관  
(Tel : 02-2110-4767, E-mail : rsw0215@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최진영 선임연구원  
(Tel : 02-6009-3233, E-mail : cjy@kiat.or.kr)

## 전략기술인력양성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고광필 사무관

(전화 : 02-2110-5184, E-mail : mwkim@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 14대 전략기술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68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백만원)

### 1. 사업개요

- 차세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산업 R&D전략과 인력양성을 연계하여 14대 산업원천기술분야\* 연구역량을 보유한 고급 R&D인력 양성

### 2. 지원대상분야

- 지식경제 14대 전략기술 분야
- 14대 분야를 8대 산업(Sector)별\* 기술과 6대 기능(Function)별\*\* 기술로 구성하여 기술간 융합 및 시장과의 연계 강화분야 전반
  - \* 분야별(8) : 전자정보디바이스, 수송시스템,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로봇, 바이오,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 \*\* 기능별(6) : 산업소재, SW컴퓨팅,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 산업기술융합, 에너지자원

### 3. 신청자격

-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 운영 중인 대학원 실험실간 컨소시엄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80백만원 내외

- 사업기간 : 2013. 3. 1 ~ 2014. 2. 28(12개월)

- ※ 총 사업기간 : 2008. 7. 1 ~ 2014. 2. 28(68개월)

- 지원조건

- 단일 대학 내 대학원 연구실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 참여기업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의 자체 연구기능을 보유하여야함

- 지원내용

- 산업원천분야를 연구하는 우수 대학원 실험실간 컨소시엄을 발굴·지원하여 실험실간 협업체제에 의한 융합형 R&D기반 인력양성 및 배출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 사업 시행계획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주관기관선정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검토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주관기관 사업 착수 및 수행 →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6. 추진일정

- '13. 3.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13. 4. : 주관기관 연차평가
- '13. 5. : 당해연도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

##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20부(원본 1부 포함) 및 첨부서류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산학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0조의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관리지침

기타서류

- 신청요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http://www.kiat.or.kr))

###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고광필 사무관  
(Tel : 02 2110-5184)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황혜진 선임연구원  
(Tel : 02-6009-3236, E-mail : [hhy@kiat.or.kr](mailto:hhy@kiat.or.kr))

##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정재형 주무관

(전화 : 02-2110-4732, E-mail : jamani@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88(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88(백만원)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현원 및 부족인력을 산업별·직종별·지역별·규모별 등으로 조사하여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인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아울러, 국내 산업기술인력 수급 동향의 문제점 및 중요 현안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 및 실행을 지원

\* 산업기술인력 : 이공계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사업목표

- 산업기술인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활용
- 산업기술인력의 정량적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로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다른 관련 통계, 정성적 조사와 연계하여 정책 기획에 활용

추진방향

- 산업기술인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관되고 신뢰성 높은 조사 실시
- 통계자료를 DB화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유관기관 및 일반인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2.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

- 전체

기반구축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대학, 출연기관 등

신청자격

- 별도 제한없음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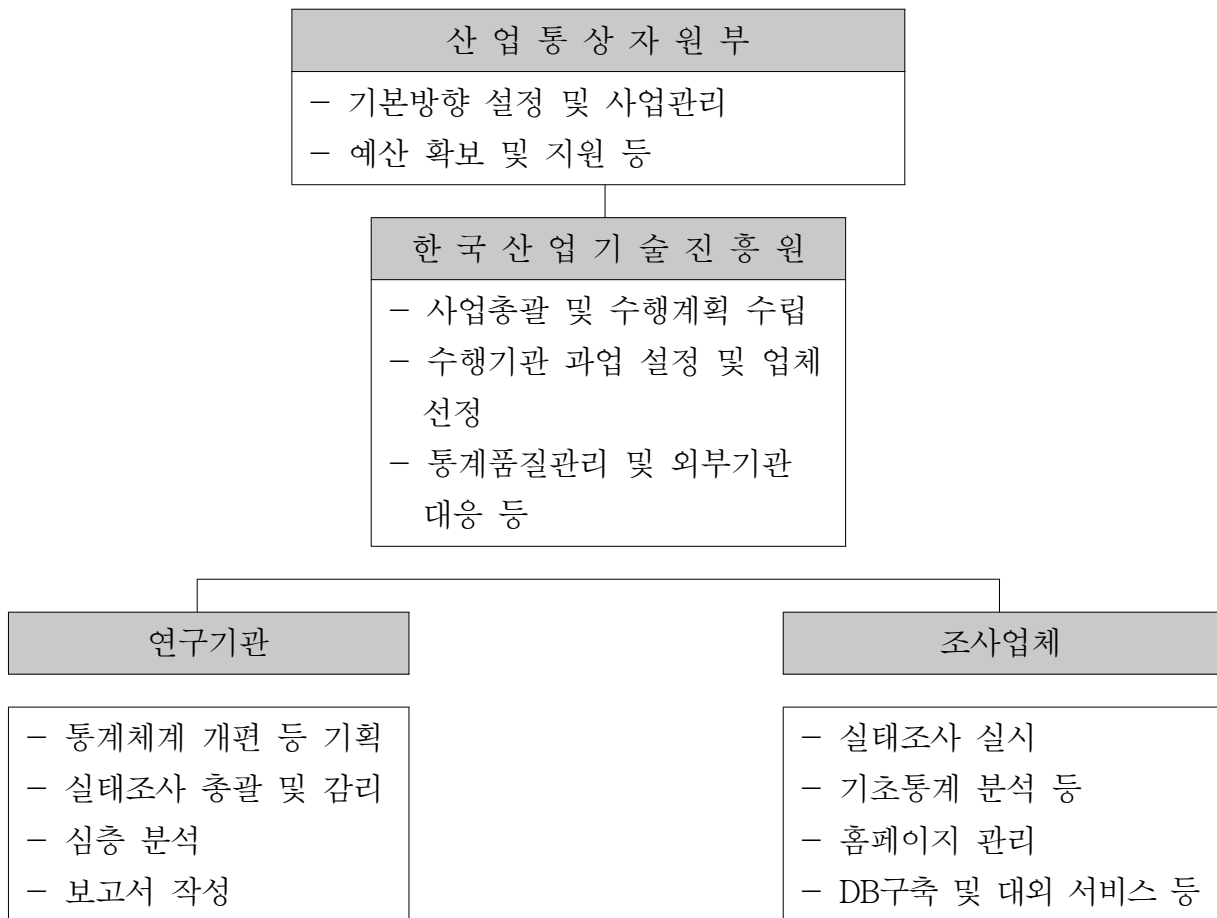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주관기관 7.88억원
- 선정방식 : 계속과제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지식경제부 : 기본방향 설정, 예산 확보/지원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주관 (사업총괄기획, 진행관리, 보고서 작성 등 )



##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주요내용	일정	세부 추진내용
사업 협약체결	'10. 10~11월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중간보고 및 차년도 계획 평가(11/5) ·협약체결(11/20)
↓		
실태조사 기획 및 준비	'10.12~'11.2월	·조사 기획 용역업체 선정 ·설문조사 용역업체 선정 ·통계청 협의 등
↓		
실태조사 수행	'11. 3~6월	·조사원 교육 ·방문 면접조사 실시
↓		
데이터 검증	'11. 7월	·데이터 클리닝 및 전화 검증
↓		
통계 및 분석 자료집 작성, 발간	'11. 8~9월	·보도자료 배포 ·자료집 발간
↓		
심층 분석	'11. 2~10월	·전망 분석, 정책 목적별 분석 ·SC조사를 활용한 심층 분석 등
↓		
조사결과 DB 구축	'11. 8~10월	·D/B구축, 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
↓		
최종 보고서 작성	'11. 9월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사업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협약체결, 사업자 등록증,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연구비 집행결과내역 포함), 실태조사 보고서 등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2
-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11516호, '04. 9월, 표본조사)

### 자료취득방법

- 산업기술인력정보센터 (<http://www.itl.or.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정재형 주무관  
(Tel : 02-2110-4732, E-mail : [jamani@motie.go.kr](mailto:jamani@motie.go.kr))
- 전문기관 : 산업기술진흥원 인력기획팀 정선이 연구원  
(Tel : 02-6009-3224, E-mail : [sunyi@kiat.or.kr](mailto:sunyi@kiat.or.kr))

## 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정종윤 사무관

전화 : 02-2110-4653, E-mail : jeongjy@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대학(4년제 대학과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2년 후 수행실적 평가)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00(백만원)

###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새로운 융합 트렌드에 걸맞는 多학제적(인문+공학 등) 융합화 역량을 갖추고 산업현장의 융합화를 주도해 나갈 고급 특성화 융합인재 양성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산업융합 핵심 프로젝트’를 다양한 분야(인문·기술) 인재들과 공동 수행하면서 융합 기술, 융합 경영 및 사업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

추진 방향

- 인문-공학間 多학제적 융합화 소양 배양

- 글로벌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융합인재 양성체계 구축
- 산업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융합형 인재양성
- 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교육 과정 운영
- 지원방향
  - 융합 트렌드에 걸맞는 다학제적 융합화 소양을 배양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융합특성화 대학원을 지정 운영

## 2. 지원대상분야

- 인력양성
  - 多학제적(인문+공학 등) 융합화 역량을 갖추고 산업현장의 융합화를 주도해 나갈 고급 특성화 융합인재 양성

##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4년제 대학과 참여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 신청자격
    - (컨소시엄) 국내 대학(4년제)이 해당 특성화분야 기업체와 공동 프로젝트, 고용연계 등과 관련된 컨소시엄(협력 MOU 등) 구성 후 신청
    - (학과개설) 선정後 일반(전문) 대학원에 ‘산업융합 특성화 학과\*’를 신설하거나 既 설치된 학과를 ‘산업융합 특성화 학과’로 개편, 운영
- \* 학과명은 해당 특성화분야에 따라 자체 설정

- (교수인력) 산업융합 특성화 학과 전임교수 2인 이상, 참여교수(산학 협력중점교수, 인문계·공학계 교수 등)를 포함 총 5명 이상의 교수인력 확보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내용

- 지원규모('13년도기준) : 연간 총 10억원(대학별 3억원 수준), 3개 대학 선정  
※ 2차 년도('14년)부터 대학별 6억원 수준/년 지원
- 지원기간 : 5년(2+3년)\* 지원 후 자립화 유도  
\* 5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2년간 지원 후 (3~5차년도)에 대해서는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차등 지원 포함) 결정
- 교육인원 : 대학원별 매년 15명내외 석사 신입생 선발, 교육 실시
- 참여제한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 등 융합인력양성 관련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의 학과 또는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 대학

#####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대비 25% 이상 매칭(현금, 현물 포함)  
※ 대학 15% 이상, 참여기업 10% 이상(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 현금투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방향 설정, 예산 확보/지원, 평가기본계획 수립
- 사업전담기관(KIAT) : 동 사업의 연차별 수행실적 등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점검

- 사업주관기관(KNICC) : ‘산업융합 특성화 대학’ 선정·평가, 사후 관리 등 동 사업의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주관

\* 세부사업 운영지침, 지원대상 선정·평가 관리, 사업추진 결과 보고, 사업 수행실적 관리 및 사후관리 등 세부운영 사항을 지원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월별 End-Product
2	▪ 사업 공고	
2~3	▪ 사업제안서 접수	
4	▪ 평가위원회 구성 및 대학원 선정평가	
5	▪ 신규 선정 발표	▪ 신규 3개
6	▪ 신규 사업 협약 체결	▪ 3개
6~12	▪ 사업 착수 및 사업 진행	
11	▪ 현장방문 실태점검	▪ 3개
12	▪ '14년 시행계획 수립	

## 7. 제출서류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협약체결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산업융합촉진법 제28조 산업융합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정종윤 사무관  
(Tel : 02-2110-4653)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황혜진  
(Tel : 02-6009-3236, E-mail : hhi@kiat.or.kr)
- 주관기관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정책기획실 조성민  
(Tel : 02-8040-6781, E-mail : smcho@kitech.re.kr)

##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김효선 사무관

(전화 : 02-2110-5511, E-mail : hskim215@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이공계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타
(3) 지원목적	기타(인력공급)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12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2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659(백만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이공계 고급연구개발인력의 유입을 지원함과 동시에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를 통한 산업인력 전반의 수급 미스매치 해소

사업목표

- 기술력을 가진 영세 중소·중견기업에 고급연구 공급을 촉진
- 공급된 인력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으나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석박사급 연구인력 확보가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인력의 인건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이 미취업상태의 고급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인건비(기본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기타(인력공급)

- 석·박사 이상의 고급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 지원

##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3년 이내(신청일자 기준 미취업상태)의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한 후 동 사업에 신청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 800명(신규, 계속지원 포함)
- 지원예산 : 석사 1,350만원, 박사 1,650만원

<지원금액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2,700	3,300
정부지원액/연	1,350	1,650
(기준연봉 대비)	50%	50%
3년간 지원총액	4,050	4,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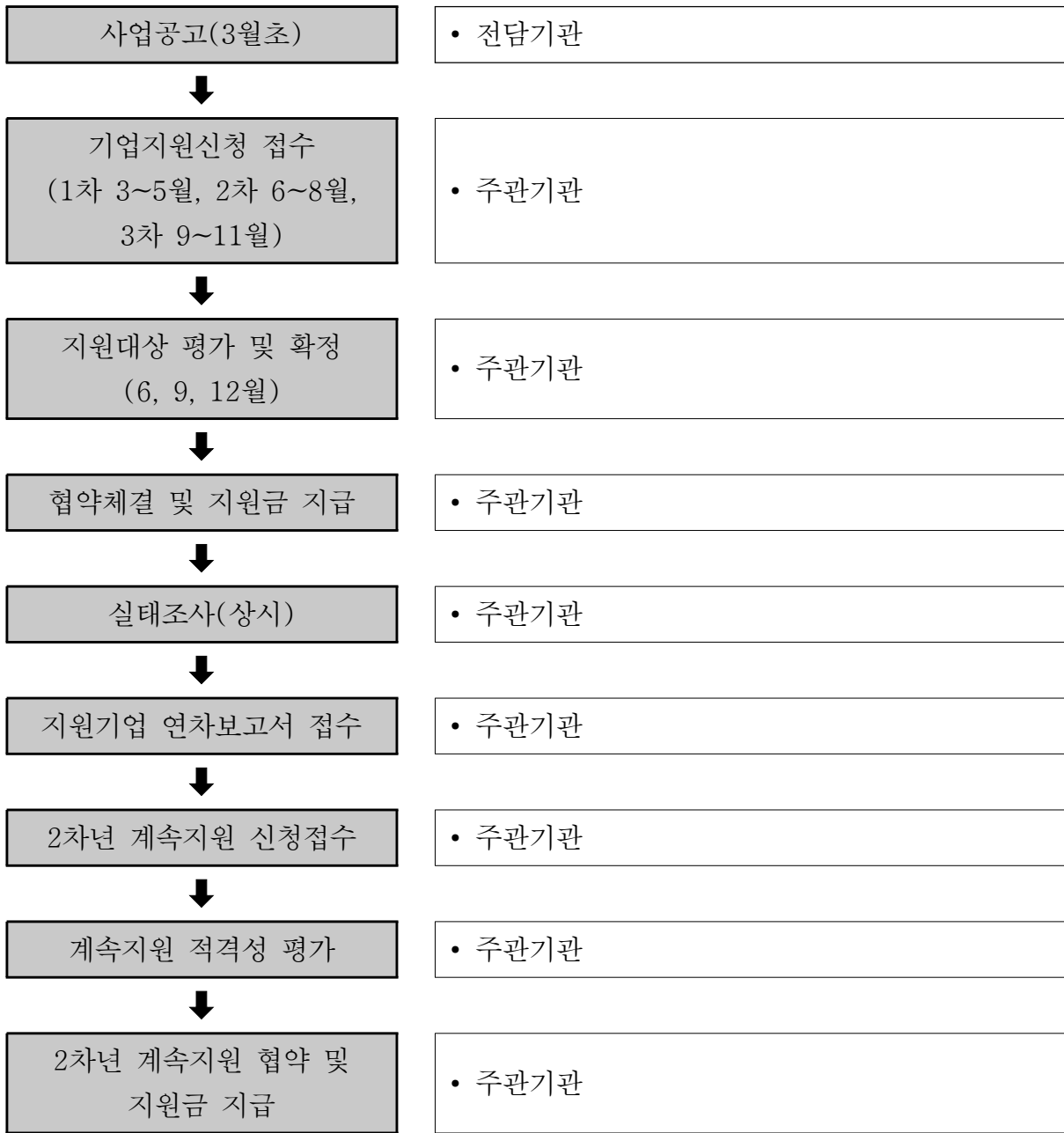
- 지원방식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1년간 지원 후 계속지원 여부 신청접수 ⇒ 지원 적격성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조건

- 지원인력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하여 ‘희망엔지니어 적금\*’가입 의무화

\* 기업과 인력이 장기근로(5년)를 조건, 동일 금액을 매칭·적립하는 금융상품

## 5. 추진체계 및 절차



## 6. 추진일정

월별 추진일정

구 분	주요내용	추진일정(월)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공고	사업공고	■											
신규선정평가	1차	지원접수	■	■	■								
		선정평가				■							
		선정평가 결과 공지				■							
		운영설명회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2차	지원접수				■	■	■					
		선정평가							■				
		선정평가 결과 공지							■				
		운영설명회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3차	지원접수							■	■	■		
		선정평가											■
		선정평가 결과 공지											■
		운영설명회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 7. 제출서류

신청 시

- 온라인 신청 후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제무제표증명원, 신청인력 학위 증명서, 고용보험 내역서 등 제출

선정 후

- 월별 점검표, 최종보고서 등 제출

## 8. 관련자료

- 산업기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활용및공급)

###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김효선 사무관  
(Tel : 02-2110-5511, E-mail : shkim215@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이은령 선임연구원  
(Tel : 02-6009-3234, E-mail : ler@kiat.or.kr)

## 테크포스넷(Tech-Force Net)구축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장승배 주무관

(전화 : 02-2110-5080, E-mail : jangsb@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기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5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00(백만원)

### 1. 사업개요

- 산업기술인력에게 인력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시켜 취업을 촉진시키는 온라인 기반의 산업기술인력 통합정보망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사업 종합 정보제공, 모니터링시스템, 산업기술분야 특화 구인·구직정보 제공 등의 산업기술인력 정보 Portal 구축

### 2. 지원대상분야

-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 산업분야 전반

※ 산업기술인력 특화 인력양성 사업정보 제공 및 온라인사이트 운영

### 3. 신청자격

- 기타 연구소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 7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0. 1 ~ 2014. 9. 30(12개월)

- ※ 총 사업기간 : 2010. 8. 1 ~ 2014. 9. 30(50개월)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100%)

- 지원내용

- 산업기술인력 정보포털 및 취업연계 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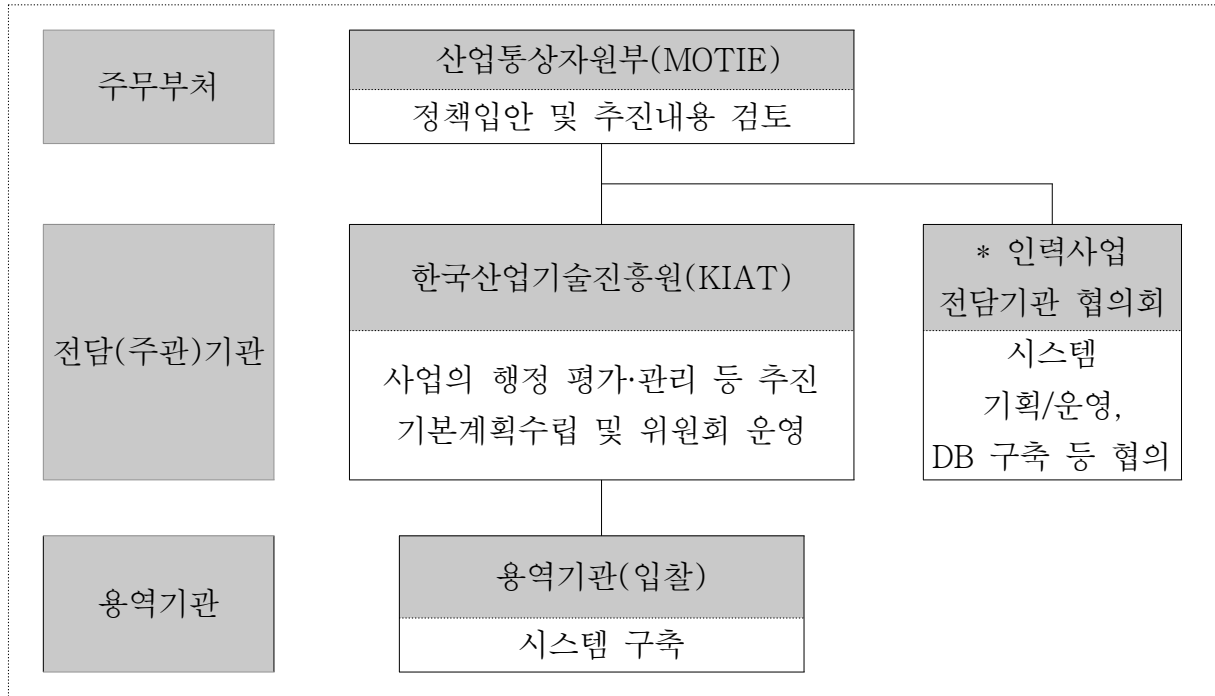
- ※ 기술인력에 특화된 온라인 채용매칭시스템 구축

- 이공계 기술인력 및 기업 Pool 구축, 실시간 정보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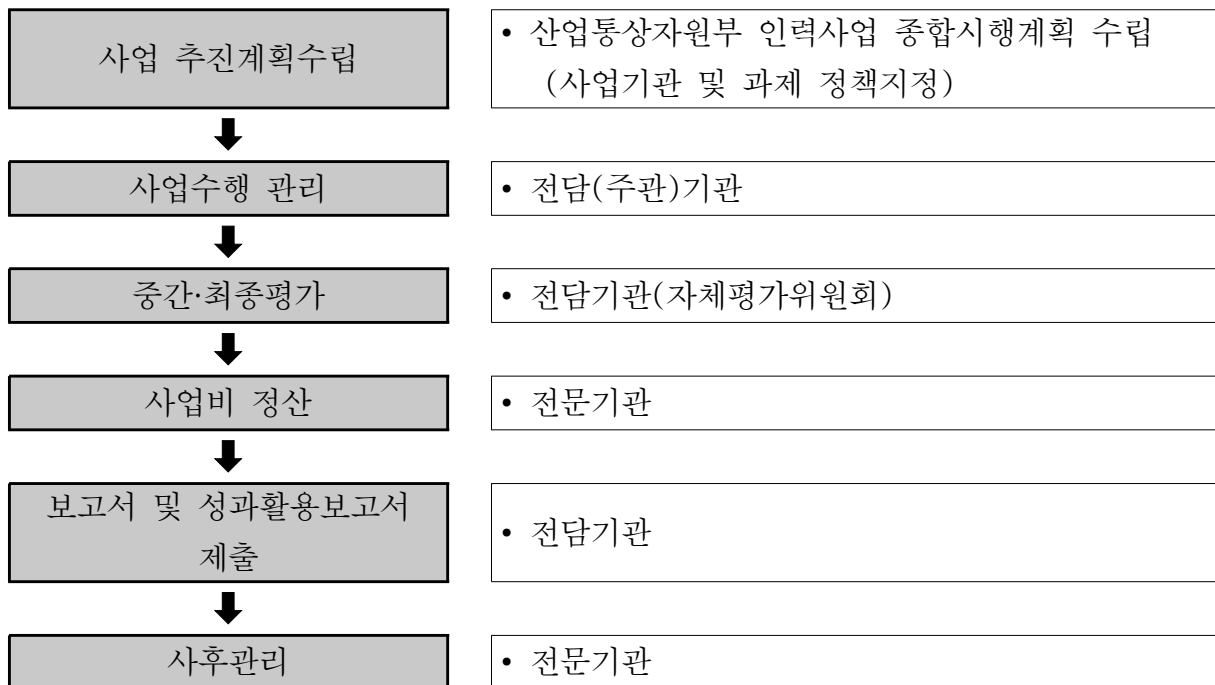
- ※ 기술인력의 학력, 경력, 기술분야 등에 대한 세부적인 Profile DB 구축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 '13. 10. :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13. 10. ~ '14. 8 : 정보망 사이트 활성화 및 유지보수
- '14. 9.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학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0조의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관리지침

- 정보망 사이트 운영

- 산업기술인력통합정보망(<https://techforce.or.kr>)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장승배 주무관  
(Tel : 02-2110-5080)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기획팀 정완기 연구원  
(Tel : 02-6009-3227, E-mail : [jwg8310@kiat.or.kr](mailto:jwg8310@kiat.or.kr))

##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고광필 사무관

(전화 : 02-2100-5184)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 타
(2) 연구수행주체	대학(4년제 이상 이공계 대학)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44(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00(백만원)

###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체험위주의 융합형 기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중·고교 청소년들의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흥미 유도 및 창의기술인재 육성
- 청소년들의 창의적 기술 아이디어 선정 및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한 공학체험 기회 제공 및 이공계 진로 지도

사업목표

- 청소년들의 親산업기술 마인드 형성·확산 및 창의 공학분야의 차세대 인재 양성

### 2. 지원대상분야

인력양성

- 청소년 대상 기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미래 창의기술인재 양성

###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청소년 기술교육과 관련하여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에 관심있는 4년제 대학교

신청자격

- 4년제 대학으로서 대학 내 창의기술인재센터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축하고, 총장이 동 사업의 주관책임자를 “창의기술인재센터장”으로 임명하여야 함
- 창의기술인재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최소 1인을 확보하여야 함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센터당 연 200백만원 내외
- 선정방식 :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에 관심있는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자유공모
  - 사업계획서 작성(주관대학) ⇒ 평가(서면, 발표평가) ⇒ 선정(1년마다 연차평가 실시)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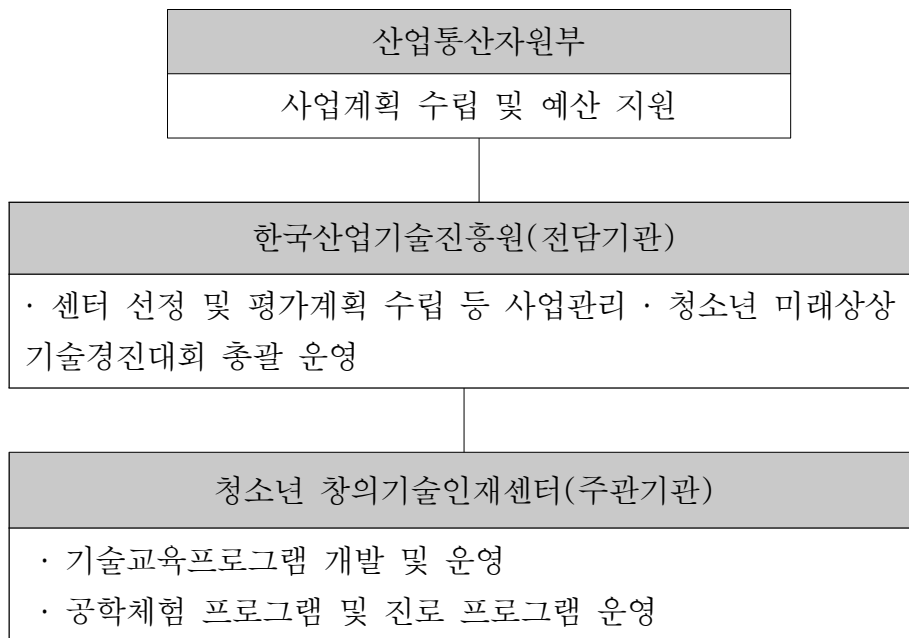
- 중·고교생 대상의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기술과 연계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술인재육성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 발굴 및 센터 고유의 기술교육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공학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개최·운영

□ 지원조건

-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중단여부 및 사업비 차등지원
- 정부지원금 대비 현금매칭의 제한 없음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월별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3	▪ 신규 선정 공고
4~5	▪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 및 신규 선정평가
5~6	▪ 전담-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6	▪ 주관기관 워크숍
6~8	▪ 경진대회 아이디어 선정 및 공학체험프로그램 운영
8~10	▪ 경진대회 최종 선정 및 시제품 제작 지원
11	▪ 경진대회 본선대회 개최
12	▪ 경진대회 시상식 및 포상
2(차년도)	▪ 연차평가 실시

## 7. 제출서류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협약체결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서류

○ 신청공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http://www.kiat.or.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고광필 사무관  
(Tel : 02-2100-5184)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이승아 선임연구원  
(Tel : 02-6009-3235, E-mail : [santapia@kiat.or.kr](mailto:santapia@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총괄기획평가관리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김상우 사무관

(전화 : 02-2110-5167, E-mail : swkim001@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기관, 단체 및 기업등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계속 ※연차별 종합시행계획 수립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7.41(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41(백만원) ※ 사업 총괄기획 평가관리

###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부가가치산업 및 미래산업을 선도할 R&D 기초 및 고급연구인력 등 다양한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2. 지원대상분야

사업분야

산업기술 전반

※ 세부사업별 기획·평가·관리 분야 상이

## 3. 신청자격

지원대상

대학, 연구기관, 단체 및 기업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산업기술 인재 양성) 산학협력 기반형 교육 강화를 통해 대학의 교육 현장성·수요지향성 제고, 기업의 맞춤형 인재 채용 확대

※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몰을 통한 사업 개편 추진

(인적자원 생태계 조성)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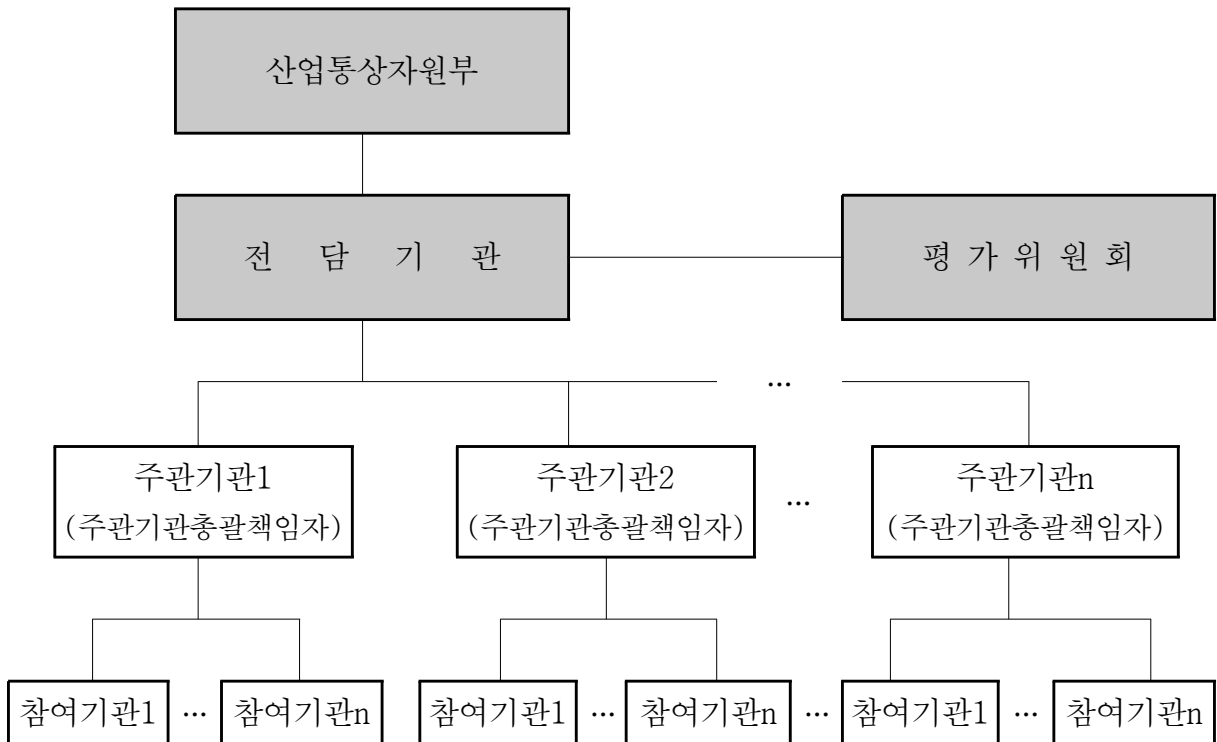
※ 지역·중소기업에 인재가 공급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지원대상 : 초중고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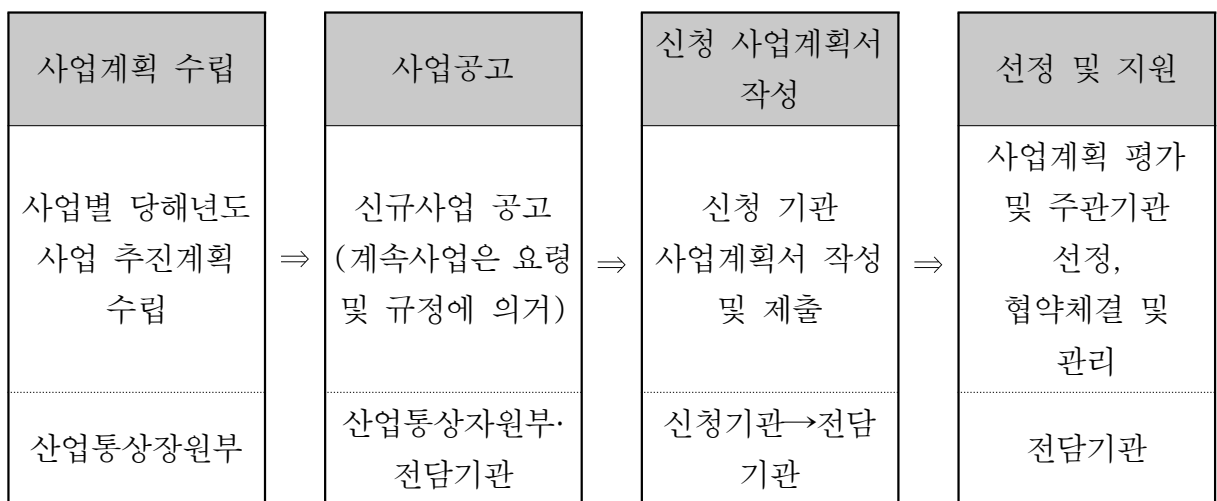
※ 지원조건은 세부사업별 상이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13. 1, 2, 3월	'13. 2, 4월	'13. 1,3,4,5,6,7월

## 7. 제출서류

※ 세부사업별 제출서류 상이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김상우 사무관  
(Tel : 02-2110-5167, swkim001@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기획팀 김희열 선임연구원  
(Tel : 02-6009-3221, E-mail : kimhere@kiat.or.kr)

## 봉제전문인력양성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전우표사무관

(전화 : 02-2110-5652, E-mail : aa93029@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
(2) 연구수행주체	국내 소재 봉제관련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75(백만원)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영세화, 일감부족, 인력 고령화 등으로 국내 봉제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국내 봉제기술을 활용한 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 봉제관련인력의 타 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봉제산업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업내용

사업내용	인원(명)	예산(백만원)
▶ 패션 디자인 테크 고급봉제 과정	20	150
▶ 품목별 봉제 심화 과정	70	140
▶ 봉제기술 자격체계 기획	-	50
▶ 봉제기술 전수자 과정	10	135
합 계	100	475

\*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과정별 인원, 예산 등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음

## 2. 지원대상분야

봉제산업분야

## 3. 신청자격

국내 소재 봉제관련 비영리 기관

-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기관)은 봉제 관련 비영리기관으로, 주관기관 단독 또는 참여기관(이하 “교육기관”)과 함께 신청 가능
- 봉제관련 인력양성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 교육전문기관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법인
- 봉제관련 교육운영 경험기관 우대
  - \* 지정 제안한 봉제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봉제 자격제도 기획을 모두 수행 가능해야함
  - \* 단, “재직자 교육생”이 있는 경우 재직자 교육생이 소속된 기업(이하 “참여기업”)과 반드시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금액 : 475백만원
- 지원방법 : 지정공모(교육과정 및 자격증 기획 : <붙임1-1>의 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분야 : 봉제산업분야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4. 4. 30
- 지원규모
- 선정규모 : 1개 주관기관 선정
- 지원인력 : 연간 100명 내외 지원

####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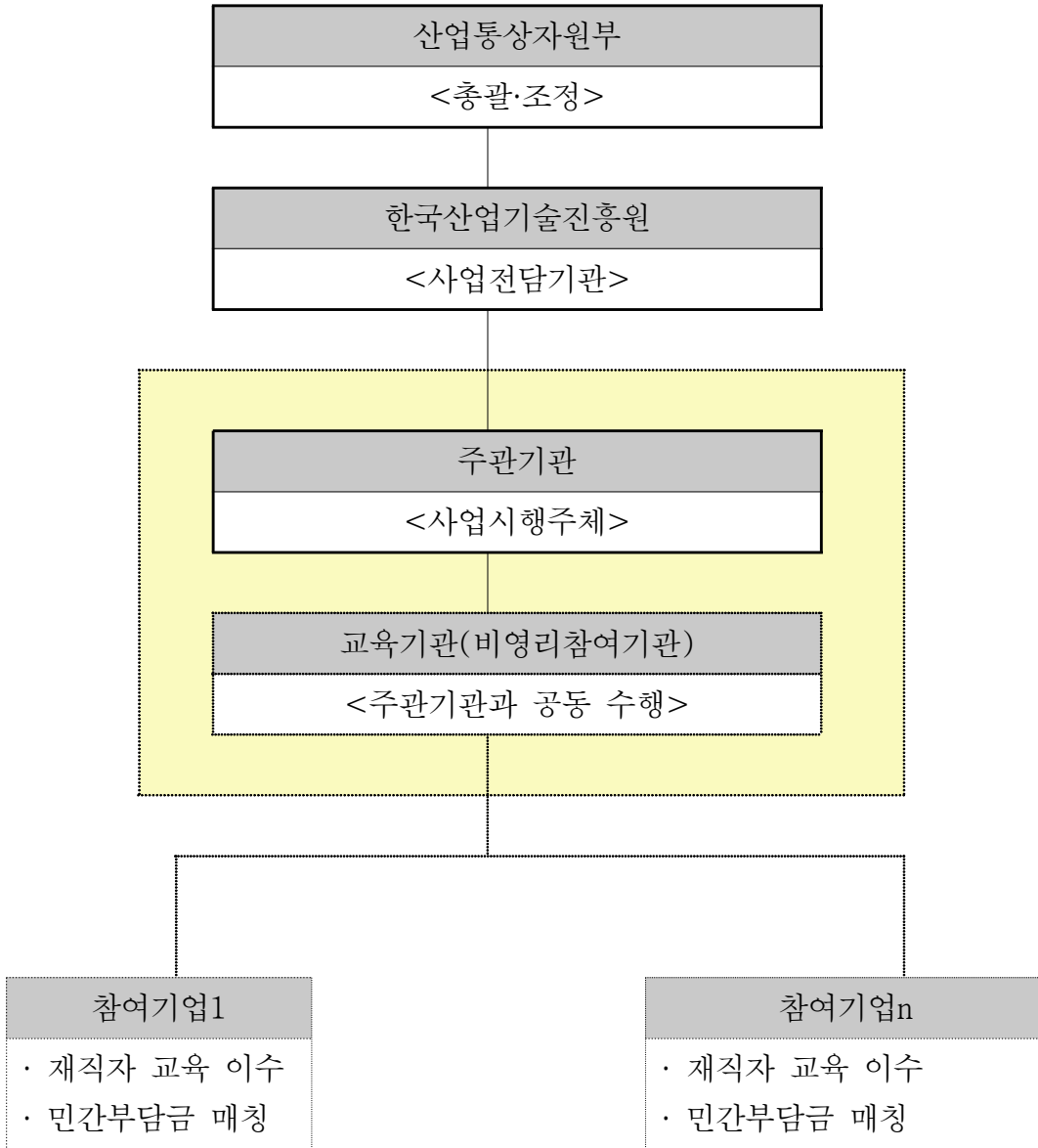
- 인건비, 간접비, 교육훈련비, 장소임대비, 교재개발비, 재료비 등

#### □ “재직자 교육생”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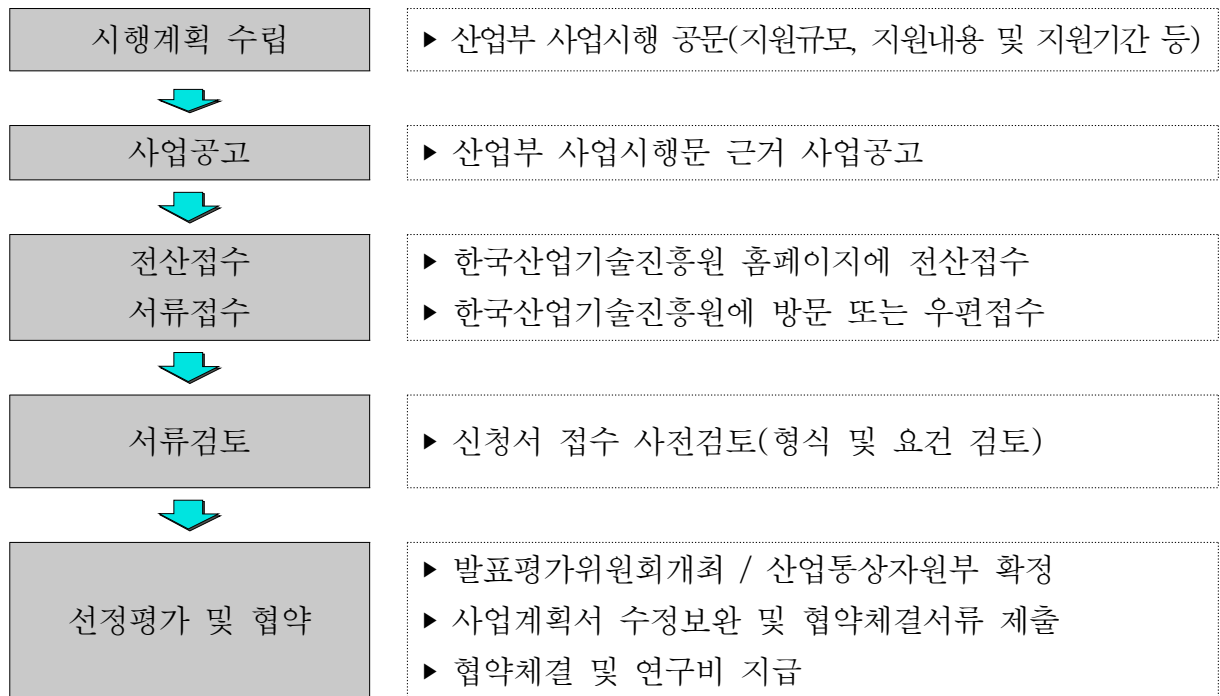
- 재직자 교육생이 속한 기업(참여기업)과 반드시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 ‘참여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에 구성된 것에 한함
-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을 의무매칭하여야 함
  - ▶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생 1인당 교육비의 10%이상
  - ▶ 대기업의 경우 교육생 1인당 교육비의 50%이상(현금 25%이상)
  - \* 재직자 교육생이 없는 경우,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신청하지 않아도 됨
  - \* 한개 참여기업의 재직자 교육대상인원이 해당과정의 전체 교육생의 50% 초과 불가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사업 추진 내용	세부내용	추진일정('13. 7 ~'14.4)											
		5	6	7	8	9	10	11	12	1	2	3	4
기획 및 성과 확산	'13년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관리비승인요청												
	'14년 사업계획수립 준비												
	사업기획												
	성과관리체계화 (성과홍보 등)												
사업 평가 관리	신규/연차평가 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실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현장점검												
	'13년 사업비 정산												

## 7. 제출서류

주관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현물출자 협약서 등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평가 관리지침
-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전준표 사무관  
(Tel : 02-2110-5652, E-mail : aa93029@korea.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최진영 선임연구원  
(Tel : 02-6009-3233, E-mail : cjy@kiat.or.kr)

##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산업환경과	송충섭 사무관

(전화 : 02-2110-5136, E-mail : schs1390@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환경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5.5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125백만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청정생산기술과 녹색경영의 보급·확산을 통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촉진

사업목표

- 제품 개발·관리 청정화 기법 개발

- 재료·공정·제품 등에 Green Design 기법 및 신사업 모델 개발
- 녹색 신산업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공정 기술 등의 융합·적용방안 연구

- 청정제조 설비·공정·기술 분석기반 구축

- 제조업 산업환경 분야의 설비·기술·자원투입·환경배출 등 분석·지원

- 중소기업 청정제조 기술개발 기반 구축
  - 지역기반 중소 제조업체의 청정공정기술 개발·적용 지원
-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술기반 구축
  - 환경규제 대응 제품·공정기술 개발, 규제대응 기술인력 양성

□ 추진방향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정제조 설비·공정·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로 경영활동에 적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

## 2. 지원대상분야

□ 기반구축

- 청정생산기술과 녹색경영의 보급·확산
  - 지역기반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진단 및 청정생산 도입 지원
  - 제품서비스화를 도입하려는 제조업에 대한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사업화 전략 지원

##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정보화 기반구축과 확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 판매 중심에서 제품서비스화로의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각 세부과제 3억원 내외
- 지원기간 : 2년(기 참여지역사업) 또는 3년(신규 참여지역사업)
- 선정방식 : 사업계획서 제출(신청기관) → 평가(발표평가, 상대평가) → 선정 및 협약(연차별 협약)

지원조건

- 지자체의 Matching Fund 부담 필수 : 1억원 내외 현금 부담

–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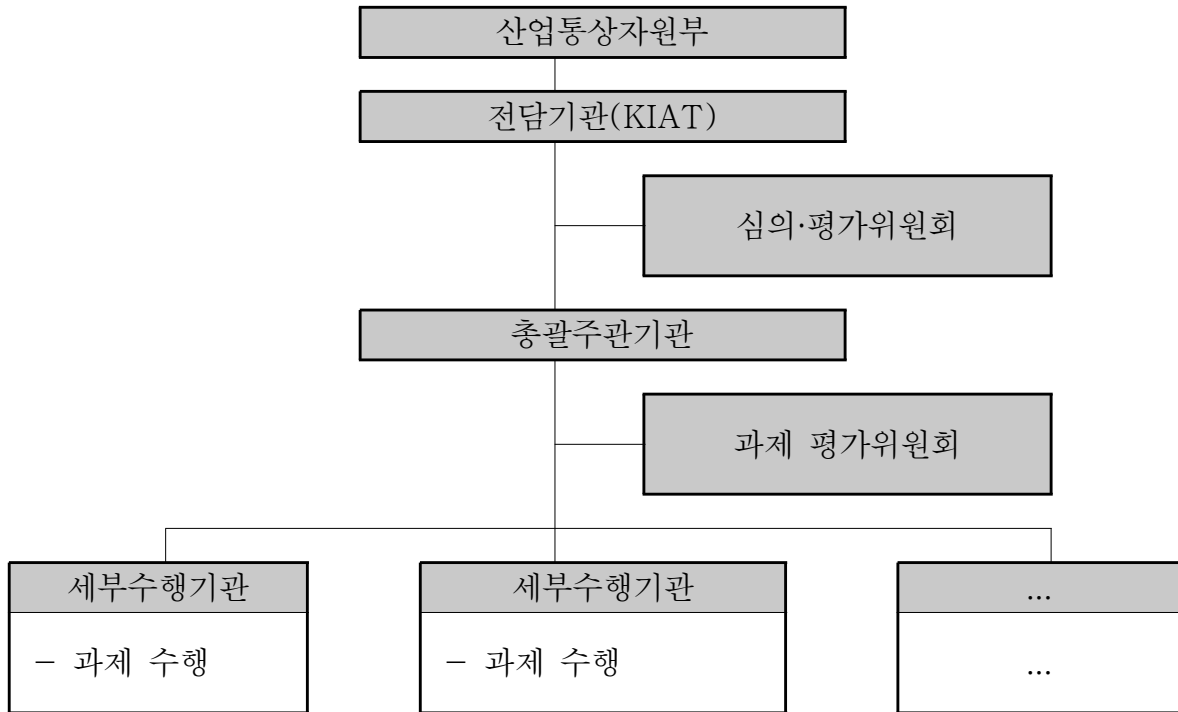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 확보/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평가관리 업무 수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총괄업무 수행(세부과제 도출 및 관리)

○ 세부주관기관 : 세부과제 수행



□ 추진절차

사업기획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세부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추적 평가	전담기관	성과평가위원회

## 6. 추진일정

월별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월별 End-Product
3	▪ '13년도 추진계획 수립 및 확정	▪ '13년도 추진계획
6	▪ 신규 세부과제 공고	
7	▪ 신규 세부과제 선정 발표	▪ 신규 세부과제 2개
8	▪ 연차평가 실시 및 협약실시	▪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11	▪ 청정제조 워크숍 실시	▪ 신규 및 계속 세부과제

## 7. 제출서류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연구계획서, 중견기업 확인서, 수행기관의 결산재부제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기업관련 증빙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보고서(연구비 집행결과내역 포함)

기관별 : 과제별 제출에 대한 기관 확인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제23조, 제25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6조의2, 제13조~제19조)
- 산업기술혁신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기타서류

○ 사업공고(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ncpc.or.kr](http://www.kncpc.or.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송충섭 사무관  
(Tel : 02-2110-5136, E-mail : [schs1390@motie.go.kr](mailto:schs1390@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박상준 선임연구원  
(Tel : 02-6009-3293, E-mail : [kiparang@kiat.or.kr](mailto:kiparang@kiat.or.kr))

##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전성규 사무관

(전화 : 02-2110-5512, E-mail : skjun@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소 기술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33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05백만원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기술혁신역량 강화에 기여
-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융합·원천기술 및 혁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스템산업, 창의산업 분야 등에 대한 기반조성 추진

#### □ 사업목표

- 연구 시설·장비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구축·운영 지원
-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추진방향

- 연구기반구축 로드맵 및 중장기 성장전략에 따른 핵심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반, 생산기반 등을 중점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엄격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집행을 효율화

## 2. 지원대상분야

산업융합기반구축

- 산업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디자인기반구축

-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와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디자인, 해외진출 등의 연구기반구축을 지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

- 플랜트·원전·건설 등 대형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엔지니어링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성장동력기반구축

-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발전에 시급히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

### 3. 신청자격

지원대상 기관

○ 출연(연), 대학, 연구소, 협회 등 비영리기관

신청자격

○ 접수일 현재「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각 과제별 평균 연 1,805백만원

○ 선정방식 : 지정공모 또는 정책지정

- 사업 시행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신청기관→전담기관) ⇒ 신규평가(발표평가) ⇒ 선정(1년마다 연차평가 실시)

\*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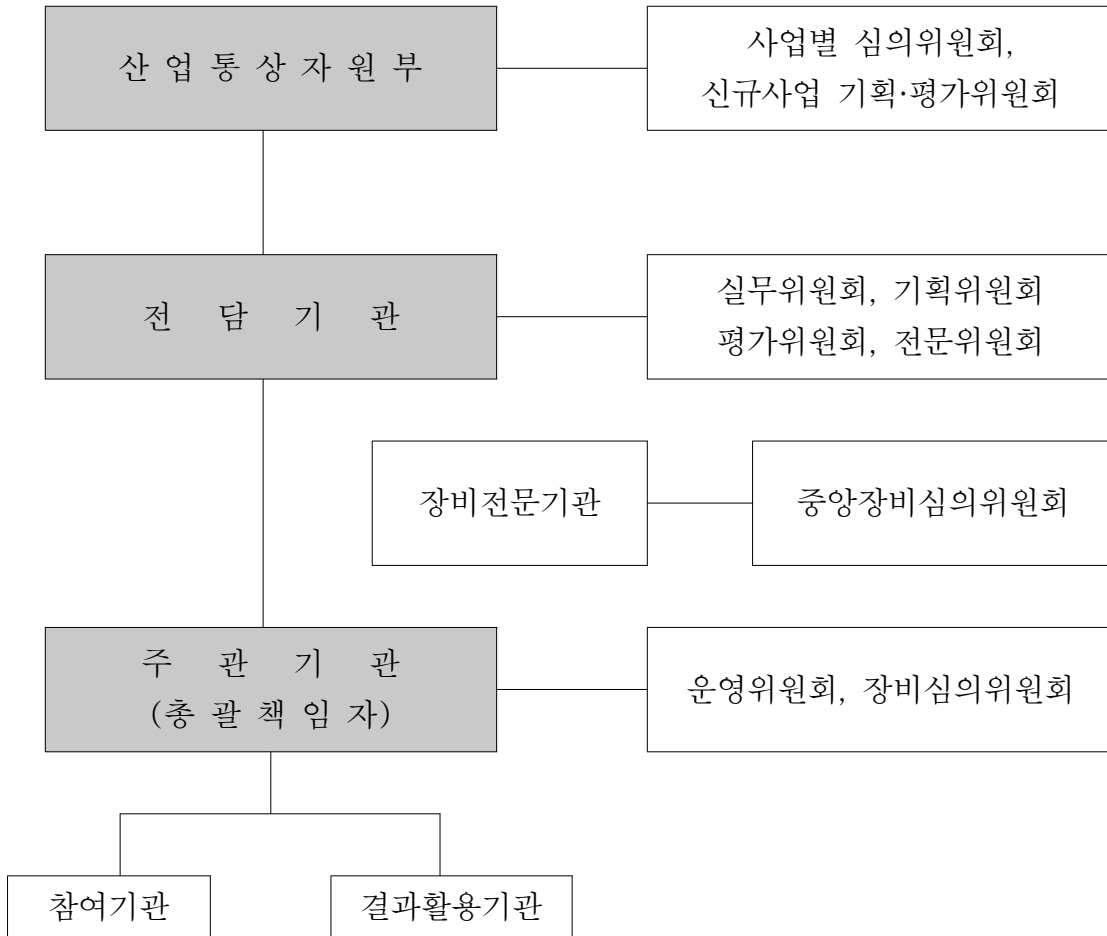
○ 지원기간 :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3년~5년 이내

지원조건

○ 출연(매칭 여부 및 비율은 내역사업에 따라 상이)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연구기획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업 평가 및 관리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또는 지정)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sup>1)</sup>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sup>2)</sup>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 '13. 2~4월 : 수요조사 공고 및 접수, 평가
- '13. 4~6월 : 신규과제 기획위원회 운영
- '13. 7~8월 :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지정공모)
- '13. 8~9월 : 신규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확정,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의 추진일정이며, 내역사업별로 별도 진행됨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사업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연구업적 등 포함), 협약체결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결과내역 포함), 연차보고서

### 기관별 : 과제별 제출에 대한 기관 확인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 산업기술혁신 공동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기타서류

- 사업공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http://www.kiat.or.kr))
- 규정 및 서식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http://www.kiat.or.kr))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전성규 사무관  
(Tel : 02-2110-5512, E-mail : [skjun@motie.go.kr](mailto:skjun@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박상준 선임연구원  
(Tel : 02-6009-3293, E-mail : [kiparang@kiat.or.kr](mailto:kiparang@kiat.or.kr))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이남용사무관

(전화 : 02-2110-5662, E-mail : sodl@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국제협력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6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백만원

###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국내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자체기술개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기술을 보유한 협력대상국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공동연구 지원,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교류,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 촉진

사업목표

- 기술의 대형화, 융·복합화와 기술수명 단축 등으로 인한 급변하는 기술환경을 대응하여 독자적 기술개발의 한계 극복 및 글로벌 시장 진출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방향

- 국내외 기관간 컨소시엄을 통한 지재권획득, 해외시장진출 등 실질적 국제협력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지원 강화
- 다자간 상용화 네트워크 및 양자간 국제공동 R&D에의 중소·중견 기업 참여 유도를 통한 기업의 국제공동 기술개발 역량 강화

## 2. 지원대상분야

사업분야

- 산업기술분야
- 국제공동R&D사업은 국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EUREKA 및 FP 사업은 한-유럽 기술협력 지원

##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EUREKA, FP 참여 과제는 국가간 매칭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국내기관만 지원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세부유형별 주관, 참여기관 자격>

지원유형		신청자격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R&D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참여기관 : 해외 1개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유럽 기술 협력	EURE KA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레카 정회원 1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학·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국내기관) 참여기관 : 유레카 정회원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EU FP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완료한 과제의 국내기관) 참여기관 :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의 연구기관(산·학·연)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규모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46,034백만원 (신규 및 계속 과제 포함)

선정방식 : 사업 공고문을 통한 자유공모를 원칙으로 함

- 사전 제안서 작성⇒평가(서면 평가)⇒사업계획서 작성·제출(발표평가)⇒  
선정(매년 실태조사평가, 중간평가 실시)

○ 사업내용 : R&D 사업

지원유형		지원내용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로 국내 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공동R&D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네트워크, R&D기획 등을 수행하는 과제 지원 (국제기술협력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과제로 차년도 R&D과제, EUREKA/EU FP과제로 확대 발전)
국제공동R&D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기술협력 전략 및 정책방향*에 맞는 과제 지원 * 국제기술협력의 시급성,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업에 필요한 과제 지원
유럽 기술 협력	EUREKA	국내기업이 유럽 다자간 네트워크인 EUREK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유럽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제 지원 * 유레카 세부 프로그램 (www.eurornd.or.kr) 참조
	EU FP	유럽 EU FP(Framework Program)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 과제 지원 * EU FP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www.eurornd.or.kr) 참조

□ 지원조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5. 추진체계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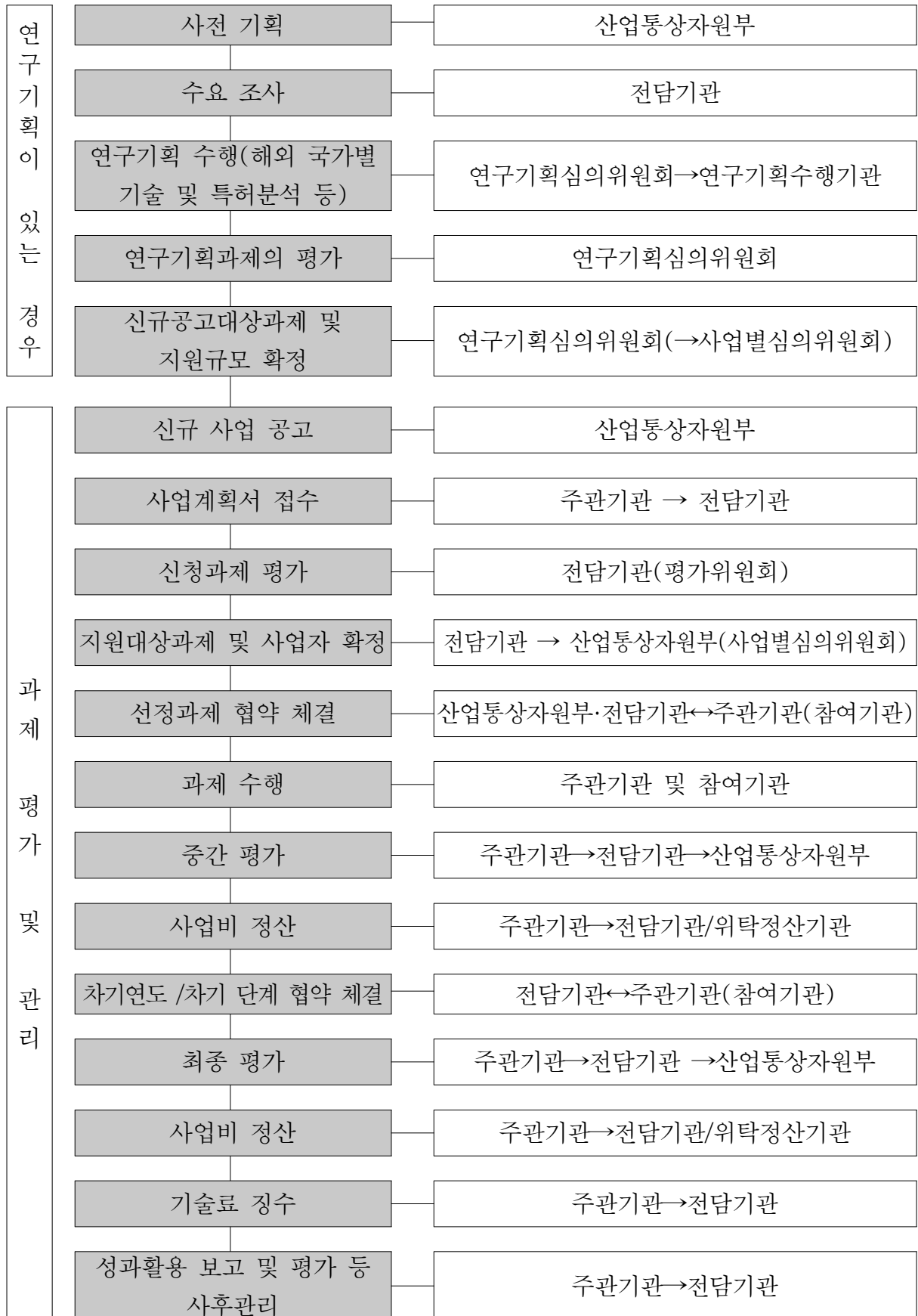
###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방향 설정(사업추진계획), 예산 확보/지원, 평가결과 최종확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 및 수행관리, 사업 성과 관리 수행

※ 사업집행절차 : 예산확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추진계획수립(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최종확정(산업통상자원부)

<추진체계 및 절차>



## 6. 추진일정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업 무	일 정	비 고
타당성 IDEA 접수	'13.4.30 까지	www.pms.re.kr
↓		
주제선정위원회	'13.5월말 까지	주제(IDEA) 선정
↓		
사업심의 위원회	'13.6월초 까지	지원대상 및 예산 확정
↓		
공고 및 접수	'13.7월중~8월말	10페이지 내외 사업계획서 제출
↓		
타당성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13.9월	복수과제 도출
↓		
지원과제 협약	'13.10.1~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국제공동R&D)

업 무	일 정	비 고
Pre-Proposal 접수	'13.4.30 까지	www.pms.re.kr
↓		
주제선정 위원회	'13.5월말 까지	주제선정 (2~3배수 과제 포함)
↓		
사업심의 위원회	'13.6월초 까지	지원분야 및 예산확정
↓		
Full-Proposal 접수	'13.9.30(금) 까지	과제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대상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접수
↓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13.10말 까지	1배수 선정
↓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	'13.11.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 제출서류**

□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IDEA : 2페이지 이내 (국문)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사업계획서 : 하반기 별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 제공 예정

- 국제공동R&D 과제
  - Pre-Proposal (사전사업계획서) : 5페이지 이내 (국문)
  - R&D과제 Full-Proposal (사업계획서) : 전담기관은 Pre-Proposal 평가 후 선정과제에 한해 개별 제출 요청
- 기타 서류(본 사업계획서 제출시)

No	서류명	비 고
1	온라인 과제 지원서 (웹 입력)	웹 입력
2	사업 계획서	표준 서식
3	Dun and Bradstreet(D&B) Report*	기업만 제출
4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표준 서식
5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해당 시)	해당시
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해당시
7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8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9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해당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EU FP사업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Consortium Agreement 사본, GPF(Grant Agreement Preparation Form) 추가 제출 필요

\*\*\* 그 외 서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가 정하는 바에 따름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 기타서류
- 신청요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http://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http://www.pms.re.kr))의 해당공고 첨부파일 참조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이남용 사무관  
(Tel : 02-2110-5662, E-mail : [sodl@motie.go.kr](mailto:sodl@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심지혜 선임연구원  
(Tel : 02-6009-3181, E-mail : [jhshim@kiat.or.kr](mailto:jhshim@kiat.or.kr))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한영열 사무관

(전화 : 02-2110-5396)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등
(2) 연구수행주체	중소·중견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2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9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22백만원

### 1. 사업개요

목적

-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사업화유망기술 및 우수BM(Business Model)에 대한 사업화지원을 통하여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글로벌시장 창출·선점 가능성이 높은 우수BM(Business Model)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과정을 지원하고,
-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

## 2. 지원대상분야

- 전 산업분야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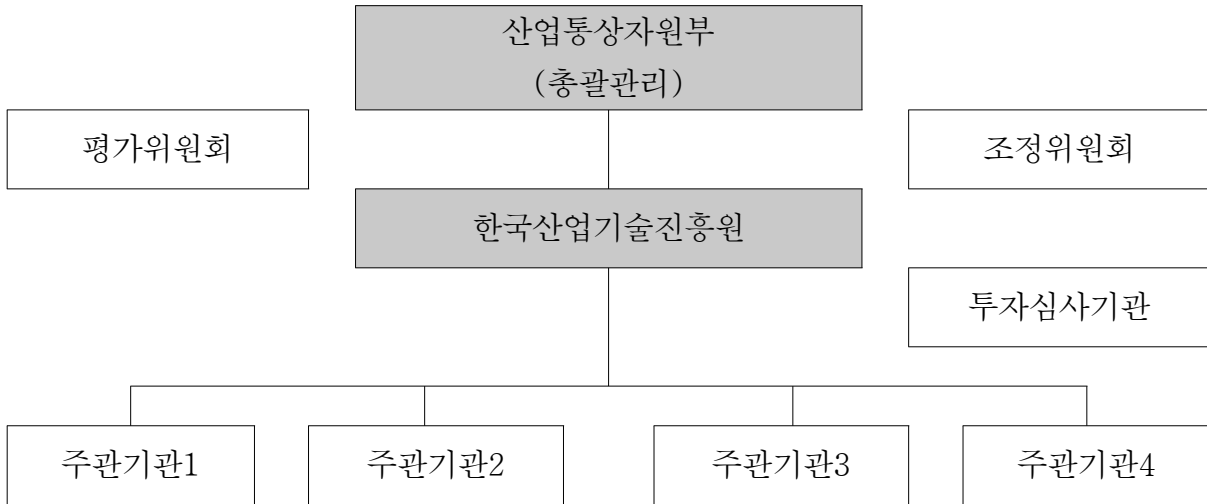
-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 중소·중견기업
- 글로벌공동형(BM기획)
  -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 기관연계형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출연(연), 대학 산학협력단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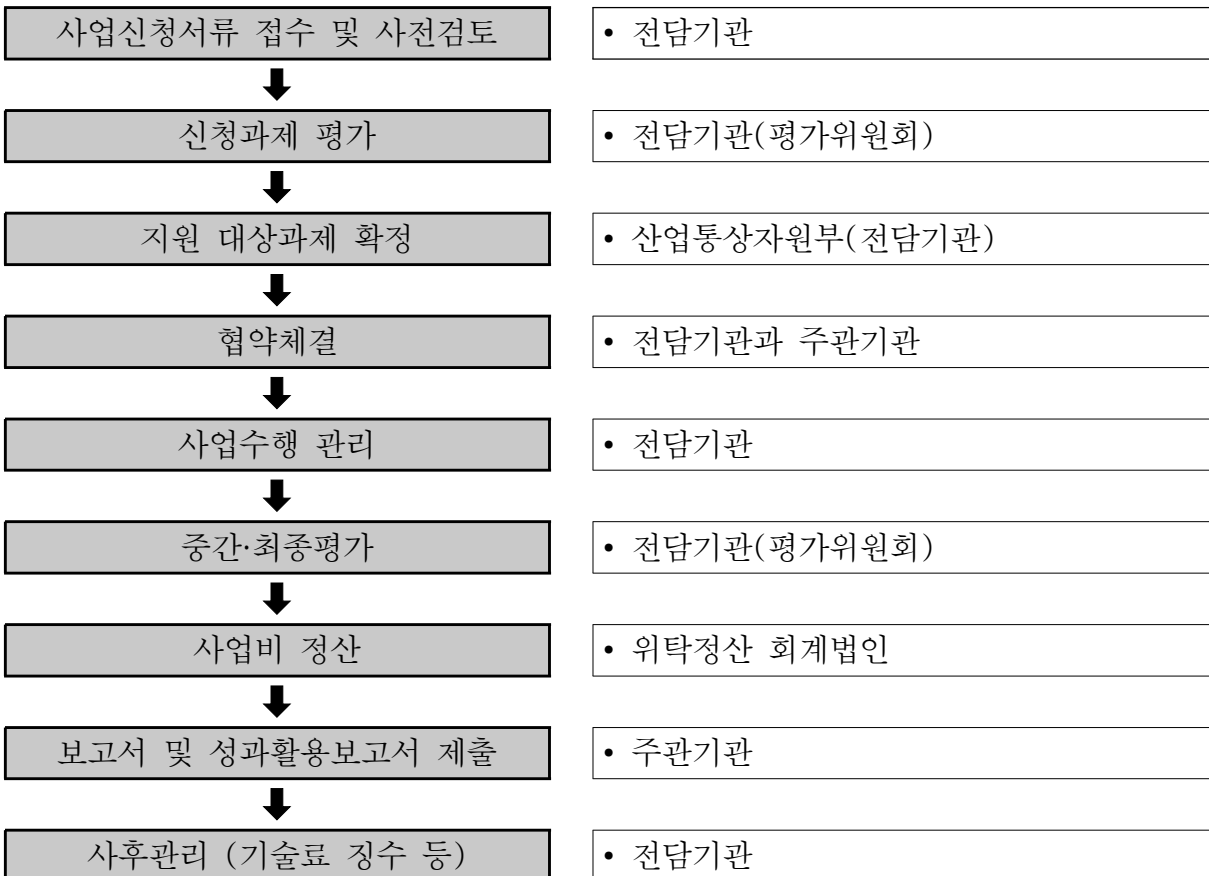
- 지원규모 : 글로벌공동형 연1,500백만원/2년이내, 기관연계형 과제당 1.5억원 내외/1년 이내
- 선정방식 : 자유공모
- 지원비율 : 글로벌공동형 총사업비의 60%이내, 기관연계형 총사업비 전액
- 지원조건
  - 산학연 및 기술사업화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민간투자유치등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7~8	2013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9~11	신규평가 실시
10~12	신규선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선정신청서 :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등
- 중간·최종평가지 : 중간·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등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지침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Tel : 02-2110-5396)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지원팀  
(Tel : 02-6009-4342, 4346)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정성훈 사무관

(전화 : 02-2110-4459, E-mail : sjung@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재료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46.58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380백만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뿌리기업 공유 R&D 인프라 조성 및 고도기술 지원체제 구축
  - 제조공정의 합리화, 생산성 향상, 제조원가 절감, 자원순환 지원

사업목표

- 뿌리산업 주축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시스템 구축
  -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지원 지역거점 확보
- 지역거점별 성장동력형 뿌리기업 집적 특성화 전문산업단지 육성 지원
  - 산업과학 발전의 토대 구축 및 글로벌 뿌리기업 전문산업단지 육성

추진방향

- 권역·지역별 특화뿌리산업과 연계하여 R&D기반의 뿌리중소기업 공동활용 파일럿 플랜트 공정장비 구축과 뿌리기업 대상 고도기술지원을 통해 뿌리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증대

## 2. 지원대상분야

센터구축

- 뿌리중소기업에 대한 근접 기술지원 및 R&D 인프라 조성을 위해 뿌리기술 지역거점을 마련하여 개방형 R&D 기술혁신 센터 구축

장비구축

- 지역거점센터에 글로벌 표준 수준의 핵심 제조공정개발 R&D기반 뿌리중소기업 공동활용 파일러 플랜트 공정장비 중심으로 장비 구축

기술지원

- 뿌리중소기업의 제품 양산을 지원하고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파일럿 플랜트 공정장비를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지원을 통해 뿌리중소기업 대상으로 고도기술지원

## 3. 신청자격

지원대상 기관

- 출연(연), 대학, 연구소, 협회 등 비영리기관

신청자격

- 접수일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4,380백만원

○ 선정방식 : 정책지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신청기관→ 전담기관) ⇒ 신규평가(발표평가) ⇒ 선정(1년마다 연차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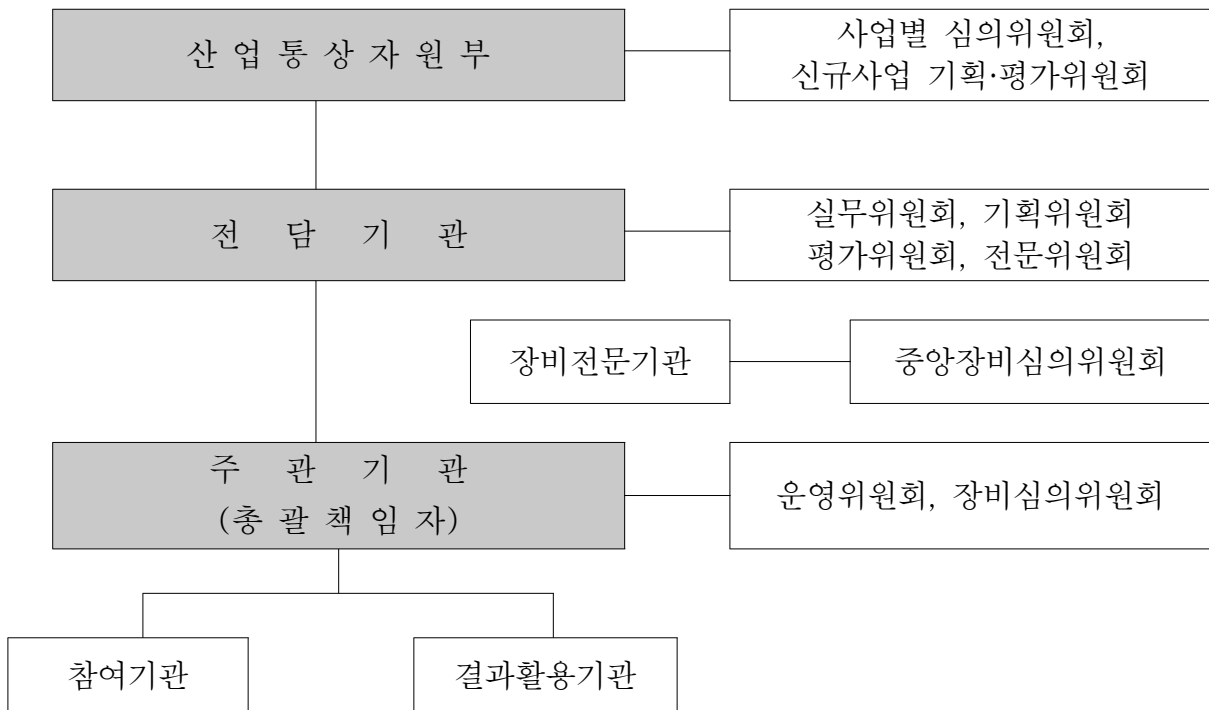
○ 지원기간 : 36~60개월

지원조건

○ 출연(지자체 매칭)

##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 '13. 6월 : 추진 기본계획 수립
  - '13. 6월 : 연차평가위원회 개최
  - '13.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13. 7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과제별
  - 사업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연구업적 등 포함), 협약체결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결과내역 포함), 연차보고서
- 기관별 : 과제별 제출에 대한 기관 확인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 산업기술혁신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기타서류

- 규정 및 서식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http://www.kiat.or.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정성훈 사무관  
(Tel : 02-2110-4459, E-mail : [sjung@motie.go.kr](mailto:sjung@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서남철 연구원  
(Tel : 02-6009-3291, E-mail : [ncseo@kiat.or.kr](mailto:ncseo@kiat.or.kr))

## 소재종합솔루션센터구축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이대길 사무관

(전화 : 02-2110-5507, E-mail : ldg1115@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재료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대학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0개월 ~ 1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8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07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소재인프라(소재정보은행, 테스트베드)의 유기적 연계 및 확충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소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시키고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2. 지원대상분야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4대 분야별 전문연구소(Hub)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구축

지원범위

- 소재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 소재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 국내·외 소재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3. 신청자격

#### □ 지원 자격

- 주관기관 :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등
  - 참여기관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 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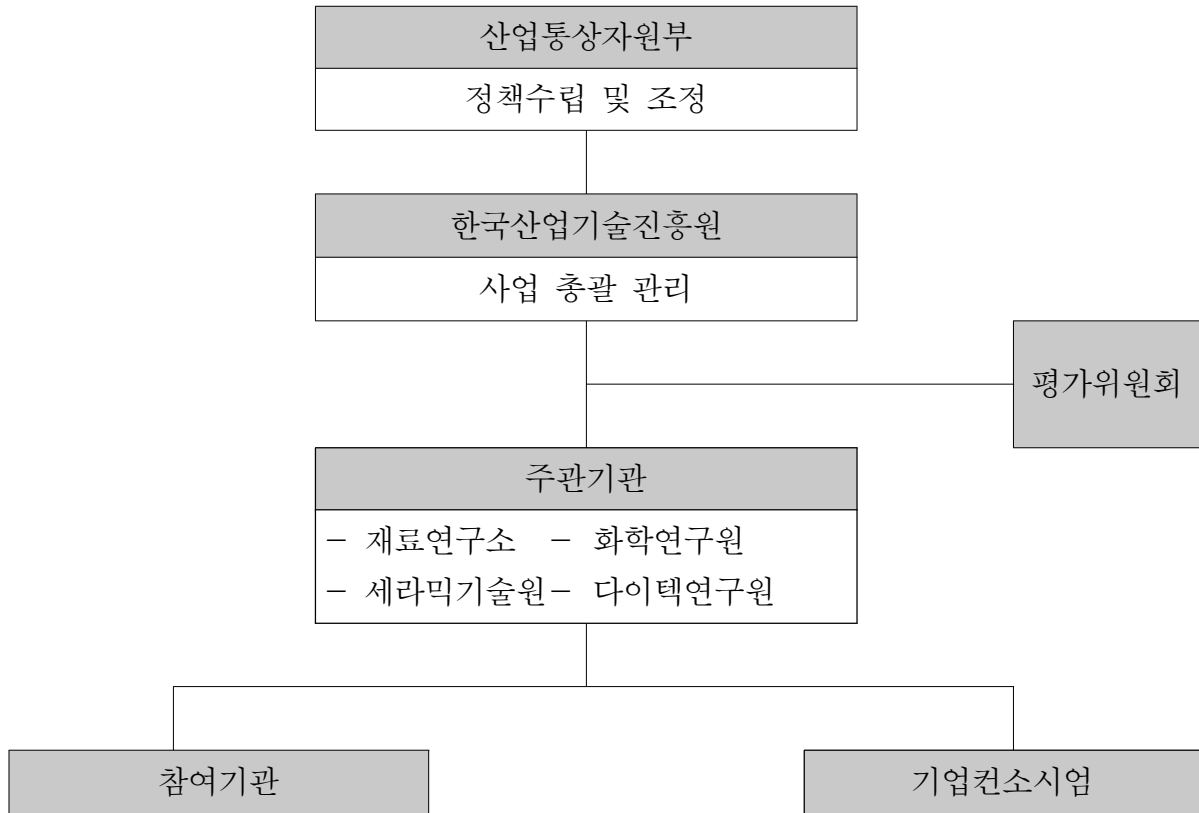
- 소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생성·가공하여 기업, 연구소 등이 요구하는 맞춤형 응용정보를 실시간 보급
- 소재전문연구기관의 기반(H/W, S/W, 인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설계·해석 등 제품개발 관련 애로기술을 지원
- 개발소재의 시험생산, 양산가능 테스트 지원을 위한 준양산 공정설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사업화 리스크 감소 및 대량생산 유도

####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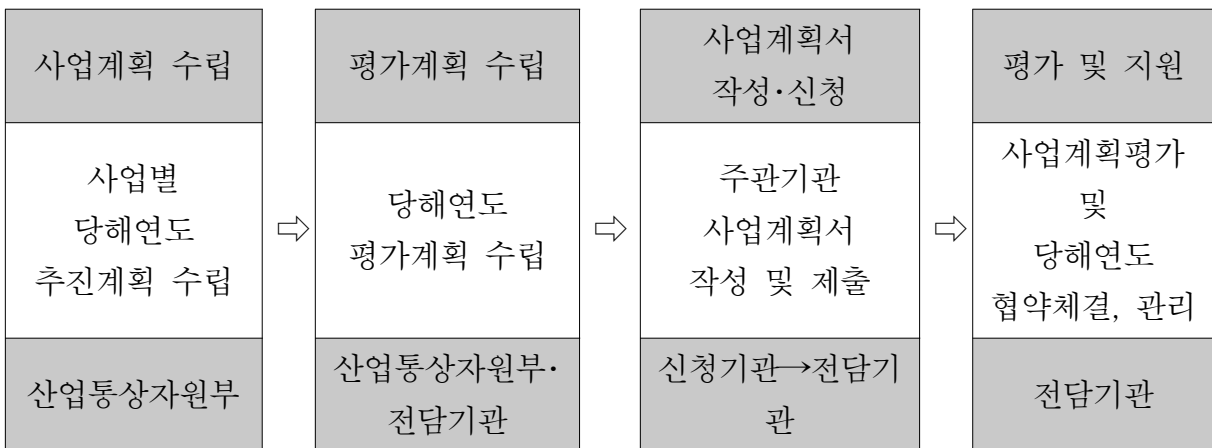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접수	연차평가 실시	협약 및 사업비지급
'13.1 ~ 3월	'13.5월	'13.6월	'13.7월	'13.8월

## 7. 제출서류

과제별

- 사업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결과활용 등 포함), 결과활용기관 참여확약서 등
- 선정 이후 연차별 관리 :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결과내역 포함), 연차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기관별 : 과제별 제출에 대한 기관 확인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이대길 사무관  
(Tel : 02-2110-5507, E-mail : ldg1115@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이승규 연구원  
(Tel : 02-6009-3927, E-mail : sklee8381@kiat.or.kr)

##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이대길 사무관

(전화 : 02-2110-5508, E-mail : ldg1115@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부품(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및 소재(화학, 금속, 섬유)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0개월~1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7.18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86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신뢰성 평가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부품소재 기업의 신뢰성 평가·인증을 지원하는 사업

### 2. 지원대상분야

- 기반구축 : 부품(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및 소재(화학, 금속, 섬유)의 신뢰성 향상
- 신뢰성평가 지원, 신뢰성 평가기준개발 등을 위한 장비구축

- 가속수명시험법, 선진제품 비교평가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
- 신뢰성 분야 세계적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술세미나 및 교육 추진

### 3. 신청자격

-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 지정한 기계 등 8대 기술분야 별 지정된 신뢰성평가센터 (6개 실시기관 및 4개 참여기관)

분야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금속	화학	섬유
실시 기관	한국기계 연구원	자동차부품 연구원	전자부품 연구원	포항산업 과학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참여 기관	-	-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한국화학시험 연구원	FITI시험 연구원
	-	-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0개 신뢰성평가센터를 대상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
    - 신뢰성평가 지원, 신뢰성 평가기준개발 등을 위한 장비구축
    - 가속수명시험법 개발, 선진제품 비교평가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 등
  -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 신뢰성 시험 지원, 평가기준 개발 및 배포
    - 가속수명시험법, 비교평가 등 각종 DB지원 등
  - 신뢰성 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술세미나 및 교육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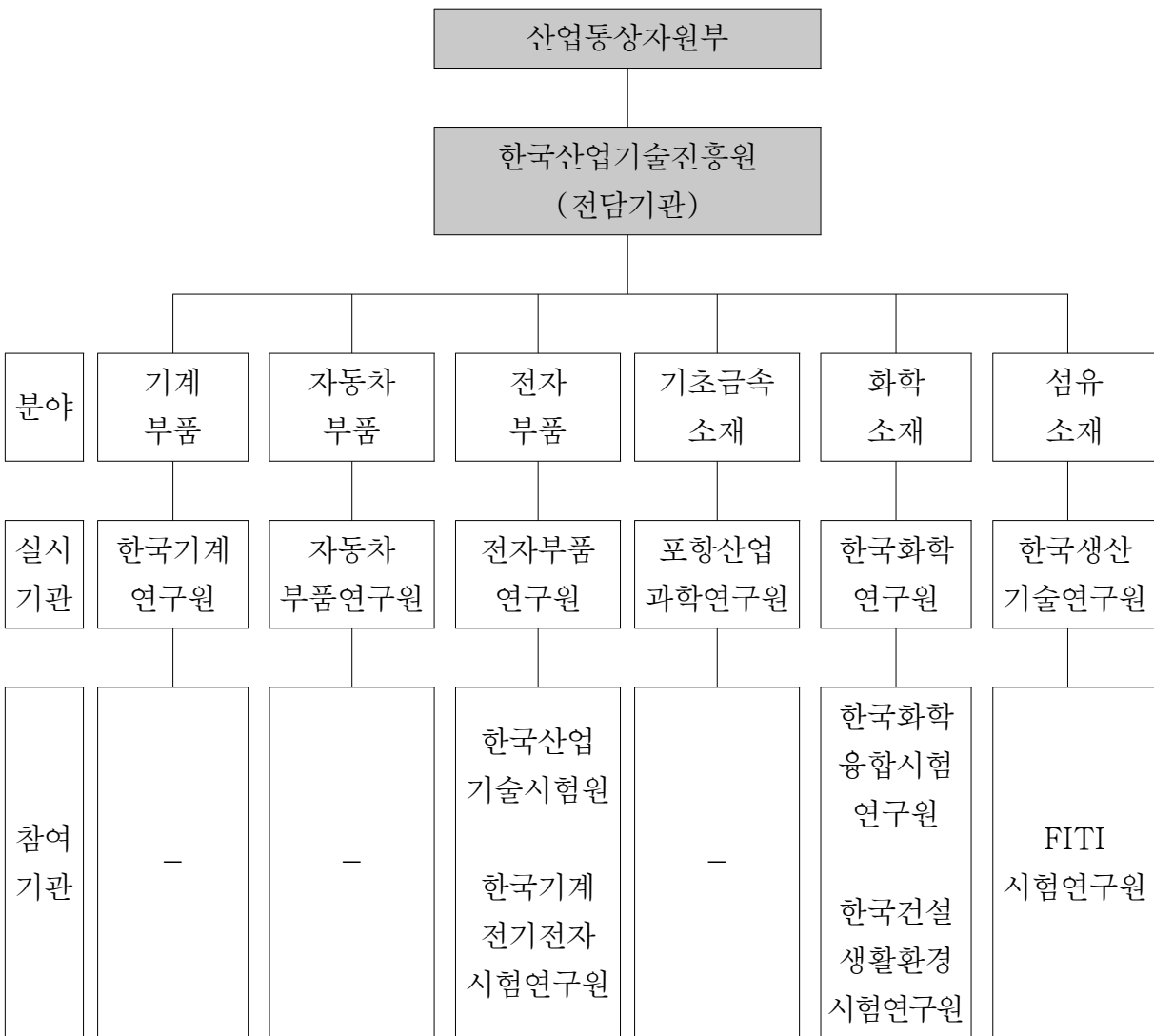
- 국내 기업, 연구소의 신뢰성 분야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 신뢰성 선진기관과 연계한 신뢰성 교육 추진 등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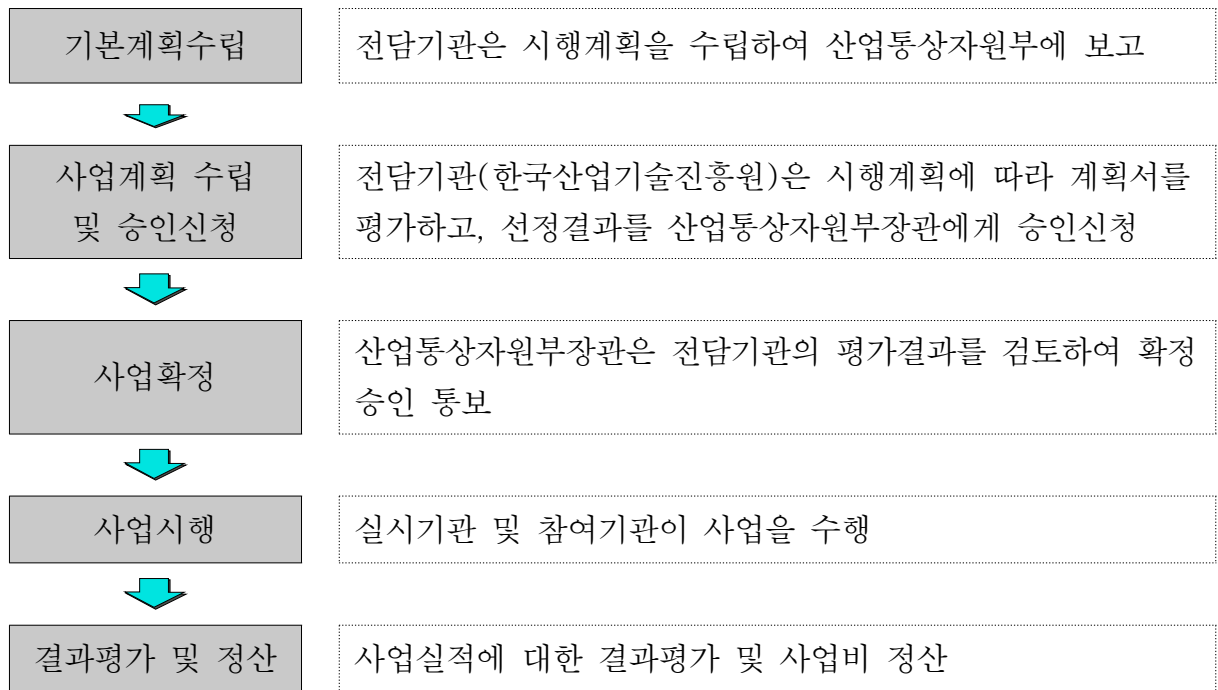
- 총 사업비의 25%이상 민간출자부담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관련규정 : 산업기술 기술혁신사업공동운영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협약 및 사업비지급	결과평가 실시
'13. 3월	'13. 5월	'13. 6월	'14. 4월

**7. 제출서류**

□ 과제별

- 사업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결과활용 등 포함), 참여기관 참여확약서 등
- 선정 이후 연차별 관리 :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결과내역 포함) 등

□ 기관별 : 과제별 제출에 대한 기관 확인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산업기술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지원근거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이대길 사무관  
(Tel : 02-2110-5508, E-mail : ldg1115@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임현주 선임연구원  
(Tel : 02-6009-3922, E-mail : jury@kiat.or.kr)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이대길 사무관

(전화 : 02-2110-5507)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제조업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1개월~24년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9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0백만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뢰성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 등)을 지원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 2. 지원대상분야

-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섬유·화학 등 국내에 기반을 둔 소재부품 관련 제조업 전분야 기업, 대학, 연구기관

\*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제조업 외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기 지원 및 유사과제, 정부지원 사업의 의무 불이행 및 제재중인 경우 지원 제한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예산

○ 신규 예산 : 정부출연금 100억원 내외(50개 과제 내외)

과제유형	수행기관	지원기간(정부출연금)
수요기업연계형 (25개 내외)	소재부품기업+국내외수요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2년 이내 (연간 3억원 내외)
자립형 (25개 내외)	소재부품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1년 이내 (연간 1억원 내외)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 규모는 평가에 의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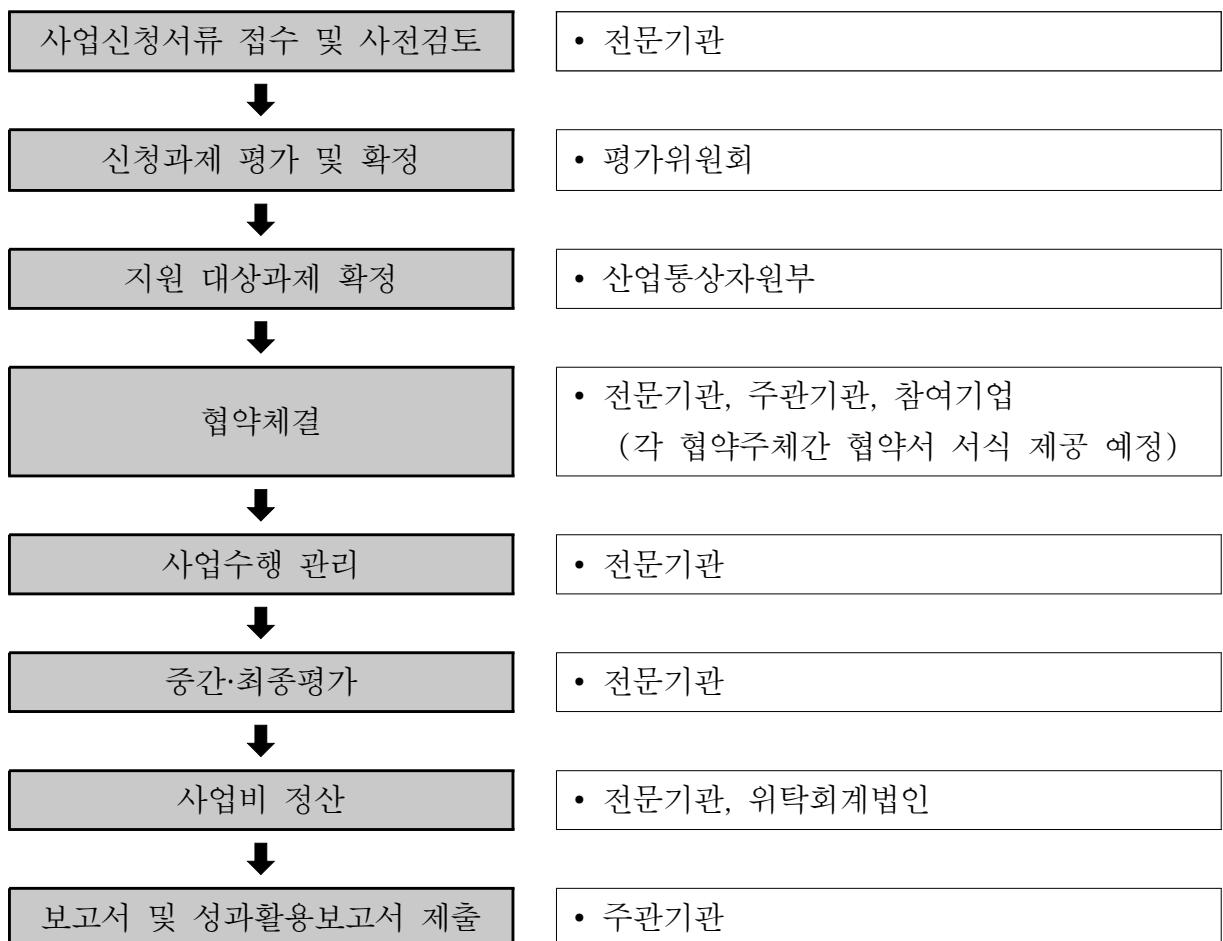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 신뢰성지원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의 고장해결,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지원
  - \* 수요기업연계형(상생형) : 소재부품기업,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완제품 및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을 추진(5억/년, 2년 이내)
  - \* 자립형 : 소재부품기업이 생산하는 소재부품(단품)에 대해 신뢰성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신뢰성 향상을 추진하고 수요기업을 모색(1.5억/년, 1년 이내)

□ 지원조건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 규모는 평가에 의해 결정

### 5. 추진체계 및 절차



## 6.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5.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6.17~21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7. 초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13. 7. 중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3. 7. 말
정부출연금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7. 말

##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구매확약서(또는 MOU), 우대배점 증빙서류
  - 소재부품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계획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구매확약(MOU) 1부 : 구매확약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수요기업연계형에 해당)
- \* 평가 후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추가 구비서류 접수

## 8. 관련자료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이대길 사무관  
(Tel : 02-2110-5507, E-mail : ldg1115@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윤형기 선임연구원  
(Tel : 02-6009-3923, E-mail : yhk7522@kiat.or.kr)

## 조선기자재경쟁력강화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 플랜트과	박진영 주무관

(전화 : 02-2110-5623, E-mail : sam7230@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계(조선)
(2) 연구수행주체	기타
(3) 지원목적	국제협력,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0개월 ~ 1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억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인 조선기자재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글로벌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기술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조선기자재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 촉진

사업목표

- 세계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Global Player로서의 위상 확보
- 세계 조선해양기자재 시장을 견인하는 Global Best Practice 구현

지원방향

- 조선기자재 수출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 A/S네트워크 구축 및 엔지니어 기술 교육 등 기술사업화 글로벌 인프라 구축 지원
- 조선기자재 직수출을 위한 사이버 기술시장 운영 및 전시·상담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글로벌 기술 마케팅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국제협력

- 해외 A/S 네트워크 구축 및 온·오프라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인력양성

- A/S 엔지니어 기술 교육

##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09년 ~ 2014년
- 지원규모 : 63억원('09~'13년까지 누적액)
- 선정방식 : 정책지정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09	'10	'11	'12	'13	합계
지원금액(국고)	3,000	1,000	1,000	500	800	6,300
지원과제수	1	1	1	1	1	5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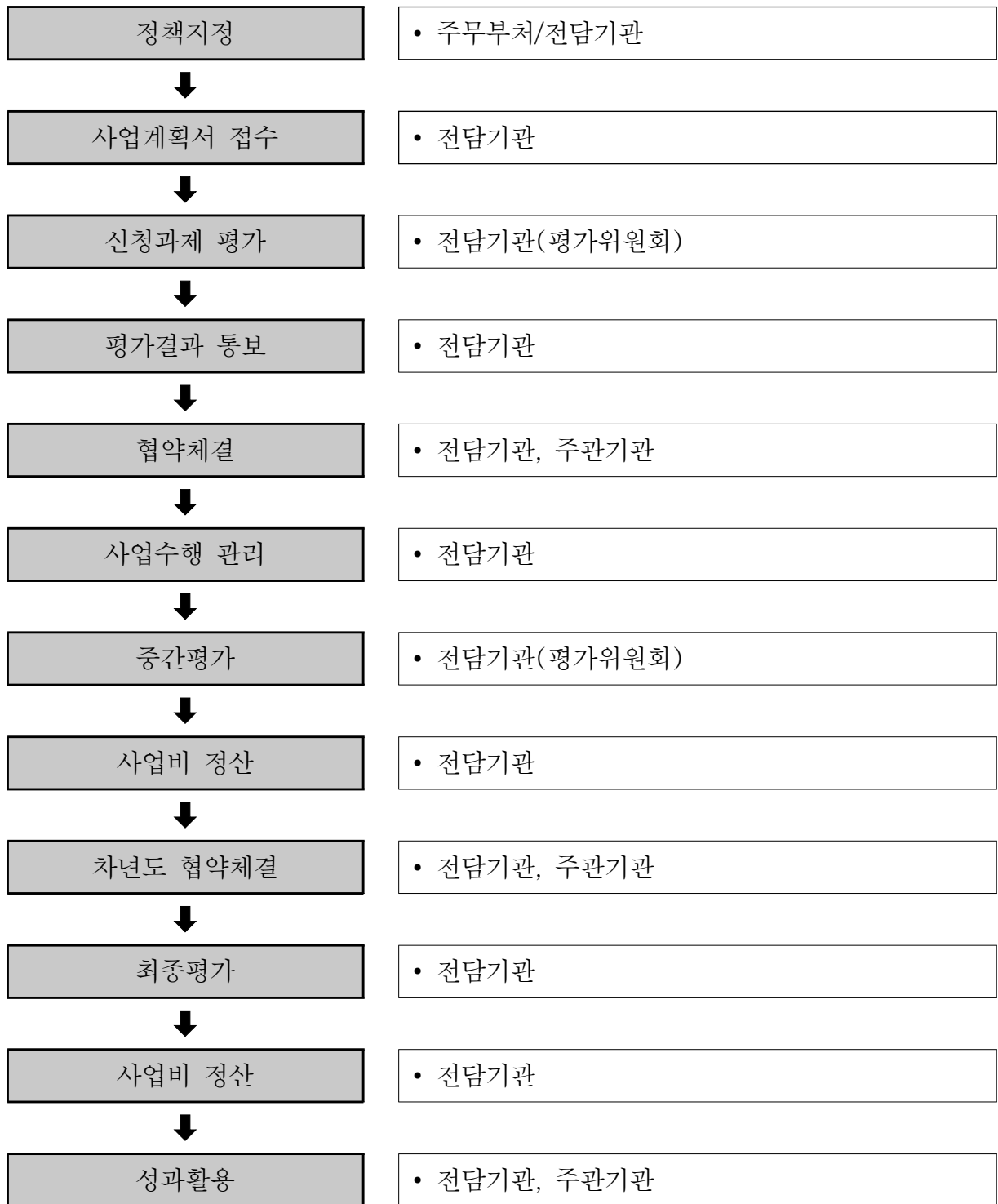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시행계획 수립, 예산 확보/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 주관기관 : 사업계획 및 수행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비고
1	▪ 계속과제 평가결과 통보	
3	▪ 계속과제 협약체결	
8	▪ 현장실태조사	
11	▪ 차년도 사업계획서 접수	
12	▪ 중간평가 및 사업비 정산	

## 7. 제출서류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연구계획서(연구업적 등 포함), 협약체결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연구비 집행결과내역 포함), 연차보고서

기관별 : 과제별 제출에 대한 기관 확인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기타서류

- 사업안내(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http://www.kiat.or.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박진영 주무관  
(Tel : 02-2110-5623, E-mail : [sam7230@motie.go.kr](mailto:sam7230@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김성열 선임연구원  
(Tel : 02-6009-3924, E-mail : [sykim@kiat.or.kr](mailto:sykim@kiat.or.kr))

##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태권

(전화 : 02-2110-5633, E-mail : tonewman@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8.14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03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신산업에 대한 연구·상용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선도 산업에 대한 응용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글로벌 선도거점을 육성

사업목표

- 수출전략형 그린 상용차부품(FGCV) 핵심기술개발과 연구지원을 위한 연구장비, 실증기반 구축으로 FTA 시대를 대비한 상용차부품의 경쟁력 확보와 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지원방향

- R&D사업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상용차의 대외 상품가치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높은 신뢰성·수명, 우수한 품질, 뛰어난 성능 및 안정성, 연비효과를 가진 상용차부품 및 차량 개발

## 2. 지원대상분야

기술개발

- 상용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 초대형 트럭용 다단 자동화 변속기 등 3개 과제

기반구축

- 상용차 상용차부품 R&D센터 및 복합주행성능시험장
  - 상용차 R&D센터 구축 등 1개과제

##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기술개발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대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참여 가능)

○ 기반구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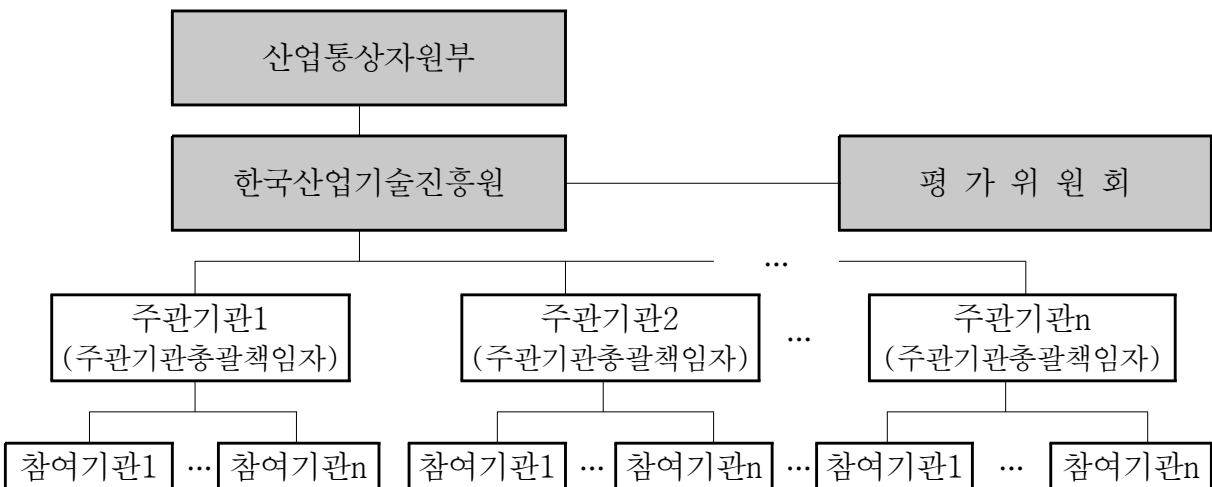
- 지원규모 : 88.14억원 (2013년도)
- 지원기간 : '12. 07 ~ '17. 06(총 60개월)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구축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지원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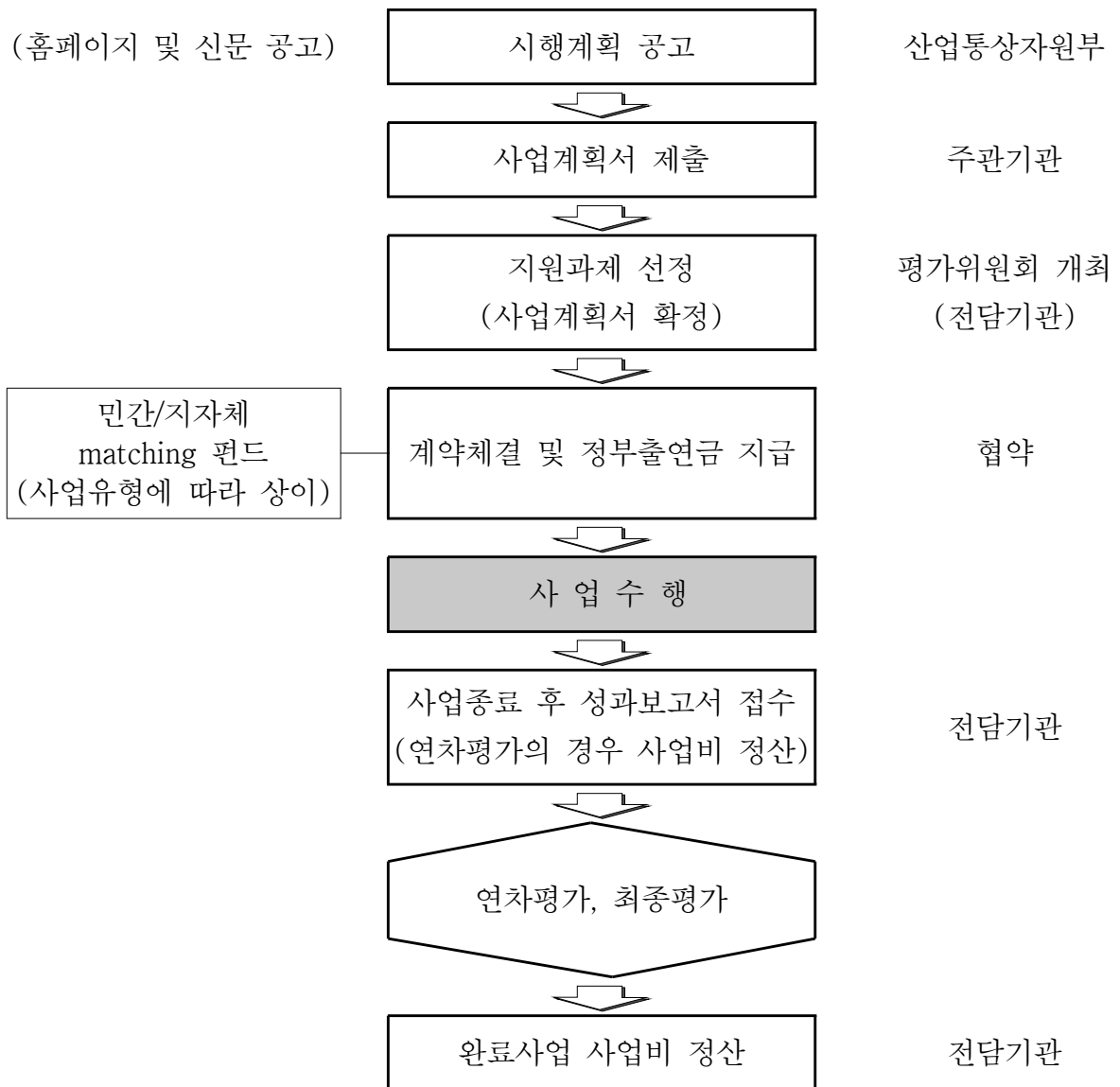
- 기술개발 : Matching fund 방식으로 총사업비의 50 ~ 75% 이내에서 지원
- 기반구축 : 지방비 Matching 조건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공동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 '13. 3월 : 과제기획
- '13. 5월 : 사업공고
- '13. 6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 '13. 7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요약서,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http://www.ritis.or.kr))에 전산 등록

## 8. 관련자료

### □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태권 사무관  
(Tel : 02-2110-5633, E-mail : tonewman@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장 옥 연구원  
(Tel : 02-6009-3788, E-mail : janguk2000@kiat.or.kr)

##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임용기

(전화 : 02-2110-5618, E-mail : bravelim@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로봇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	24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40.24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00 (기술개발)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 등 특화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로봇산업 허브를 구축하여 국가 로봇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사업목표

- 특화분야(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 등)의 로봇전문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시너지효과 동반 기대화

지원방향

-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 의료, 사회안전, 제조분야의 로봇산업을 육성

## 2. 지원대상분야

기술개발

- 로봇 관련 기술개발 사업
  - 의료, 사회안전, 중소제조 등 특화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기반구축

-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
  - 로봇융합 기술혁신을 위한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

##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기술개발
  - 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기반구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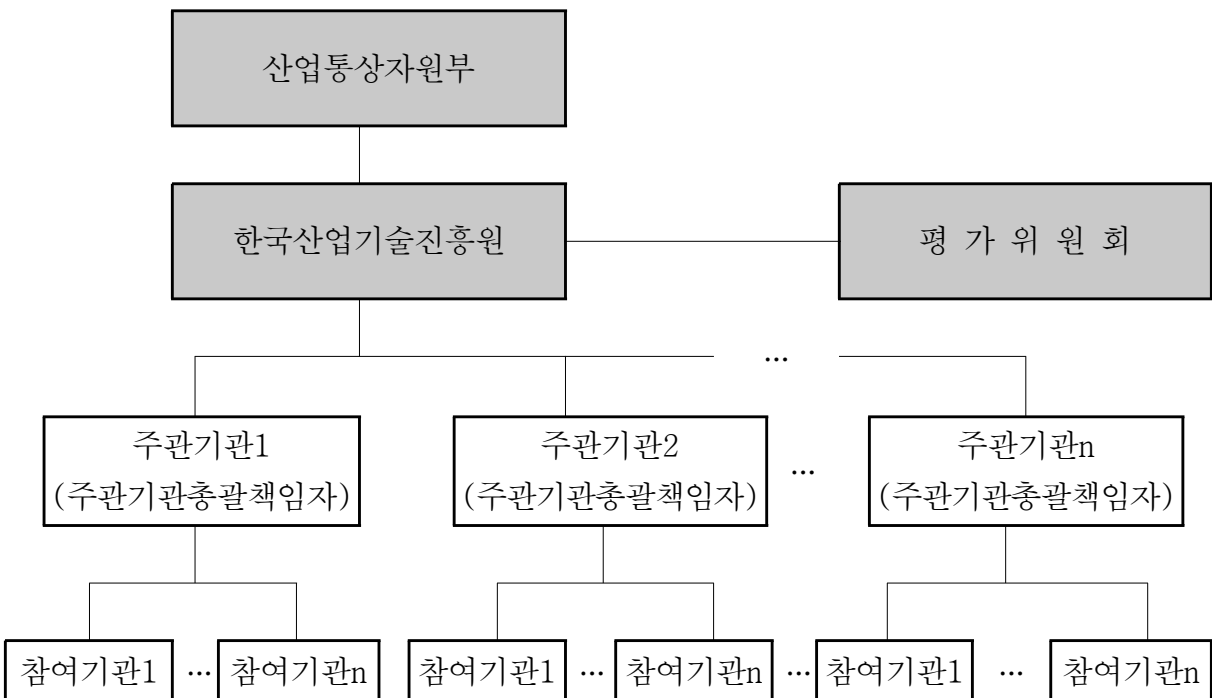
- 지원규모 : 140.24억원 (2013년도)
- 지원기간 : '12. 07 ~ '17. 06(총 60개월)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구축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지원

지원조건

- 기술개발 : Matching fund 방식으로 총사업비의 50 ~ 75% 이내에서 지원
- 기반구축 : 지방비 Matching 조건

##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7. 제출서류

###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요약서,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http://www.ritis.or.kr))에 전산 등록

## 8. 관련자료

### □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임용기 사무관  
(Tel : 02-2110-5618, E-mail : bravelim@korea.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장현규 연구원  
(Tel : 02-6009-3783, E-mail : jhk1029@kiat.or.kr)

##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태권

(전화 : 02-2110-5633, E-mail : tonewman@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계,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65.5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400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자동차(RE-EV, Range Extended Electric Vehicle)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전기차 분야의 시험평가/공동연구 센터 및 장비 구축으로 부품사업화 지원

사업목표

- 장거리 전기차(RE-EV, Range Extended Electric Vehicle) 요소기술 개발, 핵심부품 및 시스템 양산화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시스템 개발 및 기반 구축

지원방향

-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 전기자동차 분야 글로벌 선도 중핵 및 강소 부품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

## 2.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 차량 부품 및 시스템 분야
  - RE-EV구동모듈, 발전엔진, 전용 플랫폼, 에너지 관리, 전장부품, RE-EV 주행제어, 크래쉬 패드, 비회토류 자석 전자조향 등 8개 과제

기반구축

- 그린 전기자동차 분야의 시험평가/공동연구 센터 및 장비 구축
  - 그린카기술센터 구축 등 1개 과제

##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기술개발
  -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대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참여 가능)

○ 기반구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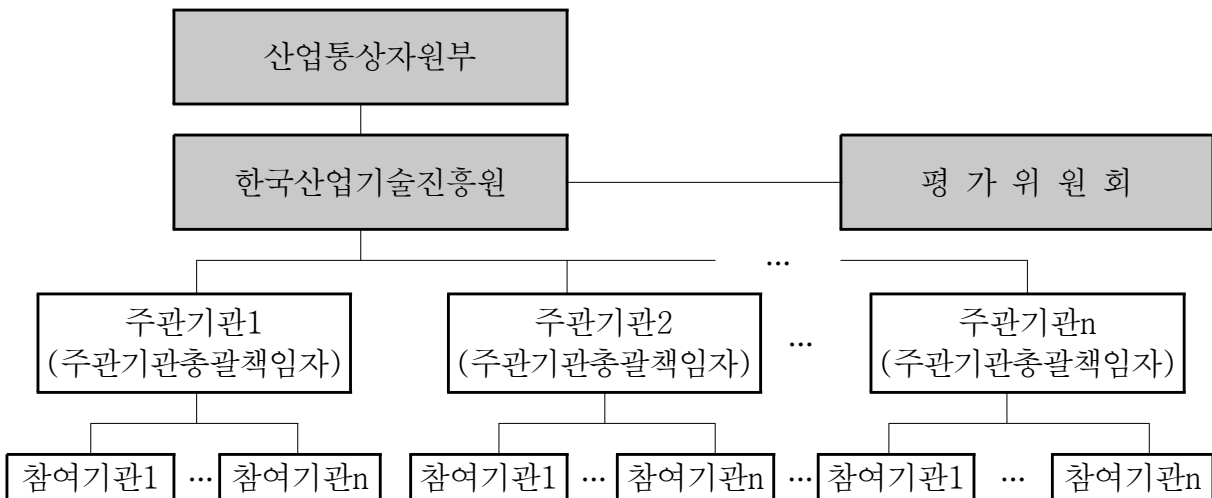
- 지원규모 : 165.5억원 ('13년도 국비)
- 지원기간 : '11. 09 ~ '16. 08(총 60개월)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구축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지원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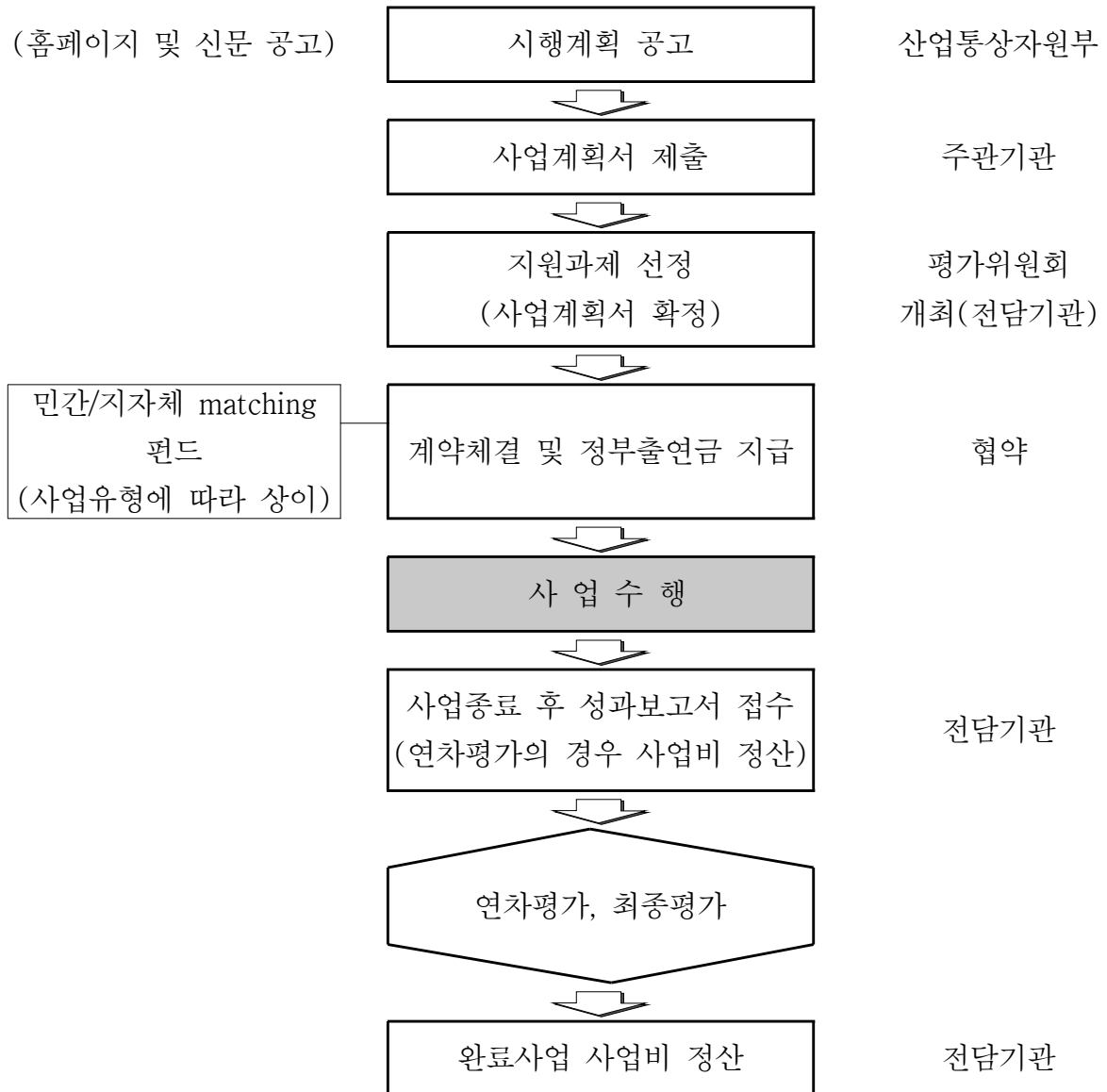
- 기술개발 : Matching fund 방식으로 총사업비의 50 ~ 75% 이내에서 지원
- 기반구축 : 지방비 Matching 조건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 '13. 3월 : 과제기획
- '13. 5월 : 사업공고

- '13. 6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 '13. 7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요약서,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http://www.ritis.or.kr))에 전산 등록

## 8. 관련자료

### □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기타서류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태권 사무관  
(Tel : 02-2110-5633, E-mail : tonewman@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장 욱 연구원  
(Tel : 02-6009-3788, E-mail : janguk2000@kiat.or.kr)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조현훈 사무관

(전화 : 02-2110-5603, E-mail : chhun007@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2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825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42

###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광역경제권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시도가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4개 광역경제권역 :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 2개 특별광역경제권역 : 강원권, 제주권

## □ 사업 목표

- 광역경제권별로 특성과 여건에 맞고 새로운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과제 지원
- 광역경제권별로 2~4개 선도산업을 대표주력산업 및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
- 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산업이 동반 발전하여, 권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 □ 사업의 추진방향

-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제시하고, 이를 산학연이 공동연구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
- 클러스터의 핵심 구성주체인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기획하고, 기업이 실질적 사업수행 주체로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추진
- 3년내 유망상품 개발을 목표로 R&D와 비R&D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을 중점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는 권역별 프로젝트 분야에 한하며, 세부과제는 공고문 참고

권역	프로젝트
충청	차세대이익, 이차전지, 태양광(부품), 나노융합소재(화학소재기반), 신호처리융합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력기반 기계부품
호남	태양광(소재), 풍력시스템·모듈, 바이오식품, 바이오 활성소재,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친환경 차량 및 부품, 그린·레저선박
대경	태양광(장비), 연료전지, 의료기기(치료/헬스케어기기), 실용로봇, 스마트 자동차부품, 스마트 모바일, 첨단 금속·세라믹소재, 하이테크 섬유소재
동남	풍력부품, 원전설비, 화학융합소재,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 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선박 조선기자재
강원	세라믹/비철소재부품, 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기기, 헬스테인먼트
제주	제주형 풍력서비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 3. 신청자격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광역경제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이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다만, 해당 광역경제권내 연구소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기간내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의 이전 또는 신설을 조건으로 참여 가능

참여기관

- 해당 광역경제권 및 다른 광역경제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

\* 대학, 연구소, TP(특화센터), 기타 비영리전문기관 등

권역별로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조건은 공고문 참고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규모('13년 계속, 신규) : 2,825억원

□ 지원방식

○ 프로젝트별 유망품목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을 신규 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고용창출형 R&D, 채용조건부 R&D)

- 2년 이내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대·중소기업(중소기업 주관 우선) 공동 컨소시엄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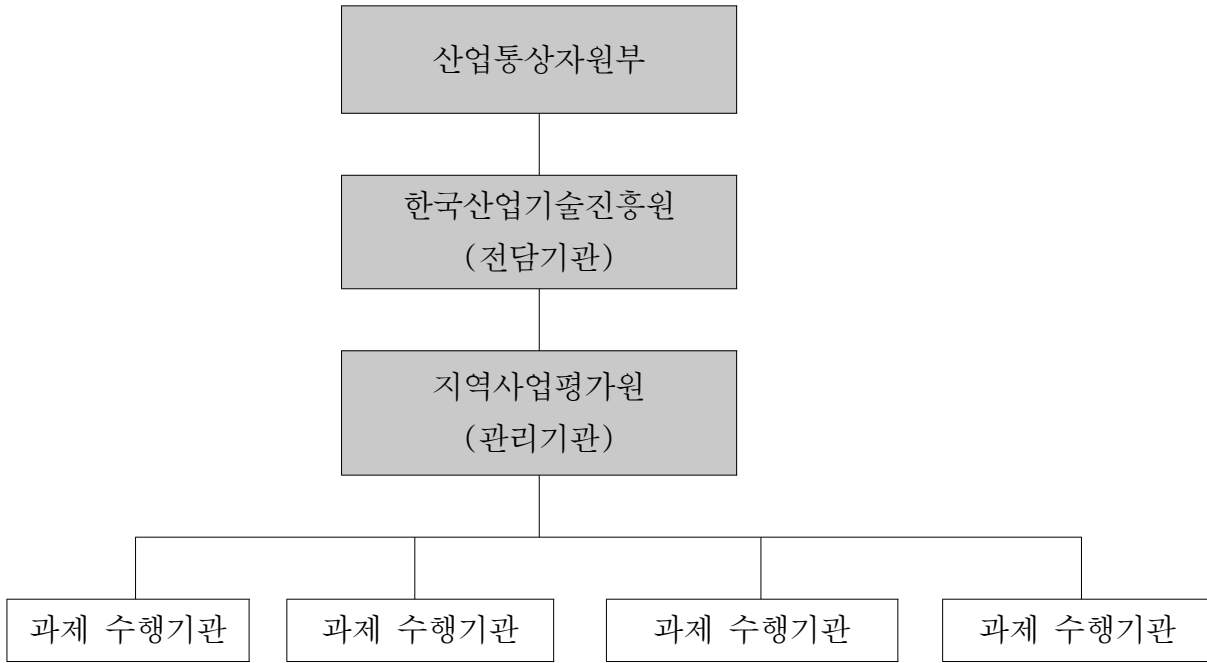
□ 지원기간 : 12개월~24개월

□ 지원조건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 2013. 3 :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13. 4 : 사업계획서 접수
- 2013. 5 :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 2013. 6 ~ :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 등록(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인편)
- 온라인 접수 : <http://www.ritis.or.kr>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기존14종→5종) 및 사업계획서 간소화(기존 22개 세부항목→11개 세부항목) 적용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및 샘플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참조

## 8. 관련자료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조현훈 사무관  
(Tel : 02-2110-5603, E-mail : chhun007@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박수호 선임연구원  
(Tel : 02-6009-3765, E-mail : psh@kiat.or.kr)

##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조성경

(전화 : 02-2110-5249, E-mail : ohoho18@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디스플레이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	24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22.84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60 (기술개발)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감성터치 산업육성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응용분야 확대를 바탕으로 신산업 주도권 선점
- 디스플레이 등 출력 디바이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입력 디바이스(터치 센서 등)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업목표

- 감성터치 산업은 소재→부품→디바이스→알고리즘(control IC)→응용 제품 (컨텐츠 포함)에 이르기까지 상호기술 연관도가 매우 높아 Supply chain의 기업 동반성장을 유도

지원방향

- R&D사업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성터치 기반의 IT융합 특화기술분야의 글로벌 기술수준 확보를 위한 기반 및 기술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기술개발

- 감성터치 관련 핵심기술 개발 사업
  - 감성터치분야 소재, 장비, 모듈분야 기술개발

기반구축

- 감성터치 관련 신뢰성 및 인증기반 구축
  - 감성터치산업기술지원센터 기반구축 및 인증·신뢰성 장비 구축 등

##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기술개발
  - 주관기관 : 기업, 연구기관 등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기반구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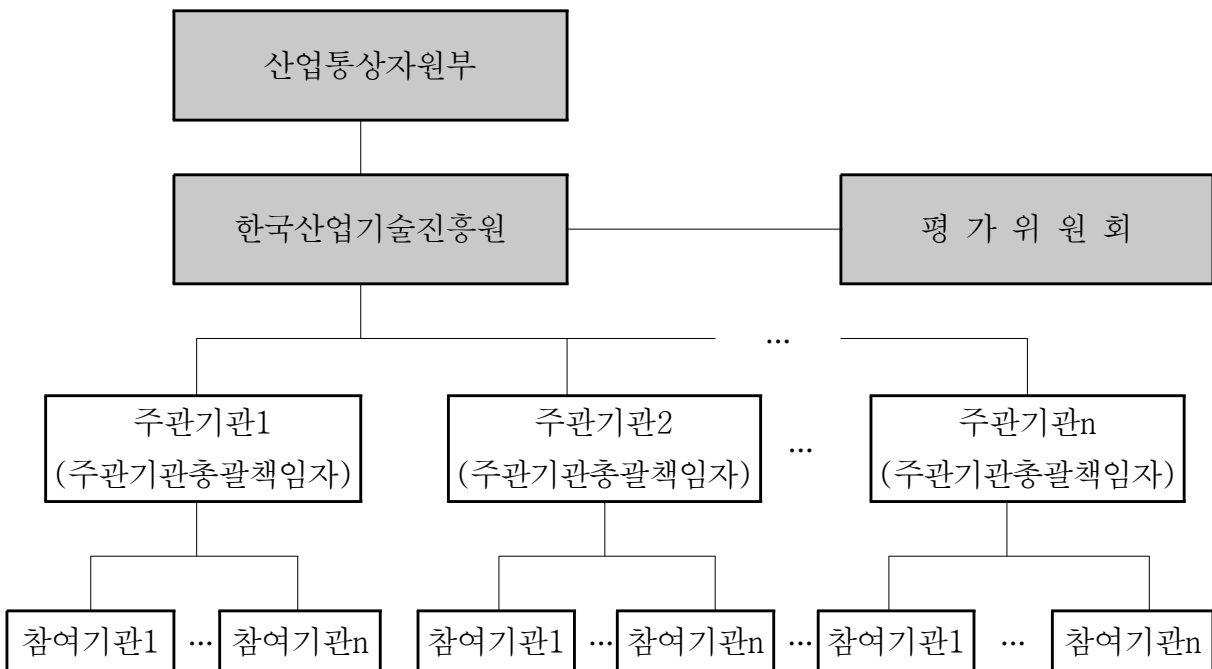
- 지원규모 : 122.84억원 (2013년도)
- 지원기간 : '11. 09 ~ '16. 08(총 60개월)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구축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지원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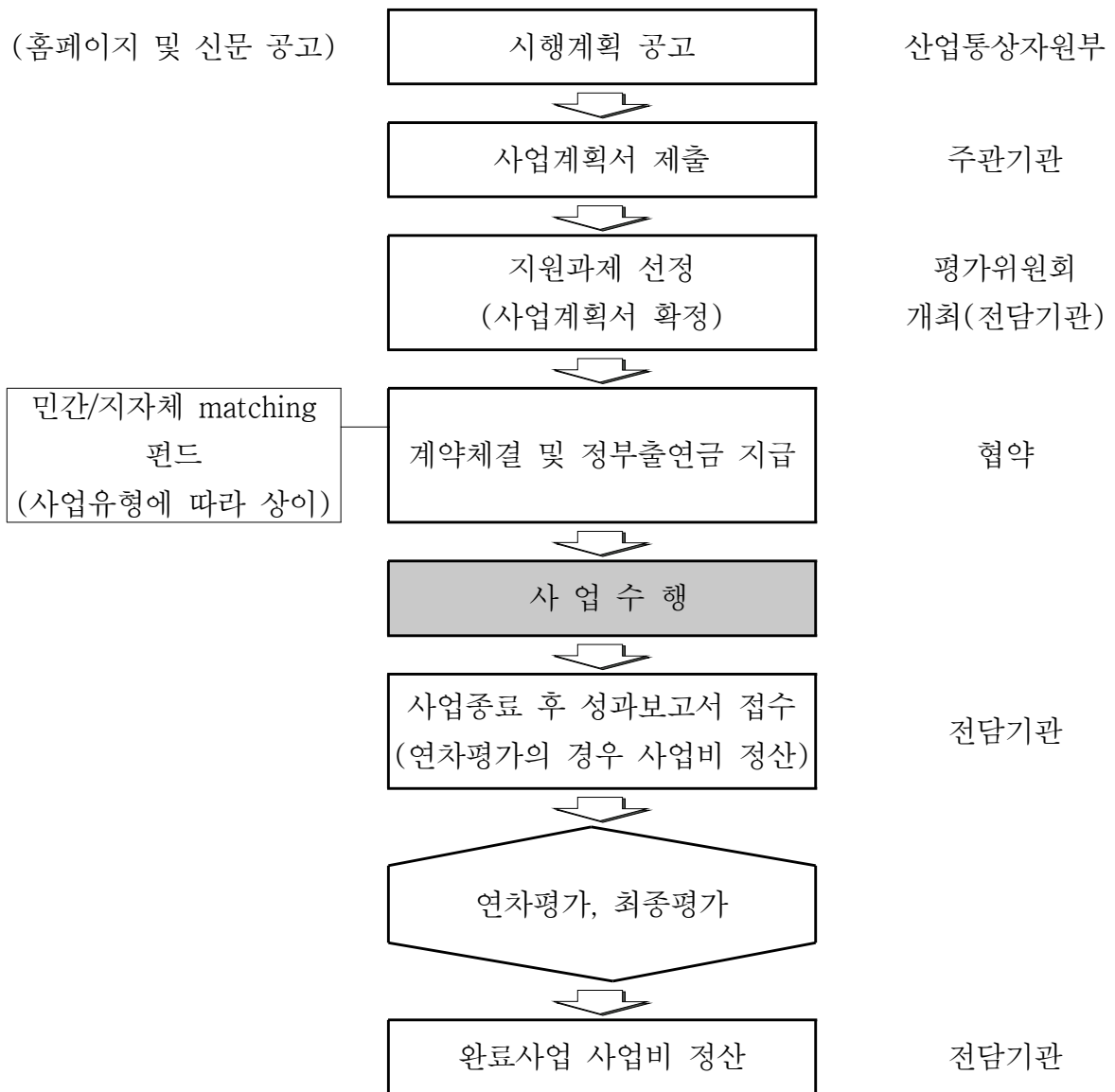
- 기술개발 : Matching fund 방식으로 총사업비의 50 ~ 75% 이내에서 지원
- 기반구축 : 지방비 Matching 조건

####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 '13. 3월 : 과제기획
- '13. 5월 : 사업공고
- '13. 7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 '13. 9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7. 제출서류

###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요약서,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연차/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http://www.ritis.or.kr))에 전산 등록

## 8. 관련자료

### □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조성경 사무관  
(Tel : 02-2110-5249, E-mail : ohoho18@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장현규 연구원  
(Tel : 02-6009-3783, E-mail : jhk1029@kiat.or.kr)

## 이공학교육활성화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김민선 사무관

(전화 : 02-2100-6807, E-mail : minsungold@mo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
(2) 연구수행주체	대학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12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23(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0(백만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공학교육의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방안의 수립과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각 대학 내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융합형 글로벌 공학인재 배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유도

사업내용

- 대학별 공학계열의 특성화 전략 수립 및 세부 실행방안 구축
- 창의·융합형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개편 및 개발, 운영
- 공학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설계 운영, 성과 확산
- 기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등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 지원대상

- 창의 융합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설치된 대학

## 3.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중 공학계열이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내용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각 대학당 연 2억원 내외

\* 사업계획 및 성과,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연도별 차등 지원

\* 선정대학 중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및 공학교육연구센터로 추가 선정되는 경우 총 연간 4억원 내외 지원

- 지원기간(총 사업기간) : 2012.3 ~ 2022.2

\* 3차년도, 6차년도 종료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최대 10년 이내 지원

###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대비 10% 이상 민간 현금 대응

- 신청 대학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최소 1인을 확보하여야 함

-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의 주관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어야 함
- 공학교육혁신센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시해야 함

## 5. 추진체계 및 절차



## 6. 추진일정

사업 추진 내용	세부내용	추진 일정('13.1~'14.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기획 및 성과 확산	'13년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관리계획승인요청															
	'14년 사업계획수립 준비															
	전문기관 보고서 작성 및 정산															
	사업관리(평가관리규정개정 등)															
	사업기획															
	성과관리체계화 (성과워크샵, 성과홍보 등)															
	공학교육혁신포럼 운영															
글로벌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 평가 관리	혁신센터	연차평가 계획 수립														
	거점센터	연차평가위원회 실시														
	연구센터	협약체결														
	공학기술 교육 혁신센터	'12년 사업비 정산														
		협약변경등 사업관리														
	공학기술 교육 거점센터	신규 사업공모														
		사업신청서 접수														
		평가위원회 계획수립 및 개최														
		협약체결														
		협약변경등 사업관리														
	공학교육 정보센터	연차평가 실시														
		공학교육 정보구축 및 시행														
협약변경등 사업관리																
공학 교육 페스 티벌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출품·포상 계획 수립 및 준비															
	기타 행사 준비(부대행사, 후원기관 등)															
	포상심의 및 수상작 확정															
	공학교육페스티벌 개최															

## 7. 제출서류

주관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계획)서, 법인등록증, 협력기관 참여의사확인서, 현금출자예정서, 현물출자확약서 등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9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 산업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교육부 훈령)
- 공학교육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 법제처 법령정보 또는 해당 부처 및 전문기관에 공지 및 문의

### 〈문의처〉

- 정 부 :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김민선 사무관  
(Tel : 02-2100-6807, E-mail : minsungold@mo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신형갑 책임연구원  
(Tel : 02-6009-3231, E-mail : hkshin@kiat.or.kr)

##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첨단 하이브리드 가공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안서환 사무관

(전화 : 02-2110-5646, E-mail : ash61528@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금속재료, 주조/용접/접합, 열/표면처리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9.68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894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부품소재 및 완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가공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남권 지역의 산업성장 도모

\* 부품·제품의 가공(공작기계 절삭) 및 표면코팅·개질 기술을 말하며, 나노 스케일의 정밀 가공, 절삭가공 & 표면증착의 융복합기술 등을 포함

### 2. 지원대상분야

- 경남 양산 지역에 ‘하이브리드 가공생산기술센터’를 설치하여 연구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 기업지원 수행기반구축

### 3. 신청자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정책지정)
- 접수일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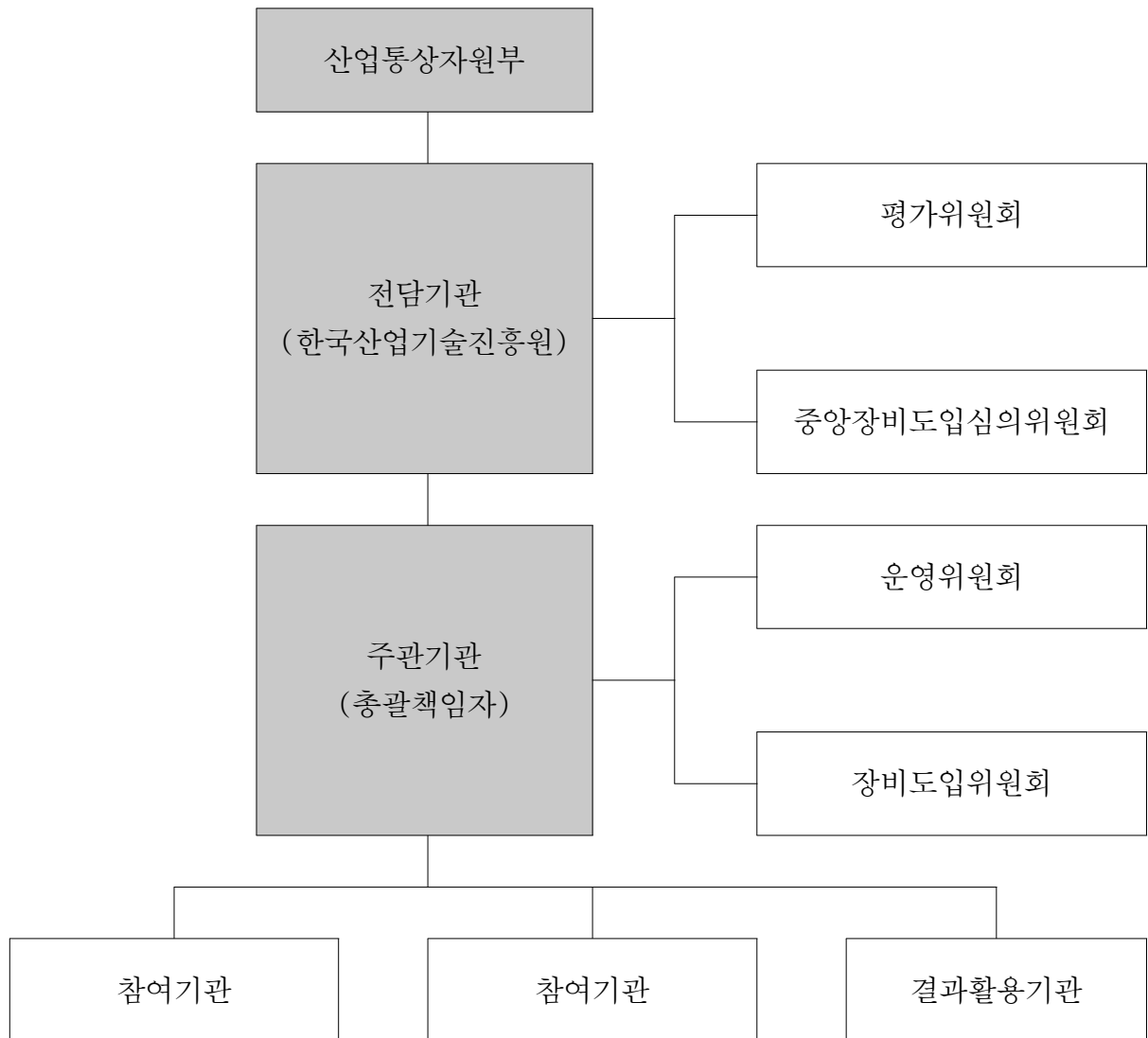
- 아래 사업내용 수행을 위해 3~5년간 정부출연금 지원

구 분	사업수행 내용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R&amp;D 장비구축</li> <li>· 기업지원 장비구축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성능평가)</li> </ul>
R&D (실용화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복합 피니싱가공 기술개발</li> <li>· 융합플레이팅 기술개발</li> <li>· 첨단 표면개질 기술개발</li> <li>· 위탁연구</li> </ul>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기반 애로기술지원</li> <li>· 보유장비 활용지원</li> <li>· 기술지도, 세미나, 기술교육</li> </ul>

- 지원조건
- 매년 연차평가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본 사업의 2013년 신규 과제 추진일정은 없음

##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2012년 기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를 포함),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사본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1부
  - 지방비 출자확인서 1부
  - 설비구축용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 시설건립용 전용부지 출자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 주관기관장의 전임연구원 연간 채용계획서 및 채용확약서 원본 각1부(해당될 경우)

## 8. 관련자료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안서환 사무관  
(Tel : 02-2110-5646, E-mail : ash61528@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최승욱 연구원  
(Tel : 02-6009-3294, E-mail : swchoi@kiat.or.kr)

##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기반구축)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 플랜트과	박성환 사무관

(전화 : 02-2110-4693, E-mail : mimi@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해양자원, 조선/해양시스템 자원탐사/개발/활용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825백만원

### 1. 사업개요

□ 개요

- 해양플랜트 기자재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을 통해 국가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기자재 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
- 심해자원 생산에 필요한 다상유동 기자재 성능평가설비\* 구축 및 평가기술 개발에 대한 기업지원체계 구축

\* 해저에서 Oil&Gas 시추·탐사시, 여러 형태(다상)로 혼합된 물질에 의해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기자재의 안정성,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설비

## 2. 지원대상분야

기반구축

- 심해자원 생산에 필요한 다상유동 기자재 성능평가 설비 구축시설

기술개발

- 다상유동 안정성 핵심기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다상 유동 이송시스템 수력설계 기술개발 등

기업지원

- PQ(Pre Qualification)문서 작성 및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국내외 오일메이저 벤더 등록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 3. 신청자격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접수일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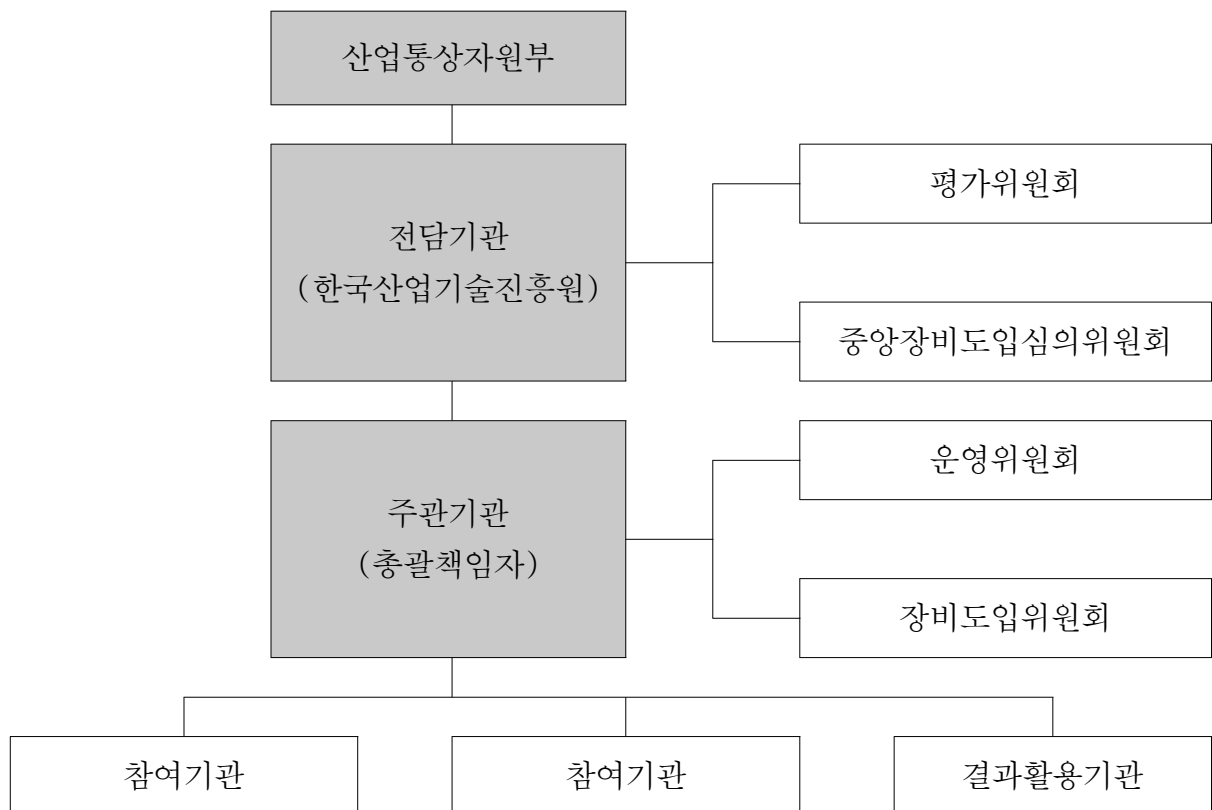
-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주관기관에 대해 3~5년간 정부출연금 지원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 이내

□ 지원조건

- 매년 연차평가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 본 사업의 2013년 신규 과제 추진일정은 없음

## 7. 제출서류

- 신청서류 목록 (2012년 기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를 포함),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사본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1부
  - 지방비 출자확인서 1부
  - 설비구축용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 시설건립용 전용부지 출자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 주관기관장의 전임연구원 연간 채용계획서 및 채용확약서 원본 각1부(해당될 경우)

## 8. 관련자료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박성환 사무관  
(Tel : 02-2110-4693, E-mail : mimi@motie.go.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최승욱 연구원  
(Tel : 02-6009-3294, E-mail : swchoi@kiat.or.kr)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 · 주력산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기계로봇과	심군택 사무관 임광훈 사무관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정영길 서기관 임길환 사무관

(전화 : 산업통상자원부 02-2110-4584)

(전화 : 산업통상자원부 02-2110-5650)

(전화 : 미래창조과학부(Tel : 02-2110-1841, E-mail : j0712@msip.go.kr

(전화 : 미래창조과학부(Tel : 02-2110-1845, E-mail : ghlim@msip.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환경, IT융합, USN, 기타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지원 : 36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332억원 · 신산업 2,770억원 · 주력산업 2,562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13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2. 지원대상분야

신산업분야

- IT융합(신산업 IT융합, 주력산업 IT 융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로봇, 지식서비스, RFID/USN

주력산업분야

- 자동차(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화학공정, 세라믹, 금속소재, 섬유 의류, 생산기반, 생산시스템, 플랜트엔지니어링

## 3. 신청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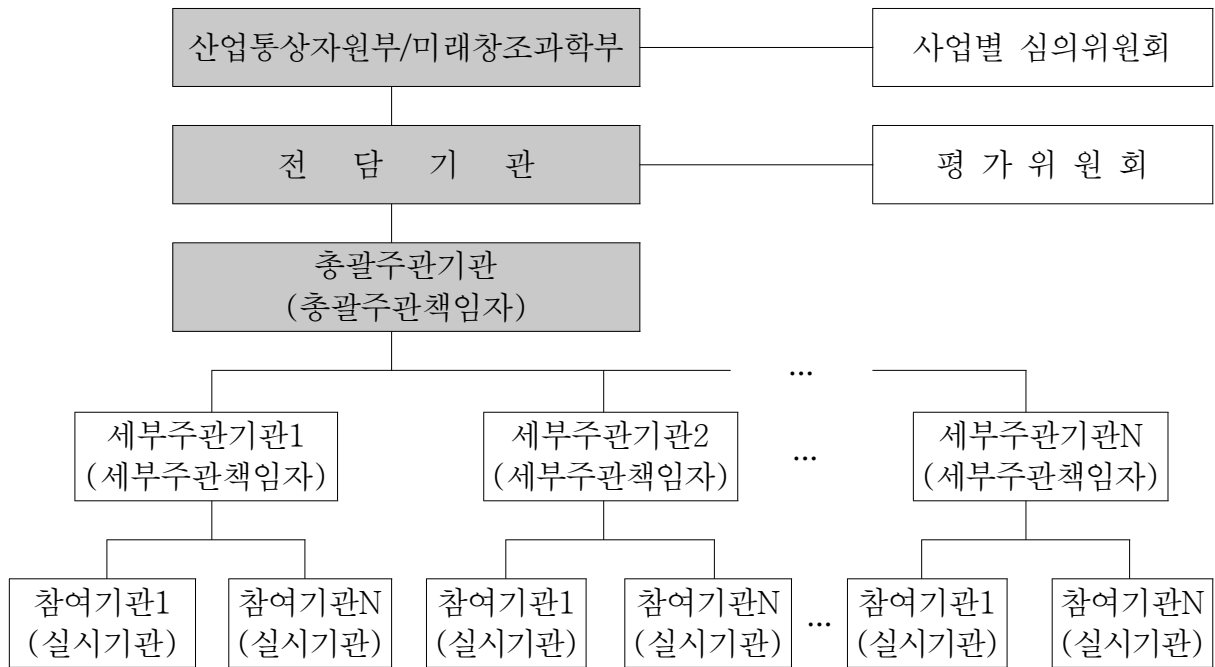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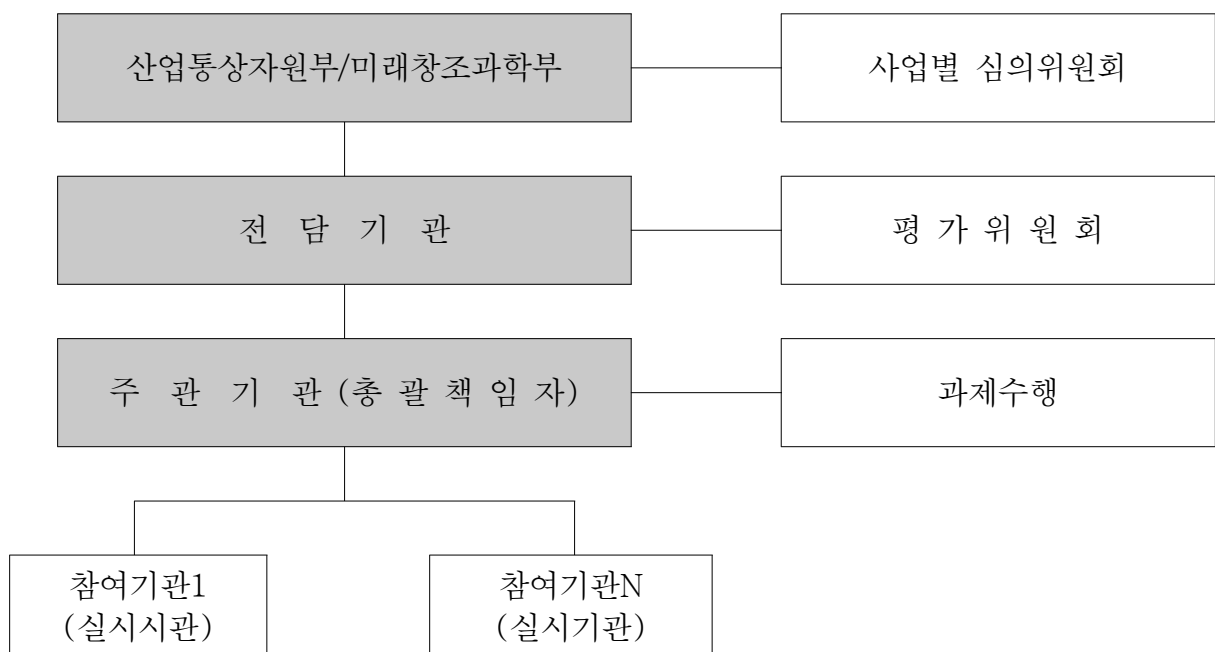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통합형, 병렬형 과제



#### ○ 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2. 8월~'13. 1월	'13. 1월~4월	'13. 5월	'12. 5월~6월

## 7.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또는 영리법인)의 최근 2년간(2011년 및 201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부
  -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됨
- 접수마감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세계일류상품 인증서」(세부주관기관이 세계일류상품선정업체인 경우) 등 가점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시)
-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사본 1부(해당시)
-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해당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사본 1부(해당시)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심균택 사무관,  
(Tel : 02-2110-4584)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임광훈 사무관,  
(Tel : 02-2110-5650)  
미래창조과학부 SW융합과 정영길 서기관  
(Tel : 02-2110-1841, E-mail : j0712@msip.go.kr)  
미래창조과학부 SW융합과 임길환 사무관  
(Tel : 02-2110-1845, E-mail : ghlim@msip.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팀 이주훈 책임  
(Tel : 02-6009-8213, E-mail : poweron@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김성호 책임  
(Tel : 042-715-2212, E-mail : shkim@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기획평가TF 정찬혁 책임  
(Tel : 042-715-2296, E-mail : supei@keit.re.kr)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홍수경 사무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기술과	이상국 사무관

(산업부 전화: 02-2110-5247, E-mail : hsk77@motie.go.kr)

(미래부 전화: 02-2110-2848, E-mail : sklee@msip.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030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84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2. 지원대상분야

5대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 디지털 콘텐츠 분야

###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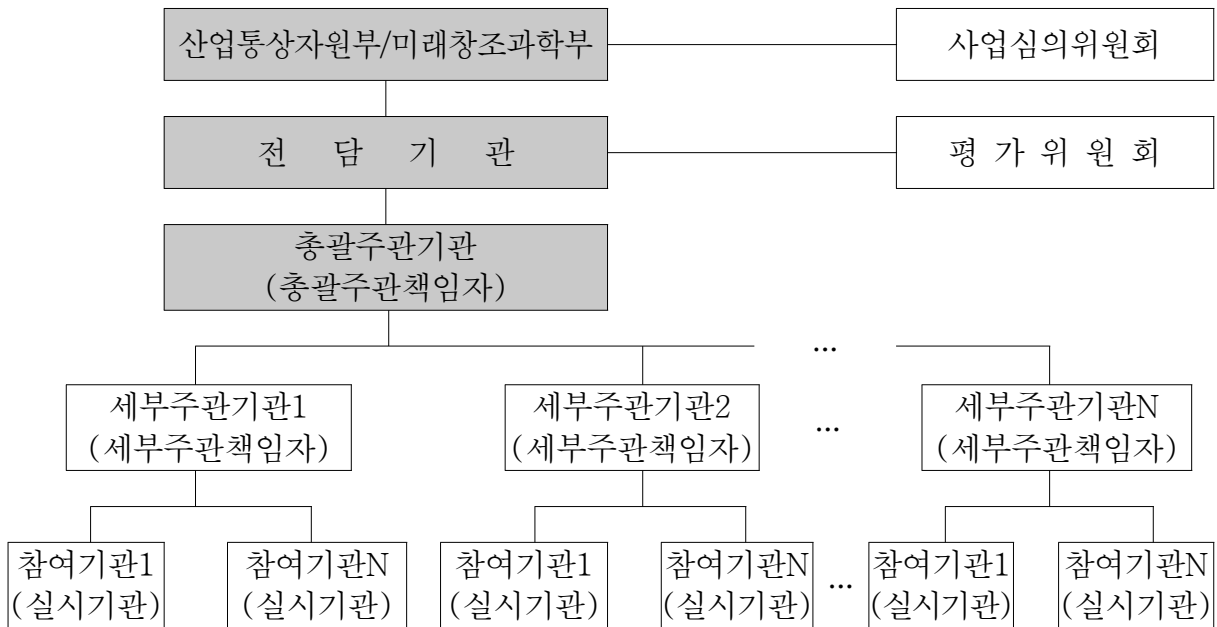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또는 단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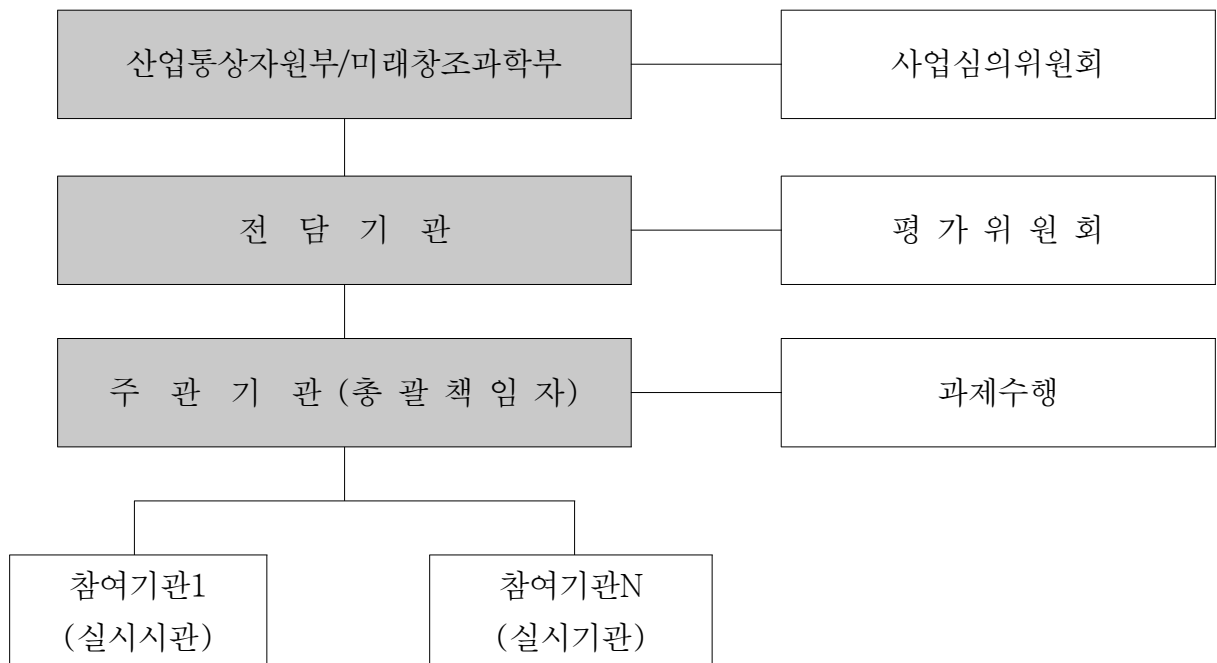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통합형, 병렬형 과제



#### ○ 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기술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기술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사업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 문화체육관광부)	수요조사
		기획대상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결과 심의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 문화체육관광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10~40%를 3~5년간 징수
추적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2. 8월~'13. 1월	'13. 1월~3월 '13. 7월~8월	'13. 4월~5월 '13. 8~9월	'13. 5월~6월 '13. 10월

## 7.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주관/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참여기관 모두 제출)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또는 영리법인)의 최근 2년간(2011년 및 201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부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참여기관 모두 제출) 등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홍수경 사무관  
(Tel : 02-2110-5247)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기술과 이상국 사무관  
(Tel : 02-2110-284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김명엽 선임연구원  
(Tel : 042-715-2213, E-mail : kimmy@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기획평가TF 김기완 책임연구원  
(Tel : 042-715-2291, E-mail : robocop@keit.re.kr)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신재혁 사무관

(전화 : 02-2110-5615, E-mail : jhshin@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화학,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등 소재부품 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10년 지원 : 36개월 ~ 12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208억원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1,814억원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1,319억원 · 기획평가관리 75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1,200~1,909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634~1,770

### 1. 사업개요

개요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미래시장 선점 및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
- 세계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무역구조 개선효과가 큰 소재·부품

## 3. 신청자격

-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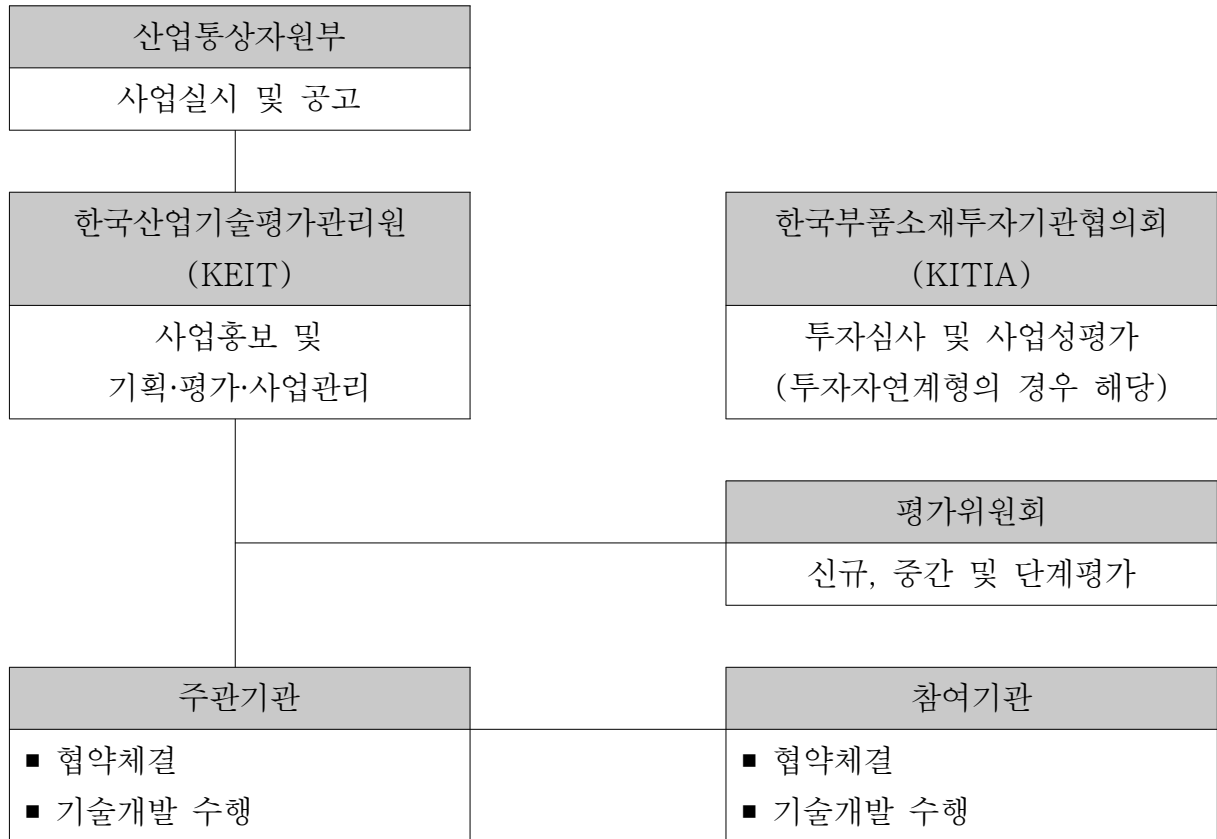
\* 세부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사 업	지원기간	지원내용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
- WPM (신규지원계획 없음)	9년 이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10대 핵심소재(WPM) 개발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신규지원계획 없음)	10년 이내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창출이 가능한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7년 이내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개발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7년 이내	'20년까지 민간산업과 육·해·공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新소재 창출을 위해 핵심 방산소재 개발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5년 이내	Global Sourcing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개발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3년 이내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3년 이내	개발 과제의 사업화 제고를 위하여 민간 자본의 사업성 평가(투자유치)를 접목한 투자기관 연계형 개발과제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공고(산업부) ⇨ 신청서 접수(KEIT) ⇨ 사전검토(KEIT) ⇨ 기술성평가(KEIT)  
⇨ 투자설명회개최·투자심사(KITIA) ⇨ 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부, KEIT)

프로세스	수행주체	내 용
기술수요조사	KEIT	- 산학연 전문가 기술수요조사 실시
↓		
기술위원회	KEIT	- 공고대상 품목 발굴 및 선정
↓		
사업공고	KEIT	-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
↓		
과제접수	KEIT	- 신청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평가계획 수립	KEIT	- 신규평가계획 수립
↓		
사전검토	KEIT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하여 사전검토표 작성(필요시 면담)
↓		
평가위원회	KEIT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평가
↓		
평가 결과 통보	KEIT	- 지원가능과제, 지원제외과제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KEIT	- 지원제외과제 이의 신청
↓		
이의신청 평가	KEIT	-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		
투자 심사 및 협상	투자기관 협의회	- 기술성 평가 통과과제에 대한 투자 협상
↓		
심의위원회	산업부	- 투자적격 대상 및 투자부적격 대상 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산업부	- 지원과제 통보 및 협약 체결

\* 투자 심사 및 협상 절차



○ 그 외 사업

- 과제기획(KEIT) ⇨ 공고(산업부) ⇨ 접수 및 사전검토(KEIT) ⇨ 기술성평가(KEIT) ⇨ 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부, KEIT)

프로세스	수행주체	내 용
기술수요조사	KEIT	- 산학연 전문가 기술수요조사 실시
↓		
기술위원회	KEIT	- 신규지원 대상품목 발굴 및 선정
↓		
과제기획전담팀	KEIT	-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 및 기획보고서 작성
↓		
공청회	KEIT	- 신규지원 대상과제 도출 RFP 공청회 실시
↓		
사업공고	KEIT	-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
↓		
과제접수	KEIT	- 신청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평가계획 수립	KEIT	- 신규평가계획 수립
↓		
사전검토	KEIT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하여 사전검토표 작성(필요시 면담)
↓		
평가위원회	KEIT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평가
↓		
평가 결과 통보	KEIT	- 지원가능과제, 지원제외과제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KEIT	- 지원제외과제 이의 신청
↓		
이의신청 평가	KEIT	-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		
심의위원회 (필요시 생략 가능)	산업부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과제 확정
↓		
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KEIT	- 지원과제 및 지원제외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KEIT	- 지원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6. 추진일정

사 업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WPM	-	-	-	-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	-	-	-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13.1월~7월	'13.8월~9월	'13.9월	'13.10월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13.1월~6월	'13.7월~8월	'13.9월	'13.10월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13.1월~7월	'13.8월~9월	'13.9월	'13.10월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13.1월~4월	'13.5월~6월	'13.7월	'13.8월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13.1월~4월	'13.5월~6월	'13.7월	'13.10월

## 7.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1호) 10부(원본 1부 포함)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신청서식 제2호) 각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신청서식 제5-1호) 각 1부(해당시 작성)
- 중견기업 확인서(신청서식 제5-2호) 각 1부(해당시 작성)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또는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또는 영리법인)의 최근 2년간(2011년 및 201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필요) 각 1부  
(단,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 접수마감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주관기관이 세계일류상품선정업체인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등 가점 관련 증빙자료 사본 각 1부(공고시 우대사항 및 기업의 인건비 현금 인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관기관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필수), 그 외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시)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필수)
- 우대사항(가점) 확인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신재혁 사무관  
(Tel : 02-2110-5615, jhshin@motie.go.kr)
- 전담기관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 고은영 팀장  
(Tel : 02-6009-8391, E-mail : key@keit.re.kr)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2팀 소순중 팀장  
(Tel : 02-6009-8370, E-mail : sjso@keit.re.kr)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 및 신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신유철 사무관

(전화 : 02-2110-5121, E-mail : ycshin0@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기타
(2) 연구수행주체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 비중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제한 없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이내 지원 :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87.6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77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

## 2. 지원대상분야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
- 세계일류수준의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 3. 신청자격

-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 비중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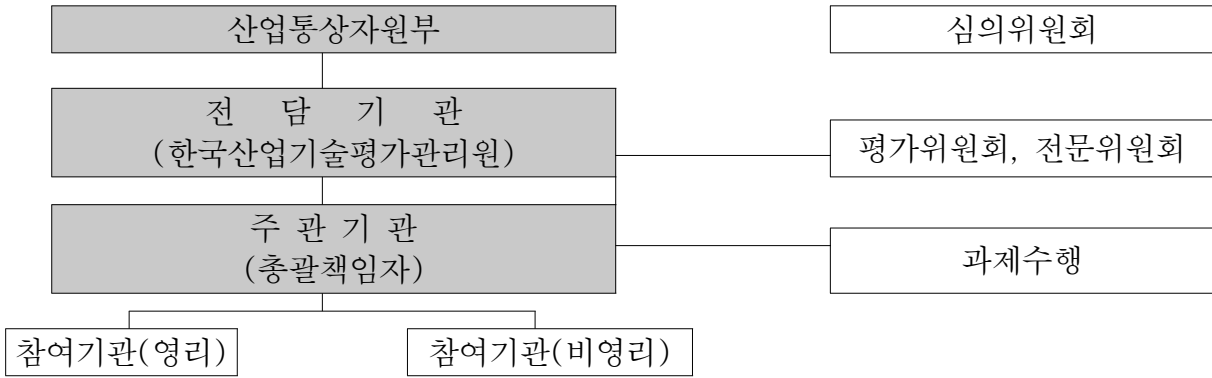
\* 세부 신청자격은 본 사업 신규 공고 시 안내 예정임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
  -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 통해 차기 단계 지원
- 지원금액 : 센터당 연간 5억원 이내
  - 기술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고, 핵심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 지급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사업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3월	'13. 4월	'13. 5월	'13. 6월

## 7.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비영리기관은 면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각 1부  
(상장사 및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우대자격 확인서 각 1부
- 수출액 및 R&D 투자액 확인서 1부
- 핵심연구인력 인센티브 계획서 및 부설연구소직원현황 1부

※ 기타 공고시 제출 서류 등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신유철 사무관  
(Tel : 02-2110-5121, [ycshin@motie.go.kr](mailto:ycshin@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이강우 책임  
(Tel : 02-6009-8215, E-mail : [lkwspe@keit.re.kr](mailto:lkwspe@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윤홍준 책임  
(Tel : 02-6009-7384, E-mail : [yoohj@keit.re.kr](mailto:yoohj@keit.re.kr))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 및 신산업)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디자인생활산업과	문철환 사무관 이원규 사무관

(전화 : 02-2110-5653, E-mail : mcw2004@motie.go.kr

(전화 : 02-2110-5106, E-mail : leewg@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재료, 화공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3년이내 지원 : 12~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2.43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16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섬유패션 스트림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타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대해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 제품개발 촉진

- 성숙산업고도화(구 생활산업)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 고감성 기술을 융복합화한 고부가가치 생활용품 및 소비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
  - 섬유패션 스트림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타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대해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성숙산업고도화(舊 생활산업)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 고감성 기술을 융복합화한 고부가가치 생활용품 및 소비재·레저제품 등(가구, 육식용품, 문구, 스포츠·레저용품, 보석·귀금속, 신발, 블라인드, 가발, 침구, 안경 등)

##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섬유스트림 : 산업용, 의류용, 생활용, 융합 등 4대 섬유분야(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 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이 포함된 패션디자인 의류상품 등(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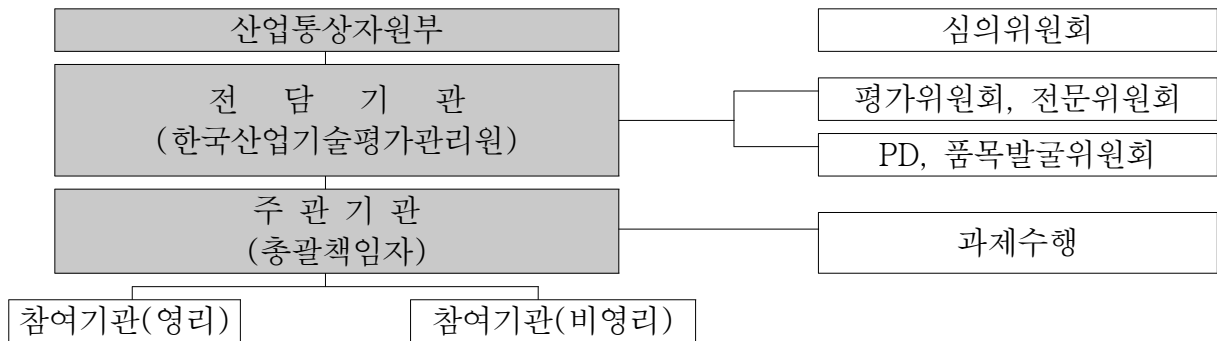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섬유스트림 : 총 기술개발기간이 2~3년 이내에서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패션스트림 : 총 기술개발기간이 1~2년 이내에서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 성숙산업고도화 : 총 기술개발기간이 1~2년 이내에서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 수요조사 및 품목 기획의 경우는 품목 지정 분야에 한함

## 6. 추진일정

품목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2. 11월~'13. 1월	'13. 2월	'13. 4~5월	'13. 6월

## 7.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비영리기관은 면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각 1부  
(상장사 및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우대자격 확인서 각 1부

※ 기타 공고시 제출 서류 등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문철환 사무관  
(Tel : 02-2110-5653, E-mail : mcw2004@motie.go.kr)  
디자인생활산업과(성숙산업고도화 부문) 이원규 사무관  
(Tel : 02-2110-5106, E-mail : leewg@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이강우 책임  
(Tel : 02-6009-8215, E-mail : lkwspe@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 김의수 선임  
(Tel : 02-6001-0794, kes80@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 이중석 선임  
(Tel : 02-6001-0796, joongseok@keit.re.kr)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 및 신산업)

### -해양레저장비-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박진영 주무관

(전화 : 02-2110-5623, E-mail : sam7230@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계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3년내외 지원 : 12~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6.6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0백만원

## 1. 사업개요

- 개요
-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모터보트,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 2. 지원대상분야

- 해양레저 장비 및 부품·소재 관련 기술개발과제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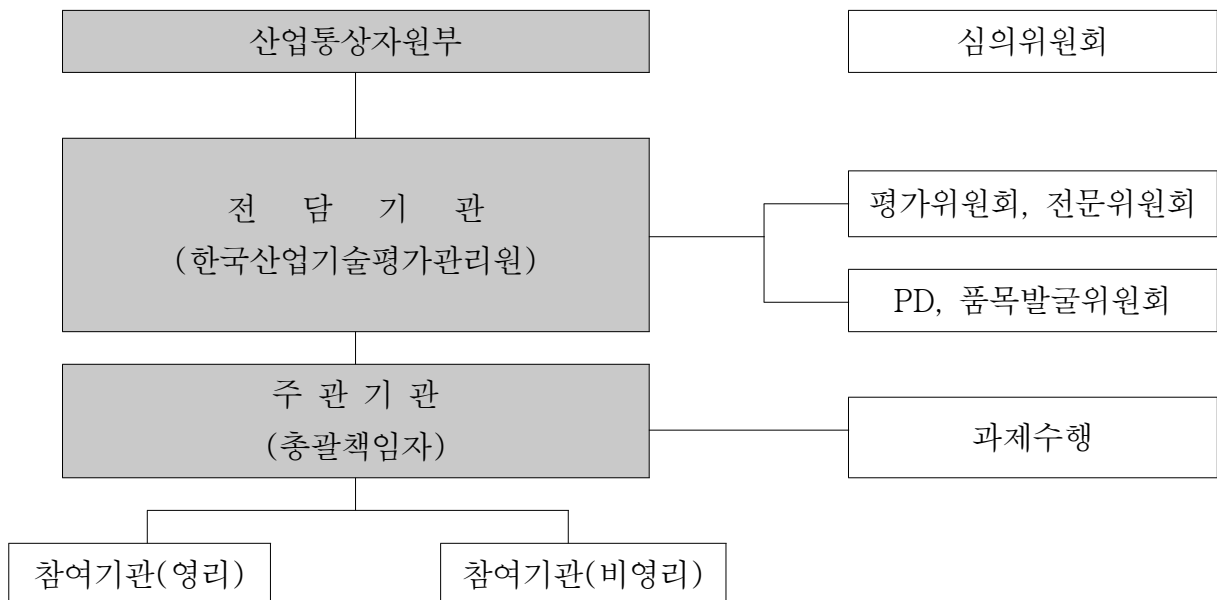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이 2년 이내에서 연간 2억원 이내 지원(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수요조사 및 품목 기획의 경우는 품목 지정 분야에 한함

## 6. 추진일정

품목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2. 11월~'13. 1월	'13. 2월	'13. 4~5월	'13. 6월

## 7.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비영리기관은 면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각 1부  
(상장사 및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우대자격 확인서 각 1부

※ 기타 공고시 제출 서류 등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박진영 주무관  
(Tel : 02-2110-5623, E-mail : sam7230@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이강우 책임  
(Tel : 02-6009-8215, E-mail : lkwspe@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평가팀 안경민 선임  
(Tel : 02-6001-0772, E-mail : rudals@keit.re.kr)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 및 신산업)

### -개인용이동수단-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신정환 주무관

(전화 : 02-2110-4751, E-mail : nervi78@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계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은 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3년내외 지원 : 12~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5.25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67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고부가가치 개인용이동수단의 전략 부품·소재 및 완성품 개발 지원을 통한 창의적 이동수단 생산기반 육성 및 新개념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 2. 지원대상분야

개인용이동수단 관련 부품, 소재, 완제품 등

###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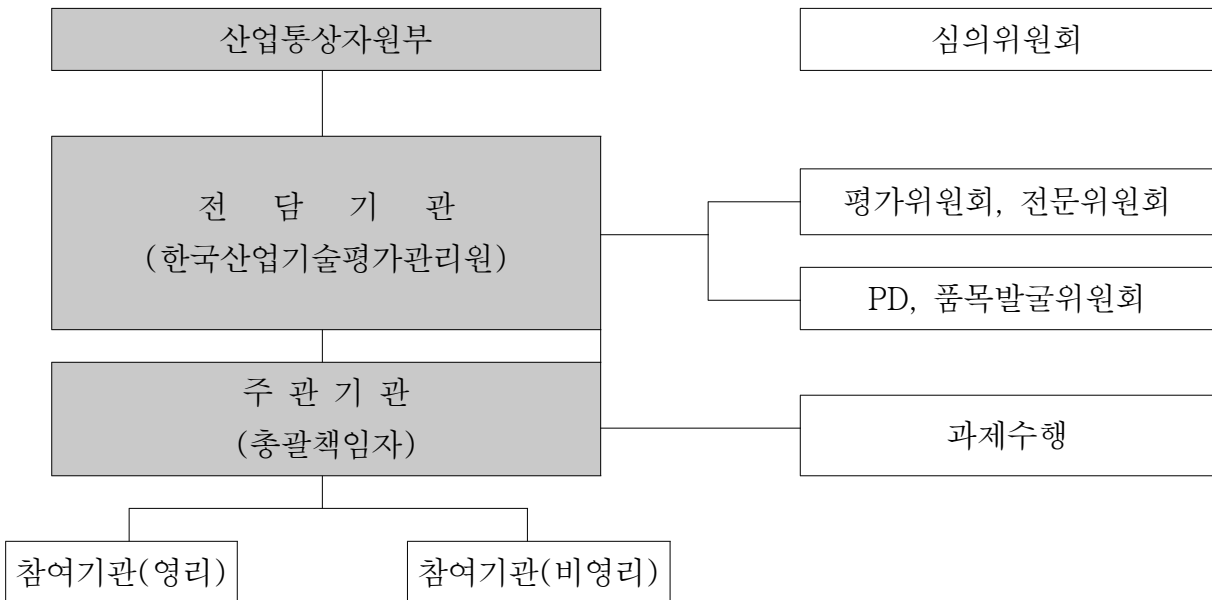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이 2년 이내에서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수요조사 및 품목 기획의 경우는 품목 지정 분야에 한함

## 6. 추진일정

품목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2. 11월~'13. 1월	'13. 2월	'13. 4~5월	'13. 6월

## 7.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비영리기관은 면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각 1부  
(상장사 및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우대자격 확인서 각 1부
- ※ 기타 공고시 제출 서류 등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신정환 주무관  
(Tel : 02-2110-4751, E-mail : nervi78@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이강우 책임  
(Tel : 02-6009-8215, E-mail : lkwspe@keit.re.kr)  
수송플랜트평가팀 박진용 전임  
(Tel : 02-6001-0747, E-mail : sesile@keit.re.kr)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 및 신산업)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산업환경과	송충섭 사무관

(전화 : 02-2110-5136, E-mail : schsl390@moc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환경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3년내외 지원 : 12~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27.5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56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제품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 감축하는 청정 기반기술 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제품의 설계, 생산, 수송, 사용, 폐기/재자원화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공정의 환경부하 저감과 자원의 효율성 제고하는 분야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여 무역장벽을 극복 가능한 분야

### (1)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 EU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신산업 창출이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분야
- 기존의 규제별 대응에서 국가에 관계없이 산업별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

### (2) 녹색제품생산기술

- 자원의 소과정 순환측면에서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
- 소형화, 경량화, 최적수명화, 저에너지 사용제품 등 환경친화적이면서 경제적인 제품 설계분야

### (3) 청정공정기술

- 기존 생산공정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오염물 발생을 완전 제거 또는 획기적 저감을 위한 공정개발 분야(Ionic liquid, 나노 촉매 등)
- 현재는 상용화하는데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2~3년 후에는 핵심 산업환경 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
- 기존 생산공정의 통합(Process integration) 또는 타 기술기반을 활용한 융합공정 기술 분야
- 기존의 화학공정을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여 오염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야

(4) 제품서비스화기술

- 제품의 품질, 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 및 제품 이용효율성 제고를 유도·평가할 수 있는 기술분야
- 서비스 형태 구축에서 필요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술분야
- 제품서비스화 모델에서 서비스 영역으로서 특허화 가능한 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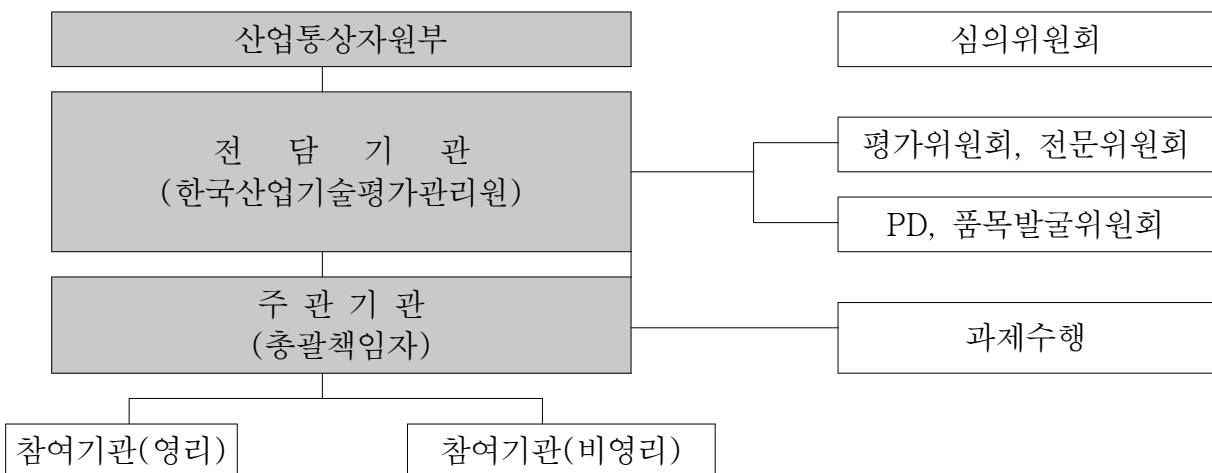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에서 연간 5억원 이내 지원(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수요조사 및 품목 기획의 경우는 품목 지정 분야에 한함

## 6. 추진일정

품목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2. 11월~'13. 1월	'13. 2월	'13. 4~5월	'13. 6월

## 7.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비영리기관은 면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각 1부  
(상장사 및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우대자격 확인서 각 1부

※ 기타 공고시 제출 서류 등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송충섭 사무관  
(Tel : 02-2110-5136, E-mail : schs1390@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이강우 책임  
(Tel : 02-6009-8215, E-mail : lkwspe@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 신은영 전임  
(Tel : 02-6001-0797, E-mail : sey@keit.re.kr)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 및 신산업)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이원규 사무관

(전화 : 02-2110-5106, E-mail : leewg@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디자인전문기업 포함)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년이내 지원 : ~1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11.47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69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감성소비 확산에 대응하는 디자인 개발·보급 및 기업의 디자인 경영혁신 지원 등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여 바로 사업화 가능한 디자인 기술을 개발토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디자인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로 글로벌 경쟁력 및 수입대체 효과 제고

##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13년) : 산업디자인기술개발(Human-life디자인, Universal디자인, Green디자인), 서비스디자인기술개발(Service디자인)

※ 세부 지원분야는 매년 과제기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디자인전문기업 포함)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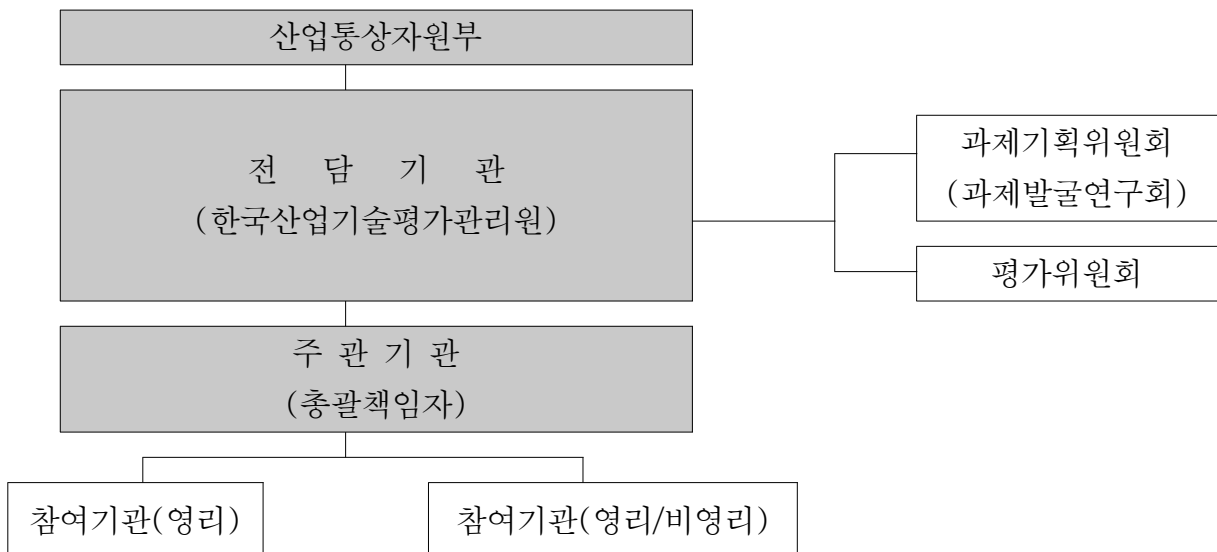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1년 이내에서 연간 4억원 이내 지원(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2. 11월~'13. 1월	'13. 4월	'13. 5월	'13. 6월

## 7.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비영리기관은 면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각 1부  
(상장사 및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우대자격 확인서 각 1부
    - ※ 기타 공고시 제출 서류 등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이원규 사무관  
(Tel : 02-2110-5106, E-mail : leewg@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이강우 책임  
(Tel : 02-6009-8215, E-mail : lkwspe@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송성일 선임  
(Tel : 02-6000-7391, E-mail : sungil@keit.re.kr)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 및 신산업)

###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김효선 사무관

(전화 : 02-2110-5511, E-mail : hskim215@moc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계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이내 지원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0.5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57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산업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제고
- 독자적 연구장비 생산기반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5년 이내 활용성과 파급 효과가 큰 연구장비 완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산업부 연구장비 분류체계에 분석·계측·시험 연구장비로 표기되어 있는 품목

- 제조·생산장비, 가공·공정장비 및 대형시설·설비, 데이터 처리시스템 등은 제외

###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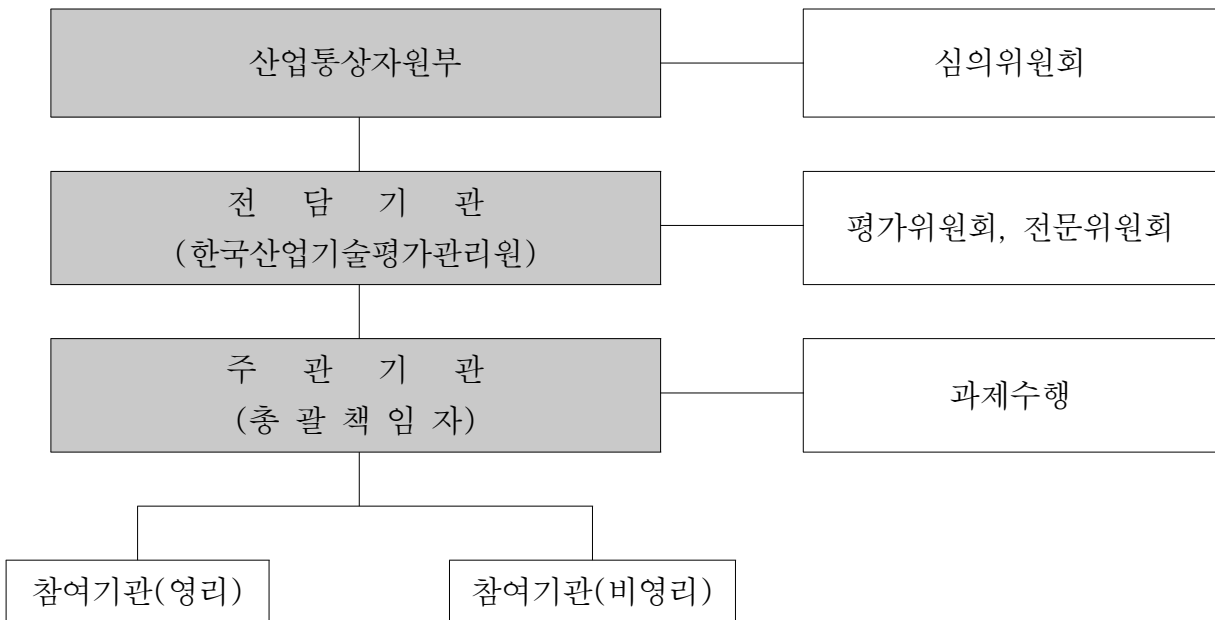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에서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4월~'13. 5월	'13. 7월	'13. 8월	'13. 9월

## 7.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비영리기관은 면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각 1부  
(상장사 및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우대자격 확인서 각 1부
- ※ 기타 공고시 제출 서류 등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김효선 사무관  
(Tel : 02-2110-5511, E-mail : hskim215@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이강우 책임  
(Tel : 02-6009-8215, E-mail : lkwspe@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정주영 전임  
(Tel : 02-6000-7388, E-mail : gaiajjy@keit.re.kr)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 및 신산업)

### -신산업기술개발-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박우진 주무관

(전화 : 02-2110-4575, E-mail : woojin@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계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년이내 지원 : 24~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0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년 신규지원 사업임

## 1. 사업개요

개요

- 미래 유망산업 분야 독자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틈새시장 공략 등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 2. 지원대상분야

바이오 체외진단장비, 로봇응용 제품, 주조금형 첨단화기술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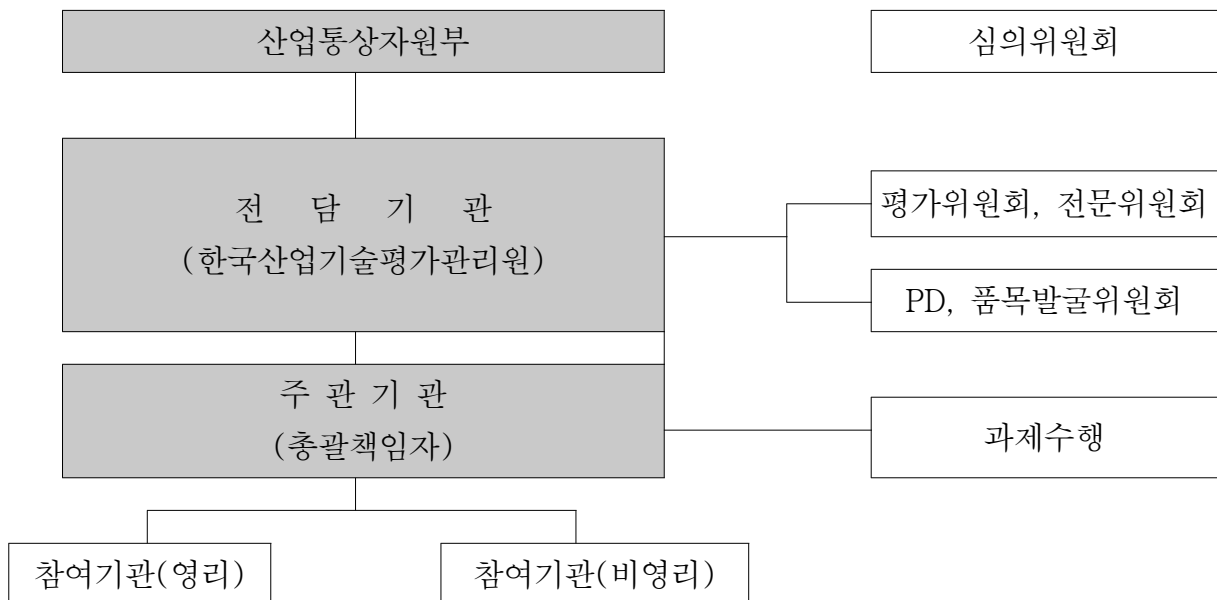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에서 연간 5억원 이내 지원(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수요조사 및 품목 기획의 경우는 품목 지정 분야에 한함

## 6. 추진일정

품목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2. 11월~'13. 1월	'13. 2월	'13. 4~5월	'13. 6월

## 7.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비영리기관은 면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각 1부  
(상장사 및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우대자격 확인서 각 1부

※ 기타 공고시 제출 서류 등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박우진 주무관  
(Tel : 02-2110-4575, E-mail : woojin@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이강우 책임  
(Tel : 02-6009-8215, E-mail : lkwspe@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이주영 전임  
(Tel : 02-6000-7385, E-mail : jylee0301@keit.re.kr)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임길환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홍수경 사무관

(미래부: 임길환 사무관 / 전화: 02-2110-1845, E-mail : ghlim@msip.go.kr)

(산업부: 홍수경 사무관 / 전화: 02-2110-5247, E-mail : hsk77@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2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60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600

### 1. 사업개요

개요

- IT유망산업 및 IT융합 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IT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촉진

### 2. 지원대상분야

IT산업, IT융합 및 지식정보보안 분야

### 3. 신청자격

- 개인(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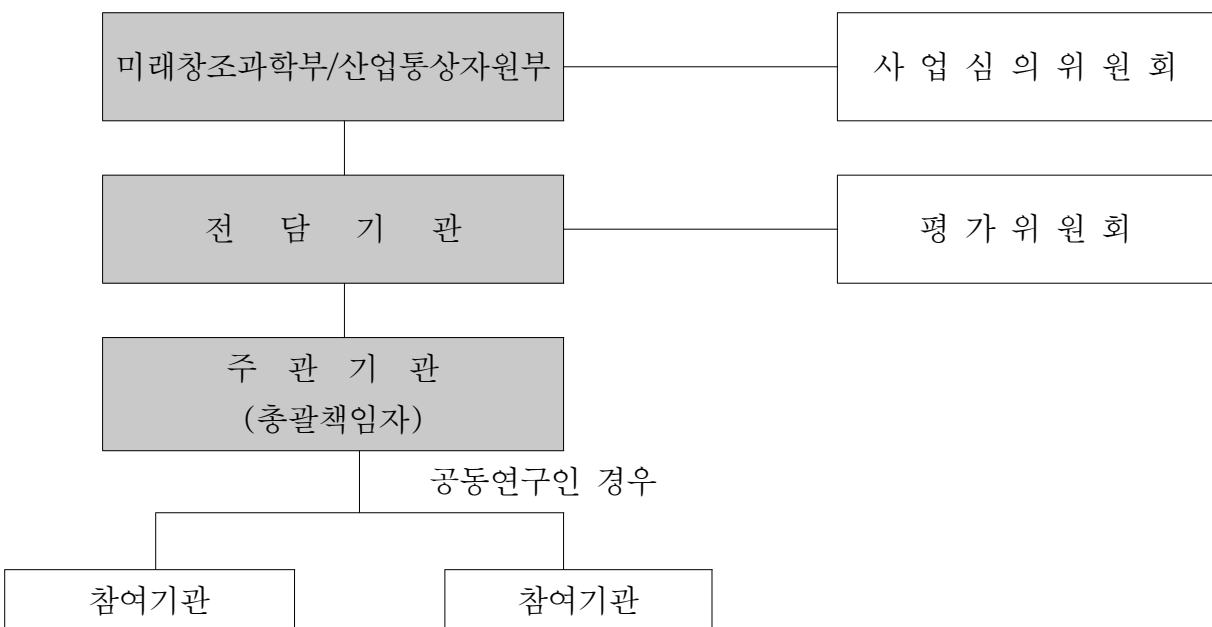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IT산업, IT융합 및 지식정보보안분야 중단기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2년 이내에서 지원하며, 성과 우수기업은 차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 기업 단독 혹은 산·학·연 컨소시엄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자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과제수행	수행기관	과제수행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IT)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총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5년간 분할 징수
성과관리	전담기관(KEIT)	외부 성과분석기관

6. 추진일정

사업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과제수행
'12. 10월~'12. 12월	'13. 1월~4월	'13. 5월~6월	'13. 7월~

## 7.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문 의 처>**

- 정 부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임길환 사무관  
(Tel : 02-2110-1845, E-mail : ghlim@msip.go.kr)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홍수경 사무관  
(Tel : 02-2110-5247, E-mail : hsk77@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 기획평가평가TF 정찬혁 책임  
(Tel : 042-715-2296, E-mail : supei@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전준표 선임  
(Tel : 042-715-2215, E-mail : augtto@keit.re.kr)

##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유재호 사무관

(전화 : 02-2110-5629, E-mail : coretnt@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84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00백만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산업과 자립화가 미약한 장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7대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 2.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 (수요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구매 가능한 양산장비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장비

- (수요창출)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장비

\*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 ○ 공통핵심기술개발

- 복수 분야 장비에 활용 가능하며, 7대 장비 분야의 핵심기술 축적 및 개발 완료 후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향후 과제성격(상용화기술개발/공통핵심기술개발)에 따라 분야별로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7대분야별 장비를 수요연계형과 수요창출형으로 구분하여 개발기간 3년 이내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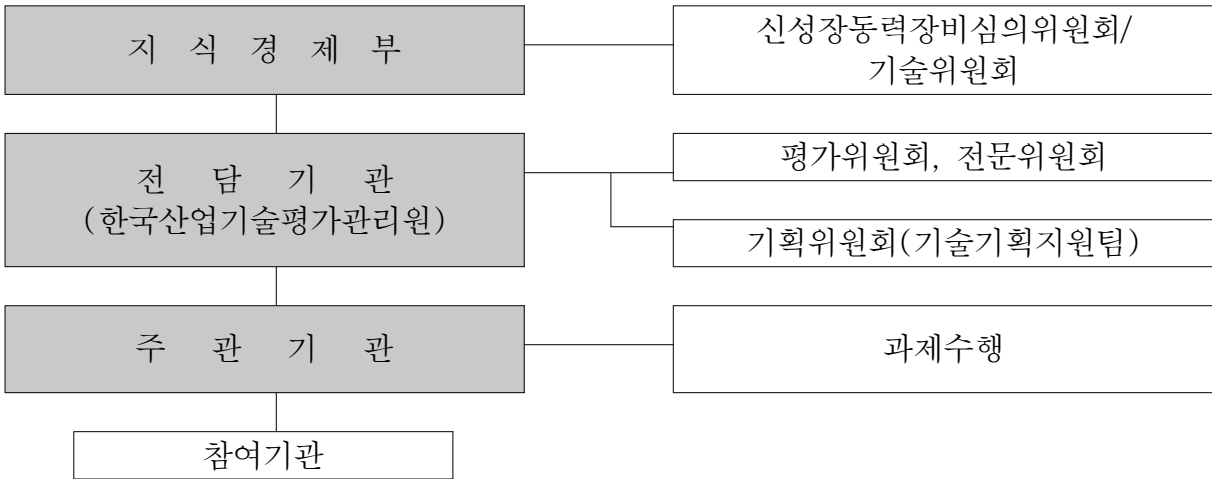
□ 공통핵심 기술개발 : 복수장비에 활용 가능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후 수요 기업에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며 개발기간 5년 이내로 지원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대학 및 연구소 참여 가능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지원과제 수 및 정책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신성장동력장비 기술 로드맵/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로드맵 수립 및 기술수요조사 실시
기획대상과제도출	전담기관 기획위원회(기술기획지원팀) 기술위원회	기획대상과제 후보도출 (지원대상의 2배수)
기획대상과제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기획결과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중간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기술료 징수(정액, 경상)
사후 관리	전담기관(KEIT)	성과관리 등

## 6. 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7월	'13. 9월	'13. 9~10월

※ 상기일정은 로드맵 및 과제기획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7.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리기관만 제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만 제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기타서류
  - 신청요강(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http://www.keit.re.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유재호 사무관  
(Tel : 02-2110-5629, E-mail : coretn@korea.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항공평가팀 심창섭 책임  
(Tel : 02-6001-0783, E-mail : caleb92@keit.re.kr)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박성민 사무관

(전화 : 02-2110-4825, E-mail : smpark@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초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63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46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항공우주 부품·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 2. 지원대상분야

항공우주 관련 상용기술개발, 원천핵심기술개발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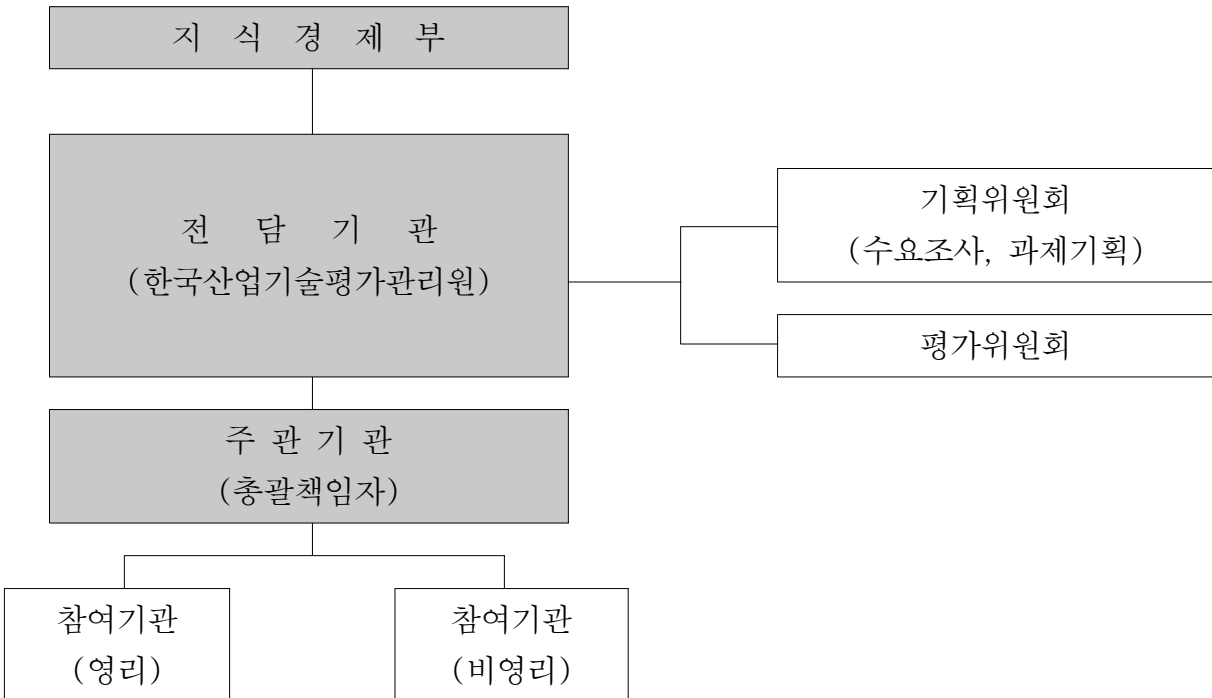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상용기술개발 및 기술 자립화·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핵심기술 개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일반적으로 단기(3년 이내), 중장기(총 5년 이내 ; 단계별 2~3년)로 지원하며, 연차평가(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단계) 지원
- 지원조건 : Matching fund(무담보·무보증·무이자로 정부출연금 50~100%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기술청사진/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전담기관(KEIT)/ 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과제기획 후보과제 발굴
		과제기획과제 선정
		과제기획 수행기관 선정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20~40%를 5년간 징수
추적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7월~8월	'13. 9월	'13. 10월~

※ 상기일정은 로드맵 및 연구기획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7.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리기관만 제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만 제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박성민 사무관  
(Tel : 02-2110-4825, E-mail : smpark@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항공평가팀 김준영 선임  
(Tel : 02-6001-0778, E-mail : job9981@keit.re.kr)

#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이재홍 사무관

(전화 : 02-2110-4826, E-mail : hongje84@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7.38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78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지능형자동차분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와 후발국의 추격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 육성

## 2. 지원대상분야

기술개발

- 지능형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기반구축

-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 연구센터 구축,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주행시험장 확장

###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분야의 특성에 따라 사업공고시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발과제 및 기반구축과제로 구성하며,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에서 과제당 단기/중기로 구분하여 평가를 통해 지원

- 핵심요소부품 : 과제당 연간 3~5억원 내외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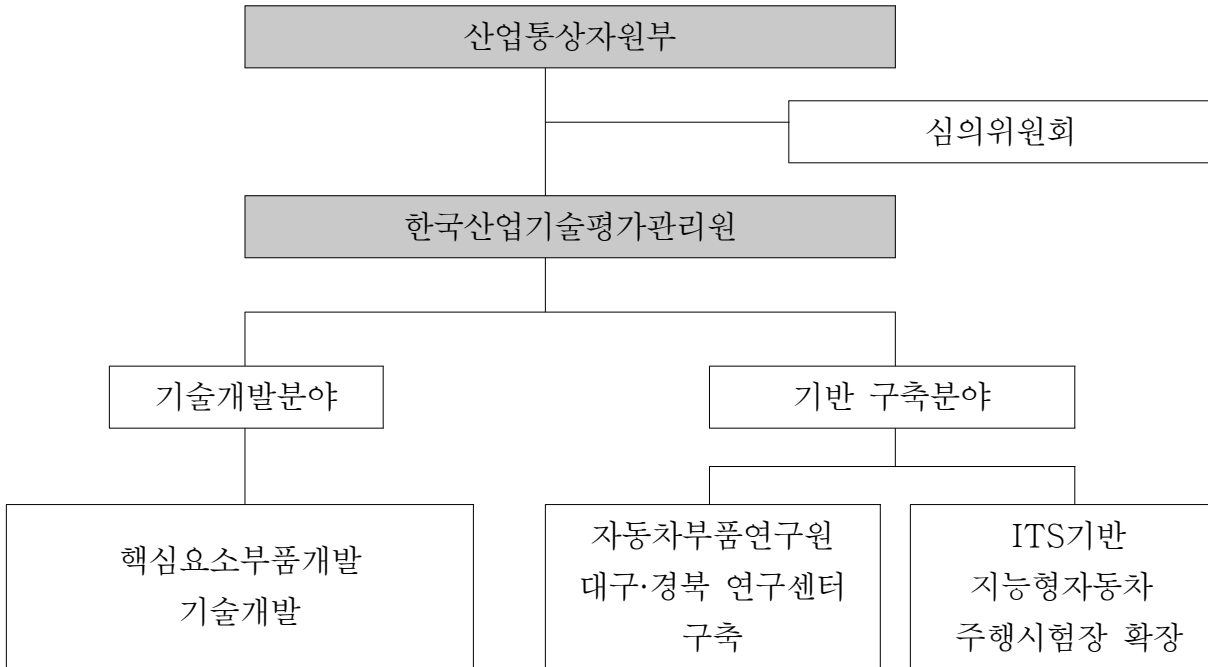
-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 연구센터 구축

-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주행시험장 확장

- 지원대상 : 산·학·연 컨소시엄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1월~'13. 2월	'13. 4월	'13. 5월	'13. 6월~

## 7.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각 1부(영리기관 모두 제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이재홍 사무관  
(Tel : 02-2110-4826, E-mail : hongje84@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평가팀 이민규 선임  
(Tel : 02-6001-0776, E-mail : mglee@keit.re.kr)

##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주현동 사무관

(전화 : 02-2110-4907, E-mail : koreaju@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화공
(2) 연구수행주체	중소중견기업 ·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연구개발 ·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섬유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24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70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40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아라미드 섬유, 초고분자 PE섬유 등 슈퍼섬유소재를 적용한 융합소재·부품 개발 지원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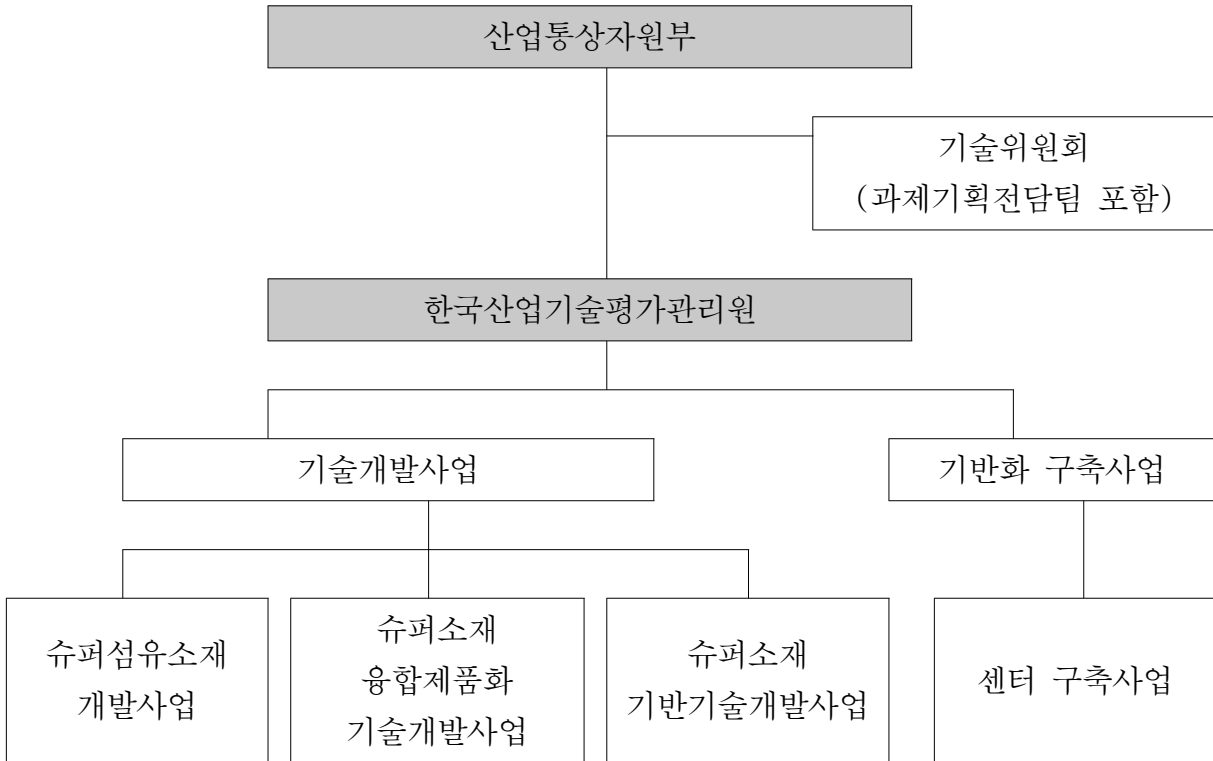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슈퍼섬유소재개발사업 : 아라미드 섬유(Para, Meta계), 초고분자 PE 섬유 등 개발
  - \* 사업기간 3년 이내,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지원(기업 중심)
-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 소재와 수요기업의 연계를 통한 슈퍼 섬유소재 융합제품 기술개발
  - \* 사업기간 2~3년 이내,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지원(기업 중심)
-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 산업용 섬유 기반기술 축적 및 기업 기술보급을 위한 슈퍼소재 기반기술개발
  - \* 사업기간 3년 이내,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지원(연구기관 중심)
- 융합소재(가공) 연구센터 구축사업 : 슈퍼소재 산업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 사업기간은 총 5년(연구기관 중심)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로드맵/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기획실무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
추적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1월~'13. 2월	'13. 3월	'13. 5월	'13. 6월

## 7.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원본 1부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1부(결산일 기준 최근 2년)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주현동 사무관  
(Tel : 02-2110-4907, E-mail : koreaju@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 고은영 팀장  
(Tel : 02-6009-8391, E-mail : key@keit.re.kr)

## 그래핀 소재 · 부품 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박병기 사무관

(전화 : 02-2110-4765, E-mail : bkpark@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재료, 화공,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기업, 대학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7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0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년 신규사업

### 1. 사업개요

개요

- 다양한 응용성 및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그래핀 소재를 조기 상용화함으로써 글로벌 그래핀 시장을 선점하고, 그래핀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value chain을 포함하는 그래핀 산업 육성

### 2. 지원대상분야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그래핀 소재 및 5개 응용분야 부품개발

OLED, 터치패널, 고내식 코팅제, 전자파 차폐, 하이베리어 소재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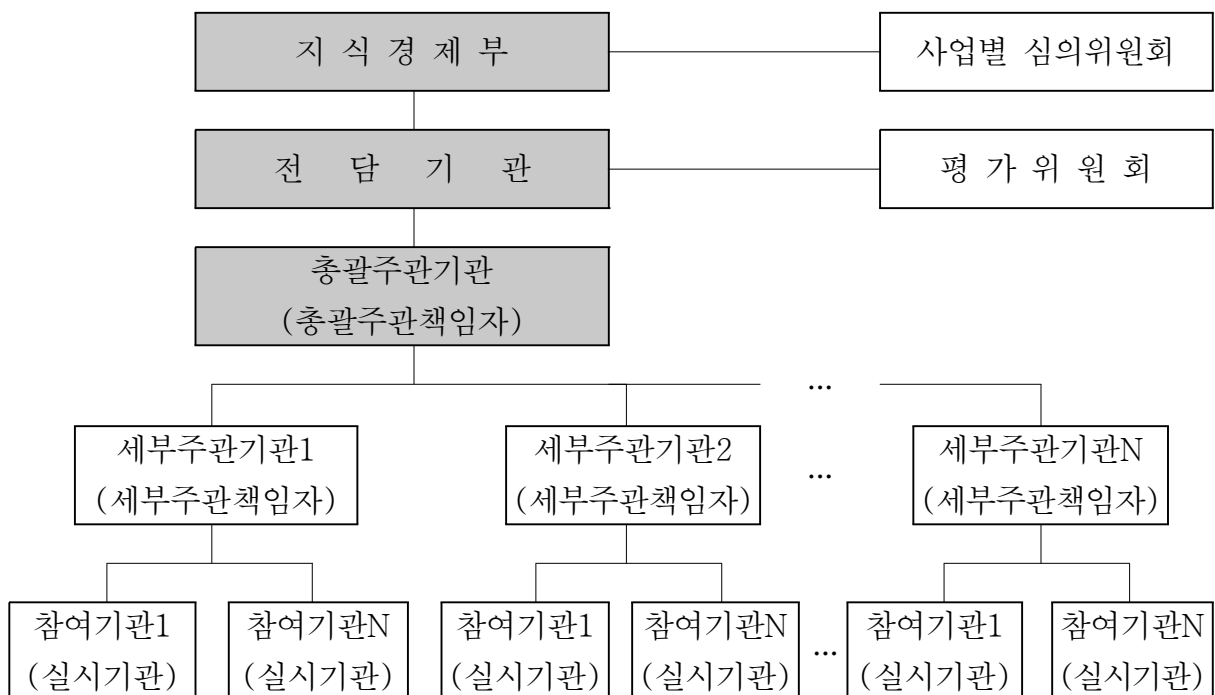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6년 이내
- 지원금액 : 국비 472억원(민간부담금 매칭)
  - 국비는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 6. 추진일정

사업안내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3월	'13. 4월	'13. 5~6월	'13. 7~8월

## 7.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각 1부
- 우대배점 확인서류 각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각 1부
- 기타 신청자격 증빙에 필요한 근거서류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박병기 사무관

(Tel : 02-2110-4765, E-mail : bkpark@motie.go.kr)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김 훈 책임

(Tel : 02-6000-7367, E-mail : hkim@keit.re.kr)

##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이원규 사무관

(전화 : 02-2110-5106, E-mail : leewg@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은 디자인전문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4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3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스타일링에 한정된 기업역량을 디자인 수혜기업을 리딩할 수 있도록 창의, 혁신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전문기업으로 육성

### 2. 지원대상분야

디자인 전반

###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디자인전문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1년 이내에서 연간 1.5~5억원 이내 지원(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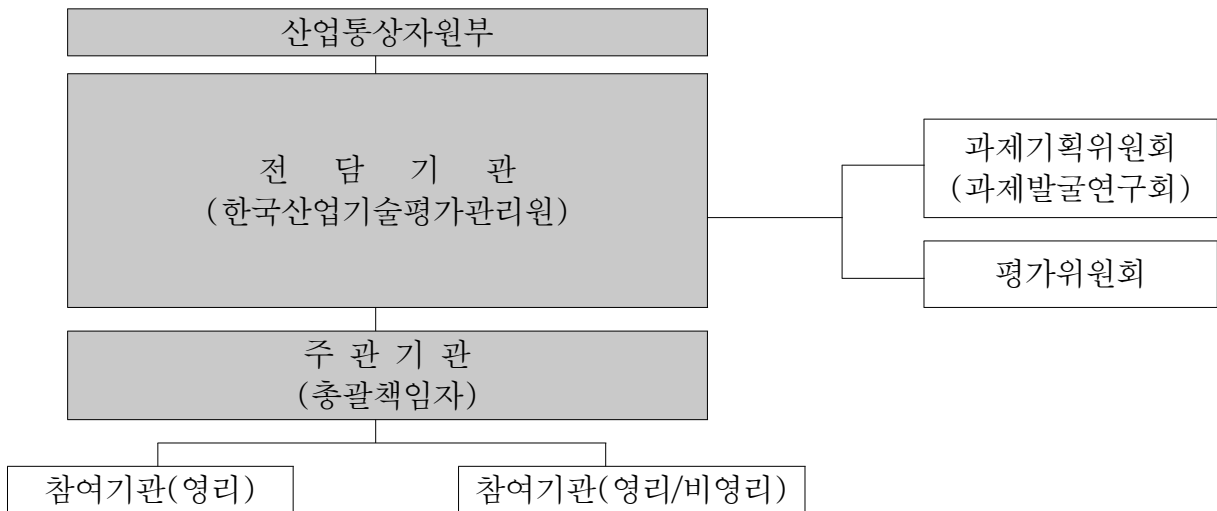
- (단계 구분) 디자인전문기업을 직전 연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3단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 (창조기업) 1.5억원 이내 → (선도기업) 3억원 이내 → (글로벌기업) 5억원 이내

- (단계별 성장 유도) 창조→선도→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당 성장단계순 1회만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2. 11월~'13. 1월	'13. 4월	'13. 5월	'13. 6월

## 7.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비영리기관은 면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각 1부  
(상장사 및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우대자격 확인서 각 1부
- ※ 기타 공고시 제출 서류 등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이원규 사무관  
(Tel : 02-2110-5106, E-mail : leewg@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송성일 선임  
(Tel : 02-6000-7391, E-mail : sungil@keit.re.kr)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박주성 사무관

(전화 : 02-2110-5175, E-mail : juspark@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기계, 전기/전자, 화공, 정보/통신,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24개월~ 48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99.63백만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41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일반 국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사회 일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 2. 지원대상분야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익증진 및 사회안전, 작업환경 등 일반국민들의 사회적 이슈해결 등을 위한 분야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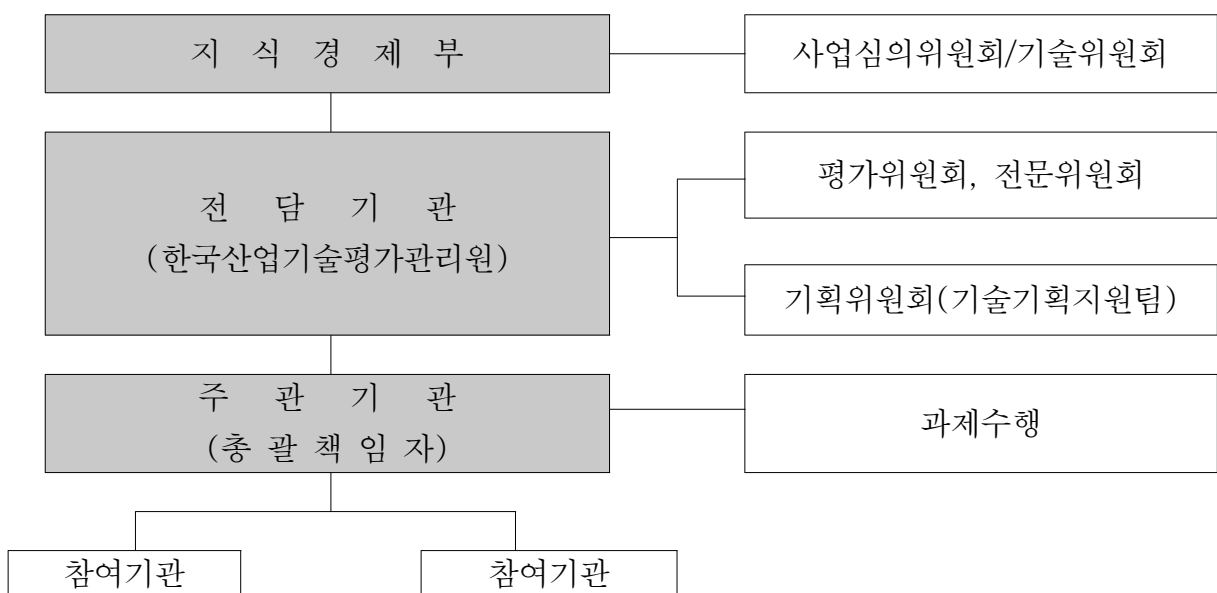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 향후 과제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익증진 및 일반국민들의 사회적 이슈해결 등을 위한 분야에 실수요자 참여 기반 문제해결형·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
- 지원조건 : 2~4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지원과제 수 및 정책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기술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기술수요조사 실시
기획대상과제도출	전담기관 기획위원회(기술기획지원팀) 기술위원회	기획대상과제 후보도출
과제기획	전담기관 (과제기획전담팀)	과제제안요구서(RFP) 등 작성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신규대상과제 공고
신규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중간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기술료 징수 (정액, 경상)
사후 관리	전담기관(KEIT)	성과관리 등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2월~'13. 8월	'13. 9월	'13. 11월	'13. 11월~

## 7.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참여기관 모두 제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박주성 사무관  
(Tel : 02-2110-5175, E-mail : juspark@korea.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김형철 책임  
(Tel : 02-6000-7381, E-mail : hckim@keit.re.kr)

##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 기술개발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김성환 주무관

(전화 : 02-2110-5673, E-mail : kimsh1013@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핵심의료기기제품화 : 24개월 ~ 36개월 인증평가기술개발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0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57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FTA 협상타결(한-EU) 및 한중 FTA 추진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보호를 위해 핵심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증평가 기술개발

### 2.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한 IT 융합 첨단의료기기 전략품목 선정·집중 개발
- 수요자(병원)와 의료기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추진

- 매출액비중, 부가가치, 해외수입비중이 높은 IT 융합형 영상장비 제품화 개발
- 유럽 등 선진국의 강화된 인증규격 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역량 확립을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 강화
- EU(CE) 등 다국적 시험인증기관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험평가 역량 구축, 필수시험장비 등 인프라 보강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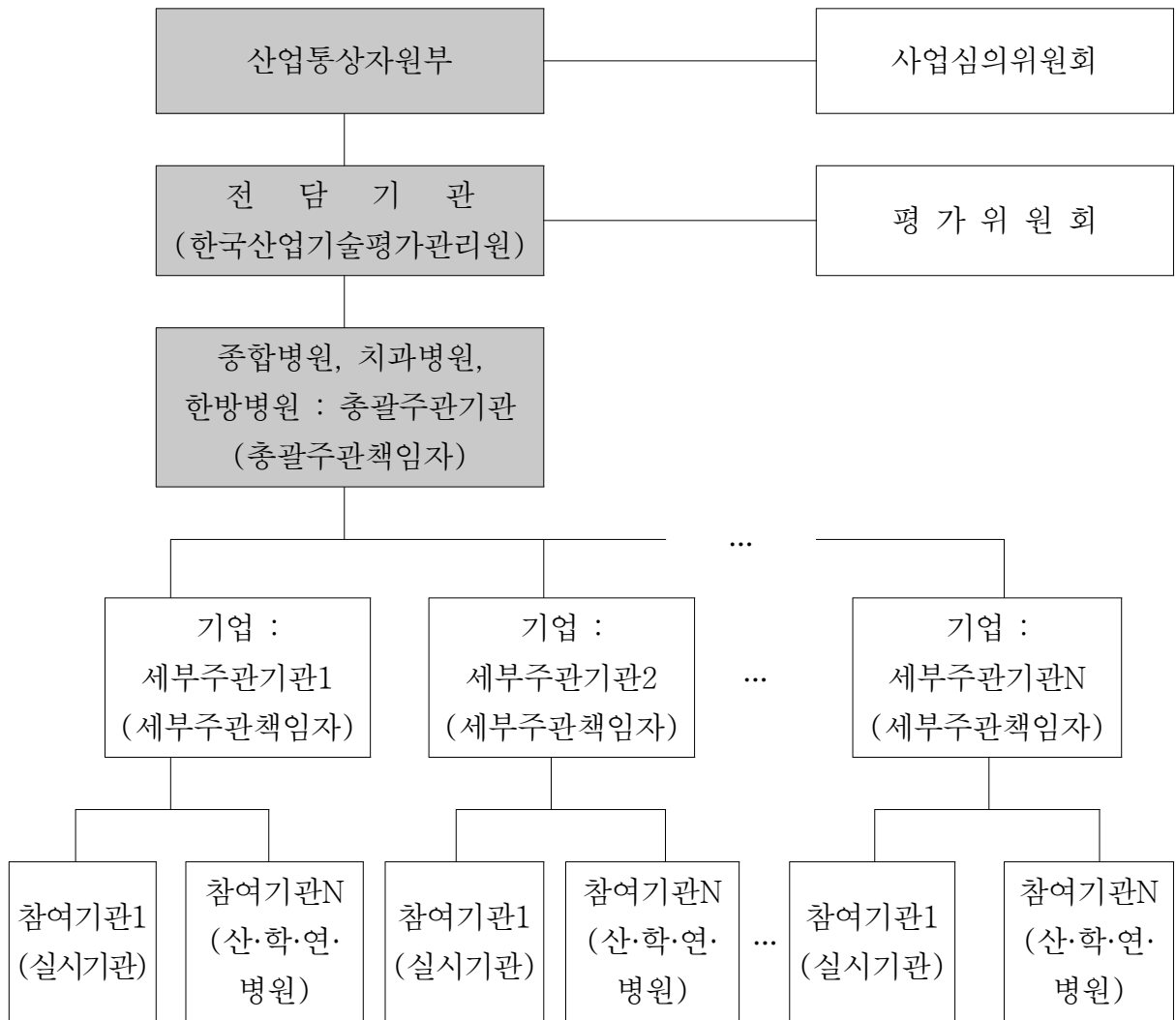
- 총괄주관기관 : 의료법 제3조3 정의에 포함되는 종합병원, 제3조2의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세부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연구소, 병원 등(세부 사업 공고시 참조)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핵심의료기기제품화) 연간 15억원 내외, 최장 3년간 지원
  - (의료기기인증평가기술개발) 연간 10억원 내외,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조건
  - (핵심의료기기제품화) 정부출연금의 25% 이상을 기업이 부담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사업계획 공고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협약 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추적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신규 및 연차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1월~3월	'13. 4월	'13. 6월	'13. 7월	'13. 8월

## 7.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참여기관 모두 제출)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김성환 주무관  
(Tel : 02-2110-5673, E-mail : kimsh1013@korea.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김태진 책임  
(Tel : 02-6000-7374, E-mail : tjkim@keit.re.kr)

## 산업융합촉진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정상봉 주무관

(전화 : 02-2110-5118, E-mail : bong3230@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타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24개월
	12개월 ~ 36개월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5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67백만원*

\* 산업융합촉진사업(공모과제)에 해당하는 금액

### 1. 사업개요

개요

- 중소·중견 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기반으로서 산업융합 공통정보 개발 및 활용사업 추진

## 2. 지원대상분야

- 산업융합신제품개발 및 사업화촉진 분야
- 공동활용정보 개발 분야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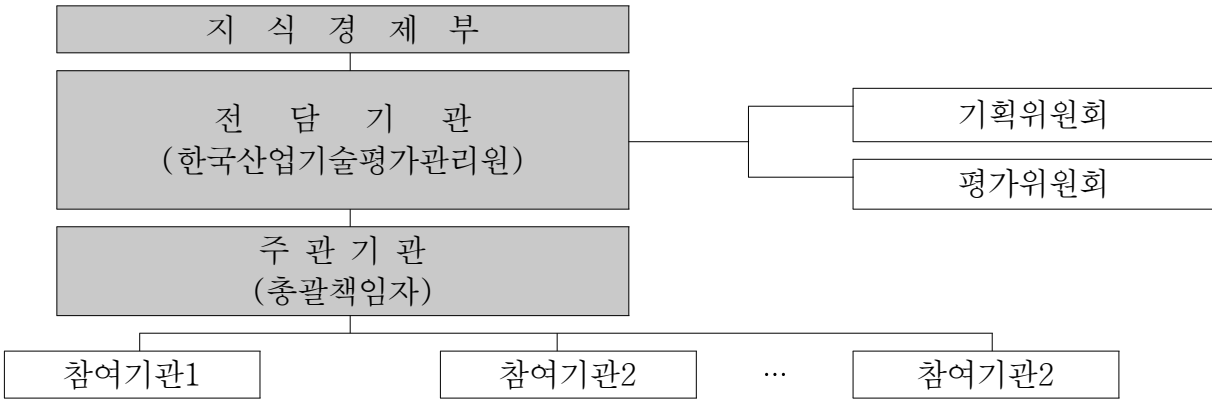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산업융합신제품개발 및 사업화촉진 부문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목표로 제품 개발 단계별 맞춤형 통합 연계지원 확대
  - 산업융합이 전 산업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등을 fast-track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 기초 R&D 수행
- 공동활용정보 개발 부문
  -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공동활용정보의 개발 및 보급·확산
  - 산업융합 분위기를 확산 및 중소·중견기업의 융합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3월~'13. 4월	'13. 4월~5월	'13. 5월~6월	'13. 6월

## 7.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각 1부
- 우대배점 확인서류 각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각 1부
- 기타 신청자격 증빙에 필요한 근거서류 각 1부
- 상기는 '13년도 신규과제 접수기준이며, 신청양식은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필요

## 8. 관련자료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기술개발사업)」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정상봉 주무관  
(Tel : 02-2110-5118, E-mail : bong3230@korea.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성우석 책임  
(Tel : 02-6009-7364, E-mail : wssung@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이화영 전임  
(Tel : 02-6009-7369, E-mail : hylee64@keit.re.kr)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노학엽 연구사

(전화 : 02-509-7226, E-mail : noh9289@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	사업별 특성에 따라 1~13년이내 지원 : 12~15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26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9~1,000백만원

### 1. 사업개요

#### □ 개요

- 융·복합기술, 주력산업, 신산업 및 미래창조산업 분야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과 표준화 기반 조성으로 국제표준 선점 활동, 최첨단 시험장비구축 등 시험평가능력의 국제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안전기술 개발, 글로벌 기업규제환경에 대응하여 품질경영기반구축 및 국가공인 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대

##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가표준기술력향상	IT분야, 차세대 신성장 동력 분야 등 우리기술 선도분야와 녹색기술 표준화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국가 및 국제표준을 제정·보급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신수요분야 시험장비 구축 등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을 지원
품질혁신기반구축	신품질경영기법 개발·보급 및 확산, 품질경쟁력 수준조사 및 평가, 지역별 안전품질경영 네트워크 기관운영 등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제품안전 선진기술력 확보, 제품안전에 위한 안전기준 및 시험·검사방법의 선진화 등 기반조성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참조표준 개발·보급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국가코디네이터 분야별 표준프레임워크/표준화 로드맵 개발 및 국가 R&D 과제의 표준화 기획/자문/평가 등을 통한 표준화 연계 활성화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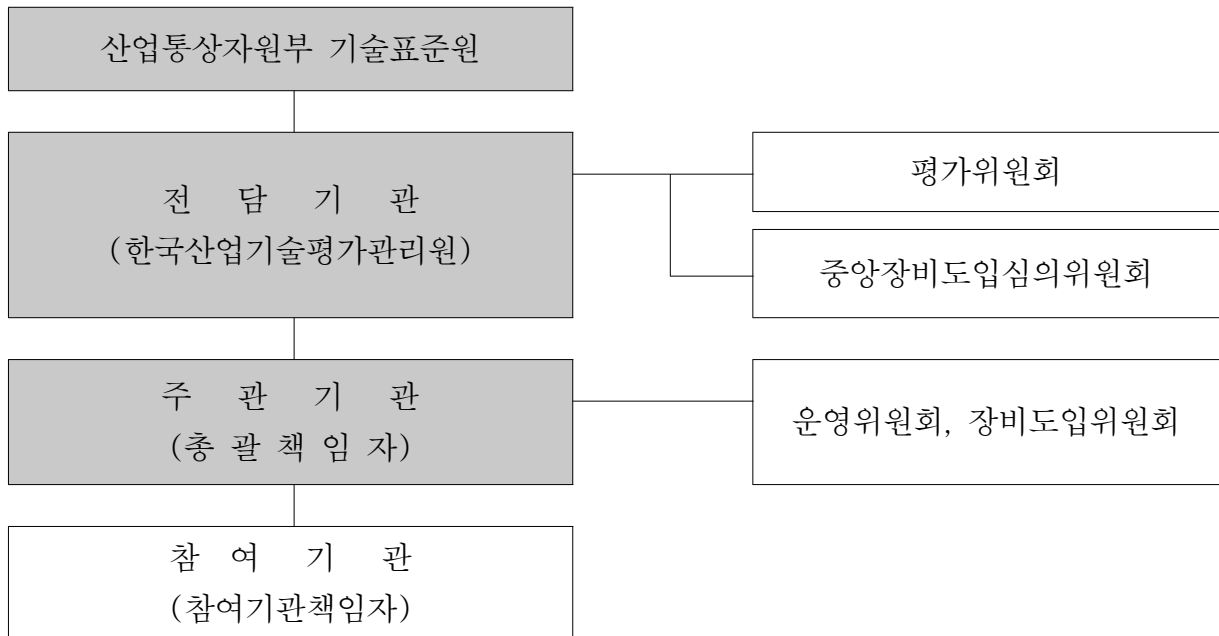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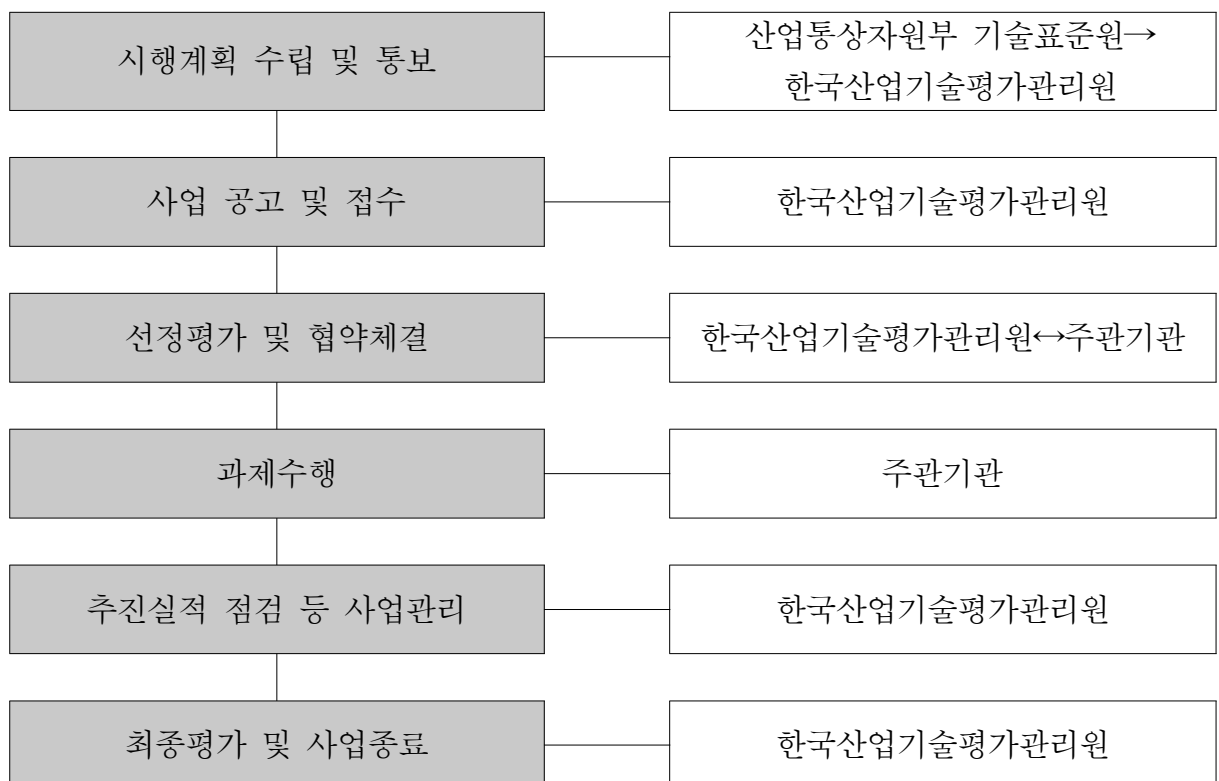
구 분	지원내용
국가표준기술력향상	10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분야당 연간 15억원 내외 지원
품질혁신기반구축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연간 4억원 내외 지원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10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10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3월	'13. 4월	'13. 5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사업에 따라 추진일정 상이

## 7.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서류

전산접수증 1부

사업계획서 10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각 1부

우대배점 확인서류 각 1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각 1부

기타 신청자격 증빙에 필요한 근거서류 각 1부

상기는 '13년도 신규과제 접수기준이며, 신청양식은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필요

## 8. 관련자료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기술개발사업)」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노학엽 연구사  
(Tel : 02-509-7226, E-mail : noh9289@korea.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장동규 선임  
(Tel : 02-6009-8261, E-mail : chemjang@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박효상 전임  
(Tel : 02-6009-8262, E-mail : hspark@keit.re.kr)

##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정병찬 사무관

(전화 : 02-2110-5675, E-mail : chanjb@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8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90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온실가스(CO) 저감과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할 세계 최고수준의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기술확보 및 시험·평가·인증기반 구축

### 2. 지원대상분야

- 조기상용화가 가능하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용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 개발된 부품·소재를 적용 로봇, 전기이륜차, 산업용, 전기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 확산이 가능한 최적화된 셀 및 팩 개발

- 동 사업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 이차전지 평가, 분석 기준 마련 등 사업화 지원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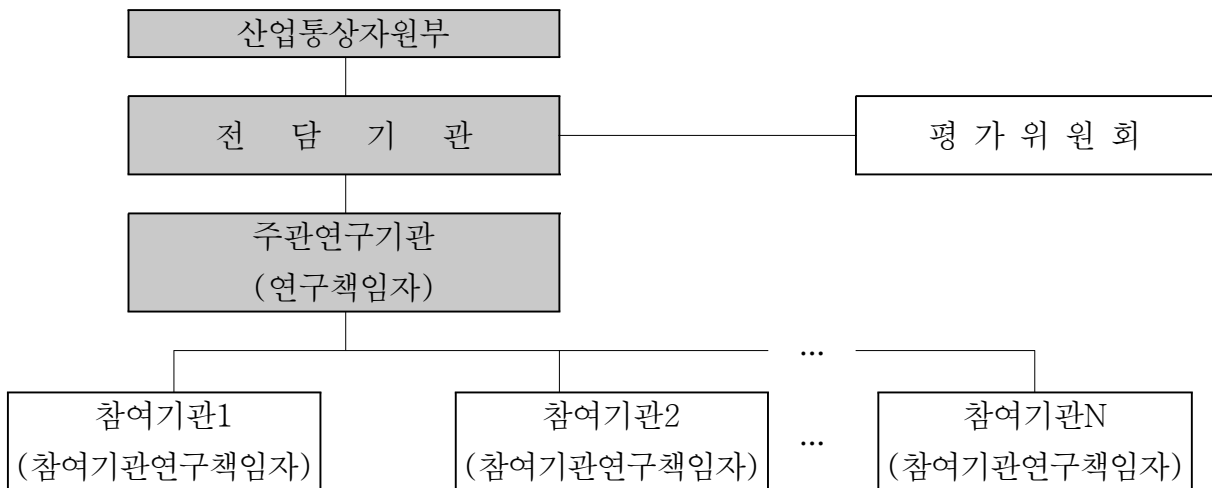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제품의 조기 상용화·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3~7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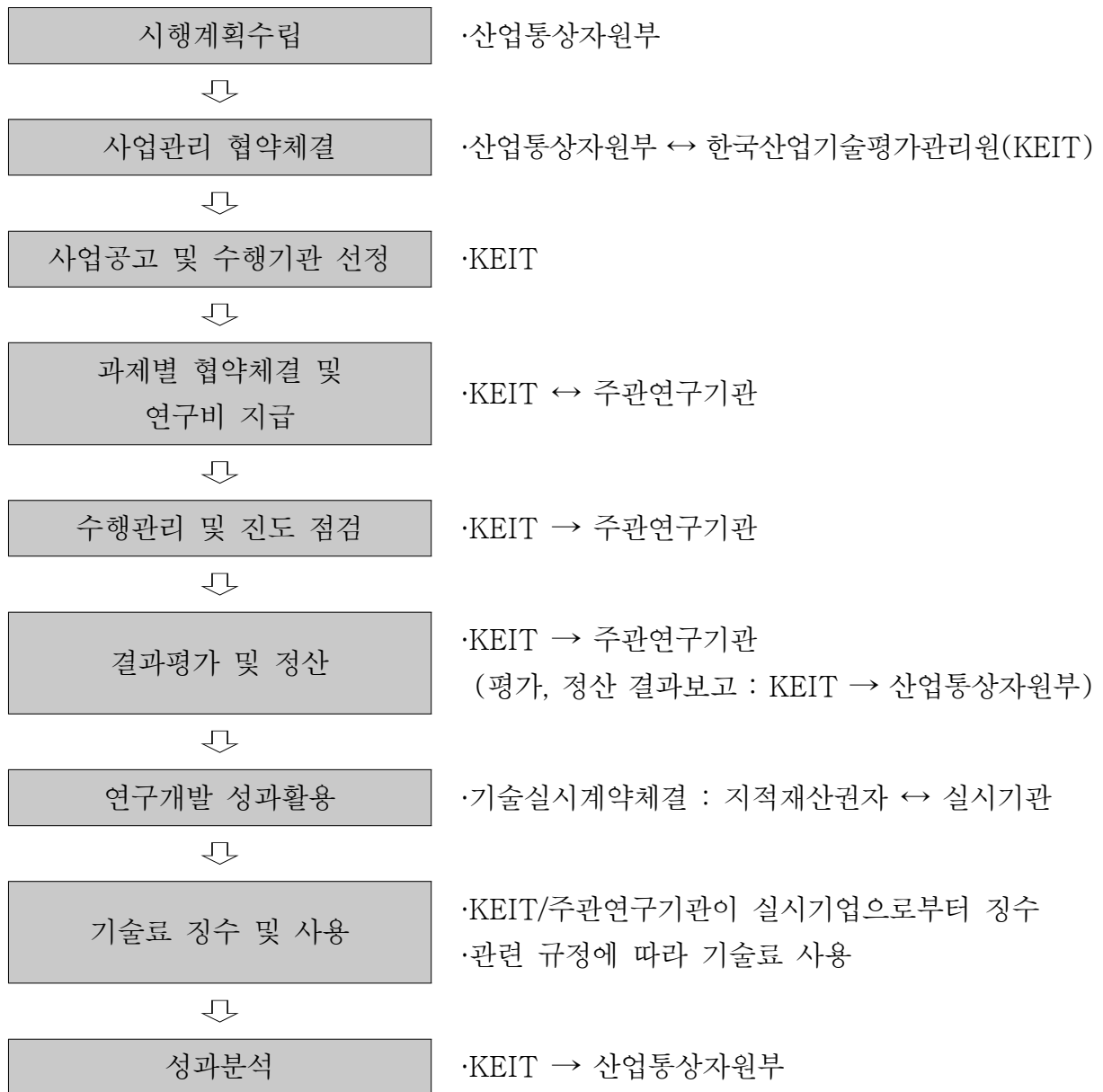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사업공고 및 접수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13. 1~2월	'13. 3~5월	'13. 6월

## 7.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원본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모든 참여자 날인 원본 제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각 1부(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정병찬 사무관  
(Tel : 02-2110-5675, E-mail : chanjb@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김근대 책임  
(Tel : 042-715-2234, E-mail : bytheway@keit.re.kr)

## 나노융합상용화플랫폼촉진및활용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박병기 사무관

(전화 : 02-2110-4765, E-mail : bkpark@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재료, 화공,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기업, 대학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4.34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00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나노기술기반으로 산업고도화를 촉진하여 신산업·신시장 창출의 기반을 제공할 국가 나노융합산업 촉진 시스템 구축과 이를 활용한 기업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 세부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사업
- 유망 나노기술 발굴, 나노기술·공정보완, 시제품제작 및 시험생산 R&D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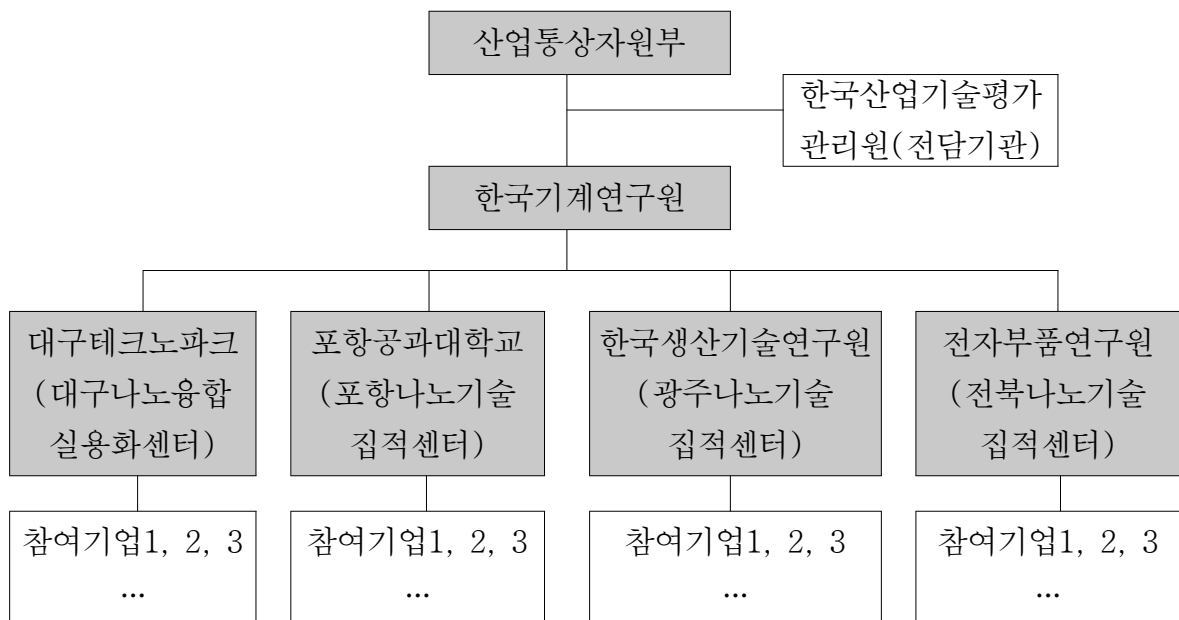
- 나노융합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지정사업으로 주관기관 및 사업내용이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확정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 통해 차기 단계 지원)
- 지원금액 : 국비 270억원(총사업비 40% 이상 지방비 매칭)
  - 국비는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사업안내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1월	'13. 2월	'13. 3월	'13. 6월

## 7.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각 1부
- 우대배점 확인서류 각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각 1부
- 기타 신청자격 증빙에 필요한 근거서류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의처〉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박병기 사무관

(Tel : 02-2110-4765, E-mail : bkpark@motie.go.kr)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김 훈 책임

(Tel : 02-6000-7367, E-mail : hkim@keit.re.kr)

## 나노융합기업T2B촉진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박병기 사무관

(전화 : 02-2110-4765, E-mail : bkpark@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기업, 대학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5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50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나노기술에 대한 수요기업의 이해를 도모하고, 수요·나노기업 간 접촉할 기회를 증진시켜 나노융합 분야 사업화를 촉진

### 2. 지원대상분야

- 우수 나노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시제품 단계까지 제작·시연을 지원한 후, 상설시연장에 전시

- 국내 기존 주력산업의 협·단체와 협력을 통해 수요·나노기업간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고, KOTRA를 활용하여 해외 거래선을 발굴, 나노기업과 연계 추진
- 수요·공급기업간 1:1 매칭 거래상담회, 수요 밀집지역 대상 나노기술·제품 설명회 및 기업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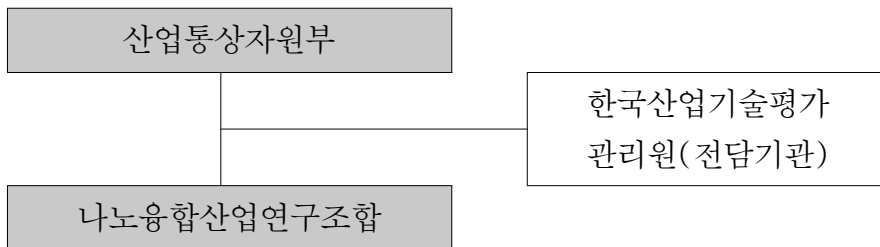
- 나노융합 분야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지정사업으로 주관기관과 사업내용은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확정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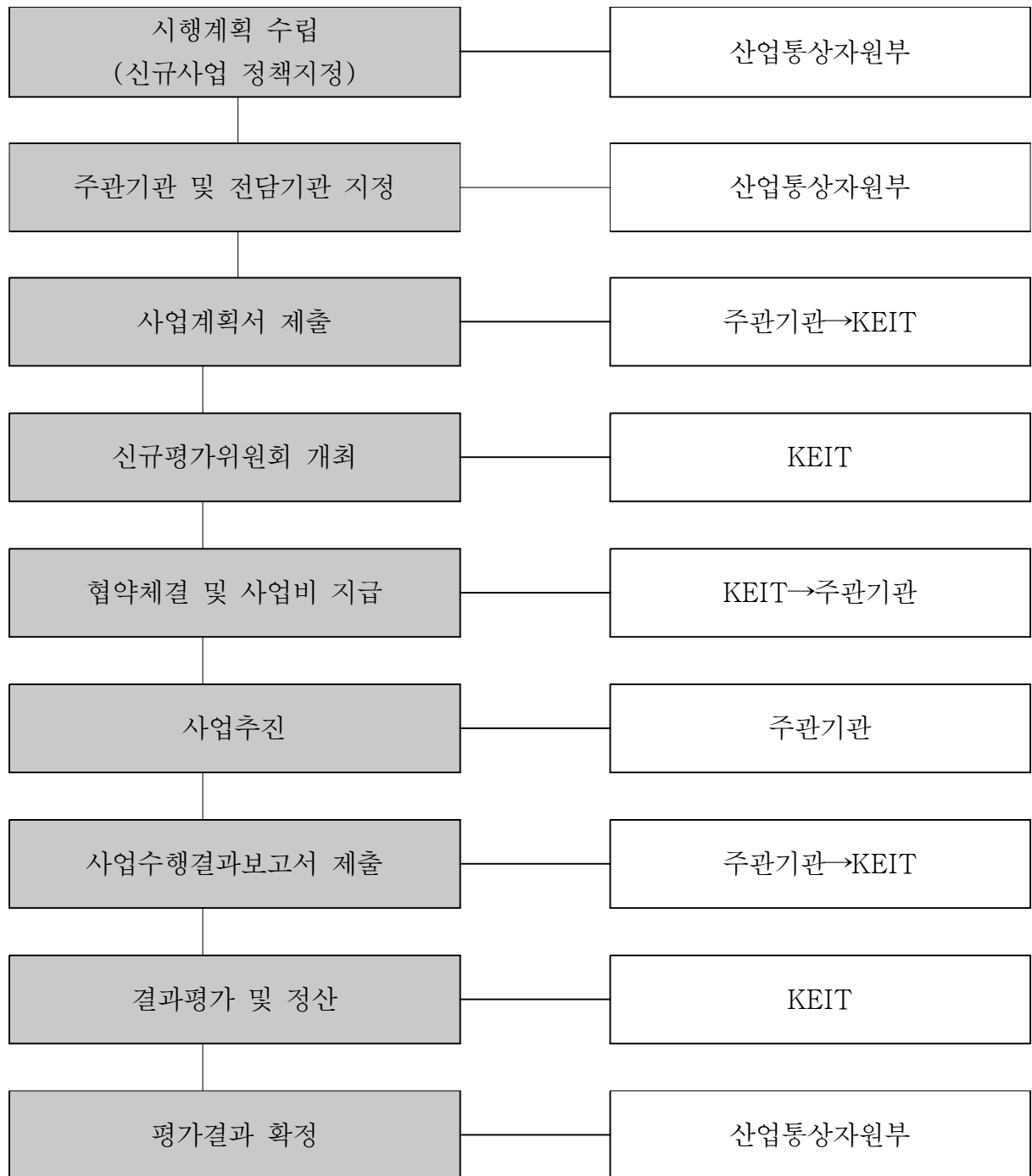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 지원금액 : 국비 22.5억원(총사업비 10%이상 지방비 매칭)
  - 국비는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사업안내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1월	'13. 2월	'13. 3월	'13. 4월

## 7.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각 1부
- 우대배점 확인서류 각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각 1부
- 기타 신청자격 증빙에 필요한 근거서류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
- 기타 증빙서류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박병기 사무관  
(Tel : 02-2110-4765, E-mail : bkpark@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장경미 선임  
(Tel : 02-6000-7368, E-mail : kmjang@keit.re.kr)

## 나노제품안전성기반구축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박병기 사무관

(전화 : 02-2110-4765, E-mail : bkpark@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기업, 대학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	2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2.04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나노소재·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선진국 등의 규제 대응과 국내 나노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 2. 지원대상분야

-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법 개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 나노안전성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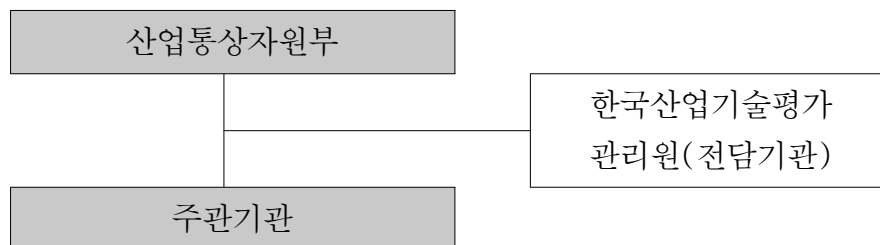
- 공모에 의해 과제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 및 사업 세부내용을 확정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
- 지원금액 : 국비 273억원('12년 3억으로 추진)
  - 국비는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사업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6월	'13. 6월	'13. 7월	'13. 8월

## 7.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각 1부
- 우대배점 확인서류 각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각 1부
- 기타 신청자격 증빙에 필요한 근거서류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
- 기타 증빙서류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의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박병기 사무관  
(Tel : 02-2110-4765, E-mail : bkpark@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이화영 전임  
(Tel : 02-6000-7369, E-mail : hylee64@keit.re.kr)

##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박용민 사무관

(전화 : 02-2110-5391, E-mail : ympark@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기/전자 : 시스템반도체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 팹리스 기업, 반도체 설계 관련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1.46 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38 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시스템반도체를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시장 규모가 큰 휴대폰, 디지털가전,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휴대폰, D-TV, 자동차 등 주요 시스템에 적용되는 시스템반도체 핵심 상용화 기술 개발

- 모바일/스마트 기기용 Wireless Connectivity SoC, 다기능 Power Management IC, 3D공간 터치 다중감지 센서 SoC 개발 등
- D-TV용 Multi-port 일체형 인터페이스 SoC, Smart TV Box용 핵심 SoC 및 상용화 플랫폼 개발 등
- 자동차 제동장치용 기능통합 SoC, 자동차용 고화질 영상처리기능 및 ECU SoC 개발 등
- 선진기술 공동협력 R&D를 통해 자동차, 휴대폰, DTV, 그린 분야 글로벌 경쟁력강화 및 사업화를 위한 핵심 IP기술 확보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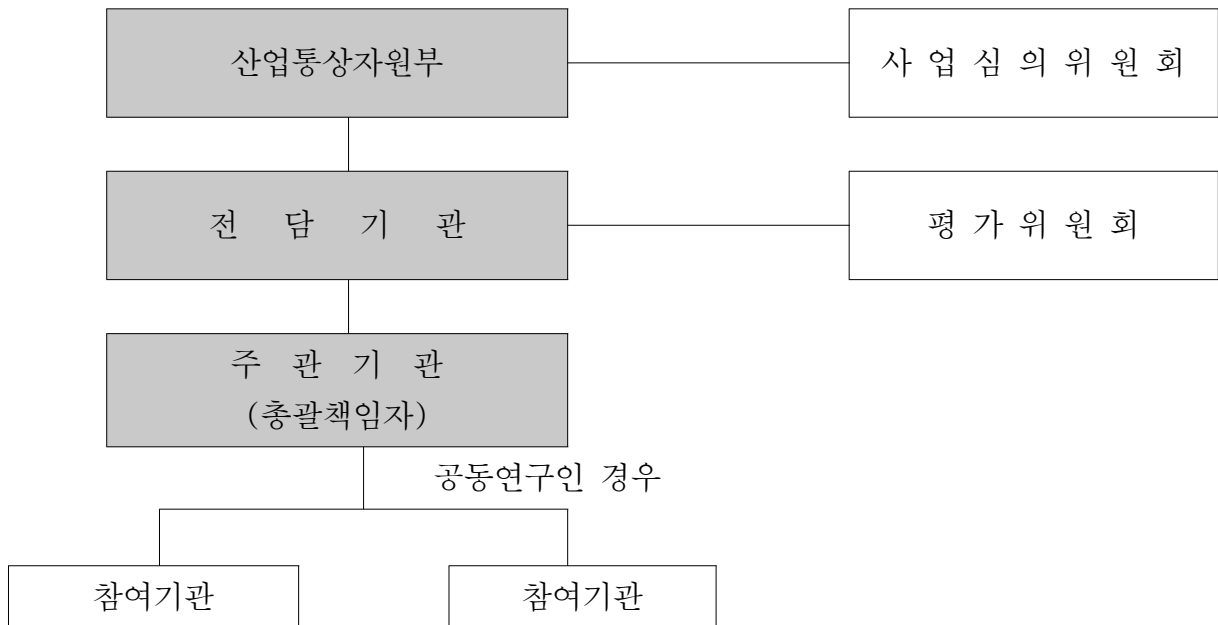
-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관련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시스템반도체 설계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과제수행	수행기관	과제수행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IT)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위탁회계법인 또는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사용한 총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5년간 분할 징수
성과관리	전담기관(KEIT)	외부 성과분석기관

## 6. 추진일정

사업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과제수행
'13. 3월~'13. 7월	'13. 7월~8월	'13. 8월~9월	'13. 10월~

## 7.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원본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모든 참여자 날인 원본 제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각 1부(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박용민 사무관  
(Tel : 02-2110-5391, E-mail : ymparkqqk@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전광호 책임  
(Tel : 042-715-2232, E-mail : khchun@keit.re.kr)

#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정병찬 사무관

(전화 : 02-2110-5675, E-mail : chanjb@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한국전기연구원(정책지정)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4.5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15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동남권역 이차전지 산업 발전의 허브가 될 한국전기연구원 양산 전지연구센터를 구축

## 2. 지원대상분야

차세대 중대형 이차전지용 핵심 소재 및 전지 제조 기술 확보

차세대 이차전지 선도 기술 개발

중·대형 이차전지의 에너지효율 및 안전성 검증 규격화 지원

- 동남권 이차전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내 이차전지 및 소재 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등 기업제품 특성향상 및 상품 조기화 지원
- 동 사업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 이차전지 평가, 분석 기준 마련 등 사업화 지원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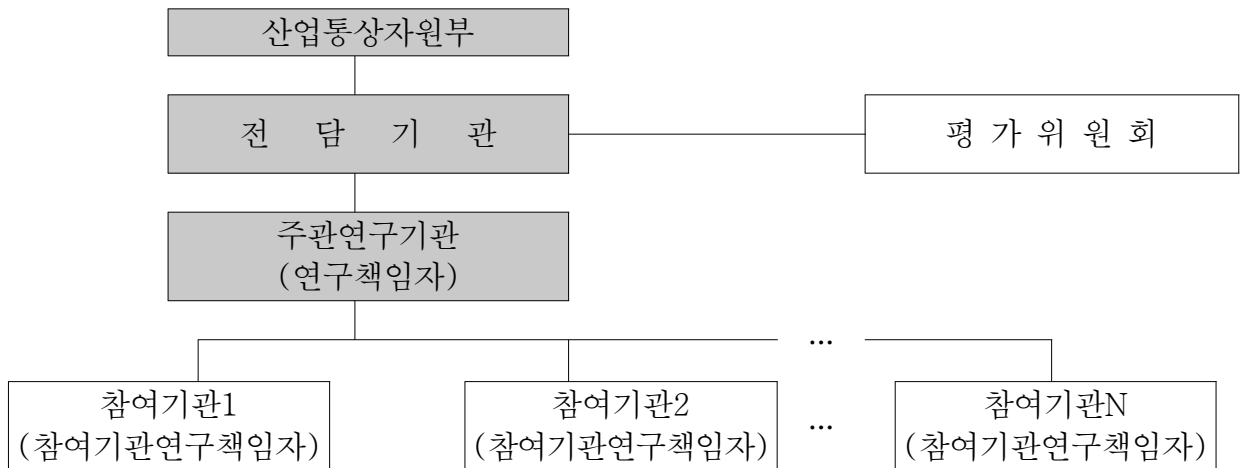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한국전기연구원 양산 전지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 지정 사업임)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그린카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미래 핵심 이차전지 선도 기술 개발 및 중대형 전지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지 규격화·표준화·이차전지 중소기업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전기연구원
- 지원조건 :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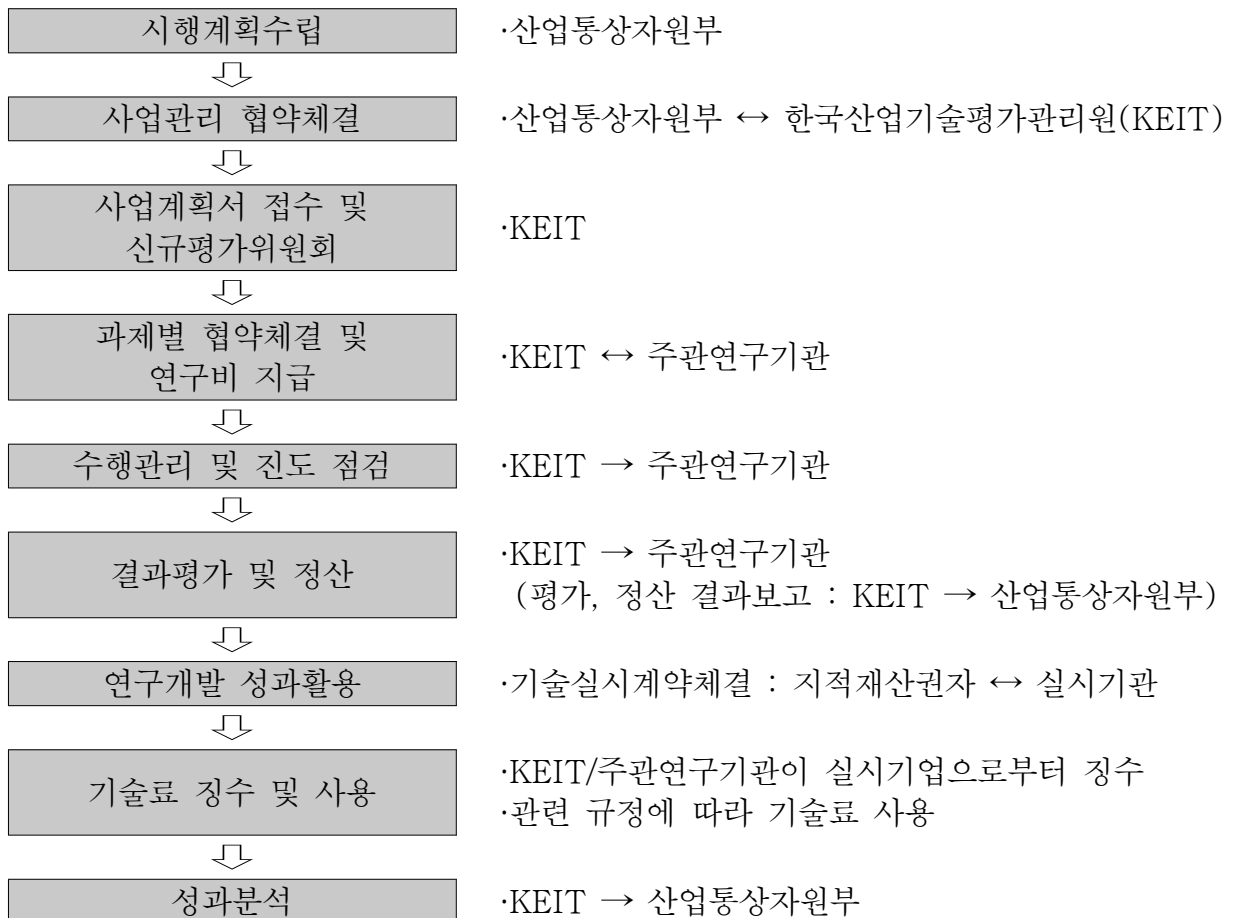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따라 변동가능

###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연차평가 및 협약체결
‘12.2월~’12.4월	12.5월	‘12.6월	‘13.5월~’13.6월

\* '13년도에 추가로 기획되는 신규과제는 없음

## 7.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원본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모든 참여자 날인 원본 제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각 1부(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정병찬 사무관  
(Tel : 02-2110-5675, E-mail : chanjb@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김근대 책임  
(Tel : 042-715-2234, E-mail : bytheway@keit.re.kr)

## 그린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 구축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정병찬 사무관

(전화 : 02-2110-5675, E-mail : chanjb@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정책지정)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5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해당사항 없음('13년 신규사업)

### 1. 사업개요

개요

- 그린 에너지 소재 기반 신재생 에너지저장 전원 및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울산 지역의 거점기관 육성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산업 활성화 지원

### 2. 지원대상분야

- 중대형이차전지(수송용, 에너지저장)의 적용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현재 용량의 한계(양극 : < 160 mAh/g, 음극 : < 370 mAh/g)를 훨씬 뛰어넘는 전극 신소재 기술개발

- 양극 및 음극소재의 표면 (< 50nm) 및 내부의 층방전 열화과정 및 충전심도/온도에 따른 구조전이 규명 및 실시간 분석장비 구축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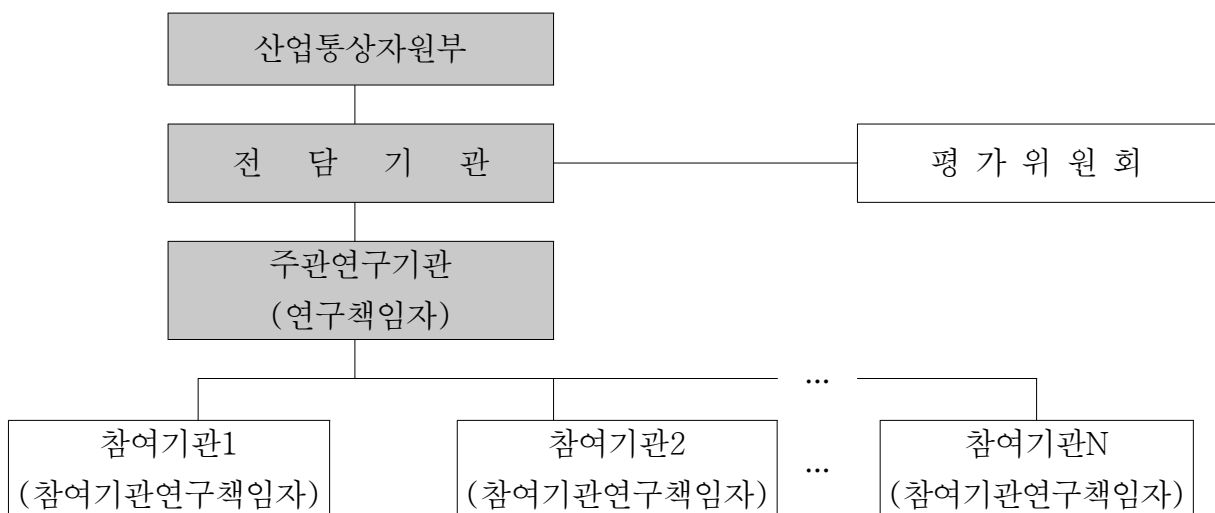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신재생 에너지저장 전원 및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울산 지역의 거점기관 육성을 위한 정책지정 사업임)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전극소재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 구축 및 이차전지 신소재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동남권 그린카 및 신재생 에너지저장 전원산업 지원
- 지원대상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원조건 :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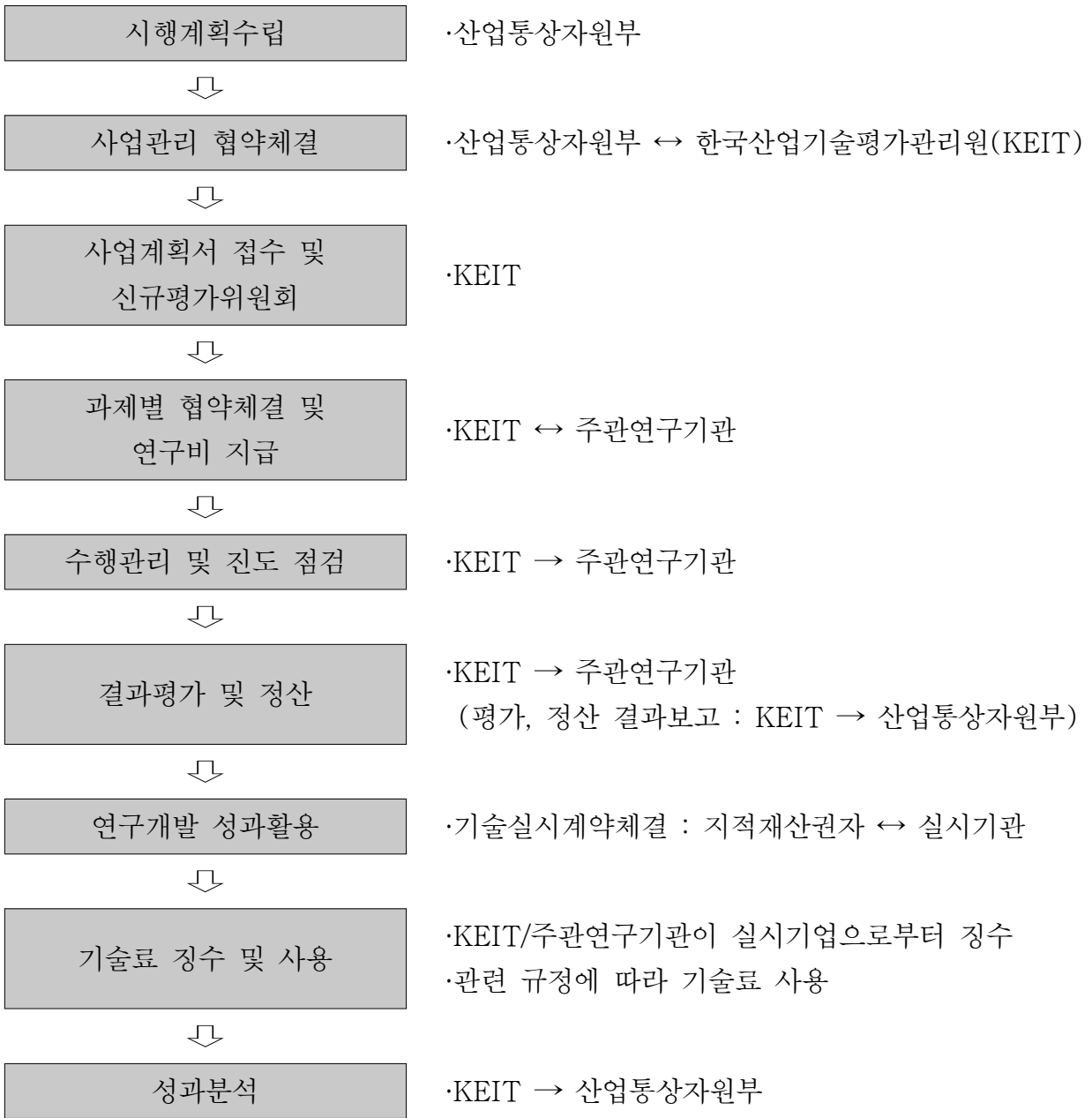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13.2월~’13.4월	13.5월	‘13.6월

## 7.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원본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모든 참여자 날인 원본 제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각 1부(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정병찬 사무관  
(Tel : 02-2110-5675, E-mail : chanjb@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김근대 책임  
(Tel : 042-715-2234, E-mail : bytheway@keit.re.kr)

## LED시스템조명 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이희동 사무관

(전화 : 02-2110-4806, E-mail : ddongg@motie.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5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37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12년도부터 시장이 형성되어 LED산업 핵심으로 떠오를 조명산업 세계주도권 확보 및 획기적인 전력절감을 위해 우리의 강점인 IT기술력을 활용한 'LED시스템조명 기술개발' 추진

### 2. 지원대상분야

- LED시스템조명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부품 및 조명 엔진모듈 개발
- 시스템조명 엔진모듈을 적용한 실내용 LED 시스템조명 응용제품 개발

- 응용제품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조명 평가지표, 설계 가이드라인 등 원천기술 개발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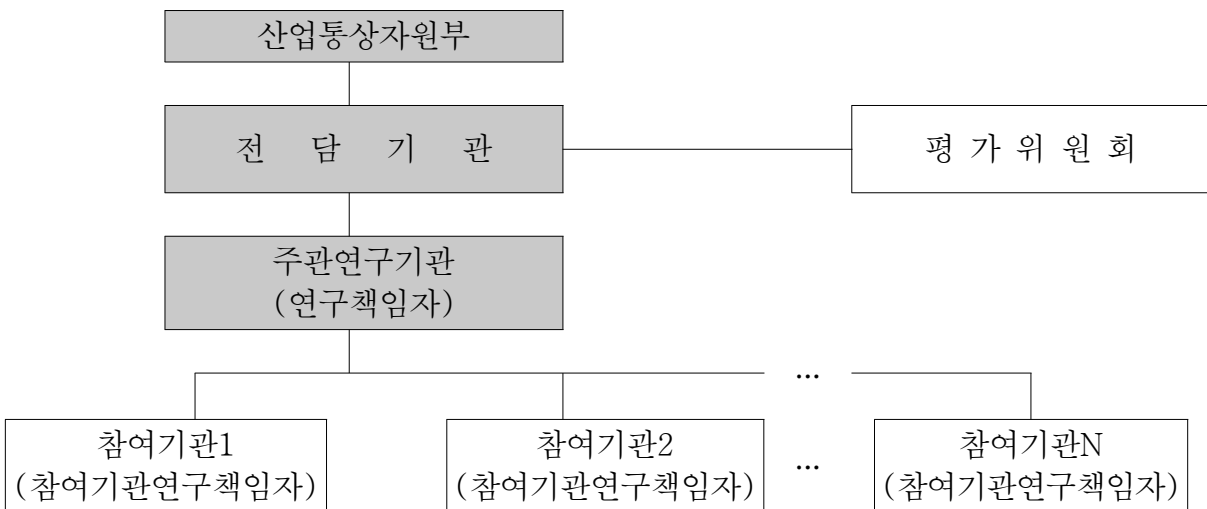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통신·제어·콘텐츠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제공하는 신개념 LED시스템 조명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3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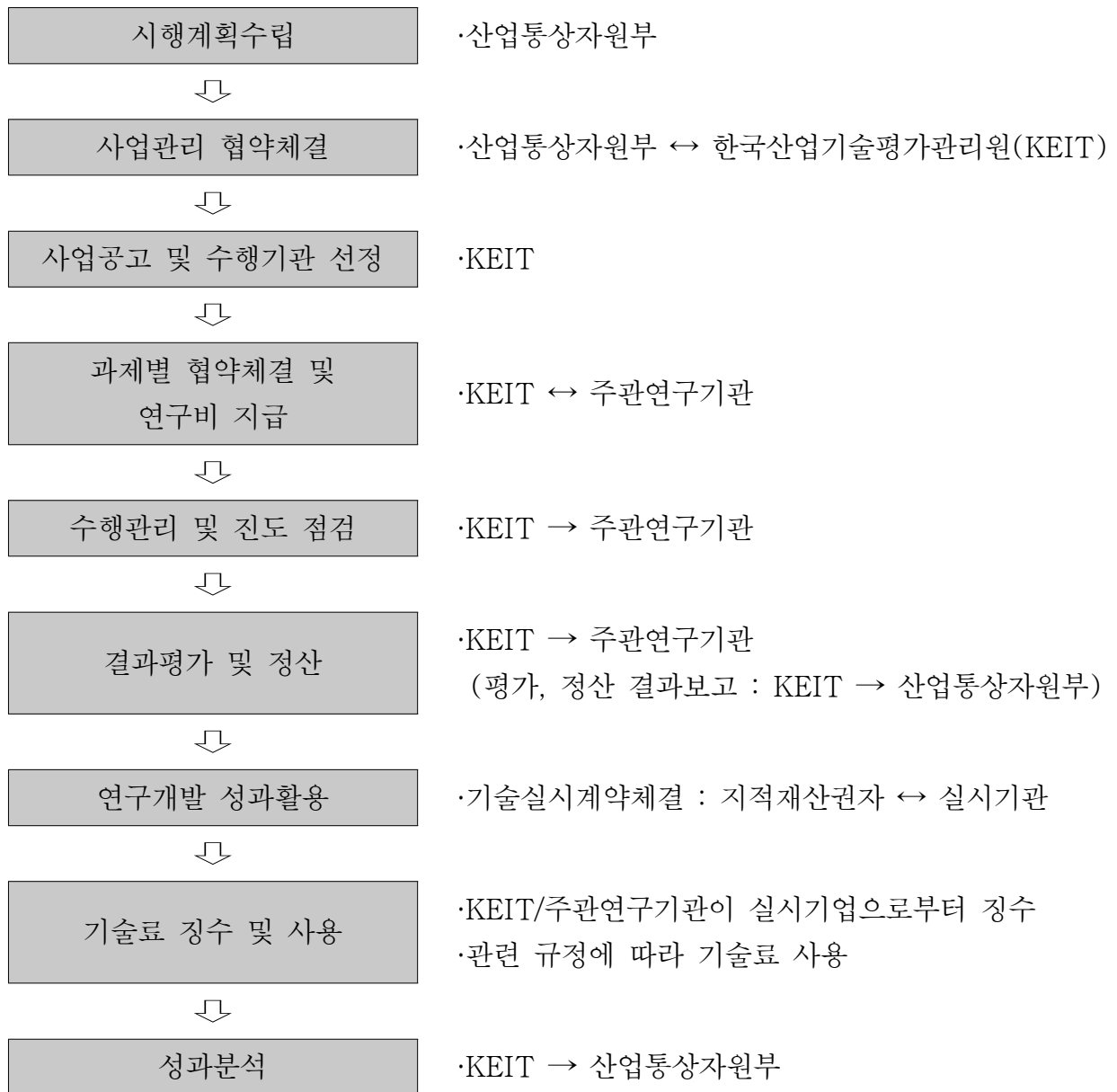
###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사업공고 및 접수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연차평가 및 협약체결
‘12.1월~’12.4월	‘12.4월~’12.5월	‘12.6월	‘13.5월~’13.6월

\* ‘13년 이후 추가로 기획되는 신규과제는 없음

## 7.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원본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모든 참여자 날인 원본 제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각 1부(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문 의 처>**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이희동 사무관  
(Tel : 02-2110-4806, E-mail : ddongg@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임문혁 선임  
(Tel : 042-715-2233, E-mail : mhyim@keit.re.kr)

## 우정기술연구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우정사업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우편정보기술팀	남철진 사무관

(전화 : 02-2195-1563, E-mail : namjin@koreapost.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 우정기술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책지정)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산업기술 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0.1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650백만원

### 1. 사업개요

개요

- 우정기술의 자동화·로봇화·무인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차세대 스마트 우체국 구축과 우편사업 수익 기반 창출 및 성과물 기술이전을 통한 관련 산업 지원·육성

### 2. 지원대상분야

안정적인 우정기술 확충을 위한 우정사업 핵심기술 원천기술개발

- 고속·고효율 소포구분 기술, 무인우체국 구축 기술, 우편주소를 활용 자동화 기술 개발과 우편사업 전략 수립 및 신기술 적용 방안 연구 지원
- 혁신기술 확보를 통한 우편 서비스 질 향상과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으로 관련 산업 기반 조성
- 국내 우정IT 기술력 향상 및 해외수출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

###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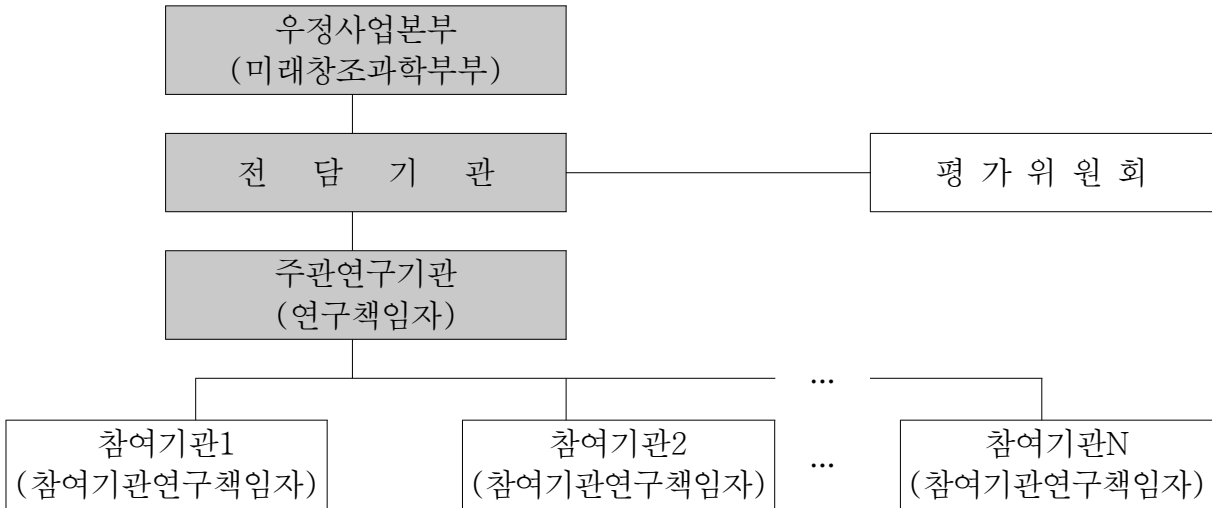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우정사업연구개발관리규정에 의한 참여대상자
- \* 참고 : 붙임 우정사업연구개발관리규정

###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형태 (지원사업내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지정 과제 포함)
- 지원대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 지원조건 :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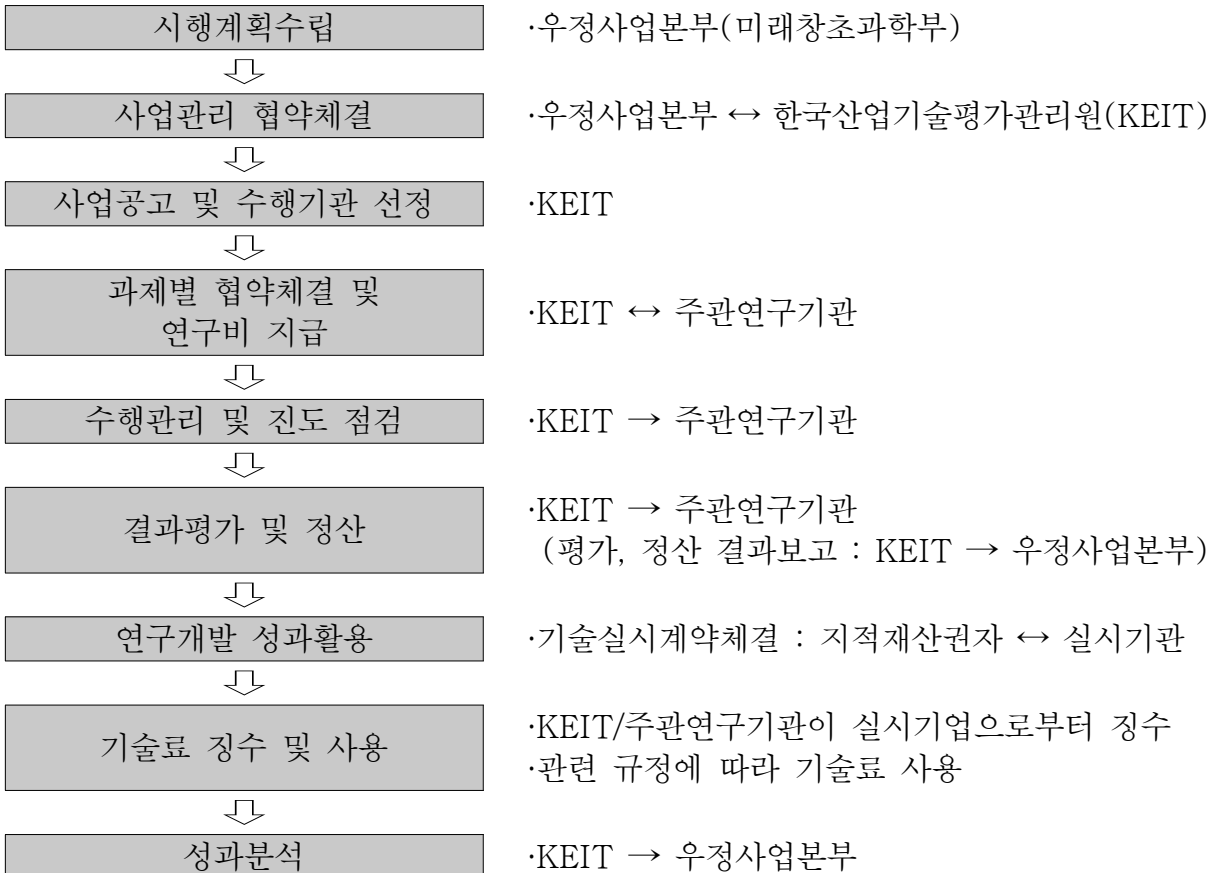
## 5.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따라 변동가능

### □ 추진절차



## 6. 추진일정

사업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과제수행
'12.10~'12.11	'12.12~'13.1	'13.1	'13.1

## 7.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세부주관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모두 원본 제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모든 참여자 날인 원본 제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각 1부(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우정사업연구개발관리규정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문 의 처> —

- 정 부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보기술팀 남철진 사무관  
(Tel : 02-2195-1563, E-mail : namjin@koreapost.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 박인성 책임  
(Tel : 042-715-2242, E-mail : inseong@keit.re.kr)